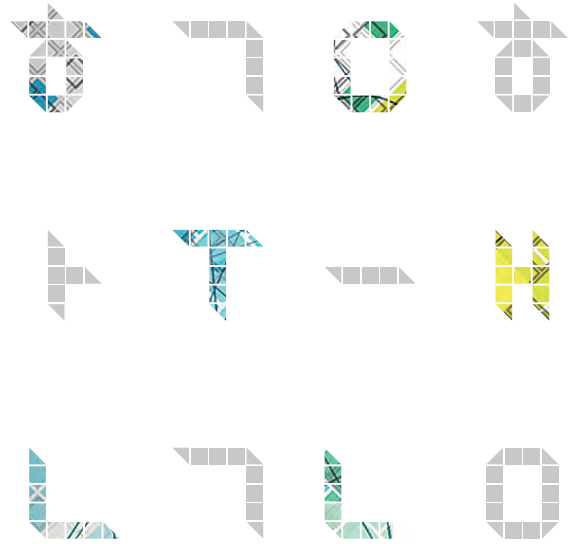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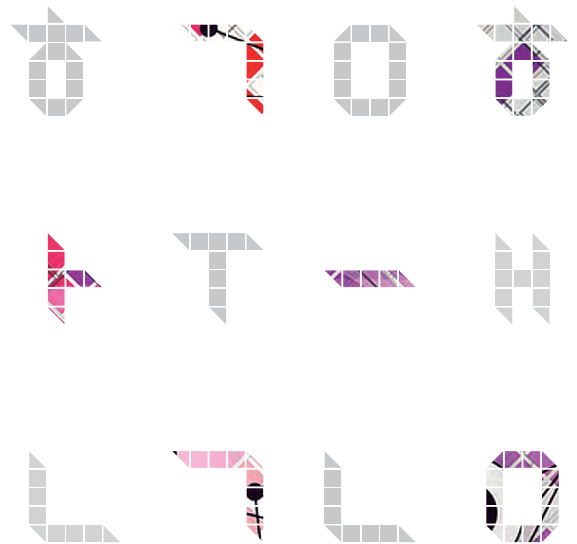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2014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한국은행

머리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제도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9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펴낸 후 2009년에 제3차 개정판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년간 국내외 지급결제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비금융 IT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진입이 크게 확대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지급결제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관련 인프라에 대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공동으로 리스크 관리를 크게 강화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2012년에 제정하고 각 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급결제 채널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등 전자금융 보안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금융정보보호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 연계 확대에 의해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국내외 지급결제환경의 변화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은행을 비롯한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들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층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거나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한국의 지급결제제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12월
금융결제국장 박이락

제1부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1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3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5
제2절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8
제3절 결제리스크	11
제2장 금융시장인프라	21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의 유형	23
제2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7
제3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37
제1절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정책	39
제2절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	45
제4장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49
제1절 감시의 의의	51
제2절 중앙은행 감시책무의 법제화 현황	54
제2부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57
제5장 한국은행의 역할	59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1
제2절 지급결제제도 감시	63
제3절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75
제6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85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87
제2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92
제7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103
제1절 개요	105
제2절 한국은행법	106
제3절 한국은행 규정	107
제4절 기타 관련법률	111

제8장 지급수단	117
제1절 지급수단의 유형	119
제2절 지급수단의 혁신	131
제9장 거액결제시스템	145
제1절 개요	147
제2절 한은금융망의 주요 특징	152
제3절 한은금융망 취급 업무	158
제4절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164
제5절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관리	167
제6절 거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69
제10장 소액결제시스템	177
제1절 개요	179
제2절 어음교환시스템	182
제3절 지로시스템	189
제4절 금융공동망	197
제5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217
제6절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220
제7절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226
제11장 외환결제시스템	235
제1절 개요	237
제2절 외환결제의 유형	239
제3절 CLS시스템	243
제4절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	250
제12장 증권청산결제시스템	255
제1절 개요	257
제2절 중앙거래당사자	260
제3절 중앙예탁기관	267
제4절 증권결제시스템	272

제3부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과제	299
제13장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향후 과제	301
제1절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303
제2절 향후 정책과제	316
〈 부 록 〉	323
1. 지급결제제도 연대표	325
2. 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353
3. 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356
〈 색 인 〉	361

차례_표

〈표 2- 1〉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12개 핵심기준(Key Standards) …	29
〈표 3- 1〉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현황 ……………	46
〈표 3- 2〉	중앙은행의 발전촉진자 역할 유형 ……………	48
〈표 4- 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과의 차이점 ……………	53
〈표 4- 2〉	중앙은행 감시책무의 법제화 현황 ……………	54
〈표 5- 1〉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	65
〈표 5- 2〉	지급결제통계 현황 ……………	70
〈표 5- 3〉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주기 ……………	71
〈표 5- 4〉	PFMs 평가등급의 구분 ……………	72
〈표 5- 5〉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발간 목록 ……………	80
〈표 5- 6〉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현황 ……………	81
〈표 5- 7〉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 국제협력활동 현황 ……………	83
〈표 6- 1〉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등록 현황 ……………	95
〈표 7- 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관련 법률 ……………	105
〈표 7- 2〉	주요국의 결제완결성 관련 법률 현황 ……………	113
〈표 8- 1〉	수표종류별 주요특징 비교 ……………	122
〈표 8- 2〉	CMS 출금이체와 지로 자동이체의 비교 ……………	124
〈표 8- 3〉	신용카드회사 분류 ……………	126
〈표 8- 4〉	선불형카드의 비교 ……………	127
〈표 8- 5〉	국내 전자화폐 현황 ……………	128
〈표 8- 6〉	선불전자지급수단 현황 ……………	129
〈표 8- 7〉	직불형카드의 비교 ……………	130
〈표 8- 8〉	국내 직불전자지급수단 현황 ……………	130
〈표 8- 9〉	IC칩 방식과 서버 방식 모바일카드 비교 ……………	135
〈표 8-10〉	해외 비금융기업의 주요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	142
〈표 9- 1〉	한은금융망 자금종류별 결제금액 ……………	150

〈표 9- 2〉	혼합형결제시스템 결제 및 유동성 절감 규모	151
〈표 9- 3〉	결제시스템 및 결제계좌별 대상업무	153
〈표 9- 4〉	한은금융망의 지정처리시점	157
〈표 9- 5〉	지정처리시점에서의 결제순서	157
〈표 9- 6〉	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 확대	160
〈표 9- 7〉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165
〈표 9- 8〉	일중RP제도의 주요 내용	166
〈표 9- 9〉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167
〈표 9-10〉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168
〈표 10- 1〉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180
〈표 10- 2〉	어음교환시스템 이용규모	183
〈표 10- 3〉	지로시스템 이용규모	189
〈표 10- 4〉	CD공동망 이용규모	199
〈표 10- 5〉	CD/ATM 설치현황	200
〈표 10- 6〉	점포외 CD공동망 이용규모	201
〈표 10- 7〉	타행환공동망 이용규모	203
〈표 10- 8〉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	206
〈표 10- 9〉	직불카드공동망 이용규모	207
〈표 10-10〉	CMS공동망 이용규모	210
〈표 10-11〉	지방은행공동망 이용규모	212
〈표 10-12〉	전자화폐(K-CASH)공동망 이용규모	214
〈표 10-13〉	국가간 ATM 현금인출 규모	216
〈표 10-14〉	순채무한도 설정규모	230
〈표 10-15〉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용 담보증권 납입비율	231
〈표 10-16〉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용 담보증권 납입규모	232
〈표 10-17〉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주요 내용	234
〈표 11- 1〉	CLS시스템 결제가능 통화	244
〈표 11- 2〉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	244
〈표 11- 3〉	우리나라의 CLS시스템 참가현황	246
〈표 11- 4〉	CLS시스템 동시결제시간대	247
〈표 11- 5〉	외환결제 관련 관리대상 리스크	251

〈표 12- 1〉 우리나라의 장내 및 장외시장 거래 대상증권	257
〈표 12- 2〉 우리나라의 CCP	260
〈표 12- 3〉 거래소의 결제이행재원 현황	262
〈표 12- 4〉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 주요 결제안전성 강화장치	263
〈표 12- 5〉 증권결제 방법의 분류	272
〈표 12- 6〉 유가증권시장결제 개요	274
〈표 12- 7〉 채권기관투자자결제 개요	281
〈표 12- 8〉 주식기관투자자결제와 장내주식시장결제간 비교	283
〈표 12- 9〉 CP, 전자단기사채 및 사채의 비교	285
〈표 12-10〉 종전의 국제기준과 「PFMs」의 비교	291
〈표 12-11〉 우리나라 주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293
〈표 13- 1〉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현황	307

차례_그림

〈그림 1- 1〉	지급결제의 흐름	6
〈그림 5- 1〉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업무흐름도	72
〈그림 5- 2〉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	76
〈그림 5- 3〉	금융정보화 추진조직 체계도	78
〈그림 5- 4〉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기구 체계	79
〈그림 6- 1〉	우리나라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조	87
〈그림 6- 2〉	PG업자의 정보입수 경로(신용카드 PG기준)	96
〈그림 6-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	97
〈그림 6- 4〉	결제대금예치 업무처리절차	98
〈그림 6- 5〉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	99
〈그림 6- 6〉	전자고지결제 업무처리절차	100
〈그림 8- 1〉	지급카드의 융합	126
〈그림 8- 2〉	USIM칩 기반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132
〈그림 8- 3〉	서버 방식의 모바일 신용카드 업무처리절차	135
〈그림 8- 4〉	모바일카드 유형별 이용규모	136
〈그림 8- 5〉	가상화폐의 종류	138
〈그림 8- 6〉	결제흐름에서의 비금융기업의 역할	141
〈그림 9- 1〉	결제방식별 비교	148
〈그림 9- 2〉	한은금융망 이용규모	150
〈그림 9- 3〉	한은금융망 결제방식별 흐름도	155
〈그림 9- 4〉	RP방식에 의한 일중유동성 공급 구조	166
〈그림 9- 5〉	결제시스템의 보유 유동성수준과 결제소요시간과의 관계	170
〈그림 10- 1〉	어음교환 업무처리절차	186
〈그림 10- 2〉	부도어음 업무처리절차	188
〈그림 10- 3〉	장표지로 업무처리절차	192
〈그림 10- 4〉	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193
〈그림 10- 5〉	납부자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194
〈그림 10- 6〉	대량지급 업무처리절차	195

〈그림 10- 7〉 인터넷지로 업무처리절차	196
〈그림 10- 8〉 CD공동망의 현금인출 업무처리절차	199
〈그림 10- 9〉 점포외 CD네트워크 구성도	201
〈그림 10-10〉 타행환공동망 업무처리절차	203
〈그림 10-1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처리절차	205
〈그림 10-12〉 직불카드공동망 업무처리절차	207
〈그림 10-13〉 CMS출금이체 업무처리절차	209
〈그림 10-14〉 CMS입금이체 업무처리절차	210
〈그림 10-15〉 전자화폐공동망 업무처리절차	213
〈그림 10-16〉 국가간 ATM 거래처리 구조	216
〈그림 10-17〉 전문카드사 신용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218
〈그림 10-18〉 BC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219
〈그림 10-19〉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절차	221
〈그림 10-20〉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절차	222
〈그림 10-21〉 신용카드 PG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223
〈그림 10-22〉 계좌이체 PG(금융결제원)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224
〈그림 10-23〉 통신과금서비스(무선전화결제)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225
〈그림 11- 1〉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	239
〈그림 11- 2〉 미달리화 수취업무 처리절차 및 시간	240
〈그림 11- 3〉 국내 결제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이체 흐름	242
〈그림 12- 1〉 증권의 청산, 결제 흐름도	257
〈그림 12- 2〉 우리나라의 증권청산결제시스템 개요	259
〈그림 12- 3〉 유가증권시장 결제 흐름도	275
〈그림 12- 4〉 유가증권시장 결제규모	276
〈그림 12- 5〉 파생상품시장 결제규모	279
〈그림 12- 6〉 채권기관투자자 결제규모	280
〈그림 12- 7〉 채권기관투자자 결제 흐름도	281
〈그림 12- 8〉 주식기관투자자 결제규모	282
〈그림 12- 9〉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결제규모	284
〈그림 12-10〉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한은금융망 DvP 결제규모	286
〈그림 12-11〉 전자단기사채 결제 흐름도	287

〈그림 13- 1〉 CSD-RTGS 연계 모델	306
〈그림 13- 2〉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개념도	314

차례_참고

〈참고 1- 1〉	지급, 청산, 결제의 의미	7
〈참고 1- 2〉	금융시장인프라가 관리해야 할 추가 리스크	14
〈참고 1- 3〉	주요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	15
〈참고 1- 4〉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	18
〈참고 2- 1〉	자금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	24
〈참고 2- 2〉	증권대금동시결제	25
〈참고 3- 1〉	영란은행의 발전과정과 지급결제제도	40
〈참고 3- 2〉	미국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배경	41
〈참고 3- 3〉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	43
〈참고 4- 1〉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장실패	52
〈참고 4- 2〉	영국 및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개편 내용	55
〈참고 5- 1〉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67
〈참고 5- 2〉	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	68
〈참고 7- 1〉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112
〈참고 7- 2〉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114
〈참고 8- 1〉	전자어음	120
〈참고 8- 2〉	전자외상매출채권	122
〈참고 8- 3〉	비접촉 통신기술의 유형	133
〈참고 8- 4〉	모바일기기내 보안영역(SE)의 유형	136
〈참고 8- 5〉	비트코인 개요	139
〈참고 9- 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151
〈참고 9- 2〉	한은금융망의 업무지속계획	171
〈참고 9- 3〉	국고전산망	174
〈참고 10- 1〉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180
〈참고 10- 2〉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	184

〈참고 10- 3〉 어음의 부도사유	187
〈참고 10- 4〉 거래정지처분 사유	188
〈참고 10- 5〉 CMS 부당출금 시도 사고이후 개선조치 내용	211
〈참고 10- 6〉 주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수단	228
〈참고 11- 1〉 SWIFT	238
〈참고 11- 2〉 홍콩금융관리국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	241
〈참고 11- 3〉 CLS시스템의 원/달러거래 결제과정	248
〈참고 11- 4〉 BCBS의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감독지침	253
〈참고 12- 1〉 CCP를 통한 결제유동성 절감	261
〈참고 12- 2〉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이행 현황	264
〈참고 12- 3〉 CCP의 신용리스크	266
〈참고 12- 4〉 중앙은행의 증권보관업무(Custody)	271
〈참고 12- 5〉 주요국의 증권결제시스템	287
〈참고 12- 6〉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294
〈참고 12- 7〉 거래정보저장소	295
〈참고 13- 1〉 역내 증권결제기구(RS) 설립 필요성	305

약어

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IS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OK-Wire+	한국은행금융결제망(한은금융망) 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CCP	중앙거래당사자 Central Counterparty
CPMI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
CSD	중앙예탁기관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DNS	이연차액결제 Deferred Net Settlement
DvP	증권대금동시결제 Delivery versus Payment
FMI	금융시장인프라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FSAP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FSB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IOSCO	국제증권감독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PFMIs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PS	자금결제시스템 Payment System
PvP	외환동시결제 Payment versus Payment
RTGS	실시간총액결제 Real-Time Gross Settlement
SSS	증권결제시스템 Securities Settlement System
TR	거래정보저장소 Trade Repository



제1부

지금결제제도의 이해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5
제2절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8
제3절 결제리스크	11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계좌이체, 지급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에게 급여를 줄 때 계좌이체 또는 어음·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정부의 경우에도 재정지출을 하거나 개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지급수단으로 현금이나 수표, 계좌이체 또는 지급카드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라고 한다. 우리가 지급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인터넷 बैं킹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금융기관의 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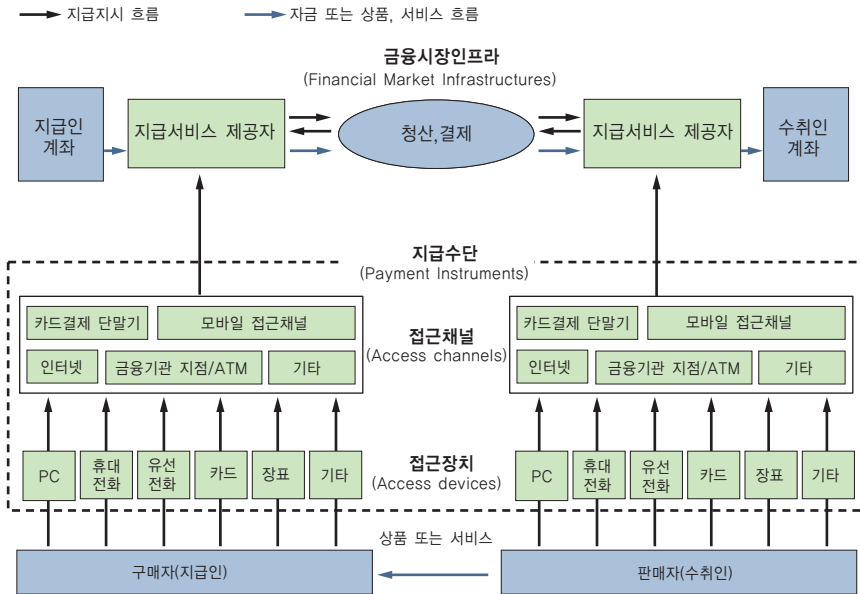
우리가 사용하는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현금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액의 일반 상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 대신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수표 등의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비현금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를 위해서는 지급인과 수취인이 지급지시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접근장치와 접근채널이 필요하다. 주로 이용되는 접근장치로는 PC, 휴대전화, 플라스틱 카드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장표 등이 있다. 지급지시 정보가 금융기관에 전달되는 접근채널로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영업창구, 인터넷, CD/ATM 및 모바일 접근채널(어플리케이션, IC칩) 등이 이용되고 있다.

지급인과 수취인으로부터 금융기관에 전달된 지급지시는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해 놓은 당좌예금계좌간의 자금이체를 통하여 최종 결제된다. 즉 중앙은행은 지급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일상적인 지급이나 금융상품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¹⁾을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라고 한다. 수취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결제는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금이 입금되어야만 비로소 완료되는 것이다.

〈그림 1-1〉 지급결제의 흐름



자료 : 국제결제은행(B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한편 증권이나 외환 등 금융상품 거래는 금융시장인프라에 의해 직접 청산되고 최종 결제된다. 거래당사자간 거래 확인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할 차액을 산출하는 청산과정을 거쳐 자금의 이체 또는 증권의 이전을 통해 결제가 실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모두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해 처리된다. 이와 같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통한 자금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가 우리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은 지급결제제도를 통해 틀림없이 자금이 이전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1)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자금의 이체,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위 구성요소중 지급수단이 제외되며 이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와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2) 이 책에서 지급결제제도는 한 국가의 지급·청산·결제 체계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개별 지급결제시스템(금융시장인프라)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참고 1-1〉

지급, 청산, 결제의 의미

지급(payment)은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그것을 수신하는 과정으로서 지급결제의 시작 단계이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직접 주거나 지급카드로 결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clearing)은 청산기관(clearing house)이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결제를 위해 송부된 어음, 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할 차액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거래 이후 지급수단의 수령, 조회, 통지 및 차액계산(netting)이나 결제전의 포지션 산출과정 모두가 청산에 해당된다.

결제(settlement)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여 완결시키는 과정이다.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의 자금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실제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이 경우의 결제과정을 좁은 의미의 결제라고 한다. 결제는 단순히 자금이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이체되는 단순형 결제와 금융자산과 자금의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금결제시스템에서는 통상 단순형 결제가 실행되고 있으며, 가치교환형 결제는 거래의 구성요소인 화폐의 지급(또는 화폐적 가치의 이전)과 대상 물건(증권거래에서의 증권, 외환거래에서의 이종 통화)의 인수도를 동시에 처리한다.

제2절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1.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현금 즉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의 입·출금을 통해 금융기관에 최종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최종대부자로서 긴급 결제유동성 제공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방지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새로운 결제제도와 지급수단의 도입, 기존 제도의 개선을 주도하는 등 지급결제제도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2.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증권 또는 외환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지급결제과정에서 청산,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있어야 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급서비스는 그동안 은행,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직접 제공하여 왔으나 금융과 IT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 IT 관련 기업 등 비금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및 결제를 위한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기관이다.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은행도 거액자금의 지급지시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는 주요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중 하나이다.

3.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여러 가지 법규, 업무처리규정 또는 표준적인 절차가 정해져야 한다. 이에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자로서 중앙은행이 정한 규정이나 개별 금융기관과 운영기관의 감독자로서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규정 등이 있다. 각 금융시장인프라의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와 감시·감독당국이 지켜야 할 국제기준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³⁾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 공동으로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⁴⁾이 있다.

4.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 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급수단 자체의 특성 및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를 통한 청산, 결제절차 등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지급수단과 금융시장인프라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3) 1990년에 설립된 지급결제제도 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는 2014년 9월 1일부터 위원회의 명칭을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로 변경하였다.

4)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2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기술되어 있다.

5.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나서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기관간에 주고받을 자금이나 증권 내역을 확정하는 기관이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자금이나 증권 내역을 송부받아 이를 결제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각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증권계좌 간에 이전시킴으로써 모든 지급결제과정을 마무리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자금결제는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증권결제는 증권을 집중예탁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거래정보 기록기관은 금융상품 거래정보를 집중 기록, 관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인프라로서 거래정보저장소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금융시장인프라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은행, 감독기관 등 관계당국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제3절 결제리스크

1. 결제리스크 유형

결제리스크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시장간 및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인프라간 상호의존성도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하는 특정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과 금융시장인프라에 급속히 파급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legal risk), 시스템적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가. 신용리스크

신용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시점에 지급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⁵⁾ 위험으로 원금리스크(principal risk)와 대체비용리스크(replacement cost risk)로 나누어진다.

5)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시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또는 다른 참가기관이 직면하게 되는 손실(신용 익스포저)은 발생시점에 따라 현재 익스포저(current exposure)와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익스포저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발생 즉시 계산된 원금손실 또는 대체비용을 의미한다.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는 높은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미래시점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손실로 정의되며,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부터 해당 포지션 정리 또는 담보 처리시점까지의 잠재적인 시장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의미한다.

원금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이 운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중 신용을 갚지 못하거나 지정시점에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증권이나 외환결제시스템에서는 증권 또는 이종통화의 인도와 거래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결제를 먼저 이행하는 쪽이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증권의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증권의 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원금리스크로 인한 손실 범위에는 거래원금 전체가 해당된다.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으로부터 지급채무에 상응하는 담보를 받거나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증권 또는 외환결제를 처리하더라도 대체비용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다. 대체비용리스크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거래 취소 또는 결제불이행 등으로 거래상대방이 원래 거래를 다른 거래로 대체하는 데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다. 예를 들어 증권 또는 외환 거래시 계약시점과 결제시점 사이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여 계약체결 이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체비용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입자가, 증권의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는 증권의 매도자가 각각 대체비용리스크에 노출되며 외환거래에서는 가치가 상승한 외환의 매입자가 대체비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대체비용리스크의 크기는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외환 등의 가격 변동성과 결제기간의 증가에 비례하여 커지는 반면 손실의 범위는 당초 계약보다 높아진 비용에 한정된다.

나. 유동성리스크

유동성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이 단기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정해진 결제시점에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즉 금융기관의 건전성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예정된 시간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유동성리스크는 자산 매도자가 결제시점에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다른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리스크를 포함한다. 또한 자산 매수자가 결제시점에 동 자산을 수취하지 못하여 자신의 인도 채무를 완료하기 위해 동 자산을 차입해야 하는 리스크를 포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양 당사자는 잠재적으로 결제시점에 유동성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한편 유동성리스크는 결제시점 이후에라도 원금 전액이 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용리스크와 구분된다. 그러나 유동성리스크는 다른 계약의 불이행이나 파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신용리스크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다. 운영리스크

운영리스크는 정보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의 결함, 운영인력의 실수 또는 외부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 질적 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운영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 내부와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내부 요인은 부적절한 내부통제장치나 인력관리 실패 등에 기인하며 외부 요인으로는 외부 중요서비스제공자(critical service provider)의 서비스 중단이나 자연재해, 테러, 전염병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다.

한편 전자방식의 실시간 자금이체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통신 네트워크 등의 장애로 실시간 자금이체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다룰 전문인력의 부족, 담당 직원수의 감소 등으로 인한 운영리스크의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들은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보강 등을 통해 운영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법률리스크

법률리스크는 법률이나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결제가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법률, 운영기관의 규칙 또는 참가기관간 협약 등이 미비한 경우나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의 도입에 따른 예상치 못한 책임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마. 시스템적리스크

시스템적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에서 특정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으로 확산되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

치는 결제리스크를 말한다.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전되고 금융시장간 상호연계가 심화됨에 따라 특정 참가기관 또는 시장의 리스크가 다른 시장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어 시스템적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적리스크는 실제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이나 실물경제활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리스크의 방지를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른 참가기관으로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성이 높은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 1-2〉

금융시장인프라가 관리해야 할 추가 리스크

(일반사업리스크)

일반사업리스크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금융시장인프라의 경영과 관련된 리스크로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과 관련된 리스크는 제외된다. 즉 일반사업리스크는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의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동 손실을 자본으로 충당하여야 할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의 재무상태가 잠재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사업리스크 관리 실패는 해당 금융시장인프라의 청산 또는 결제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관 및 투자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는 자신이 소유하는 자산과 참가기관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보관 및 투자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보관리스크는 보관기관의 도산, 부주의, 부정행위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관 자산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을 말한다. 투자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자신의 자산 또는 담보와 같은 참가기관의 자산을 투자할 때 직면하는 손실발생 가능성이다. 금융시장인프라가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는데 실패할 경우 금융시장인프라의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및 평판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참고 1-3〉

주요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

1. Herstatt은행사건(1974년 6월)

1974년 6월 26일 오후 3시 30분(프랑크푸르트 시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독일 Herstatt은행에 대해 청산명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Herstatt은행과 마르크화를 매도하고 미달러화를 매수하는 거래를 체결한 은행들은 마르크화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약 2억달러로 추정)를 수취할 수 없게 되어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리스크 발생 사례로서 이후 외환결제시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리스크를 Herstatt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다.

2. BONY사건(1985년 11월)

1985년 11월 증권달러를 위해 증권의 인수도 및 자금결제를 수행하던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에서 시스템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증권결제 지급지시의 송신이 중단되었으며, 증권수취(자금지급)만 일방적으로 늘어나 뉴욕은행이 뉴욕연준에 개설한 계좌에서 잔액 부족으로 거액의 증권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뉴욕은행은 잔액 부족을 메우기 위해 뉴욕연준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일종대출과 230억 달러의 익일물 대출을 받아 결제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3. 뉴욕 대정전(1990년 8월)

1990년 8월에 뉴욕 월가에 대정전이 발생하여 금융시장과 결제시스템이 수일에 걸쳐 영향을 받아 운영리스크가 현재화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시스템 가동이 정지되거나 결제업무에 지장을 받은 은행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변동했다. 뉴욕연준은 자가발전기를 가동시켜 거액결제시스템인 Fedwire를 운영하였으나 정전 4일째에는 자가발전기도 고장나 뉴욕시 교외에 있는 백업센터를 가동시켜 Fedwire를 계속 운영하였다.

4. 베어링사건(1995년 2월)

1995년 2월 영국 베어링은행(Baring Brothers)의 파산은 EBA(Euro Banking Association)가 운영하고 있던 ECU결제시스템(ECU clearing)에 문제를 일으켰다. 베어링 은행과 외환거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은행은 2월 24일 베어링은행의 환거래은행 앞으로 2월 27일자로 ECU(European Currency Unit)를 지급하는 지급지시를 보냈다. 그러나 2월 26일 베어링은행에 파산 관재인이 임명되었고, 이에 거래상대방 은행은 지급지시를 취소하려 하였으나 관련 규정상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반대거래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베어링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상대방 은행은 다른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액결제 포지션을 해소하여야 했다.

5. 한맥투자증권사건(2013년 12월)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옵션시장에서의 주문실수로 대량의 계약을 잘못 체결하여 4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한맥투자증권은 익일 결제시점까지 파생상품시장에서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맥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한맥투자증권이 미납한 대금을 다른 청산회원들이 사전에 납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이용하여 대신 결제하였다.

주 : 1) European Currency Unit(유럽통화단위)는 1979년 3월 13일에 도입되어 1998년 12월 31일까지 유럽공동체의 통화단위로 사용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 유로화로 대체되었다.

2. 결제리스크의 관리방안

결제리스크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질적·양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제리스크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높은 금융시장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은행,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등이 결제리스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제리스크는 결제금액이 클수록, 결제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이나 결제시간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줄여야 한다. 결제금액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차감계산(netting)이 널리 사용된다. 차감계산을 사용할 경우 결제건수를 줄여 결제정보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실수를 줄일 수 있으며 최종 결제되는 금액을 감소시켜 유동성리스크도 감축시킬 수 있다. 한편 결제시간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지급지시와 동시에 결제를 완결시키는 실시간(real-time) 결제가 있다.

결제리스크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시스템 측면과 참가기관 측면에서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 발생시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참가기관의 순이체한도를 제한하거나 유동성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중에 유동성을 적절히 제공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신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의 발생이 결제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시스템 측면의 관리방안에 해당된다. 개별 참가기관 측면의 경우 참가기관간 자금이체가 완결된 이후에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제도 이외에 여타 금융기관과의 유동성 공급협약 등을 통하여 유동성리스크를 감축시킬 수 있다. 또한 운영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직원의 배치 및 지속적인 교육,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내부의 리스크 관리절차 마련, 백업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시장인프라는 결제리스크 발생에 따른 가동중단 사태의 사전예방과 사후대비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무지속계획은 내부장애가 발생하거나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사전 합의된 수준으로 업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 중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목표로 하는 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참고 1-4〉

업무지속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

업무지속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최고 경영층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업무지속계획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략을 수정해나가는 과정이 지속되어야 업무지속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업무지속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립·운영된다.

(업무지속계획의 범위 설정)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업무를 면밀히 파악한 후 업무지속계획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업무지속계획 수립에 사용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명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발생가능한 재해·장애의 파악)

지급결제업무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는 재해·장애의 유형 및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단계이다. 발생 가능한 재해·장애의 유형은 기술결함(technical defects), 인재(man-made errors), 사고(accidents), 공격(attacks), 자연재해(natural disaster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영향 분석)

재해·장애 발생으로 각종 지급결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내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의 중요도를 정하는 단계이다. 동 분석을 기초로 업무별 복구목표시간(recovery time objective) 및 복구우선순위 등을 설정한다.

(복구전략 수립)

재해·장애 발생으로 중단된 지급결제업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동 전략에는 백업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데이터 백업 및 소산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계획 수립)

지급결제업무 중단사태의 사전예방과 재해·장애 발생시의 사후대비를 위한 업무지속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업무지속계획에는 사전예방조치, 재해·장애 발생시의 상황별 대응절차,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비상시 업무처리 절차, 대외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 내부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모의훈련 및 계획의 유지·개선)

수립된 업무지속계획은 조직별, 업무별로 배포하여 지급결제업무 담당자가 숙지토록 하고 재해·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하여 업무지속계획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해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모의훈련 결과를 토대로 업무지속계획을 수정하거나 업무여건의 변화로 동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노력이 요구된다.

제2장 금융시장인프라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의 유형 23

제2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7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의 유형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기능에 따라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약기관, 증권결제시스템, 거래정보저장소로 분류할 수 있다.

1. 자금결제시스템

자금결제시스템(PS: Payment System)은 결제가 이루어지는 대상에 따라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payment system)과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 분류할 수 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거액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통상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증권 또는 외환거래 등에 따른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interbank fund transfer system)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결제는 건당 금액이 크고 결제시점의 중요도가 높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결제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으로서 거래 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매우 많은 점이 특징이다. 주로 계좌이체나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과 관련된 결제가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처리된다. 우리나라는 금융결제원이 주요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외환매매 거래당사자들이 매도·매입 통화를 서로 지급·수취하여 채권 및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외환결제시스템(foreign exchange settlement system)도 거액결제시스템 또는 은행간 자금이체시스템의 일종이다. 외환결제는 서로 다른 통화의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 결제로서 매도통화 지급시점과 매입통화 수취시점간에 시차가 있으면 원금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외환결제는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입통화의 수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외환동시결제(PvP)⁶⁾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외환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는 외환결제과정에서 국가간 결제시간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매도통화는 이미 지급하였으나 매입통화는 거래상대방의 결제불이행으로 수취하지 못할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급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는 결제방식으로서 현재 미국 뉴욕소재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외환결제방식이 대표적이다.

〈참고 2-1〉

자금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

자금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지급지시 건별로 총액으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킨 차액으로 결제되는지에 따라 총액결제(gross settlement)방식, 차액결제(net settlement)방식, 혼합형결제(hybrid settlement)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총액결제방식은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차액결제방식은 자금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간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한 다음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의 순포지션은 해당 금융기관이 수취한 지급지시 금액의 합계에서 송부한 지급지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차액 금액의 산출이 두 참가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를 양자간 차액결제(bilateral net settlement), 자금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전체 금융기관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를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 settlement)라고 한다. 혼합형결제방식은 총액결제방식의 장점인 거액자금의 신속한 결제와 차액결제방식의 장점인 결제자금의 절감을 함께 구현하는 결제방식이다. 참가기관들의 지급지시를 하루 중 수시로 모아 양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에 처리하기 때문에 일중결제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자금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결제가 어느 특정한 시간에 실행되는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지정시점결제(designated-time settlement)방식¹⁾과 실시간결제(real-time settlement)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차액결제방식의 대부분은 지정시점에 결제처리²⁾되며, 지정시점에 지급기관의 예금계좌에서 수취기관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결제가 완료된다. 실시간결제방식은 자금결제시스템 가동시간 중에 지급지시가 이루어지는 즉시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³⁾을 말한다.

주 : 1) 지급지시 이후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정시점(designated-time) 대신 이연(deferred)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이와 같이 차액결제방식과 지정시점결제방식이 결합된 경우를 지정시점 차액결제방식 또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이라고 한다.

3) 통상 총액결제방식과 결합하여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불린다.

2.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이다. 중앙거래당사자는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기관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리스크가 중앙거래당사자로 집중되기 때문에 중앙거래당사자의 리스크관리 실패는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적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예탁자계좌부상의 계좌대체(book-entry)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중앙예탁기관에 의한 계좌대체 방식의 결제는 현물을 기초로 한 실물증권의 이전에 의한 결제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고 증권의 분실, 도난, 위조 등의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결제방법이다.

4. 증권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SSS; Securities Settlement System)은 증권이 거래된 이후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가치교환형 결제로서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간에 시차가 있으면 증권을 인도했지만 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는 원금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과 대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2-2〉

증권대금동시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계좌대체(book-entry)시스템을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며 국제적으로도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표준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부록(Annex) D 「자금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중앙거래당사자의 설계 요약」에서는 증권과 대금의 결제를 총량(액)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아니면 차감(액)기준으로 실행하는지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세분하고 있다.

DvP 1 방식은 증권과 대금 모두 총량(액)기준으로 거래 건별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없어 원금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거래 건마다 독립해서 결제

증권대금동시결제

DvP 방식	증권결제	대금결제
DvP 1	건별 총량(실시간)	건별 총액(실시간)
DvP 2	건별 총량(실시간)	차액(지정시점)
DvP 3	차감(지정시점)	차액(지정시점)

하기 때문에 일중에 즉각적으로 결제를 종결시킬 수 있다. DvP 1 방식은 위험축소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반면 차감결제방식에 비해 증권 및 대금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고 일중 잔량 관리의 부담이 있다.

DvP 2 방식은 증권은 결제일중에 거래 건별로 총량 결제되는 반면 대금은 증권인도 종료시점에서 참가기관별로 차감하여 결제되는 방식이다. DvP 2 방식은 증권인도가 대금지급에 선행하기 때문에 시차에 따른 원금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부분 중앙예탁기관 또는 결제은행 등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DvP 3 방식은 증권과 대금 모두 차감기준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증권은 종목 및 참가기관 별로 다자간 차감되며 대금도 참가기관별로 다자간 차감된 후 1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다. DvP 3 방식은 증권과 대금 모두 차감하여 결제되기 때문에 필요 유동성이나 잔량 관리 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참가기관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의 차감과정을 재계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인 DvP 방식을 다소 변형한 방식으로 차감후 DvP 1 방식도 있다. 동 방식은 증권과 대금을 참가기관·종목별로 차감한 후 차감된 건별로 동시결제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참가자가 많고 거래건수가 적은 증권거래의 경우 차감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총량(액)기준으로 건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대로 참가자가 적고 거래 건수가 많은 증권거래의 경우 차감의 효과가 크므로 차감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거래정보저장소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금융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래정보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용부도스왑(CDS) 거래에 대한 거래정보 저장소인 미국의 TIW(Trade Information Warehouse)는 거래정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정보저장소는 거래정보의 수집, 저장 및 배포를 집중함으로써 관계당국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며 시장남용의 탐지 및 방지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1. 제정 배경

금융시장인프라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안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인프라의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특히 금융불안시에는 유동성 부족, 신용 손실과 같은 금융 충격의 원인이 되거나 이러한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및 중앙거래당사자에 관한 리스크관리기준⁷⁾을 수립·운영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의 금융시장인프라는 주식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반영하여 금융불안시에도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관한 국제기준을 개정·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⁸⁾ 아울러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⁹⁾를 계기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과 모든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거래정보저장소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금융시장인프라의 리스크관리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10년 2월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지급결제분야의 기존 3대 국제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하였다. 특히 양 국제기구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시스템적리스크 억제, 투명성 및 금융안정 촉진에 주안점을 두고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등

7)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CPSIPS; Core Principles for Systemically Important Payment Systems)」(CPMI, 2001년 1월),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권고(RSS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CPMI-IOSCO, 2001년 11월), 「중앙거래당사자에 관한 권고(RCCP;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CPMI-IOSCO, 2004년 11월)는 기존의 지급결제분야 3대 국제기준이었다.

8) 「Progress since the Pittsburgh Summit in Implementing the G20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Financial Stability」(FSB, 2009년 11월)

9) ①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는 2012년말까지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electronic trading platforms)을 통하여 거래되어야 하며 CCP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 ② 장외파생상품거래는 TR에 보고되어야 하며, CCP를 통하여 청산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③ FSB와 회원국은 이행 상황이 시장투명성 제고, 시스템적 리스크 감축 및 시장 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수준인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시장인프라 유형별로 마련되었던 기존 국제기준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한편 금융시장 인프라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 요구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중앙거래당사자와 새로운 유형의 금융시장인프라인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포함하였다. 새로운 국제기준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이라는 명칭으로 2012년 4월 16일 최종 공표되었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국가간 조약(treaty)과 달리 법적 이행강제력은 없으나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 회원국간 합의를 반영한 간접적 이행규정(soft law)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금융안정위원회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12개 핵심 기준(Key Standards for Sound Financial Systems)」 중의 하나로 지정하여, 회원국의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계량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한 바젤은행규제와 달리 포괄적 상위기준(comprehensive high-level standards)의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즉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 및 관계당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이므로 각국 금융시장인프라와 관계당국은 자국의 금융시장 여건, 지급결제 환경 및 법규체계를 감안하여 동 원칙을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준과 이에 대한 규제·감독·감시기준에 적용해야 한다. 2012년 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제정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금융안정위원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¹⁰⁾의 모든 회원국들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개별 원칙과 책무를 자국의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반영하는 이행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10) 국제증권감독기구 이사회(IOSCO Board)는 기존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 자문단(Emerging Markets Committee Advisory Board)을 통합하여 2012년 5월 설립되었다.

〈표 2-1〉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확보에 관한 12개 핵심기준(Key Standards)

	기 준	제정기관 ¹⁾
거시경제 정책 및 데이터 투명성	통화 및 금융정책 투명성 관련 모범관행에 대한 규정	IMF
	재정정책 투명성 관련 모범관행에 대한 규정	IMF
	특수데이터 제공 기준 / 일반데이터 제공 시스템	IMF
금융 규제 및 감독	효과적인 은행감독에 관한 핵심원칙	BCBS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	IOSCO
	보험 핵심원칙	IAIS
제도 및 시장 인프라	효과적인 예금자보호시스템에 관한 원칙	World Bank
	지급불능과 채권자의 권리	World Bank
	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OECD
	국제회계기준(IFRS) / 국제감사기준(ISA)	IASB/IAASB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s)	CPMI/IOSCO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에 관한 권고	FATF

주 : 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AASB: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료 : FSB

2. 주요 내용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증권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및 거래정보저장소 등 상이한 유형의 금융시장인프라에 폭넓게 적용¹¹⁾되는 일반 원칙으로서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Principles)과 금융시장인프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Responsibilities)로 구성되어 있다.

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가 준거로 삼아야 할 기준인 24개 원칙을 ①일반 조직, ②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③결제, ④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

11) 모든 유형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 24개 원칙이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금융시장인프라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시스템, ⑤채무불이행 관리, ⑥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 ⑦접근, ⑧효율성, ⑨투명성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개별 원칙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일반 조직)

원칙 1: 법적 기반(Legal basis)

금융시장인프라는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jurisdictions)에서 업무의 중요한 측면 각각에 관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투명하고 집행 가능한 법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 2: 지배구조(Governance)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투명하고,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다른 관련된 공익상의 고려사항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원칙 3: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Framework fo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isks)

금융시장인프라는 법률, 신용, 유동성, 운영 및 기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원칙 4: 신용리스크(Credit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참가자에 대한 자신의 신용 익스포저와 자신의 지급, 청산 및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 익스포저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각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높은 신뢰수준으로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앙거래당사자가 보다 복잡한 리스크 특성을 가지는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복수의 사법권역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추가적인 재무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상기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중앙거래당사자에게 잠재적으로 최대의 신용 익스포저를 야기할 수 있는 2개 참가자와 그 관계회사(affiliates)의 채무불이행을 포함해야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다른 중앙거래당사자도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커버하기에 충분한 추가적인 재무자원을 유지해야 한다. 상기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발생 가능한(extreme but plausible) 시장상황에서 중앙거래당사자에게 잠재적으로 최대의 신용 익스포저를 야기할 수 있는 1개 참가자와 그 관계회사의 채무불이행을 포함해야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 5: 담보(Collateral)

금융시장인프라는 자신 또는 참가자의 신용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가 낮은 담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는 헤어컷(haircuts) 및 집중한도(concentration limits)를 적절히 보수적인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원칙 6: 증거금(Margin)

중앙거래당사자는 리스크에 기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되는, 실효성 있는 증거금 제도를 통해 모든 상품에 관하여 참가자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커버해야 한다.

원칙 7: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유동성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금융시장인프라는 광범위한 잠재적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도 높은 신뢰수준으로 지급채무를 당일, 필요에 따라서는 일중 또는 여러 일에 걸쳐 결제할 수 있을 만큼 관련된 모든 통화에 대해 충분한 유동자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기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장상황에서 금융시장인프라에게 최대의 총 유동성 채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와 그 관계회사의 채무불이행을 포함해야 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결제)**원칙 8: 결제 완결성(Settlement finality)**

금융시장인프라는 최소한 결제일 종료시점까지 명확하고 확실한 최종 결제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거나 선호되는(preferable) 경우 금융시장인프라는 최종 결제를 일중 또는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한다.

원칙 9: 자금 결제(Money settlement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행할 수 있고 이용가능한 경우 중앙은행 통화로 자금결제를 실행해야 한다. 중앙은행 통화가 이용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인프라는 상업은행 통화의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원칙 10: 실물 인도(Physical deliverie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물 금융자산 또는 상품의 인도에 관한 자신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실물 인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모니터링·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원칙 11: 중앙예탁기관(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중앙예탁기관은 증권발행의 완전성을 확보하고 증권의 보관 및 이전과 관련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장부상 기재에 의한 증권이

체를 위해 부동화 또는 무권화된 형식으로 증권을 유지해야 한다.

원칙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Exchange-of-value settlement systems)

금융시장인프라는 2개의 연결된 채무의 결제를 수반하는 거래(예를 들어, 증권 또는 외환거래)를 결제하는 경우 한 채무의 최종 결제를 다른 채무의 최종 결제의 조건부로 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채무불이행 관리)

원칙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Participant-default rules and procedures)

금융시장인프라는 실효성 있고 명확하게 정의된 참가자 채무불이행 관리 규정과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동 규정과 절차는 금융시장인프라가 손실 및 유동성 압박을 억제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지속하기 위해 적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칙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Segregation and portability)

중앙거래당사자는 참가자 고객의 포지션 및 그 포지션과 관련하여 중앙거래당사자에 제공되는 담보의 분리보관과 계정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사업 및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 15: 일반사업리스크(General business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일반사업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속사업체(going concern)로서 운영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일반사업 손실을 커버하는데 충분한 자기자본으로 조달된 유동적인 순자산(liquid net assets)을 보유해야 한다. 더욱이 유동적인 순자산은 중요한 업무와 서비스의 복구 또는 질서 있는 업무축소(wind-down)를 보장하는데 항상 충분하여야 한다.

원칙 16: 보관 및 투자 리스크(Custody and investment risk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고유의 자산과 참가자들의 자산을 보호해야 하고 자산이 손실되거나 그 자산에 대한 접근이 지연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금융시장인프라의 투자는 최소한의 신용, 시장 및 유동성 리스크를 지닌 금융수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칙 17: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금융시장인프라는 운영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의 원인을 식별하고 적절한 시스템, 방침, 절차 및 통제수단을 이용해 그 영향을 경감해야 한다. 시스템은 고도의 안전성과 운영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하고 확장 가능한(scalable)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업무지속계획은 대규모 또는 중대한 장애 발생시를 포함하여 운영의 적시 복구 및 금융시장인프라의 채무 이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접근)**원칙 18: 접근 및 참가 요건(Access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

금융시장인프라는 공정하고 개방된 접근을 허용하도록 객관적이고 리스크에 기반한 공표된 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칙 19: 계층적 참가제도(Tiered participation arrangements)

금융시장인프라는 계층적 참가제도로부터 발생하는 중요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원칙 20: 금융시장인프라 연계(FMI links)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금융시장인프라와 연계를 구축하고 있는 금융시장인프라는 동 연계와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한다.

(효율성)**원칙 21: 효율성 및 실효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금융시장인프라는 그 참가자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실효적이어야 한다.

원칙 22: 통신절차와 표준(Communication procedures and standards)

금융시장인프라는 효율적인 지급, 청산, 결제 및 기록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련 통신절차와 표준을 사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맞추어야 한다.

(투명성)**원칙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rules, key procedures, and market data)**

금융시장인프라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과 절차를 구비해야 하며 참가자가 금융시장인프라에 참가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 수수료, 다른 중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관련 규정과 주요 절차는 공표되어야 한다.

원칙 24: 거래정보저장소의 시장 데이터 공개(Disclosure of market data by trade repositories)

거래정보저장소는 관계당국과 일반대중에게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나.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는 ①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 ②규제, 감독 및 감시 권한과 자원, ③금융시장인프라 관련 정책의 공개, ④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적용, ⑤다른 당국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관계당국이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①~④)와 국내외 여타 관계당국과 협력해야 할 책무(⑤)로 구분된다.¹²⁾ 개별 책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 시장감독자 및 기타 관계당국의 책무

책무 A: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FMs)

금융시장인프라는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또는 기타 관계당국에 의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규제, 감독 및 감시를 받아야 한다.

책무 B: 규제, 감독 및 감시 권한과 자원(Regulatory, supervisory, and oversight powers and resources)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를 규제, 감독 및 감시함에 있어 그들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한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책무 C: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정책의 공개(Disclosure of policies with respect to FMs)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 정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공개해야 한다.

책무 D: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적용(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for FMs)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책무 E: 다른 당국과의 협력(Cooperation with other authorities)

중앙은행, 시장규제자 및 기타 관계당국은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촉진함에 있어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적절히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2) CPMI와 IOSCO는 G20의 장외파생상품거래 CCP 청산 의무화 합의(2009.9월)를 지원하기 위해 FSB가 제기한 4대 안전장치(four safeguards)의 일환으로 CCP에 대한 「국내외 관계당국간 협조감시체계」 구축을 논의해 왔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서 규제·감독 실패에 대한 반성, 복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CCP에 대한 국가간 협조감시체계 미흡, CCP 청산의무화에 따른 리스크 집중 문제 등에 관한 공동 인식을 기초하고 있다. PFMs에 제시된 5대 책무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FMI 관계당국이 준수해야 할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이행 점검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12년 4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공표하면서 회원국에게 2012년말까지 동 원칙을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 감독 및 감시 기준으로 채택하고 금융시장인프라로 하여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금융시장인프라를 적시에 완전하고 일관되게 이행함으로써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의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따른 리스크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청산 의무화 등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에 관한 G20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반영되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13년 4월부터 상설 실무그룹(IMG;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¹³⁾을 설립하여 양 기구의 회원국 등 28개 사법권역¹⁴⁾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행 점검은 다수 국가의 법규체계와 다양한 유형의 금융시장인프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1단계(Level 1)는 각국이 법규 제·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24개 원칙과 5대 책무를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체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¹⁵⁾하는 과정이다. 원칙 부문과 책무 부문을 동시에 평가하며, 전체 28개 평가대상국에 소재한 모든 유형의 금융시장인프라를 대상으로 평가대상국의 관계당국이 작성한 자체 평가서를 상설 실무그룹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 8월과 2014년 5월에 각각 1, 2회차 이행점검 결과가 공표¹⁶⁾¹⁷⁾ 되었으며 모든 평가대상국이 이행조치 시행을 완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점검이 실시된다.

13) IMG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18개 주요 중앙은행 및 증권감독기관 직원과 CPMI, IOSCO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4)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EU,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15) 평가등급(rating grade)은 ①(1등급) 이행 조치(안) 미공표 → ②(2등급) 이행 조치(안) 공표 → ③(3등급) 이행 조치 확정 → ④(4등급) 이행 조치 시행의 순서로 부여된다.

16) 2회차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1단계 이행조치를 완료한 국가는 총 28개 평가대상국 중 9개국(호주, 벨기에, 브라질, 홍콩, 인도,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영국)에 불과하나 대다수 국가들이 새로운 유형의 FMI인 TR을 제외할 경우 PFMI 이행에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다.

17) FMI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 부문에서는 이행 조치(안)을 공표하고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진행 중이거나(2등급), 이행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이행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을 운영 중인 경우(3등급)가 많았다. 관계당국의 책무 부문에서는 관계당국이 PFMI의 법규체계 반영을 위한 규제·감독 및 감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높은 평가등급이 부여되었다.

2단계(Level 2)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체계의 내용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내용에 부합하여 완전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1단계와 달리 2단계 점검은 원칙 부문과 책무 부문을 구분하여 상설 실무그룹의 국가별 평가팀이 평가대상국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⁸⁾ 한편 3단계(Level 3)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행 조치가 완료되어 모든 평가대상국에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2014년말 현재 상설 실무그룹이 세부 평가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도 5년마다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¹⁹⁾에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평가대상국이 동 원칙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²⁰⁾ 또한 EU²¹⁾와 미국²²⁾의 증권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규제체계의 동등성(equivalence) 평가도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는 동료집단의 압력(peer pressure)으로 작용하고 있다.

-
- 18) 2014년말 현재 IMSG는 미국, EU 및 일본에 소재한 CCP와 TR를 대상으로 PFMs의 원칙 부문만을 평가하는 1회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타 평가대상국 및 FMI 유형에 대한 점검은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19) FSAP은 IMF가 회원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12개 핵심기준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급결제 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결과는 주요 평가보고서인 「금융시스템안정평가 보고서(FSS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와 「국제기준준수평가 보고서(ROSC; Report on the Observances of Standards and Codes)」를 통해, 세부 평가 내용은 상세평가보고서(DAR; Detailed Assessment Report)를 통해 각각 공표된다.
- 20)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2002년중 최초로 한은금융망에 대한 FSAP 평가를 받았으며, 2013년에는 PFMs에 근거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거래소의 CCP에 대한 FSAP 평가를 수검하였다.
- 21) EU가 2012년 7월 PFMs를 반영하여 제정·공표한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은 외국 CCP가 EU 소재 금융회사 및 그 해외 지점에 CCP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제차의 방지 차원에서 EMIR의 인증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22)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자국 및 외국의 CCP 규제체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해 미국 소재 금융회사 및 그 해외 지점의 외국 CCP 청산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제3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제1절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정책 ... 39

제2절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 45

제1절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중앙은행의 정책

1.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은 법화의 발행, 금융기관간 거래에 필요한 최종결제자산의 제공, 거액결제시스템의 소유 및 운영,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등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 지급결제제도가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한 단기금융시장의 기능이나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두 가지 핵심기능인 통화가치(또는 물가)의 안정과 금융안정은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로부터 발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시 금·은, 주화 등의 정화(正貨) 또는 어음, 수표 등이 이용되거나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발행한 은행권이 사용되었다. 이 때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은행권을 최종결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담당자들이 상대은행별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한 후에 그에 해당되는 정화를 들고 각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공동으로 청산소(clearing house)를 설립하여 결제에 필요한 준비금을 청산소에 예치하고 청산소에 모여 일괄적으로 결제함으로써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청산소 또는 은행간 자금결제를 담당하는 대형 상업은행은 긴급유동성 제공, 회원은행 감독 등과 같은 현대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다.²³⁾ 그러나 청산소는 회원은행만을 위해 조직되어 전체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책임지지 못하였고 일부 회원은행이 결제를 하지 못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즉 민간 청산소나 상업은행 중심의 지급결제제도는 은행들간의 이익상충이나 최종대부자 기능의 미비 등 시장실패 요소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23) 상업은행들이 발행한 초기의 은행권들은 대부분 태환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일반적 통용력에 한계가 있어 그 유통지역이 제한되었으나, 사회적으로 최고의 신용도를 지닌 대형 상업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의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동 대형은행이 일반적 통용력을 갖는 화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모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설립되었다. 국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화에 강제통용력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은행은 가장 안전한 지급결제자산을 공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은행들이 발행하는 은행권 등이 지급결제자산으로 사용되는 데 따르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사 발권력을 이용하여 위기 극복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기능²⁴⁾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금융안정을 본연의 책무로 부여받고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가치 안정 기능은 법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최종결제자산을 제공하는 중앙은행의 역할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개인들간의 금융거래나 금융기관간의 채권·채무가 화폐 또는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화폐 또는 당좌예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결제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참고 3-1〉

영란은행의 발전과정과 지급결제제도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당초 대형 상업은행이었으나 사회적 신용을 바탕으로 독점적 발권력을 획득한 이후 최종대부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대적 의미의 중앙은행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영란은행은 각종 전쟁으로 재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다. 영란은행은 그 대가로 당시의 은행권 발행규모에 비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타 상업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정부와 상인은 물론 상업은행들까지 영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하여 상호 거래를 결제하게 되었으며 영란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상업은행들이 타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대금의 추심을 위해 각기 모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특정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상호 어음을 교환함으로써 런던어음교환소가 생성되었다.

이후 영란은행은 금융위기 발생시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는 등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적 중앙은행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4) 최종대부자 기능이란 예금인출사태,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금융시장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은행이 이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을 포함한 금융중개기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3-2〉

미국 연준의 지급결제제도 참여 배경

미 연준(Federal Reserve)이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미국의 금융위기는 지급결제제도의 붕괴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1907년에는 은행 및 수표청산소가 일부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의 결제를 거부한 것이 금융공황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국가통화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는 1907년 금융공황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2가지를 지적하였다.

- i) 비상시 동일지역내 금융기관의 현금지급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과 수표청산소 관할지역 밖에 있는 은행들간의 협조수단 미비
- ii) 지역간 수표교환을 실시하거나 금융공황시 수표교환시스템의 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의 부재

미 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13년 연준을 설립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통화관리법(Monetary Control Act)¹⁾을 제정하여 연준과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부문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어 1987년에는 자금결제촉진법(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²⁾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연준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주 : 1) 연준이 제공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모든 예금취급기관에 지급준비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연준의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2) 연준이 처리하지 않는 수표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연준에 규제권한을 부여하고, 고객계좌에 입금된 수표에 대해 예금취급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였다.

2. 지급결제제도와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대출, 국공채 매매 등 통화신용정책의 효과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및 증권 결제시스템 등에서의 자금이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파급되므로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 및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채권·채무관계의 종결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당좌예금(지급준비금)을 이전하는 시스템으로 유동성 공급 등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일차적으로 전달되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시

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둘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을 촉진하여 시장을 통한 은행간 지준 수급이 원활히 조절될 수 있게 하는 등 간접조절방식의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예컨대 RP거래를 통한 단기 유동성 조절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전체 금융시장으로 신속히 확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은행간 지준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은행간 지준수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거액결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은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소액·증권·외환 결제시스템도 원활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은 통화정책의 1차적 전달경로인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이 불안해지게되고 그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될 경우에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한편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효율성도 통화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경제주체들의 지급수단 이용관행이 달라지면서 지급수단 간의 대체관계, 통화수요 및 통화정책 파급경로 등의 변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장,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상거래 또는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무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져 금융불안을 예방하거나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무난히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하거나 참가기관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므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참가기관의 안정도 중요하다.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 기능과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을 통해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유동성 부족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결제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견실한 설계 및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

한 개선을 유도하는 감시업무를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금융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급결제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 등에 따른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 증대로 특정 금융시장 또는 지역에서 발생한 금융불안 등이 전체 금융시장 또는 다른 국가로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 3-3〉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

금융시장의 발달 및 세계화,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이 증가하고 있다. 상호연계성의 증가는 결제불이행에 따른 부정적 여파가 여타 결제시스템과 시장으로 신속하게 전이되는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의존성 증가로 인해 시스템구조가 복잡해져 리스크 분석 및 관리가 어려워지는 동시에 부(負)의 외부효과도 심화되는 문제도 발생하므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감시기관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요구된다.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먼저 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연계성을 들 수 있다. 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연계성이란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거액결제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시스템으로 쉽게 파급되는 관계를 말한다. 둘째로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의한 상호연계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등의 금융기관이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해당기관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셋째로 국내 및 국외 지급결제시스템간 연계에 의한 상호연계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간 경제통합, 금융 및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간의 높아진 상호연계 관계를 말한다.

4. 지급결제제도와 경제활동

시장경제에서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모든 경제 및 금융활동은 지급수단이나 청산·결제과정을 통한 자금이전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급결제제도와 경제성장이나 금융제도의 발전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교역규모가 늘어날수록 지급결제제도가 발전하고 지급결제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수록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투자 및 경제활동이 촉진된다. 예컨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간 지급거래의 청산·결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교역이 증대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는 단기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반면 지급결제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지연되거나 금융제도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수단 또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거래비용이 높은 현금 이용이 증가하거나 물물교환이 늘어나게 되면 결제자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결제제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은 중앙은행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주요 관심사가 된다.

제2절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

최근의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에 따른 최종대부자 기능과 함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operator or provider), 지급결제제도 감시자(overseer) 및 발전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중앙은행은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자산인 중앙은행 당좌예금과 현금을 제공하며, 당좌예금계좌간 자금이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참가기관의 자금결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적시에 일중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들어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결제규모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결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방식은 주로 영업종료시점에 일괄하여 한꺼번에 결제가 실행되는 이연차액결제(DNS; Deferred Net Settlement)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연차액결제의 경우 영업종료시점에 모든 참가기관이 결제를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참가기관간 신용리스크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거액의 자금이체를 건별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RTGS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²⁵⁾ RTGS 방식은 건별 자금이체 지시에 대한 결제를 영업시간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개별 자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결제완결성을 부여하여 일단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소액 또는 증권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의 중앙은행은 금융공동망 성격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청산 및 결제기관의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미국, 벨기에, 일본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국채 등의 계좌간 대

25) 2010년말 기준으로 116개 국가에서 RTGS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이 중 112개 국가는 중앙은행이 동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체를 위한 증권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표 3-1〉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운영현황

국 가	거액결제시스템 ¹⁾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미국	Fedwire	FedACH	Fedwire Securities
스위스	SIC	-	-
독일	EIL-ZV	RPS	-
한국	BOK-Wire	-	-
홍콩	CHATS	-	-
영국	CHAPS	-	-
벨기에	ELLIPS	CEC	NBB SSS
프랑스	TBF	-	-
이탈리아	BIREL	BI-COMP	-
네덜란드	TOP	-	-
싱가포르	MEPS	-	-
호주	RITS	-	-
EU	TARGET	-	TARGET2-Securities ²⁾
일본	BOJ-Net	-	BOJ-NET JGB services

주 : 1) 거액결제시스템 도입 당시의 명칭

2) Eurosystem은 각국 중앙에탁기관을 연계하여 단일한 플랫폼에서 증권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다.

2. 지급결제제도 감시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및 정기·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말한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 등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중앙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중추를 이루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이와 연계된 소액·증권·외환결제시스템의 결제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분석하면서 감시에 필요한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위기징후(결제지연 또는 결제

불이행 등)를 어느 기관보다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

셋째,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이 된다. 즉 통화정책의 효과는 시장에서의 금융거래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결제기능을 통해 경제 전체에 파급된다.

넷째, 중앙은행은 화폐의 독점적 발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기초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대해 소요자금을 적기에 제공하여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한다.

3. 지급결제제도 발전촉진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연구·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또한 중앙은행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지급결제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해 왔다.

중앙은행의 발전촉진자로서의 역할은 각국의 전자금융 환경, 개별 중앙은행의 법적·제도적 권한, 유관기관과의 업무 관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액결제 분야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 형태는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한 조직 운영형태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은행 내부에 법적·제도적 기반과 인적·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중앙은행이 발전촉진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중앙은행과 분리된 별도로 설립된 기구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며, 세 번째 유형은 별도로 설립된 기구에 대해 중앙은행이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표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이다. 네 번째 유형은 중앙은행이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으로서 지급결제 감시 업무와 연계하여 개선권고 등을 통해 발전촉진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표 3-2〉

중앙은행의 발전촉진자 역할 유형

유 형		내 용
I	자체 내부조직 활용	중앙은행 자체 조직으로 근거법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및 지급수단 개발을 주도하거나 관련 인프라를 직접 운영
II	별도 기구의 주도적 운영	중앙은행과 분리된 별도의 기구를 주도적으로 운영
III	별도 기구에 대한 지원 및 참여	중앙은행과 분리된 별도의 기구에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대표자를 파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
IV	지급결제 감시 업무와 연계	지급결제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촉진에 간접적으로 관여

제4장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제1절 감시의 의의 51

제2절 중앙은행 감시책무의 법제화 현황 54

제1절 감시의 의의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²⁶⁾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일련의 감시활동 과정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먼저 모니터링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서비스 및 하부구조의 작동 방식과 여타 금융시스템과의 연관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니터링 활동으로 획득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파악하여 감시정책을 수립하거나 감시대상 시스템을 결정하는 활동, 그리고 감시정책 및 감시기준과의 부합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평가 결과 특정 시스템이 감시정책이나 감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앙은행은 동 시스템의 운영 및 설계 부분 등에서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이 밖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중앙은행은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결제처리절차 및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과 같은 결제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증권 및 외환의 이동은 대부분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지급결제는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지급결제시스템은 민간부문에 의해 구축·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장실패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26)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s a central bank function whereby the objectives of safety and efficiency are promoted by monitoring existing and planned systems, assessing them against these objectives and, where necessary, inducing change. (BIS CPML, Central Bank Oversight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2005.5)

〈참고 4-1〉

지급결제시스템의 시장실패

지급결제시스템은 초기 구축비용이 크지만 처리건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규모의 경제) 독과점 형태의 시장집중구조가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시장집중으로 인해 소수의 시스템 운영기관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면서 지급결제서비스의 질 저하, 시스템 참가비용 상승 등의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다른 지급결제시스템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유형은 외부효과이다.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일부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함으로써 여타 참가기관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차액결제시 순채무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결제를 불이행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은 기 처리된 수많은 개별 거래들을 재교환(rewind)하거나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네트워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이 새로 가입하면 기존 참가기관들은 보다 많은 금융기관들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이 경우 신규가입으로 인한 추가이익이 신규 참가기관 차원보다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더 커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외부효과' 라고 한다. 그러나 신규 참가기관은 자신의 사적 비용·편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 및 기존 참가기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이익이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개별 참가기관간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정책목표로 하는 금융기관 감독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금융기관 감독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상태이나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목표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다. 둘째, 금융기관 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도산 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치중하지만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개별 기관의 도산 등이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파급되어 시스템적리스크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셋째, 금융감독기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 경영상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등 감독과정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지급결제제도 감시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개선권고 등 도덕적 권유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중앙은행의 감시권한을 법제화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감시와 감독은 정책목표에서부터 대상, 제재권한 등에 이르기까지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과의 차이점

	지급결제제도 감시	금융기관 감독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통한 신용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
감시·감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결제시스템과 그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등 전 금융기관
감시·감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 지급결제통계 수집 및 분석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와 필요시 시스템 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감독 및 검사 지급수단의 취급조건, 수수료 등 규제 금융사고 방지 및 제재 소비자 보호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가제한, 개선권고, 부정적 의견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 영업제한 및 관련 임직원 문책요구 금융기관 인·허가 취소 등
근거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국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CPMI-IOSCO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BS의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
업무수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결제제도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기관과의 협의, 도의적 권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규정 제정, 검사, 제재 등

제2절 중앙은행 감시책무의 법제화 현황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활동은 대체로 1990년대부터 법제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명확한 법률적 기반 없이 관행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중앙은행의 감시활동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⁷⁾ 법제화 과정은 주로 기존의 중앙은행법 개정이나 지급결제제도 감시 관련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감시책무를 부여하거나 중앙은행법과 특별법 모두에서 동 책무를 중앙은행에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4-2〉 중앙은행 감시책무의 법제화 현황

		중앙은행법	중앙은행법 및 특별법	특별법
은행 감독 권	보 유	이탈리아(1993) 프랑스(1993) 네덜란드(1998) 스페인(1998) 독일(2002)	남아공(1997,1998) 말레이시아(2003) 싱가포르(2007,2006) 러시아(2002,2011)	홍콩(2004) 미국(2010)
	미 유	스웨덴(1988) 일본(1998) 핀란드(1998) 한국(2003)	노르웨이(1985,1999) 멕시코(1993,2002)	캐나다(1996) 호주(1998) 영국(2009)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안정을 위한 지급결제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 「은행법」(Banking Act) 개정 이후 2013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Bank Reform) Act) 제정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기능 외에 종전에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 Authority)이 감독하던 중앙거래당사자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권한을 영란은행에 이관하였다. 미국도 2010년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을 제정하여 연준을 포함한 금융감독기관의 지급결제제도 감시·감독기능을 크게 강화하였다.

27) 국가별 금융구조 및 여건 등에 따라 주체가 다양한 금융감독과는 달리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는 모든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WFP/11/250, 2011.11월)

〈참고 4-2〉

영국 및 미국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개편 내용

영국과 미국은 각각 2009년, 2010년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개편하여 감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2007년 9월의 노던록은행(Nothern Rock Bank)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도 함께 개편(「은행법」 2009.2.21 발효)하였다. 동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란은행법(1998), 영란은행·재무부·FSA 간 MOU(1997)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지급결제제도 감시 관련 근거 등을 은행법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중요지급시스템 지정을 재무부로 이관하되, 영란은행과 협의를 의무화(영란은행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정 불가)하였다. 이외에도 자료 요구, 현장 조사, 운영기준 제정 및 승인, 제재 등 감시 수단을 법제화하였고, 재무부·영란은행·FSA 간 상호협약의 의무도 법에 명시하였다.

미국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 제정(2010년 7월)을 통하여 지급결제제도 감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즉, 연방준비제도법(1913), 통화관리법(1980), 자금결제촉진법(1987), 전자자금이체법(1987)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감시·감독기관의 감시 근거, 범위, 수단 등이 동 법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중요시스템을 재무부, 연준, 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시협의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가 각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하였으며, 감시관련 각종 수단을 법에 명시하였다.


주 : 1)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Dodd-Frank Act) Title VIII : Supervision of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ivities

한편 중앙은행의 감시기능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자국내 이행을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자국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시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정책선언문(policy statement)을 채택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2012년 12월 중앙거래당사자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으로서 「Financial Stability Standards」를 제정하여 감시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에서도 2013년 3월 각각 중요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감시지침을 공표하였다. 이밖에 미 연준에서는 2014년 10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FMU(Financial Market Utility)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명시한 Regulation HH²⁸⁾를 공표하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28) PFMI의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당사자, 중앙예탁기관 및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리스크관리 기준(risk management standards)을 제시하고 있다.

통한 감시를 명확히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개선권고에 따라 2003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에 관한 내용(동법 제81조)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11년 개정된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안정 기능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책무로 부여되었는데 이를 통해 금융안정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지급결제 분야의 감시업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부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제5장 한국은행의 역할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61

제2절 지급결제제도 감시 63

제3절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75

제1절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한국은행은 현금 지급수단인 법화의 발행,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 결제서비스 제공, 거액 결제시스템 운영 및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1.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현금 즉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²⁹⁾ 아울러 새로운 화폐의 공급, 손상된 화폐의 회수, 훼손된 화폐의 교환 및 폐기 등 발권 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매년 화폐 종류별로 화폐수요, 화폐폐기액, 적정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화폐제조액을 결정하고 이를 한국조폐공사에 발주하여 조달한 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다.

2. 최종 결제서비스의 제공

한국은행은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는 지급수단인 화폐의 발행과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및 정부 당좌예금 등의 입·출금을 통해 최종적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등³⁰⁾을 통한 자금결제에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 또는 한국은행과 행한 거래의 자금결제, 소액결제시스템에 의해 수취·지급된 자금에 대한 차액결제 및 정부당좌예금을 통한 국고금의 결제 등이 있다.

한국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및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29) 「한국은행법」은 제47조(화폐의 발행)에서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고 명시하고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2009.4월 도입된 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방식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지시를 서로 동시처리하는 등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 적용됨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당좌예금계좌 외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추가하여 혼합형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3.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와 결제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어음교환 위주의 차액결제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경제 환경에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1994년 12월 실시간총액결제(RTGS)방식의 한국은행금융결제망(약칭 한은금융망)을 구축·가동하였다.

한은금융망은 가동 이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및 외환매매대금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일중결제유동성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09년 4월 금융기관들의 결제유동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한은금융망(BOK-Wire)의 실시간총액결제방식에 혼합형결제방식(hybrid settlement)을 추가한 새로운 한은금융망(BOK-Wire+)을 구축·가동하였다.

4. 최종대부자로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여타 참가기관의 연쇄적 결제불이행 사태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의 최종대부자로서 긴급 결제유동성 제공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은 중앙은행으로서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공급의 주체로서 위기상황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결제원활화를 위해 참가기관에게 일종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는 당일 상황을 조건으로 담보부 일중당좌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2월부터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방식을 이용하여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해주는 일중RP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절 지급결제제도 감시

1. 감시의 법적근거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는 「한국은행법」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과거 법적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3년 9월 3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개정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어 2004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형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공적 규제 내용을 규정 한 유일한 법률로서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의결)와 제81조³¹⁾(지급결제업무)에 명시하여,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개선권고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은행법」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를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설정하였다. 감시대상의 포괄범위는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규정하고 각 시스템별 결제규모, 결제성격 등에 따라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절차,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및 통계작성 등을 위한 자료, 기타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급결제 관련자료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밖에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시 적용할 평가기준, 평가시기, 개선요청,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을 명시하였고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이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31) 제81조(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³²⁾ 및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³³⁾에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권한을 명시해 보다 포괄적인 감시가 가능해졌다.

2. 감시대상

한국은행의 감시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한국은행법」 제81조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국내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들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결제규모, 결제자금의 특성,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을 분류하여 감시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즉 결제규모가 크고 시스템적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방법을 적용하고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감시방법을 완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행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이분화하였다. 동 구분에 의하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거나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정의된다. 한국은행은 현재 9개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³⁴⁾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18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주요 감시대상 기타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32)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33)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①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부기관,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인과 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34) CLS시스템은 중앙은행간 협조감시대상으로서 미 연준을 주 감시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 참여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들과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1〉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

구 분		운영기관	
중요 지급결제시스템 (9개)	한은금융망	한국은행	
	어음교환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 공동망		타행환
			전자금융
	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CLS시스템	CLS은행		
기타 지급결제시스템 (18개)	지로시스템	금융결제원	
	금융 공동망		CD
			자금관리서비스
			B2C
			B2B
			전자화폐
			직불카드
	지방은행		
	BC카드결제시스템	BC카드사	
	외화자금이체시스템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탁중앙회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기관간Repo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의 구체적인 대상에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기관뿐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참가기관,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지급수단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운영기관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처리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의 적정성까지 점검하게 된다. 참가기관의 경우 금융시장내 상호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 또는 여타 지급결제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시스템적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기관의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요구된다.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불법

복제, 보안 등 지급수단 자체의 안전성 관련 감시가 필요하다.

3. 감시업무

가.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시하며 그 주기에 따라 실시간, 정기,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이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한국은행에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일이다. 정기 모니터링은 각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운영현황,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및 개별 참가기관의 세부 결제현황을 관찰하고 시스템 및 참가기관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수시 모니터링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결제지연, 참가기관의 파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조기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며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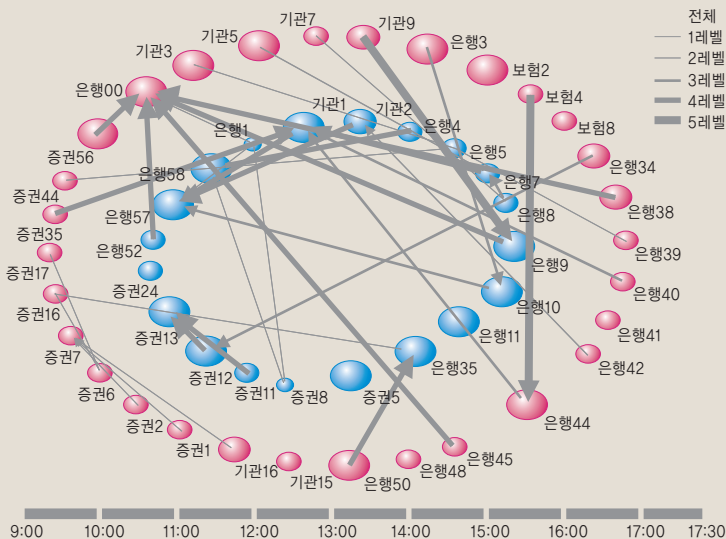
모니터링 업무를 주기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의 경우 시간대별 자금결제내역, 대기발생현황, 일중당좌대출발생현황, 마감지연현황 등의 결제정보를 시스템 전체 및 개별 참가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을 통해 차액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도 개별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소진현황, 차액결제지연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결제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2014년부터 본격 활용하고 있다.

〈참고 5-1〉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가기관의 보유유동성 대비 지급예정금액을 나타내는 지급결제유동성지수¹⁾(PS-LI; Payment System Liquidity Index) 지표를 도입하여 참가기관의 결제여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결제현황 네트워크도를 통해 지급·수취 금액에 따라 노드(node) 크기를 달리하고 지급규모에 따라 화살표 굵기를 차별화하여 중요 참가기관(corebank)의 결제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결제현황 네트워크도



주 : 1) PS-LI는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예정금액을 예금잔액, 일중당좌대출 이용가능금액, 수취예정금액 등 보유유동성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정기 모니터링은 일, 월, 분기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일일 모니터링의 경우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일일결제정보뿐만 아니라 한은금융망내 대기발생금액, 일중당좌대출발생금액,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 순채무한도소진율 등 결제리스크 현황정보를 포괄하여 점검하고 있다. 월별 모니터링의 경우 한은금융망, 소액결제시

시스템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과 신용카드시스템 등 기타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지급결제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월별 지급결제 뉴스레터 발간업무를 통해 지급결제관련 최신 뉴스를 수집하고 관련기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분기 모니터링의 경우 중앙은행간 협조감시체제에 의한 감시로 대체하는 CLS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중요·기타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신용, 유동성, 법률, 운영리스크 측면에서 분기중 발생한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을 파악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로는 결제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0조(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사항)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그 즉시 수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하게 된다.

〈참고 5-2〉

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 (예시)

(긴급상황 발생요인)

- 시스템 작동 오류 또는 장애
- 통신회선 장애 또는 전력공급 중단
-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및 기타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참가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 등
- DDos 등 해킹으로 인한 장애

(긴급상황 발생내용)

- 참가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또는 처리지연, 차액정산절차 수행불능 또는 지연, 결제자금 입금 불능 또는 지연 등
- 운영기관의 시스템 가동 중단 및 처리지연, 차액정산 처리 불능 및 지연 등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은행의 직접조치 또는 현장방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순채무한도의 과다소진, 차액결제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중당좌대출을 지원하거나 부족자금의 조기 확보 지도, 마감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지급결제 통계자료로 이용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지급결제통계 편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 등을 통해 공표되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동향 파악 및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셋째,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모니터링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포착 될 경우에는 시스템을 긴급 점검하는 수시평가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넷째,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정의 지급결제시스템에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운영시간 및 절차의 변경이나 참가기관에 대한 일시적 참가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때 모니터링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나. 통계작성 및 분석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사, 전자화폐 발행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지급결제통계를 편제하고 있다. 지급결제통계를 작성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 단위로 한은금융망 이용현황자료를 익일 공표한다. 월 단위로 BIS기준통계, 한은금융망, 금융공동망, 지로시스템, 신용카드 통계를 공표하며 분기별로는 전자금융통계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과 금융산업 종사자들이 금융정보화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매년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통계를 여타 주요국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결제통계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한은법 개정 이후 통계편제 범위를 당초 은행계 신용카드에서 전업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에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역별·소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신용과 직불기능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카드, 직불결제가 가능한 현금IC카드,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바일카드 통계도 신규로 편제하기 시작하였다.

지급결제통계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으며 보도자료,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등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표 5-2〉 지급결제통계 현황

작성 주기	통계명/발간물	세 부 항 목
일	회계시스템통계	한은금융망결제통계표, 차액결제표, 일일지급결제동향
월	BIS기준통계	결제시스템별통계, 지급수단별통계
	한은금융망	원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
	금융공동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지로시스템	장표지로, 자동이체, 대량지급
	신용카드	개인/법인 및 일반/할부/현금서비스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발급장수, 가맹접수
분기	전자금융통계	인터넷뱅킹, 전자어음, 전자화폐
연	금융정보화 추진현황	금융기관 IT 운영 현황, 금융정보망 운영 현황, 금융정보화 주요 통계
비정기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통계

다. 평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시스템 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이나 지급결제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 지급결제동향 파악 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리스크 관리 방법,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지배구조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기술적 측면의 감시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였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보다 넓은 의미로는 금융위기 등에 따른 특정 거래 또는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효율성 평가는 지급결제와 관련한 각종 비용을 최소화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지급결제 관련 지배구조, 시장구조, 리스크 관리제도 등이 적

절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관한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운영기관의 자체평가, 관계자 면담, 지급결제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한 정보 등 광범위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운영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을 적용하여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러한 국제기준을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기준으로 채택한 것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국내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시기를 달리 운용하고 있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별로 평가시기를 차등화하는 목적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급결제시스템에 평가역량을 집중하여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표 5-3〉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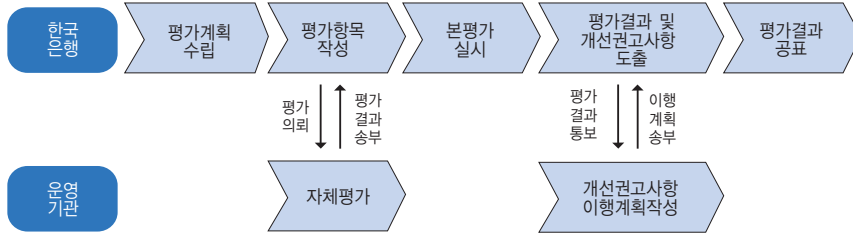
구 분	정기평가	수시평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2년	- 안전성 및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¹⁾
기타지급결제시스템	—	(상 등)

주 : 1) 정기평가시기를 전후로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로 정기평가를 갈음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평가계획 수립과 함께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고 동 평가항목 등을 평가대상시스템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다음으로 운영기관은 자체적으로 관련 항목을 점검한 결과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토대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직·간접 정보사항, 운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평가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동 평가결과를 해당 운영기관 및 관련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매년 「지급결제보고서」에 전년도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결과를 수록하여 대외 공표함으로써 평가업무의 투명성 및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5-1〉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업무흐름도



평가등급 산정 기준을 살펴 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가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공동으로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평가방법 및 공개지침 (PFMIs Disclosur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y)」(2012.12월)에 따라 각 원칙의 핵심 고려사항(Key Consideration)별로 충족여부를 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해당 원칙의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평가등급을 5단계로 부여하고 있다. 이 때 평가결과 충족으로 평가되지 못하여 다음 평가시까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개선권고”로, 충족으로 평가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참고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5-4〉 PFMIs 평가등급의 구분

평가 등급	내 용
충족 (Observed)	PFMIs를 충족, 일부 원칙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하고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대체로 충족 (Broadly observed)	PFMIs를 대체로 충족, 실행 계획을 세워 개선되어야 하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일부 충족 (Partly observed)	PFMIs를 일부만 충족,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미충족 (Not observed)	PFMIs를 충족하지 못함,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적용불가 (Not applicable)	법·제도·구조적 여건 등으로 PFMIs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료 : CPMI-IOSCO, PFMIs Disclosur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y, 2012.12월

라. 개선권고

지급결제시스템 평가결과가 일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은행은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4년부터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동 시스템 운영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³⁵⁾ 개선을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사안의 중요도(시급성) 및 이행 난이도에 따라 분류되며, 이를 감안한 이행시기를 구체화하여 이행도 및 이행 시기의 확실성을 제고하고 있다. 현재 정기평가의 경우 개선 필요사항은 시급성 및 난이도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단기(1년 이내), 중기(2년 이내), 장기(2년 초과)가 요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 현장확인 등 긴급상황시의 조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련 규정, 업무처리절차, 참가기관, 전산시스템 등의 변경이 해당 시스템의 안전성 또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재해, 파업, 테러, 영업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경우 이를 한국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통보를 받았거나 자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절차 또는 운영시간의 일시적 변경, 관련 참가기관의 일시적 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운영절차 등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소속직원을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파견하여 현장 확인, 관계자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와 관련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제한, 중지 또는 약정

35) 한국은행은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해 24차례 평가를 실시하여 총 121건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³⁶⁾,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³⁷⁾ 및 「전자금융거래법」³⁸⁾에 의거 지급결제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개별 참가기관의 지급결제업무실태 파악, 기타 현안사항 조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해 공동검사에 참여³⁹⁾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 이전까지는 은행만을 대상으로 공동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는 기본적으로 자금이체관행 및 결제유동성 관리상황과 전산시스템 장애시 대응방안 등 자금이체서비스의 안정적 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8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안정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거래기법 등 시스템적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 앞으로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은 1달 이내에 공동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착수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이전에 공동검사 착수일자를 통보한다. 공동검사 실시 후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검사결과를 보고하고, 금융감독원 앞으로 동 검사결과 보고서를 송부한다. 이 때 한국은행은 검사결과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앞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6) 「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8)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9) 한국은행은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은행 43회, 금융투자회사 15회 등 총 58회에 걸쳐 지급결제부문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제3절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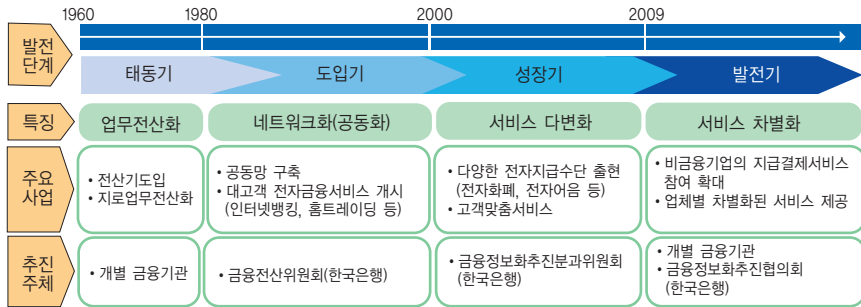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개선과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기구로서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1.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한국은행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가기간 전산망 가운데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금융전산위원회」(1984년)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1996년)를 거쳐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2009년)로 개편되어 왔는데, 그동안 금융정보화 공동사업, 금융정보화 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안전대책 등 범 금융권 정보화사업을 주도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개선 노력은 지급결제 전산화 진행 단계에 따라 변화를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전산화는 1970년대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기기 도입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계획에 따라 지급결제환경의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성기구가 구성되고 한국은행은 동 기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자지급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중앙 집중적 조성기구의 역할이 줄어들고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차별화해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발전촉진자 역할 유형은 별도의 기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에서 동 기구에 대한 지원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그림 5-2〉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 과정



가. 전자금융 도입기(1980년대~2000년)

한국은행은 전자금융 도입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공동망 구축사업을 주도하였다. 정부는 국가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라 1984년 금융전산위원회(의장: 한국은행 총재)를 발족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전자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에 필요한 공동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동 위원회의 주도로 CD공동망(1988년), ARS공동망(1988년), 타행환공동망(1989년), 한은금융망(1994년), CMS공동망(1996년)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전자지급결제 처리를 위한 다양한 공동망들이 구축되었다.

대규모의 공동망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산업 특성에 맞춘 금융정보화 추진을 위해 금융전산위원회가 1996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장: 한국은행 부총재)로 개편되었다. 또한 기 구축된 공동망을 기반으로 인터넷뱅킹(1999년), 증권거래(홈트레이딩, 1997년) 서비스 등이 개시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공동망 운영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망 안전대책 기준」(1997년)을 수립하여 공동망과 이에 접속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 도입 및 전산망 연계와 관련된 평가·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전자금융 성장기(2001년~2009년)

전자금융의 성장기에는 기 구축된 공동망을 활용하는 다양한 연계 시스템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주도로 금융공동망에 서민금융기관 전산망의 접속이 허용(2002년)되고, CLS공동망(2004년)이 구축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공동사업과 표

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표준화 사업을 통해 금융IC카드 표준,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표준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표준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 주도의 정보화사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법적기반을 가진 금융정보화추진본과 위원회는 2009년 자율적 민간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다. 전자금융 발전기(201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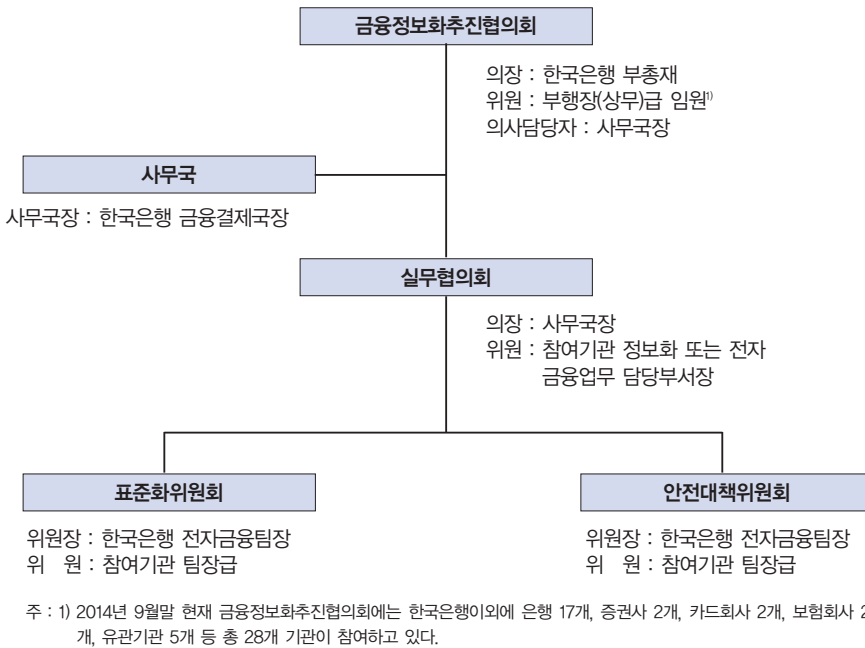
2010년 이후에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금융기관들은 공동사업보다는 자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모바일 통신망이 개방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모바일뱅킹, 전자지갑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 전자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표준개발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등 전자금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서비스의 국가간 연계에 대비한 국제표준 수용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기술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여 국제 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림 5-3〉

금융정보화 추진조직 체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참여기관

은 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농협, 수협, 기업, 산업, SC, 씨티,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증권사	삼성, 대우
카드회사	BC, 하나SK
보험회사	교보, LIG
유관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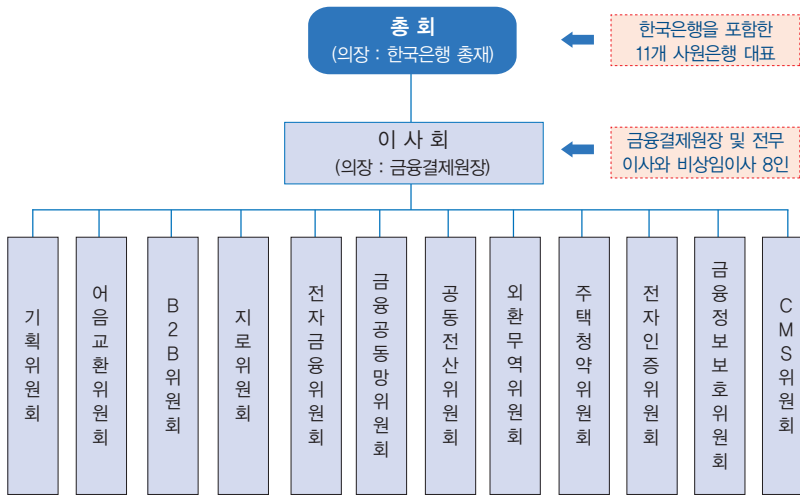
2. 소액결제시스템 운영의 의사결정과정 참여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⁴⁰⁾의 의장기관으로서 소액결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공동망 사업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원은행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액결제시스템의 바람

40) 금융결제원 사원총회는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11개 사원은행으로 구성된다.

직한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4〉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기구 체계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금융결제원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업무규정의 제·개정을 의결하고 있다.

3.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활동

가. 조사연구

한국은행은 지급결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조사자료」 발간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 동향,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논의내용 및 국내 지급결제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실시해 왔다. 최근에는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비트코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등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동향과 개인정보유출 등 전자금융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과제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 및 정책에 대

한 전문적인 연구분석 능력과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각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표 5-5〉 한국은행 지급결제조사자료 발간 목록(2010년 이후, 최근 자료순)

연도	목록
2014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최근의 지급카드 이용현황 및 주요 과제
	고객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처리시 결제패턴 변화 분석
	주요국 거액결제시스템 운영현황 및 개편동향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현황과 향후 과제
	CMS 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TR 국제논의 동향 및 과제
2013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국내 RP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모바일 지급결제 발전 현황 및 주요 이슈
	RP시장 결제리스크와 CCP 청산효과 분석
2012	Cashless society 진전 현황 및 정책과제
	증권사의 퇴직연금 취급에 따른 잠재리스크 분석
	전자금융 조성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 사례 및 시사점
	유동성 공급충격이 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주요국 RP시장 결제시스템 개선의 주요 내용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2011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 추정사례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업무 해설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인프라 구축 동향과 시사점
	유엔국제전자계약협약(UN CUECIC) 수용을 위한 국내외 입법동향 및 시사점
	국가간 개인송금서비스의 현황 및 개선과제
	영국·캐나다·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발전전략 및 시사점
2010	금융권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 현황 및 제도적 문제점
	미국 카드시장 규제에 주요 내용과 카드산업의 대응 현황
	Repo 청산결제제도의 강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정보저장소 관련 고려사항
	장외파생상품 CCP에 대한 「CCP 권고안」 적용 지침
	호주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동향

나.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이해당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상황에 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발간하여 왔으나, 2011년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책무 부여를 계기로 보고서의 내용을 확충하고 명칭을 지급결제보고서로 변경하였다. 지급결제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한은금융망 이용현황 등 지급결제 주요 동향,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내용, 지급결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 및 이에 대한 향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방향 등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매월 발간하는 「지급결제 뉴스레터」를 통해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기관의 조사연구자료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지급결제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는 「BOK 이슈노트」 발간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에 관한 학술지식을 교환하고 지급결제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매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표 5-6〉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개최 현황(2010년 이후, 최근 개최순)

연도	주 제
2014	소액결제 혁신과 지급결제의 미래
2013	금융시장인프라 개혁과제
2012	Systemic Risk와 지급결제
2011	금융시장인프라(FMI): 글로벌 환경변화와 우리의 과제
2010	지급결제제도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다. 국제협력 활동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회원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급결제 분야 핵심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지급결제정책 수립에 관련 논의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CPMI)의 회원⁴¹⁾으로서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25개 회원국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committee)를 중심으로 지급·청산·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급결제제도 동향 점검·분석 및 지급결제분야 국제기준 제정⁴²⁾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왔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제정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핵심과제가 진전됨에 따라 지급결제 고유의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CLS oversight committee)와 SWIFT 감시포럼(SWIFT oversight forum)에 참여하여 외환결제에 관한 협조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CLS시스템⁴³⁾에 대한 감시업무는 주 감시기관인 미 연준을 비롯한 총 22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외환동시결제 확대를 위한 결제통화 추가 등 외환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WIFT⁴⁴⁾에 대한 감시업무는 벨기에 중앙은행을 주 감시기관으로 한 SWIFT 감시포럼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행도 SWIFT에 대한 감시정책을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중앙은행협력체(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⁴⁵⁾의 지급결제 워킹그룹 및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South-East Asian Central Banks)⁴⁶⁾의 회원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지급결제제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외국중앙은행 및 CPMI, EMEAP 등 중앙은행 협력기구와의 공조 체계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주요 지급결제 이슈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진 중앙은행과의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1) 한국은행은 2009년부터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42) CPMI는 금융위기 이후 지급결제 여건변화, 국제기준 재정기구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2014년 동 위원회의 책무(mandate)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배구조, 업무절차 등을 포함한 헌장(charter)을 제정하였다.

43)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CLS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44)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은행간 자금결제, 증권결제 및 CLS 외환동시결제 등을 위한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 제공하는 중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11-1>에 기술되어 있다.

45)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간 협의체로서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현재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다.

46) 동남아시아 지역 중앙은행간 공동관심사에 대한 조사연구 및 연수 등을 위해 1966년 설립되었으며 한국은행은 1990년에 가입하였다.

〈표 5-7〉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관련 국제협력활동 현황

국제기구	활동분야
CPMI	Main Committee
	↳Steering Group (IOSCO 공동)
	↳Implementation Monitoring Standing Group
	↳Working Group for harmonisation of key OTC derivatives data elements
	↳Task Force on Payment Aspects of Financial Inclusion (WB 공동)
CLS, SWIFT	CLS Oversight Committee
	CLS RTGS operators group
	SWIFT Oversight Forum
EMEAP, SEACEN	EMEAP 지급결제 Working Group
	↳Oversight Subgroup
	↳Risk Management Subgroup
	↳Standards Subgroup
	SEACEN Directors' meeting
	↳Training Course (강사)
기 타	OTC Derivatives Regulators Forum
	ASEAN+3 CSI Forum
	ISO TC68

주: 2014년 9월말 기준

제6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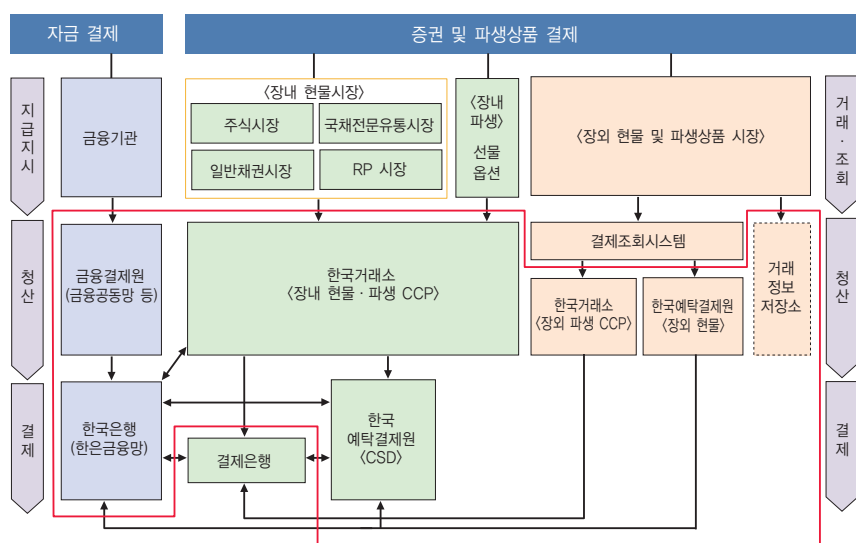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87

제2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93

제1절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은행 외에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 중앙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중앙거래당사자인 한국거래소 등이 있다.

〈그림 6-1〉 우리나라 금융시장인프라의 구조¹⁾²⁾



주 : 1) 적색선내가 금융시장인프라(FMI)에 해당 (단, 점선내 기관은 설립 추진중)
2) 화살표는 자금, 증권결제 및 지급지시 흐름

1.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서 명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이 정하는 경영건전성, 이용횟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은 가입신청서와 약정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년 9월말 현재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은행 56개, 금융투

자회사 51개, 보험사 11개, 종합금융회사 1개 등 총 133개이다.

2.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액결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1980년대 중반 5대 국가기간 전산망의 하나로써 개별은행들의 전산망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금융전산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구축·운영할 기관으로서 기존의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은행지로관리소를 통합하여 1986년 6월 금융결제원이 설립되었다. 금융결제원은 설립이후 기존의 어음교환 및 지로업무 외에 CD공동망(1988년), 타행환공동망(1989년), 전자금융공동망(2001년) 등 금융공동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금융결제원의 사원 또는 준사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시스템별로 특별참가기관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사원, 준사원 또는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으며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여타 기관은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참가기관이 될 수 있다. 사원 및 준사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 사원은 한국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 준사원은 10개 은행이며, 특별참가기관은 외은지점 및 금융투자회사 등 총 39개이다.

3.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⁴⁷⁾,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로서 각 시장의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회원사간 수수할 증권과 대금의 차감(netting) 및 결제지시 등 장내 회원사간 매매체결 및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1956년 2월 증권단, 금융단, 보험단 등의 공동출자에 의해 대한증권거래소로 설립된 후 1964년 4월 한국증권거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2005년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으로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되면서 한국

47)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시장(코스피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분류되며 채권시장은 일반채권시장과 국제전문유통시장으로 나뉜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되었다가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금의 한국거래소가 되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증권사 30개사, 선물회사 6개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증권금융, 한국금융투자협회 등 총 39개 기관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만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가 가능하며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원은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되며 결제회원은 본인의 결제이행책임 하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가 모두 가능하나 매매전문회원은 자기매매만 가능하며 결제는 결제회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회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공동기금 적립, 거래 수수료 납부, 보증금 예탁, 재무상황 보고 등의 의무를 지닌다. 2014년 9월말 현재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94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4.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나라의 중앙예탁기관(CSD)으로서 유가증권의 집중예탁, 계좌대체 및 증권청산·결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197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전체적인 규모 확대와 거래량의 급증 추세를 보이자 이에 대한 매매거래 결제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예탁결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73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대체결제⁴⁸⁾ 업무의 영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증권거래소가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1974년 12월 한국증권대체결제과 설립되고 1975년 증권거래소로부터 대체결제 업무를 위임받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증권예탁결제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1994년 「증권거래법」⁴⁹⁾ 개정 에 따라 법률상 특수법인⁵⁰⁾으로 전환하여 증권시장에서 유일한 중앙예탁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증권관계기관, 외국예탁기관 등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법인 및 개인투자자는 금융투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탁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

48)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발생시 거래 당사자의 계좌간 대체재로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는 결제업무를 말한다.

49) 「증권거래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2.4일 시행)로 통합되었다.

50) 법률상으로는 특수법인이나 설립 형태는 「상법」을 준용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2013년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70%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이며 코스콤, 금융투자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나머지 30%를 소유하고 있다.

히 하기 위하여 예탁자의 명칭과 주소, 예탁받은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등을 기재한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하며 계좌대체 방식으로 해당 증권의 소유권을 실물이동 없이 이전시킨다.

증권의 매매가 발생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 및 매매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받아 매수자의 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결제와 동시에 증권의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결제를 실시한다.⁵¹⁾

5.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외환결제 관련 운영기관으로는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CLS은행과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⁵²⁾을 운영하는 일부 국내 은행 및 외은지점이 있다.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주요 국제상업은행들이 세계 외환거래의 동시결제를 구현할 목적으로 미국 뉴욕에 설립한 국제외환결제전문은행이다. 동 은행이 운영하는 CLS시스템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결제하면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 계좌를 통해 동시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으며 다자간상계에 따른 결제유동성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

CLS은행은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CLS그룹지주회사(CLS Group Holdings)의 자회사로서 1999년 11월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64개 결제회원은행(settlement member banks)과 약 11,550개의 제3자고객(third parties)을 대상으로 원화 등 총 17개 주요국 통화간 외환거래 등에 대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외환은행은 1967년 설립과 더불어 한국은행으로부터 국내은행간 외화자금 이체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각각 2001년 7월 및 2007년 11월부터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⁵³⁾ 동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결제은행에 통화별로 외화예치금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은행간 자금이체를 처리하게 된다. 2014년 9월말 현재 한국외환은행은 65개 국내 외국환은행과 122여개 역외은행을 대상으로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27개 통화에 대해 실시간 외화자

51) 대금지급을 수반하지 않은 증권의 인도(분리 결제)도 발생하나 대부분 DvP 방식을 통하여 증권결제가 이루어진다.

52)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달러화 등에 대한 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되어 2014년 10월부터 위안화에 대한 자금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53) 한국은행도 한은금융망을 통해 외화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상통화가 미달러화 및 엔화로 제한된 데다 예치잔액 범위내에서의 이체만 허용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금이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6. 기타 운영기관

이 외에 중앙조직 차원에서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협동조합중앙회와 카드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BC카드사 등의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들이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기관들은 각 중앙기관⁵⁴⁾을 중심으로 하나의 금융기관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를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연결하여 자금이체 등의 지급지시 정보를 교환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상호간의 거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결제대행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저축은행 계좌간 자금을 정산하여 처리하고, 저축은행과 은행간의 거래는 동 중앙회가 저축은행의 전체 은행에 대한 포지션을 산출한 후 금융결제원에 정보를 송수신하여 중앙회 계좌와 상대은행간 자금정산을 통해 처리한다.

BC카드사는 BC카드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국내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은행계 신용카드회사이다. 신용카드회원인 구매자가 상품·서비스를 신용으로 구매하면 카드발행 은행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후 구매자에게 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이 때 BC카드사는 회원은행간에 카드발급은행으로서의 지급금액과 가맹점 거래은행으로서의 수취금액을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정산한 후 받을 금액이 있는 은행에게 차액결제 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54)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신협협동조합법」 등 해당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회원기관간 이해 조정과 지원 등을 위해 회원기관들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자금 수납·운용, 회원기관간 지급결제, 회원기관에 대한 대출, 업무감독 등 회원기관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제2절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지급서비스(payment service)란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의 이전을 통해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지급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등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어음, 수표, 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지급수단의 발행과 통신, IT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도 포함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채권·채무를 종결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거나, 직접 참가가 어려울 경우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청산·결제업무의 대행을 의뢰한다.

한편, 그 동안 자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는 예금수취기관이 취급하는 요구불예금에 부가된 고유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카드, 전자화폐, 모바일뱅킹, 가상화폐 등 지급서비스 관련 신기술의 개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편의성 향상,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의 지급결제환경 변화로 비은행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도 은행과 제휴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지급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1. 은행

은행은 「은행법」상 환업무⁵⁵⁾가 고유업무⁵⁶⁾로 허용되어 있어 요구불예금을 근거로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국내은행은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은 물론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타행환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해 어음,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지로, 타행환, CD/ATM, 자금관리서비스(CMS),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이체 및 현금 출금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경우 외환결제시스템에 참가함으로써 이종통화간 매매 등에 따른 외화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은지점은 한은금융망에는 대부분 참가하고 있으나 소액결제시스템에는 일부 외은지점만이 타행환, 전자금융 등 필요한 업무에 참가하고 있다.⁵⁷⁾

55) 환업무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금거래 당사자간 현금을 직접 주고 받는 대신 은행 및 체신관서 등이 발행한 증서나 유·무선 전화, 인터넷 및 CD/ATM 등 금융전산망에 연결된 각종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이다.

56) 은행의 고유업무는 ①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수신과 차입), ②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어신), ③내·외국환(환) 업무이다.

57) 이는 외은지점의 국내 영업규모가 작음에도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시 참가분담금 납입 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은 해당 설치근거법에 따라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의 중앙조직 차원에서 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은행과 유사한 여수신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만 보다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조달 및 운용 등에서 은행과는 상이한 규제를 받으며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도 제한적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그리고 종합금융회사가 있다. 설립형태를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종합금융회사는 주식회사, 신용협동기구는 비영리 협동조합, 우체국예금⁵⁸⁾은 국영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기구는 해당 특별법에 따라 중앙회 및 연합회 등의 중앙조직차원에서 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서민금융기관은 2002년 2월 해당 중앙조직을 대표로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하여 지로, CD, 타행환, CMS, 전자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이 가능해지면서 어음교환시스템에도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는 중앙조직이 선정한 결제대행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체국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하여 어음·수표의 발행, 지로, CD, 타행환, CMS, 전자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체국은 우편환과 우편대체서비스를 제공한다.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의 이동에 의한 송금수단으로 금융기관의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송금을 위해 이용된다.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하여 자금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통하여 세금·공과금·할부금 등 수납, 각종 연금·급여 지급, 공과금 자동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3. 금융투자회사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

5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우체국예금이 국가가 경영하는 공적 금융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우체국예금(이자 포함)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회사⁵⁹⁾는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자금이체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하여 자금 입·출금, 계좌이체 등의 자금이체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금융투자회사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자금이체 업무는 직접 수행하되 차액결제리스크 방지를 위해 차액결제는 대행은행을 통해 처리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는 금융권간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을 제외한 개인고객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25개이다.

4. 신용카드회사

신용카드회사는 카드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한다. 신용카드업의 영위를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⁶⁰⁾를 받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통한 지급행위가 발생하면 신용카드회사는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여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신용을 공여하게 된다. 이 때 신용카드 발급은행 또는 카드발급기관의 거래은행과 판매점의 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거쳐 자금정산이 이루어지고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가 이루어지게 된다.⁶¹⁾

신용카드회사는 은행계와 비은행계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사, MasterCard사 등과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제공서비스는 일반구매,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구분되며 각 카드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회원별로 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회사는 부대업무로서 직불형 및 선불형 카드도 발행할 수 있다.

5.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의 전

59)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61개 증권회사에 대하여 2009년 2월 4일부터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인가하였다. 2009년 10월말 까지 25개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특별참가하였다.

60) 은행,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 등의 금융기관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

61) BC카드의 경우 BC카드사가 회원은행간의 결제금액을 정산하여 받을 금액이 있는 은행에게 차액결제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원은행은 동 영수증을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소에 회부하여 차액결제대금을 회수한다.

자금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위원회에 각 전자금융거래 업무별로 등록한 후 영업할 수 있다.⁶²⁾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도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⁶³⁾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결제대금예치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5개 종류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다양한 업종을 겸업하기도 한다.

〈표 6-1〉

전자금융업자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개)

업종	등록업체 수	업체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51	마이비,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엘지유플러스,뱅크웰, 인포허브, 케이에스넷, 올넷, 한국스마트카드, 엘지씨엔에스,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씨스퀘어소프트, 케이아이비넷,페이게이트,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케이지모빌리언스, 효성에프엠에스, 씨제이시스템즈, 한국사이버결제, 성호아이피오, 다음커뮤니케이션, 브이피, 아이에스이커머스, 세틀뱅크, 페이레터, 퍼스트데이터코리아, 웹캐시, 더존비즈온, 이비시스,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애드빌소프트, 티모넷, 인포뱅크, 다날, 글로벌쉬핑마스터엔투엔, 유페이먼트, 스탠다드네트웍스, 이비카드, 케이알파트너스, 하렉스인포텍, 다우기술, 스마트로,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네이버, 쿠팡,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신세계페이먼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4	마이비,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케이티, 다음커뮤니케이션, 부산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유페이먼트, 이비카드, 톨머니시스템, 스마트로,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네이버, 옐로페이, 신세계아이앤씨, 코레일네트웍스, 한페이시스, 한국철도공사
결제대금예치업	20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엘지유플러스,뱅크웰, 케이에스넷, 올넷, 케이지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페이게이트,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케이지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퍼스트데이터코리아,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인포뱅크, 글로벌쉬핑마스터엔투엔, 다우기술,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9	케이에스넷,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하렉스인포텍, 스마트로, 옐로페이, 인터페이
전자고지결제업	5	이지스엔터프라이즈, 효성에프엠에스, 동서아이티에스, 더존비즈온, 옐로페이

주 : 2004년 9월말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6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제2항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①전자지급이체업무 ②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③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⑤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63)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위원회 등록절차 없이 모든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PG; Payment Gateway)이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가맹점)을 대신하여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 및 승인정보 등 지급결제정보를 전송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PG업자는 IT업체가 중심이 되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PG업자는 모두 51개이다.

〈그림 6-2〉 PG업자의 정보입수 경로(신용카드 PG기준)



주 : 자세한 업무처리절차는 제10장 제6절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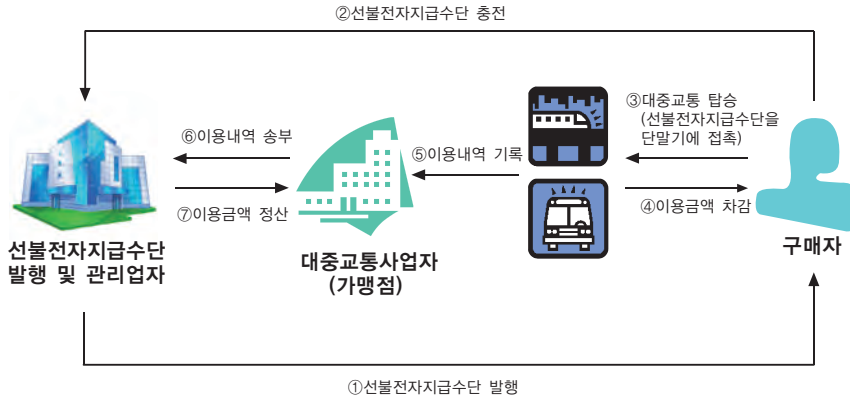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⁶⁴⁾ 발행업자(선불업자)는 구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다. 선불업자가 IC칩을 내장한 카드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PC 또는 서버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하면 구매자는 가맹점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위해 단말기, 인터넷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선불업자는 가맹점에 이용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64) 발행인 외에 제3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24개 전자금융업자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다.

〈그림 6-3〉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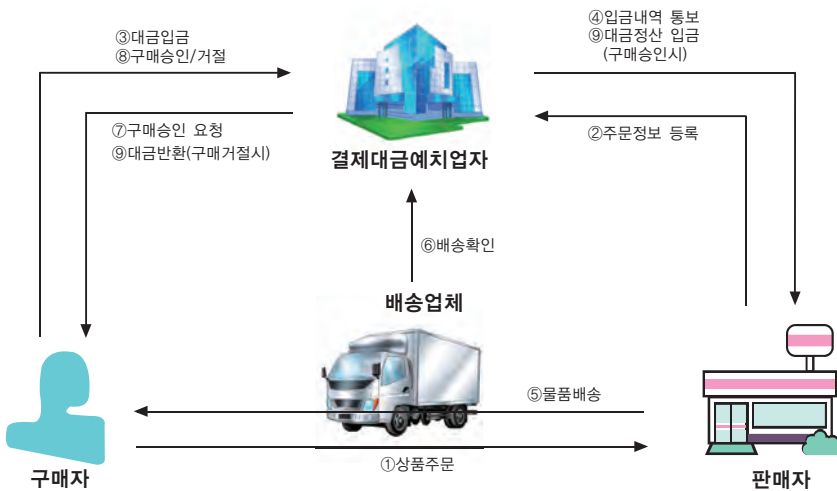
다. 결제대금예치업자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예치받고, 구매자의 물품수령 확인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인터넷 쇼핑 등의 비대면거래에서 거래당사자들은 거래가 적절히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겨났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결제대금예치업이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에스크로(Escrow)라는 용어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인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결제대금예치업자는 모두 20개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결제대금예치는 업무수행 과정이 유사하여 현재 모든 결제대금예치업자는 PG업을 겸영하고 있다. 따라서 결제대금예치업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의 범위와 정보의 수집 과정은 PG업자와 유사하다.

〈그림 6-4〉 결제대금예치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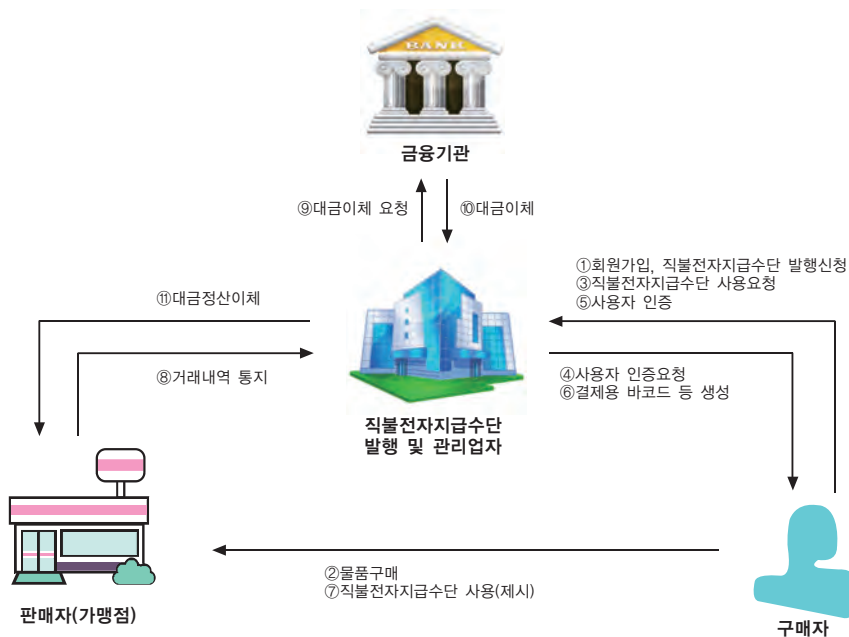


라.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은 사전충전이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물품·용역 구매시 구매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구매대금이 이체되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이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정부의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결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직불전자지급수단은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직불형 카드와 차별화된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모두 10개이다.

〈그림 6-5〉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처리절차(오프라인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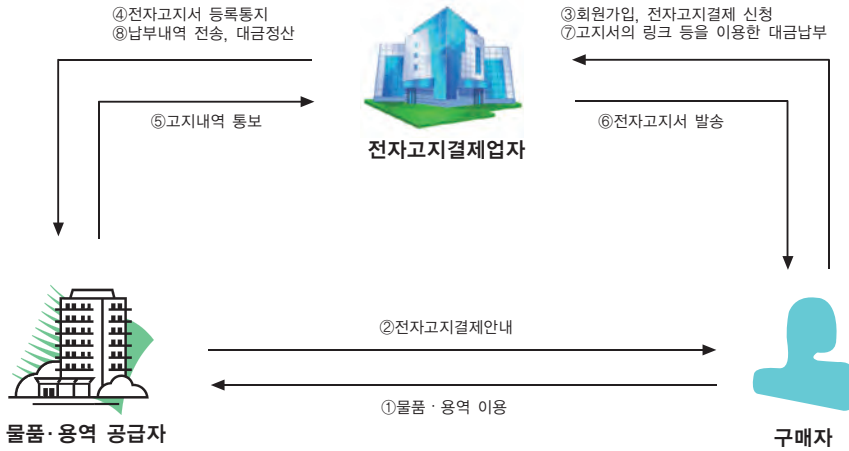


마. 전자고지결제업자

전자고지결제업은 수취인(물품 또는 용역 공급자)을 대신하여 지급인(물품 또는 용역 구매자)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고지서 등)을 전자적인 수단(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아파트관리비, 우유배달대금 등 정기적인 대금지급을 위한 고지서 발행과 대금납부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고지결제는 종이고지서 발송에 따른 인쇄비, 우편요금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서 출발하였다. 전자방식 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들이 대금수취 및 정산기능까지 업무범위를 확장하면서 전자고지결제업무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전자고지결제업자는 모두 5개이다.

〈그림 6-6〉 전자고지결제 업무처리절차



6. 전자금융보조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용카드 VAN사업자가 있다.

가. 신용카드 VAN사업자

신용카드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자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 구축 및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거래의 전송 및 조회, 매출전표 수집 및 청구 대행 등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관련한 다양한 부수업무를 한다. 가령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하면 VAN사업자는 거래 승인을 위해 신용카드사에 거래내역을 전송하고 승인 및 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이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또한 VAN사업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방문하여 전표 실물을 수거하거나 전표서명 데이터를 수집한다.

신용카드 VAN서비스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되고 있다. 한편 2014년 9월말 기준 신용카드VAN협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VAN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등 12개 업체⁶⁵⁾이다.

나.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

점포외 CD/ATM 서비스업자(은행 VAN사업자)는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편의점, 공공장소 등에 CD/ATM 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현금서비스 및 계좌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VAN사업자는 점포외 CD/ATM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미리 수취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에 정산하거나, 자기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이후 은행에 청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신용도가 높은 은행 VAN사업자는 전자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CD공동망에 직접 접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자금융은 금융공동망 차액결제를 통해 전체 은행과 운영자금을 정산하지만 여타 은행 VAN사업자는 은행별로 운영자금을 정산한다.

은행 VAN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⁶⁵⁾로 분류되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한국전자금융 등 7개 업체⁶⁷⁾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기타 지급서비스 제공자

가. 이동통신회사

이동통신회사는 은행과 제휴하여 사용자가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의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 자금이체 등의 지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통신회사가 은행에 무선결제플랫폼을 제공하고 은행이 고객정보와 대금결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구조이므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좌이체도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 처리된다.⁶⁸⁾

65) 12개 업체는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나이스정보통신, 스마트, 다우데이터, 금융결제원, KIS정보통신, 코벤, 한국신용카드결제, 제이티넷, 한국사이버결제이다.

66)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 시스템의 운영자”로 정의되나 이에 해당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확한 분류는 어려운 실정이다.

67) 7개 업체는 한국전자금융, 에이티엠플러스, 노틸러스호성, 롯데피에스넷, 한네트, BGF캐시넷, 청호이재캐쉬이다.

68)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공간적 제약과 이동성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인터넷뱅킹과 구분하고 있다.

2014년말 현재 SKT, KT, LGT 등 3개 이동통신회사가 모두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비금융 IT기업

휴대폰제조사, SNS 사업자, 유통업체 등도 금융기관 또는 비금융기업과 연계하여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업체가 독자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자지급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베이는페이팔(PayPal), 알리바바는알리페이(Alipay) 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2014년 11월부터 금융결제원 및 국내은행과 연계하여 SNS기반 모바일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7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제1절 개요	105
제2절 한국은행법	106
제3절 한국은행 규정	107
제4절 기타 관련법률	111

제1절 개요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되는 법제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법적 환경에 따라 일반법, 특별법, 지침, 명령, 규정, 규약, 협약, 약관, 판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제도를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로는 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 지급수단의 발행과 유통,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및 결제완결성 보장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과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표 7-1〉 우리나라의 지급결제관련 법률

내 용		법 률
거래	일반 상거래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환거래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	어음, 수표	어음법, 수표법
	전자지금이체 및 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신용·직불·선불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법
지급결제 시스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및 감시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결제완결성 보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중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업무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주체를 한국은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및 그 하위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다.

제2절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 및 감시기능은 2003년 9월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급결제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제도가 여타 선진국 수준의 한층 진전된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업무의 목적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도모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동시에 민간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중 한은금융망을 통해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한은금융망과 연계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련되는 사항을 한은금융망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과 관련 감독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청산결제시스템 등 우리나라의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자료 수집, 평가 및 개선 유도 등의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은행 이외에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업무가 통화신용정책 업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2011년 제8차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1조의2는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

는 지급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참가기관에 일종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은금융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지급지시와 최종 결제시점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은행에 대해서는 일중당좌대출을 통해 일중 결제유동성을 지원하여 왔는데, 금융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는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증권결제자금에 대한 일중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신설된 제81조의2를 근거로 하여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RP방식의 일중 결제부족자금 공급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⁶⁹⁾

제3절 한국은행 규정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⁷⁰⁾은 「한국은행법」의 하위규정으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업무를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및 감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의 목표

금융통화위원회가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1장에서는 규정의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급수단은 그 소지인 또는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외의 모든 장표 또는 전자적 방식의 수단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은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액 및 소액

69) 증권결제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증권이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일중 결제유동성 부담이 특히 크다. 또한 중개업무를 주로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속성상 평상시 결제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결제재원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어 16시 이후 결제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70) 지급결제제도 관련 한국은행의 규정체계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동 「세칙」 및 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시스템,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은 물론 신용카드, 전자화폐, 모바일 지급수단 등을 이용한 지급서비스도 하나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서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지급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 규정에서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의 목표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의 목표를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두고 한국은행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및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2장 및 제5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한은금융망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은금융망의 취급업무는 자금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발행·상환, 국공채 등의 매매, 국채의 발행·상환 및 한국은행 대출 관련 자료의 송수신 등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대상기관으로서 일정한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위한 약정체결 등 관련절차를 명시함과 아울러 개별 지급결제시스템이 한은금융망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한은금융망을 통한 차액결제의 실시 근거, 한은금융망 이용관련 비용의 부담, 전문의 송수신 기준, 자금이체전문 처리시점, 한은금융망 이용관련 사항의 표준화, 참가기관 등의 의무, 전산시스템 장애·재해·파업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 확보,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⁷¹⁾,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 및 휴무, 규정 등의 위반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먼저 매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심각한 장애·재해·파업·테러 등으로 한은금융망 자금이체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경

71)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 및 외환동시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우, 다른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을 허용한 경우, 한은금융망을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한 경우,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결제부족자금을 공동분담케 한 경우,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긴급상황 발생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대응조치를 권고한 경우 및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중지 또는 관련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3. 결제리스크의 관리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3장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및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차액결제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급결제시스템인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간에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하여 각 참가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결제 순채무액⁷²⁾의 상한인 순채무한도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참가기관은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담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순채무한도 설정대상거래에 대해서는 동 한도의 30%, 순채무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도 반기중 차액결제시점별 평균 교환순지급금액⁷³⁾의 3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참가기관이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이행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담보증권을 해당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결제를 이행한 다른 참가기관이 그 부족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결제를 완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2009년 2월 4일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차액결제대행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에

72) 미결제 순채무액이란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다른 참가기관에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채무)에서 다른 참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금액(채권)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순채권액을 의미한다.

73) 참가기관간 차액정산 결과 특정 참가기관이 여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채권)보다 여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채무)이 많은 경우 그 초과되는 채무금액이 해당 기관의 교환순지급금액이다.

새롭게 반영되어 있다.

즉 차액결제참가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차액결제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차액결제대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승인기준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도록 하였다. 그밖에도 차액결제위탁기관인 비은행 금융기관의 순채무한도 관리, 차액결제대행과 관련한 담보관리, 결제자금 부족시 차액결제대행은행의 공동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차액결제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위탁기관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4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의 범위를 (i)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선정 및 분류, (ii) 지급결제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iii)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 평가, (iv) 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요청, (v) 긴급상황시의 조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범주는 기존 지급결제시스템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급결제시스템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설정하였다. 나아가 지급결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각 시스템을 그 결제규모, 결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의 2가지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감시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및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운영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제4절 기타 관련법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행법」 외에도 지급결제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다. 먼저 거래 및 이에 따른 결제와 관련된 법률로는 일반 상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 「상법」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증권 거래에 관한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외환거래 및 결제에 관한 특별법인 「외국환거래법」 등을 들 수 있다.

지급수단의 발행과 유통을 규율하는 법으로는 전통적 지급수단인 어음, 수표를 다루는 「어음법」 및 「수표법」, 신용카드, 직불형카드 및 선불형카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행과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으로 전자방식의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단기사채법」 등이 있다.

위 법률중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은 지급결제업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들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결제완결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있다. 「통합도산법」 제120조 및 제336조에서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 위원장⁷⁴⁾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과 한국거래소, 한국에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이체지시, 청산 및 결제 등에 대해서는 「통합도산법」상의 부인권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특정 참가기관의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74) 2006년 법 제정시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으나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참고 7-1〉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현황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 보장이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급·청산·결제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irrevocable)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청산·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무효화되는 법률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통합도산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위험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시스템”(동법 「시행령」 제6조)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선정한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6개 소액결제시스템(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외환결제시스템인 CLS시스템 등 8개의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하고 있다.¹⁾ 한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은 통합도산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결제완결성을 보장받고 있다.

주 : 1) 한국은행은 당초 한은금융망,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LS시스템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국 FMI를 평가하는 국제기구가 결제완결성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여건이 크게 바뀌면서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을 추가 지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표 7-2〉 주요국의 결제안결성 관련 법률 현황

	독 일	뉴질랜드	미 국	싱가포르
관련법률	도산법	중앙은행법	파산법, 연방예금보험법, 연방예금보험 공사개선법, 금융계약차액 결제촉진법	지급결제시스템 (결제안결성 및 차액결제)법
법률 제·개정시기	1999년	2003년	—	2002년
결제안결성 보장내용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의 안결 성 보장	지정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결 제의 법적 불확실 성 제거	특정금융거래에 대해 파산절차의 일반적 적용 배제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안결성 보장
결제안결성 적용범위	—	지정된 모든 지급 결제시스템	특정금융거래 (스왑, 옵션, 환매 계약, 선물환 등)	중앙은행이 지정 한 지정결제시스 템을 통해 결제 또는 차액결제되 는 모든 거래
	영 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 주
관련법률	금융시장 및 파산 (결제안결성)규정	법률 210/2001호	지급, 청산 및 결제법	지급결제시스템 및 차액결제법
법률 제·개정시기	1999년	2001년	1996년	1998년
결제안결성 보장내용	지정된 지급시스 템을 통한 지급이 체는 파산법 적용 을 배제	파산절차 개시 이 전에 발생한 거래 를 취소할 수 없 음을 규정	지정된 결제시스 템의 운영규정은 다 른 법률에 불구하 고 모든 참가자에 게 유효함을 규정	파산으로 인해 기 실행된 거래를 무 효화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으로부 터 특정 거래를 보호
결제안결성 적용범위	영란은행 및 금융 감독청이 지정한 지급결제시스템	법률에 의거 지정 된 지급결제시스 템, 증권결제시스 템 및 청산시스템	캐나다중앙은행이 지정한 청산결제 시스템	승인된 결제시스 템 및 다자간 차 액결제협약

〈참고 7-2〉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주요 선진국은 1990년대 중반을 전후로 중앙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감시수단을 부여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역할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EU국가들은 유럽연합 설립 조약과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및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정관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감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998년 및 2001년 중앙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감시 기능을 법제화 하였다. 프랑스은행법은 프랑스은행으로 하여금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급수단의 안전성과 지급수단에 적용되는 기준의 적합성(pertinence)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은행에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에 대한 감시권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1998년 일본은행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권한을 부여하였다. 일본은행법 제1조는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간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고사(考査)권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9년 은행법(Banking Act)을 개정하면서 영란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역할을 명문화하였다. 은행법은 영란은행에게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운영원칙 및 업무규범 제정권, 운영규정 개정요구권 및 승인권,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 및 현장조사권, 제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국은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거시 및 미시건전성 감독을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형태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을 제정하였다(2013.4.1 시행). 이에 따라 영란은행은 기존의 은행간 자금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외에도 중앙거래당사자(CCP)를 포함한 청산기관(clearing house)과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규제·감독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방준비법, 통화관리법, 자금결제촉진법 등에서 명시한 은행감독,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의 권한과 운영기관, 참가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연준을 포함한 금융감독(규제)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지급, 청산 및 결제 감독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을 제정하였다(2010.7.22 시행). 이에 따라 연준은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승인,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직접조사, 시정명령 등 감시대상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받았다.

캐나다는 중앙은행에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은행이 지칭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파산관련 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96년 「지급청산 및 결제법」(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을 제정하였다.

호주에서는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를 통해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였다. 동 법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중앙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급결제분야의 사회적 중요성, 일관성 있는 감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지급결제시스템법」(Act relating to Payment Systems)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은행간 시스템의 인가 요건, 참가자격 등 은행간 시스템에 대한 규제, 지급서비스시스템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시스템 요건 등 지급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청산·결제약정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2002년 실시된 IMF의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청산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책임의 법률적 근거 도입을 권고받고 2004년 「청산결제시스템법」(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Ordinance)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청산결제시스템의 지정 요건, 청산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의 완결성 보장,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6년 지급결제시스템 및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정보요구권, 지정요건, 참가기준 등을 규정한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ayment Systems Oversight Act)을 제정하였다.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률

법 률		주 요 내 용
프 랑 스	프랑스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급수단의 안전성 및 지급수단에 적용되는 기준의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 -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감시하도록 명시
일 본	일본은행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들간의 자금결제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일본은행의 설립목적으로 규정 -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신용질서의 유지 및 자금결제의 원활화 관련 업무의 고사(考査)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고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영 국	은행법 금융서비스법 (은행개혁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란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운영기준 및 업무규범 제정권, 운영규정 개정요청권 및 승인권,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현장조사권·시정지시권·제재권 등을 부여 - CCP를 포함한 청산기관 및 증권결제시스템 규제·감독

법 률		주 요 내 용
미 국	지급·청산·결제 감독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 리스크관리기준 제정,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규정 승인, 운영기 관 및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직접 조사, 시정명령 등
	통화관리법 (Monetary Control Act)	- 연준의 지급결제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 수취 근거를 규정함으 로써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 촉진을 연준의 의무로 명시
	지급결제촉진법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 연준에 연방준비은행, 환거래은행, 어음교환소를 통하여 추심 되는 모든 수표의 수납, 지급추심, 청산 등 수표결제제도와 관 련된 규정 제정권을 부여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 연준에 자동교환결제(ACH) 시스템, ATM, 직불카드 등을 통한 전자자금이체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권을 부여
캐 나 다	지급청산 및 결제법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ct)	- 중앙은행은 청산결제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관리하 기 위한 기준 및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도모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권,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 출요구권·조사권, 운영 및 참가기관에 대한 시정지시권 등 부여 -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파산관련 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호 주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운영기준 제정 및 지급결제 시스템 관련분쟁의 조정 등의 권한 부여 - 중앙은행에 지급수단(가치저장형 지급수단 등)에 대한 감시권 한도 부여
노 르 웨 이	지급결제시스템법 (Act relating to Payment Systems)	- 중앙은행에 은행간 시스템에 대한 인가권을 부여하여 지급결 제시스템의 설립·운영을 규제 - 중앙은행은 자료제출요구, 시정지시 등에 관한 권한 보유 -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청산 및 결제약정에 파산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
홍 콩	청산결제시스템법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Ordinance)	- 중앙은행은 청산결제시스템법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지정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 성 및 효율성을 제고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권, 운영기관에 대한 규정 개정명령권·자료요청권·시정명령권 등 부여 -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파산법 적용을 배제하여 결제완결성 보장
싱 가 포 르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 중앙은행(싱가포르 통화청)은 지급결제시스템과 지급수단을 감 시할 책임 - 중앙은행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지정, 운영기준 제정, 운영·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시정명령권·운영기관에 대한 조사권 등 부여
	증권선물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	- 중앙은행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시장을 지원하거나 금융하부 구조의 핵심부문인 청산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

제8장 지급수단

제1절 지급수단의 유형 119

제2절 지급수단의 혁신 131

제1절 지급수단의 유형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비현금 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어음·수표, 계좌이체, 지급카드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계좌이체에는 지로, 타행환, CD/ATM, 자금관리서비스(CMS), 인터넷뱅킹 등이 있으며, 지급카드에는 신용·선불·직불형카드가 있다. 또한 장표의 이용여부에 따라 장표방식(paper) 지급수단과 전자방식(paperless) 지급수단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어음·수표와 장표지로가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는 지로의 자동이체·대량지급과 타행환, CD/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를 들 수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종래의 현금, 수표 위주의 장표방식 지급수단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에서의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현금

현금은 소액거래에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지폐(은행권)와 주화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거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4종의 지폐(천·오천·만·오만원권)와 6종의 주화(일·오·십·오십·백·오백원화)가 유통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발행잔액의 대부분은 지폐가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5만원권 발행된 이후 고액권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보편화되면서 현금의 이용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금은 소액거래시 사용이 편리하고 경조사비와 같은 개인간 거래시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현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어음·수표

어음·수표는 2000년 이전까지 기업을 중심으로 현금 대신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지급수단이다. 어음·수표는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대기업의 부도발생이 중소납품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지는 등 어음사용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

았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년 5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2001년 2월),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2002년 3월), 전자어음제도(2005년 9월) 등 전자방식 지급과 은행신용공여기능을 결합한 전자방식 결제수단이 개발되고 그 이용이 확대되었다. 또한 신용카드와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이용규모 증가 및 5만 원권 발행의 영향으로 어음·수표의 교환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 어음

어음은 발행인이 그 소지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약속어음과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으로 구분되며 주로 기업간 신용공여 및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주채무자로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지급약속증권이다. 약속어음은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인 진성어음과 주로 금융기관간 자금대차거래에 이용되는 용통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진성어음은 일반적으로 만기 이전에 할인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

환어음은 발행인이 직접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지급위탁증권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있어야 하며 지급채무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인의 인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약속어음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어음법」상의 어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환어음은 격지간 자금 지급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급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내국신용장 거래에 따른 환어음 발행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국제상거래에 이용되고 있다.

〈참고 8-1〉

전자어음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전자지급수단으로 기존의 기업간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한 것이다.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 지정)인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 9월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발행·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모든 정보가 발행부터 만기결제시까지 원장에 전자적으로 저장되므로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어음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어음을 작성, 유통, 보관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가 실명,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발행한도를 부여하고, 총 배서 횟수를 20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어음의 만기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전자어음이 보다 활발하게 이용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2009년 11월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¹⁾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이용을 의무화²⁾한 데 이어 2014년 4월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2012년 10월에는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의 담보를 기존의 종이어음에서 전자어음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하면서 전자어음 이용규모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비교

구 분	실 물 어 음	전 자 어 음
발 행	실물 발행	전자발행
종 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어음법
발행등록	없음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발행금액	제한 없음	연간 총 발행금액 제한 가능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횟수 20회로 제한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일부지급	어음법상 허용 (은행약관에서는 불허)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 지정)

주 : 1) ①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 ③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8-2〉

전자외상매출채권

전자외상매출채권(약칭 전자채권)은 수표의 지급기능과 어음의 신용공여기능을 혼합한 전자적인 형태의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3월부터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한 전자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후 현금화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동 채권은 은행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무보증 채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채권은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만기가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양도도 불가능하다.

나. 수표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지급인(은행)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며, 「수표법」상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요식증권이기도 하다. 또한 수표는 대표적인 장표방식 지급수단으로 개인간의 거래나 기업 및 정부간의 거래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표로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이 있다.

〈표 8-1〉

수표종류별 주요특징 비교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발행인	은행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등록증 소지)	개인 및 자영업자
장 당 발행한도	정액 : 10, 50, 100만원 비정액 :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개인 : 100만원 자영업자 : 500만원
대월제도	없음	있음	있음

3. 계좌이체

계좌이체는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현금, 수표 등 지급수단을 직접 교환하지 않고 결제당

사자의 예금계좌간 자금이체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계좌이체는 지급지시의 주체에 따라 지급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fer)와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출금이체(debit transfer)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의 대부분은 입금이체에 해당하며,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출금이체에 해당한다.

계좌이체에 이용되는 채널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소비자는 지로, 타행환, CD/ATM, 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간 계좌이체를 실행할 수 있다.

가. 지로

지로는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는 소액대량 지급수단이다.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나. 타행환

타행환은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은행점포에서나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영업시간중, 건당 5억원 한도)할 수 있는 계좌이체 수단이다.

지로와 타행환을 비교하면 지로는 다수의 지급인 또는 수취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수납하고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반면 타행환은 개인 또는 기업간 일대일 송금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로는 입금일로부터 1~3일이 경과한 후 수취인이 계좌에서 출금(단, 급여이체는 당일)할 수 있는 반면 타행환은 지급인의 입금 직후 수취인의 출금이 가능하다.

다. CD/ATM

CD/ATM을 통한 계좌이체는 이용고객이 거래은행이나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 Cash Dispenser)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utomated Teller Machine)를 이용하여 거래은행의 본인계좌로부터 거래은행내 또는 다른 은행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라. 자금관리서비스(CMS)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는 소규모 사업자 등 이용기관이 약정일에 자동으로 다수의 고객 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하거나 고객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이체 방식이다. CMS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기업 등 이용기관은 CMS서비스를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수의 고객 자금을 수납할 수 있으며, 고객은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체하지 않고 한 번의 가입신청을 통해 정기적인 대금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CMS 출금이체와 지로 자동이체는 다수의 고객계좌로부터 자금을 출금하여 이용기관계좌에 입금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자격, 이체기일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8-2〉 CMS 출금이체와 지로 자동이체 비교

구 분	CMS 출금이체	지로 자동이체
특 징	-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심 - 서비스 접근 용이 -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대규모 법인 - 서비스 이용 기준 충족 필요 -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서비스 이용자격	특별한 제한이 없이 적합성 판단 후 금융결제원에서 승인	법인, 사업자증 장표지로 수납건수가 3개월 평균 1,000건 이상인 기관
직접접수자격	담보금 납부 · 보증보험 가입 등	고객이 은행에 신청한 자동이체 이용실적 월 10,000건 이상인 기관
자료전송	납기일 -1일	납기일 -1일
이체기일	납기일 +1일	납기일 +3일, +7일

마. 텔레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는 고객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화기를 통하여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바. 인터넷뱅킹

인터넷뱅킹이란 고객이 자금이체, 계좌조회 등 은행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모바일뱅킹의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뱅킹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터넷뱅킹 서비스는 제공하는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예금조회, 자금이체, 대출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계좌통합서비스, 기업간(B2B) 상거래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사. 모바일뱅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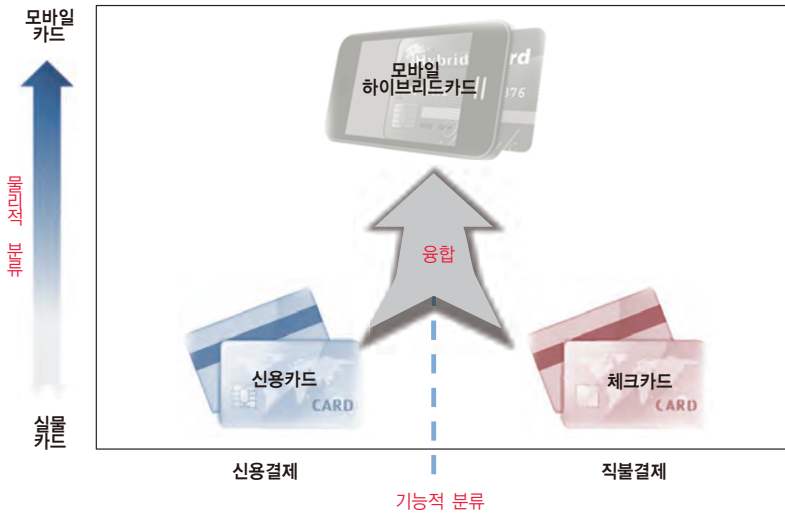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수단으로 무선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은행이 이동통신회사의 무선인터넷망을 통해 고객의 자금이체 및 계좌조회 등 금융거래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2009년 스마트폰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4. 지급카드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 등에 힘입어 지급카드는 대표적인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카드는 대금의 지급시기에 따라 사전에 지급되는 선불형카드, 구입시점에서 지급되는 직불형카드, 사후에 지급되는 신용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다양한 지급카드의 특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카드, 실물카드를 대체하는 모바일카드 등 새로운 유형의 지급카드도 등장하는 추세이다.

〈그림 8-1〉 지급카드의 융합



가.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가맹점 확보 등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신청인의 신용상태나 미래소득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용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지급수단이다.

신용카드는 카드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전문카드사 카드와 겸영은행 카드로 구분되며, 해외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국내 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로 구분된다. 국내외 겸용카드의 경우 국제적 서비스망을 갖춘 VISA, MasterCard, AMEX 등 해외 카드사와 제휴하여 해외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8-3〉 신용카드회사 분류

구 분	신용카드회사
전문카드사	KB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SK, 현대, 산은캐피탈
겸영은행	NH농협, 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외환, 전북, 제주

주 : 2014년 9월말 기준

신용카드 서비스는 도입 초기에는 신용구매에 국한되었으나, 1986년 BC카드에 현금카드 기능이 부여되면서 하나의 카드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겸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겸용이 보편화되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등의 대출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행기관들은 고객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하여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제휴업체 할인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교통요금 결제를 위해 사용한 후 월 1회 정산하는 후불형 교통카드도 보편화되었다.

나. 선불형카드

선불형카드는 이용고객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저장한 카드를 카드 발행자로부터 구입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시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차감 지급되도록 한 카드로서 사용범위에 따라 범용 선불형카드와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로 구분된다. 범용 선불형카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단일목적 선불형카드는 일정지역 또는 특정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선불형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표 8-4〉 선불형카드의 비교

요건	선불카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요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발행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발행	제한 없음 (마일리지방식, 할증발행방식 가능)
교환요건	최소 20% 잔액 환급 (최종 충전시 잔액 기준)	발행자가 충전금액과 100% 교환	최소 20% 잔액 환급 (최종 충전시 잔액 기준)
구입가능상품	신용카드와 동일	5개 업종 이상	2개 업종 이상
인허가	-	금융위원회 허가	금융위원회 등록

(선불카드)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일정금액이 충전되어 사용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재충전도 가능한 기명 선불

카드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 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양도가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경쟁관계에 있는 신용카드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선불카드의 발행과 이용실적은 저조한 상태이다.

(전자화폐)

2014년 9월말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전자화폐는 K-Cash, VisaCash, MYbi 등 3종류로 모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만 발행되고 있다.

〈표 8-5〉 국내 전자화폐 현황

전자화폐	발행기관	운영기관	최초발행
K-Cash	신한·우리·SC·기업·외환·하나·국민은행, 농협(8개 기관)	금융결제원	2000. 7월
VisaCash	하나은행(1개 기관)	한국스마트카드	2001. 5월
MYbi	부산·광주·경남은행, 농협, 삼성·국민·신한카드(7개 기관)	마이비	2000. 9월

주 : 2014년 9월말 기준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모두 IC카드형으로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플라스틱 카드에 내장된 IC칩에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가맹점용 단말기, PC용 단말기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급수단이다.

전자화폐의 발행건수 및 이용규모는 대중교통분야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가 전자화폐의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데다 가맹점의 확산이 정제되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은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IC카드형은 주로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형은 사이버쇼핑몰 등의 대금결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유자의 식별가능 여부에 따라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IC카드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무기

명식으로 발행되며 온라인에서 주로 이용되는 네트워크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기명식 및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권면 최고한도가 각각 200만원 및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T-money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지역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가능 업종 및 가맹점의 확대 등을 통해 그 범용성이 계속 확대되고 모바일카드 서비스 등 이용의 편리성이 증대되면서 이용건수와 금액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다만 교통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 이용이 확산되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처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패스트푸드점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표 8-6〉 선불전자지급수단 현황

구 분	발행업체(선불전자지급수단 명칭)
IC카드형	한국스마트카드(T-money), 마이비(마이비카드), 부산하나로카드(하나로카드), 하이플러스카드(하이패스플러스카드), 이비카드(eB카드), 유페이먼트(대경교통카드·탑패스), 나이스정보통신(홈플러스·AK·비지에프전자상품권), 툄머니시스템(모아선불카드),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기프트카드·신세계모바일상품권), 코레일네트웍스(X-CASH), 한페이시스(한페이카드), 한국정보통신(디지털상품권)
네트워크형	이베이코리아(G캐시, 이머니, 현금잔고, 마일리지, 북캐시), 인터파크아이엔티(s-money),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캐쉬), 케이티(월드패스카드),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도토리), 에스케이플래닛(OK캐쉬백·포인트·마일리지), 엔에이치엔비즈니스플랫폼(마일리지), 네이버(네이버캐쉬), 옐로페이(옐로페이)

주: 2014년 9월말 기준

다. 직불형카드

직불형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동시에 고객의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인출되어 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지급수단이다.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면 시장 참가자들은 현금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소비자는 현금 대신 직불형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고, 예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소비지출을 하게 되므로 보다 합리적인 소비행위가 가능하며 연체시의 신용등급 하락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직불형카드 사용자의 예금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전자자금이체방식에 의해 결제하므로 예금에 일반적 구매력을 부여하는 효과도 있다. 가맹점의 경우 판매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하고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매출채권이 즉시 현금화

되는 장점이 있다. 발행기관의 경우도 창구의 업무부담 경감 및 수수료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다.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직불형카드의 종류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IC카드가 있으며 카드유형별로 발급기준, 사용장소 등에 차이가 있다.

〈표 8-7〉 직불형카드의 비교¹⁾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이용한도	예금잔액 범위내	예금잔액 범위내 ²⁾	예금잔액 범위내
네트워크	직불카드공동망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CD공동망 (금융결제원)
발급기관	국내은행	신용카드사 ³⁾ 및 저축은행, 증권사 등	국내은행 및 농협중앙회 등
이용가능시간	08:00~23:30	24시간	24시간
가맹점 입금	결제 익영업일	결제후 3영업일 이내	결제 익영업일
승인절차	PIN 입력	서명	PIN 입력
부가혜택	없음	일부 있음	없음
가맹점 수수료	1.0~2.0%	1.53% ⁴⁾	1.0%

주 : 1) 2013년말 기준
 2) 일정 한도(최대 30만원) 내에서 예금잔액 초과 신용공여 혜택 부여 가능
 3) 겸영은행 포함
 4)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 기준

한편 2013년중에는 정부의 직불형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직불, 체크, 현금IC카드 외에 전자금융업자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이 시작되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자는 실물 카드의 발행 없이 스마트폰을 매체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증계한다. 그러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은 홍보 부족, 이용처 확산 저조 등에 기인하여 2013년 사용실적이 31만 2천건, 111억원에 그치는 등 다소 저조한 이용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표 8-8〉 국내 직불전자지급수단 현황

발행업체(직불전자지급수단 명칭)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지모빌리언스(엠틱), 다날(바통), 엘로페이(엘로페이), 인터페이(페이톡)

주 : 2014년 9월말 기준

제2절 지급수단의 혁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에 힘입어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손안의 PC”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지급수단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모바일카드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모바일카드에 활용되는 통신기술도 NFC(Near Field Communication), QR코드(Quick Response Code), 바코드(Barcode)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도도 있다. 가상화폐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가상화폐들은 별도의 발행기관이나 중앙처리기관 없이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국가간 송금이나 초소액거래에서의 활용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자지급수단보다 낮은 수수료로 인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전유물로 간주되던 지급서비스 시장에 비금융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플랫폼 운영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한 비금융기업들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를 대체한 서비스들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인터넷포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등 비금융기관들이 송금 및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 모바일카드 이용 확산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부터 일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가 개발되어 왔다. 모바일 지급서비스는 크게 자금이체, 계좌조회 등의 banking(banking) 부문과 대금지급(payment)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대금지급보다 banking 부문의 서비스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는데 banking 부문의 경우 별도의 가맹점이 필요 없고 이동통신회사와의 제휴나 협력 없이 금융기관 단독으로 서비스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로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대금지급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모바일카드이다.

모바일카드 서비스는 소비자가 지급카드 정보를 모바일기기 또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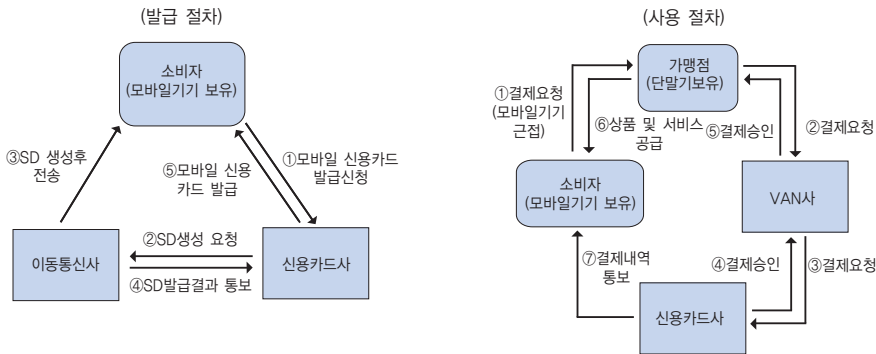
근 가능한 서버에 저장하여 두고 지급 거래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모바일카드는 지급카드 정보가 저장되는 물리적 공간(SE; Secure Element)⁷⁵⁾에 따라 크게 메모리 방식, IC칩 방식, 서버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주로 IC칩 방식과 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가. IC칩 방식

IC칩 방식의 모바일카드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지급카드 정보를 IC칩에 저장하여 상품거래 대금지급 등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2세대(2G)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금융IC칩을 활용하였으나 대역폭이 크게 향상된 WCDMA(Wideband CDMA) 방식의 3세대(3G), 그리고 최근의 4세대(4G) 이동통신에서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USIM칩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이동통신회사의 협조를 얻어 발급하며 실제 사용절차는 기존의 플라스틱 지급카드와 동일하다. 소비자가 모바일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이동통신회사는 USIM칩 내의 보안메모리 영역인 SD(Secure Domain)를 할당⁷⁶⁾하고 신용카드사는 카드정보를 소비자의 USIM칩 내의 SD에 OTA(Over The Air) 방식⁷⁷⁾으로 저장하여 모바일카드를 발급한다. 한편 상품 구매시에는 모바일기기를 비접촉 통신기술을 지원하는 별도의 가맹점 단말기에 근접시키는 것만으로 지급거래가 완료된다.

〈그림 8-2〉 USIM칩 기반의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75) SE는 지급수단 정보, 계좌정보, 인증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보안장치를 말하며 모바일 지급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핵심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한다.

76) 이동통신회사가 USIM칩 관리를 위한 마스터 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모바일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USIM칩 내 SD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77)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시스템 등록 정보 등을 송수신하기 위한 표준이다.

〈참고 8-3〉

비접촉 통신기술의 유형

IC칩 방식의 모바일카드 서비스는 지급거래를 위해 비접촉 통신기술을 활용한다. 비접촉 통신기술이란 물리적인 접촉 없이 기기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말한다. 비접촉 통신기술을 지급카드 및 모바일기기에 적용할 경우 가맹점 단말기에 지급수단을 근접시키는 것만으로 상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서비스에 주로 활용되는 비접촉 통신기술에는 RFID, Felica 및 NFC 등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RFID를 활용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NFC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RFID와 NFC는 작동거리, 활용 주파수 대역 등에서 동일하나 RFID가 일방향 통신만을 지원하는 반면 NFC는 기기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여 RFID에 비해 서비스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는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상품에 부여된 ID를 인식하는 통신기술로서 통상 13.56MHz의 고주파 대역을 이용한다. 국제 표준으로는 ISO 14443 Type A/B, ISO 15693 등이 있다. 이중 ISO 14443은 10c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기기간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며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T-money(한국스마트카드), payWave(Visa) 및 PayPass(MasterCard) 등이 모두 ISO 14443 국제 표준에 기반하여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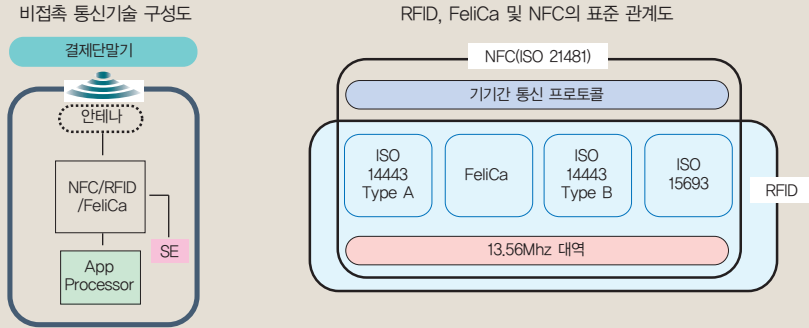
② FeliCa

FeliCa는 Sony가 개발한 독자적인 RFID 기술로 보안성 및 처리속도 면에서 ISO 14443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동통신사 NTT DoCoMo가 모바일기기에 접목시키면서 FeliCa는 일본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국제 표준이 아닌 특정 사업자 주도의 표준이어서 글로벌 서비스와의 연계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③ NFC(Near Field Communication)

NFC는 Sony와 NXP 반도체(네덜란드)가 2002년 공동 개발한 기술로서 RFID와 유사하지만 기기간 양방향 통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층 진화된 형태로 평가된다. 기술 표준에 있어서 NFC는 ISO 14443 Type A/B, ISO 15693 및 FeliCa의 통신 규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기기간 통신 프로토콜까지 규정한다. 다른 비접촉 통신기술과의 호환성(compatability), 기기간 양방향 통신 등을 기반으로 NFC는 현재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비접촉 통신기술의 유형



자료 : 김소이, 비접촉 통신기술 기반의 모바일 근거리 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4호, 2011.4)

나. 서버 방식

IC칩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간편한 지급거래 절차, 빠른 처리속도 등을 장점으로 이용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설치비용 문제로 인한 지급거래 단말기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서버 방식⁷⁸⁾의 모바일카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에서 소비자는 지급카드 관련 정보를 전자지급대행업자(PG)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버에 등록하여 두고 상품 구매시 이동통신망을 통해 동 서버에 접속하여 지급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IC칩 방식의 모바일카드가 지급거래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가 필요한 NFC 등 비접촉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면 서버 방식은 이미 보급된 인프라에서 활용 가능한 QR코드 및 바코드를 사용하여 지급거래를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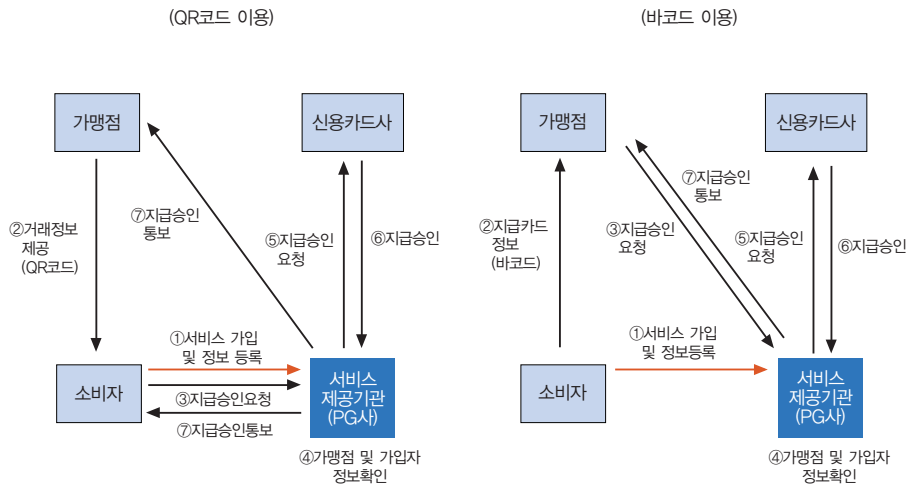
78) 앱카드 또는 간편결제라고도 한다.

〈표 8-9〉 IC칩 방식과 서버 방식 모바일카드 비교

서비스	IC칩 방식	서버 방식	
지급카드 정보 저장소	모바일기기 (금융IC칩/USIM칩)	서비스 제공기관 (서버)	서비스 제공기관 (서버)
소비자-가맹점간 송수신 정보	소비자의 지급카드 정보 (금융IC칩/USIM칩)	구매대상 상품 정보 (QR코드)	소비자의 지급카드 정보 (바코드)
지급승인 요청 주체	가맹점	소비자	가맹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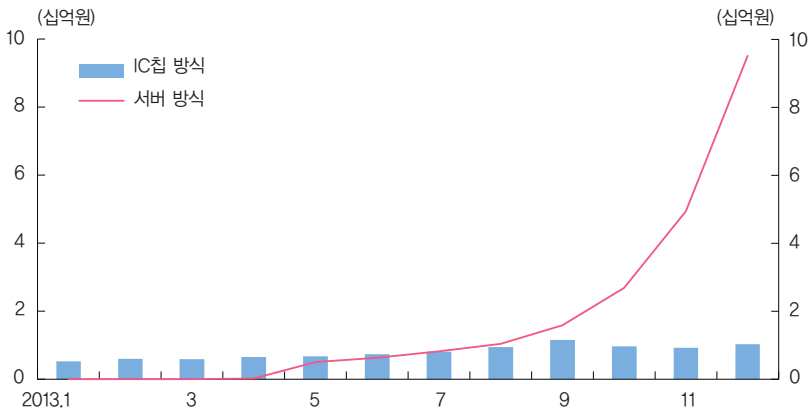
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따라 소비자 또는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지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거래 정보를 QR코드에 담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를 읽고 지급승인을 요청한다. 반면 소비자가 모바일기기로부터 바코드를 출력하여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이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지급수단 정보를 읽고 지급승인을 요청한다.

〈그림 8-3〉 서버 방식의 모바일 신용카드 업무처리절차



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는 NFC 결제 등을 위한 단말기가 불필요하고 이동통신사의 개입 없이 신용카드사가 단독으로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 IC칩 방식의 모바일카드에 비해 발급장수 및 결제금액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서버 방식 모바일카드 사용의 대부분은 온라인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프라인 거래에서의 모바일카드 사용은 플라스틱 카드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8-4〉 모바일카드 유형별 이용규모



〈참고 8-4〉

모바일기기내 보안영역(SE)의 유형

SE는 지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저장하는 모바일기기내의 보안영역으로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E가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함에 따라 통상 SE를 발급 및 관리하는 주체가 서비스 제공의 주도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및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은 SE 선택을 두고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SE 구현방식에는 UICC 방식, microSD 방식, embedded 방식이 있다.

① UICC(Universal Integrated Circuit Card) 방식

UICC는 3세대(3G) 또는 4세대(4G) 이동통신 환경의 모바일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장비로서 가입자 식별 모듈(SIM)을 포함하고 있으며 USIM이라고도 한다. UICC를 SE로 활용하는 경우 SE를 관리하는 마스터 키는 이동통신사가 보유한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칩 방식 모바일카드는 UICC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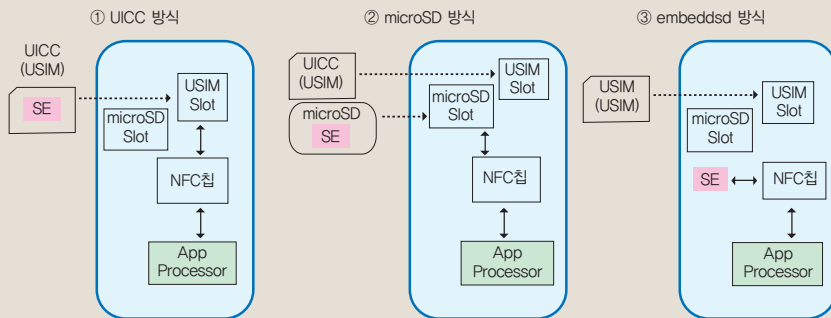
② microSD 방식

microSD카드는 모바일기기의 메모리 확장시 이용되는 소형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말한다. microSD카드는 금융정보 및 보안모듈 등이 탑재되어 모바일기기에 장착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이동통신사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UICC에 비해 저장용량이 커서 microSD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가 가능하다.

③ embedded 방식

embedded 방식의 SE는 모바일기기 제조 단계에서 내장되며 모바일기기 제조사나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는다. 모바일기기 제조사는 SE에 개별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한 후 기기를 판매한다. embedded 방식의 SE를 활용한 대표적인 모바일카드 서비스로는 애플이 2014년 9월에 공개한 애플페이(Apple Pay)가 있다.

SE의 분류¹⁾



주 : 1) 실선은 통신관계, 점선은 탈착 기능을 표시
 자료 : 김소이, 비접촉 통신기술 기반의 모바일 근거리 결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4호, 2011.4)

2. 가상화폐 등장

아직까지 가상화폐의 명확한 법적 정의나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를 가상공간의 개발자에 의해 발행되고, 가상공간에서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며,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화폐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상공간 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가상화폐들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가상화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법정 통화가 아닌 자체 단위를 사용한다는 점,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가치가 저장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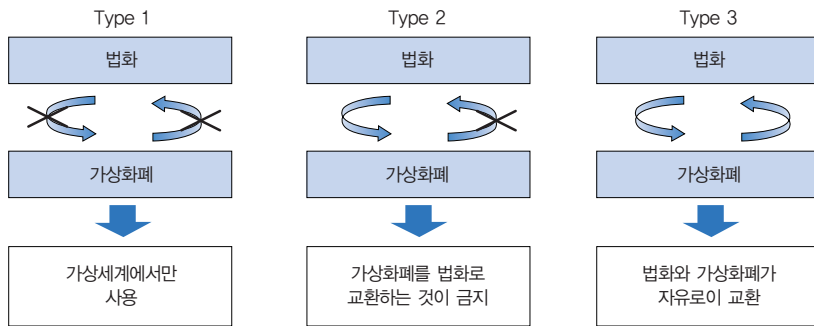
가상화폐는 법화와의 환전가능 여부에 따라 폐쇄형 가상화폐, 단방향 가상화폐, 양방향 가상화폐로 나눌 수 있다. 폐쇄형 가상화폐는 오로지 가상세계에서만 획득 및 사용이 가능하며 법화와의 교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화폐를 일컫는다. 온라인 게임 과정에서 획득한 가상화폐를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단방향 가상화폐는 법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상화폐를 법

화로 환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화폐를 말한다. 법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때 교환비율은 가상화폐 발행기관이 정한다. 단방향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가상공간 내의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와 법화 간에 자유로운 환전이 가능한 화폐이다. 양방향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발행기관 또는 거래소 등을 통해 법화와 자유로이 교환되며 교환비율은 가상화폐의 발행기관이 정하거나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양방향 가상화폐는 가상세계의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또한 일부 양방향 가상화폐는 별도의 발행기관이 없다는 측면에서 다른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림 8-5〉

가상화폐의 종류



자료 : ECB, Virtual currency schemes (2012. 10월)

가상화폐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구매력이 저장된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법화를 단위로 구매력을 표시하는 전자화폐와 달리 자체적인 화폐 단위를 사용한다. 더욱이 최근의 가상화폐들은 별도의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자화폐와는 구별된다.

다양한 가상화폐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양방향 가상화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처가 가상공간으로 제한되는 다른 가상화폐들과 달리 양방향 가상화폐는 실물 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법화로 환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 보다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동하는 일부 가상화폐의 경우 투자수단으로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가상화폐는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존재하여 웹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구현이 용이한 장점도 있다. 이들 가상화폐들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지급거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별도의 법적 기반이 충분치 않다

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고 불법적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고 8-5〉

비트코인 개요

비트코인(Bitcoin)은 분권화된(decentralized)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자적인 지급수단으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란 가명의 프로그래머(또는 집단)에 의해 2009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비트코인은 별도의 발행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행¹⁾되며 다수의 네트워크 참가자에 의해 공동으로 거래가 승인되고 거래기록이 작성된다. 총 발행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신규발행량은 약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체적인 화폐 단위는 비트코인(BTC로 표시), 밀리코인(0.001BTC, mBTC로 표시), 마이크로코인(0.000001BTC, μ BTC로 표시) 및 사토시(0.00000001BTC, satoshi로 표시, 최소단위)를 사용한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는 별도의 지갑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온라인 상의 비트코인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갑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계좌에 해당하는 공개주소(public address)를 무수히 많이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이체 거래 등을 수행한다. 비트코인은 계좌와 유사한 공개주소를 확인하며 이들 공개주소를 통한 거래를 기록 및 승인함으로써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계좌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같이 계좌정보를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 보관하는 중앙처리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거래를 승인하고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좌 기반 지급결제시스템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비트코인은 유가증권 또는 외환과 마찬가지로 사설 거래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OkCoin(중국), BTC China(중국), Bitstamp(슬로베니아), Bitfinex(홍콩)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코빗(Korbit)이 2013년 7월 국내 최초로 내국인 대상 비트코인 원화거래를 중개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10여개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달러 대비 환율은 2013년초 1BTC당 약 13달러 수준에서 2013년 11월중엔 1,20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의 투기성에 대한 경고를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때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Mt.Gox가 파산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2014년 8월말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약 5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론적으로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금이체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공인인증서와 같은 별도의 사용자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보안성이 낮다. 실제 비트코인 거래소 및 지갑서비스에 대한 해킹 피해가 줄곧 이어져 왔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트코인은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며 이에 따라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주 : 1) 자금이체 거래기록을 해쉬함수값으로 변환하여 비트코인 이체 거래를 승인하는 작업을 채굴(mining)이라 하며 채굴에 성공한 네트워크 참가자에게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3. 비금융기업의 소액 지급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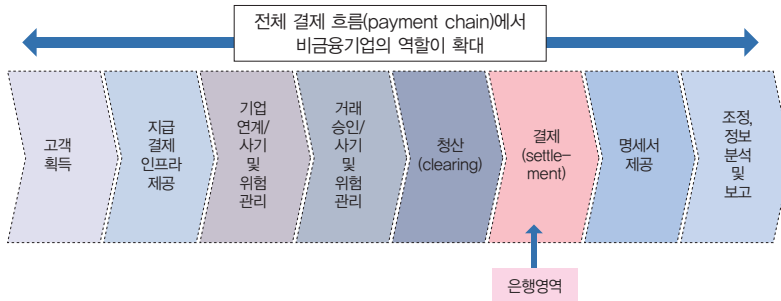
지급결제업무는 전통적으로 결제성예금을 수취하는 은행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비금융기업들도 소액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지급서비스 제공 채널이 대면 창구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이동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용가능한 지급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서비스 제공 비금융기업을 ① 지급결제 단계(payment chain)와의 연관 정도, ② 서비스 또는 지급수단의 유형, ③ 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번째 유형은 대고객 서비스 제공기관(Front-end providers)으로 최종 지급서비스 사용자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청산,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과의 연계 등을 통해 모바일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지급결제대행업체들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 유형은 후선 서비스 기관(Back-end providers)이다. 해당 기관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아웃소싱을 받아 지급결제와 관련된 후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로 데

이더 관리 및 보안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번째 유형은 직접 소액결제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Visa, MasterCard와 같은 신용카드 네트워크사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유형은 최종이용자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End-to-end providers)으로 자체 계좌를 통해 은행 등의 개입없이 지급인과 수취인 등의 최종이용자에게 최종적인 지급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자체적으로 지급 및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비금융기업이 주로 은행과의 협력 및 제휴를 통해 지급결제 단계의 후선업무를 지원하거나 보다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동통신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단말기 제조업자 등 대형 IT기업들이 지급서비스 시장에 참가하면서 지급결제의 모든 단계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림 8-6〉 결제흐름에서의 비금융기업의 역할



대표적인 지급서비스 제공 비금융기업으로는 구글(Google), 페이팔(PayPal), 알리페이(Alipay) 등이 있다.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바일지갑서비스인 구글월렛(Google Wallet)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베이(eBay)⁷⁹⁾, 알리바바(Alibaba)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힘입어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한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자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통해 고객 자금을 유치한 뒤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개인간 송금, 전자상거래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는 금융투자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리페이 잔액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79) 이베이는 2014년 10월 1일 페이팔을 분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어바오⁸⁰⁾라는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아마존, 페이스북도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지급결제 대행 또는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이 아이폰 단말기에 NFC를 탑재하여 모바일카드 서비스인 애플 페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별도의 카드리더기를 모바일기기에 탑재하여 모바일기기를 POS(Point of Sale) 단말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POS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표 8-10〉 해외 비금융기업의 주요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기업명	지급결제 대행	선불계정			모바일 지갑	모바일 POS	기타
		대금 지급	P2P 이체	실물카드			
페이팔	○	○	○	○	○	○	대출 중개
구글	○	○	○	○	○	×	
아마존	○	○	○	×	○	○	대출 중개
애플	○	○	×	×	○	×	
페이스북	○	○	×	×	×	×	
알리페이	○	○	○	×	○	×	대출 중개, 펀드판매

한편 국내에서는 과거부터 주로 이동통신회사들이 은행 및 신용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지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들 서비스는 모바일지갑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NFC, QR코드 및 바코드를 활용하여 가맹점에서 지급거래를 수행하거나 쿠폰, 멤버십 관리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의 IT업체들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지급서비스 제공 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급결제대행기관인 LG CNS와의 제휴를 통해 2014년 9월부터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에서 다음카카오는 서비스 제공 채널로 카카오톡 플랫폼을 제공하고, LG CNS는 결제솔루션 제공 및 가맹점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다음카카오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들과 제휴를 통해 모바일 송금서비스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2014년 11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뱅크월렛카

80) 2013년 6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1년동안 가입자 1억명, 총 5,472억위안(약 94조원)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카오는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을 카카오톡 플랫폼에 결합한 형태의 제휴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된 제휴 은행의 현금카드를 모바일기기의 USIM칩에 저장하여 CD/ATM이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뱅크머니(BankMoney)를 충전하여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 정보를 이용해 개인간 송금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회원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급 및 기타 금융서비스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수행한다.

한편 네이버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인 옐로페이(YeloPay) 등과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송금서비스 제공 계획을 2014년 8월 발표하였다.

국내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를 해외의 서비스와 비교하면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페이팔과 알리페이 등이 지급개시에서부터 최종 결제에 이르는 단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제휴나 협력없이 독자적으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다음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국내 비금융기업은 지급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플랫폼과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비금융기업들이 지급결제대행업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인가 등을 받지 않고 기존의 은행이나 지급결제대행사와의 제휴를 통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9장 거액결제시스템

제1절 개요	147
제2절 한은금융망의 주요 특징	152
제3절 한은금융망 취급 업무	158
제4절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164
제5절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관리	167
제6절 거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69

제1절 개요

1. 한은금융망 개발 및 가동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금융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이체거래를 건별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방식의 실시간총액결제(RTGS)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이전에는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연차액결제(DNS)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는 일정기간(통상 영업일)중 참가기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지급할 총금액과 수취할 총금액을 모아서 상계 처리한 차액을 일정 시점(대부분 마감 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연차액결제방식은 상계한 차액만을 결제하면 되므로 결제유동성을 절감할 수는 있으나 결제시점까지 결제가 완료되지 않아 신용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건별 자금이체지시에 대한 결제를 영업시간중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별 자금이체 신청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결제의 완결성을 부여하여 일단 결제가 완료되면 취소가 불가능(irrevocable)하기 때문에 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미국(Fedwire, 1982), 스위스(SIC, 1987) 등을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 12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ank of Korea Financial Wire Network, 약칭 한은금융망)을 구축하여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은금융망은 금융기관간 거액의 자금이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에서의 금융기관간 채권·채무를 지정시점에서 최종 결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업시간 중에 자금이체거래를 연속적으로 최종 결제하는 점을 이용하여 결제시스템 및 결제시스템과도 연계함으로써 증권 및 외환 거래에서의 결제 리스크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2. 혼합형결제방식 도입

한은금융망이 가동된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금융기관들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해야 할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조달 부담과 이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증대되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결제유동성을 절감하는 이연차액결제방식의 장점과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결제시스템(hybrid system)이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MEPS+, 2006년 12월), EU(TARGET2, 2007년 11월) 및 일본(RTGS-XG, 2008년 10월) 등 주요국들이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액결제시스템에서 혼합형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발전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200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한은금융망 재구축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9년 4월에 혼합형결제방식을 반영한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혼합형결제방식의 새로운 한은금융망에서는 순수 총액결제방식 외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추가하여 실시간 결제완결성과 일중 결제유동성 절약효과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참가기관은 신속 및 보통 지급지시 유형구분 등을 통해 자금이체 완급을 조절하여 지급지시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림 9-1〉 결제방식별 비교

① 실시간총액결제	② 차액결제	③ 혼합형결제(①+②)
<p>①100억원 A은행 → B은행 ②50억원 B은행 → A은행</p> <p>• ①, ②를 각각 결제 (150억원 소요)</p>	<p>50억원 A은행 → B은행</p> <p>• 지정시점에 차액결제 (50억원 소요)</p>	<p>50억원(①-②) A은행 → B은행 B은행 → A은행 동시처리</p> <p>• 수시로 ①, ②를 동시처리 (50억원 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리스크 제거 • 필요유동성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리스크 발생 • 필요유동성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리스크 제거 • 필요유동성 절약

주 : A은행이 B은행으로 100억원을 이체하고, B은행이 A은행으로 50억원을 이체할 경우

3. 서버간 직접접속방식 및 콜결제 일관처리 도입

2009년 6월에는 한은금융망의 서버와 금융기관 서버를 연결하여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하는 서버간 직접접속방식을 도입하였다. 기존 단말기 접속방식에서는 참가기관 자금담당 부서가 각 영업점의 자금이체 내역을 취합한 후 이를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해 수작업으로 재입력해야 했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각 영업점으로부터의 자금이체 지시가 참가기관 서버를 거쳐 한국은행 서버로 직접 전송되도록 하였다.

2010년 2월에는 한은금융망과 자금중개회사의 서버를 직접 접속하여 콜 중개회사로부터 콜 체결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이를 참가기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콜거래 결제내역을 한은금융망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거래 체결 후 자금공급에서 상환까지의 모든 결제과정이 일관처리(STP; Straight Through Processing)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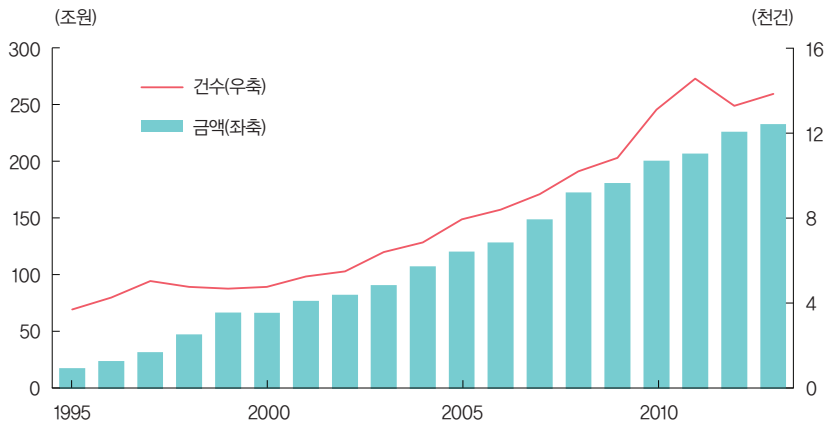
서버간 직접접속 방식 및 콜결제 일관처리의 도입은 대량의 자금이체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자금이체 담당자의 입력오류 등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운영리스크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였다.⁸¹⁾

4. 한은금융망 결제 규모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2013년중 한은금융망 결제 규모는 일평균 1만 4천건, 232조 7천억원 수준으로 한은금융망 가동 초기인 1995년(3천 7백건, 18조 3천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약 3.7배, 금액으로는 약 12.7배나 증가하였다. 이중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는 규모는 일평균 203조 5천 억원으로 한은금융망 총 결제 규모의 87.4% 수준이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의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으로 절감되는 유동성 절감규모는 일평균 41조 7천억원이며 유동성 절감비율은 20.5%이다.

81) 일관처리의 도입으로 자금결제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제고됨에 따라 콜거래의 경우 실제 은행간 직거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콜결제 자금이 한은금융망의 일반자금이체시스템이 아닌 콜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한은금융망 콜결제 자금의 콜결제시스템 이용 비율 : 2009년 58.6%→2013년 99.6%)

〈그림 9-2〉 한은금융망 이용규모(일평균)



〈표 9-1〉 한은금융망 자금종류별 결제금액(일평균)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참가기관간 자금이체	167,518	188,208	193,886	213,544	220,026
콜자금	37,612	49,128	46,175	48,205	50,848
증권자금	34,663	42,574	52,537	69,921	79,839
외환자금	26,977	19,466	17,200	15,932	15,748
고객자금 ¹⁾	35,853	35,304	30,650	30,223	30,814
차액자금 ²⁾	18,297	19,318	19,651	18,840	13,307
기타	14,116	22,417	27,673	30,324	29,469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자금이체 ³⁾	13,490	12,439	12,920	12,588	12,691
원화자금이체 합계	181,008	200,647	206,806	226,133	232,717
외화자금결제(백만달러) ⁴⁾	315	284	292	265	281

주 : 1) 일반 기업 등이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을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거래의 자금
 2)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간 최종결제가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액
 3) 국공채 등 거래, 국고금 수급, 한국은행 대출
 4) 예치 및 인출 포함

〈표 9-2〉 혼합형결제시스템 결제 및 유동성 절감 규모(일평균)

(십억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결제 금액(A)	153,482	165,854	171,017	191,207	203,499
유동성 절감액(B)	29,660	33,794	29,348	41,542	41,682
유동성 절감비율(B/A) ¹⁾	19.3	20.4	17.2	21.7	20.5

주 : 1) 상계결제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절약된 금액/총지급지시금액(예를 들면 총지급지시금액이 500인 경우(A→B 100, B→A 400)을 상계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300(B→A 300)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여 200만큼의 유동성이 절감되므로 유동성 절감비율은 40%(200/500)임

〈참고 9-1〉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미국)

미국에는 2개의 주요 거액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미 연준이 운영하는 Fedwire는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참가기관간 거액자금이체(Fedwire Fund Service)와 미국채, 정부보증채 등의 보관·결제(Fedwire Securities Service)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s)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으로 국가간 미달러화 거래의 대부분이 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혼합형 결제시스템인 CHIPS는 Fedwire와 달리 지급지시를 다자간 연속적으로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연속차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인 CHAPS는 영란은행, CLS은행 및 주요 은행 등 21개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CHAPS Clearing Company가 소유하고 영란은행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CLS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 Cheque and Credit Clearing 등을 통한 소액결제 등이 동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CHAPS는 1984년 차액결제방식으로 가동을 시작한 후 1996년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재구축된 CHAPS sterling과 1999년 유로화 도입과 함께 구축된 CHAPS euro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CHAPS euro는 2008년 8월 15일 TARGET2의 3차 그룹 가동으로 가동을 중단하였다.

(EU)

유로 지역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과 함께 RTGS 기반의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을 가동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는 이를 개선한 TARGET2를 운영하고 있다. TARGET1이 16개국의 개별 RTGS시스템과 ECB의 결제시스템을 단순 연계한 분산형 시스템인 반면 TARGET2는 24개 참가국이 단일 공유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TARGET2의 운영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ECB 정책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EBA Clearing)이 운영하는 연속차액결제방식의 EURO1도 유로화 자금이체를 위한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거액결제시스템인 BOJ-NET(Bank of Japan Financial Network System Funds Transfer System)은 거액의 자금이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8년부터 일본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결제시스템과 국채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자금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외환거래 및 전은(Zengin)시스템을 통한 소액결제의 최종결제를 제공하며, 국채결제시스템은 국채의 보관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2001년 1월부터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던 BOJ-NET을 전면개편하여 2008년 10월부터 당좌예금결제시스템에 유동성 절약기능을 도입한 혼합결제 방식의 차세대거액결제시스템(RTGS-XG)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2절 한은금융망의 주요 특징

1. 총액결제시스템과 혼합형결제시스템 구분

한은금융망은 순수 총액결제방식만이 적용되는 총액결제시스템과 순수 총액결제방식과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방식이 모두 적용되는 혼합형결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총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 대출 및 상환, 국공채 거래와 관련된 대금결제 등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자금결제업무를 주로 처리하면서 차액결제, 지정시점차액결제 관련 예약자금이체, CLS자금이체 등도 처리한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빈번한 상호 거래로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에 적합한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 자금이체 포함), 콜자금 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한국은행과 RP거래 결제 포함) 등 주로 참가기관간 자금결제 업무를 처리한다.

2. 예금계좌별 대상거래 구분

과거 한은금융망에서 금융기관은 1개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모든 거래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혼합형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 당좌예금계좌 외에 결제전용예금계좌가 추가되어 현재는 2개의 예금계좌로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두 계좌의 역할은 시스템별로 구분되어 당좌예금계좌는 총액결제시스템의 결제계좌로, 결제전용예금계좌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의 결제계좌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계좌별 처리대상 업무는 <표 9-3>과 같다.

<표 9-3> 결제시스템 및 결제계좌별 대상업무

결제시스템 (결제계좌)	대상 업무	결제 방식
총액결제시스템 (당좌예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기관내(본지점간 · 지점간 · 계좌간) 이체 • 외환동시결제(CLS)자금 이체 • 차액결제, 차액결제시점 예약자금 이체 • 국고자금 수급 • 통화안정증권 및 국채 발행 · 상환, 국공채 매매, 현금입출금, 당좌차기, 한국은행 대출 • 한은금융망 전문 입력 종료시각(17:30) 후 일종당좌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 등 	순수 총액결제
혼합형결제시스템 (결제전용예금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관간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 자금이체 포함) • 콜자금 이체 • 증권대금 동시결제(한국은행과의 RP 포함) • 한국은행의 증권 커스터디 업무 이용기관과의 증권 매매대금 결제 • 일종RP 공급 및 상환 	순수 총액결제,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3. 지급지시 유형 구분

한은금융망 혼합형결제시스템의 지급지시 유형은 신속지급지시와 보통지급지시로 구분된다. 신속지급지시의 경우 대기파일에 다른 신속지급지시가 대기되어 있지 않고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충분하면 건별총액방식으로 즉시 결제된다. 다만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기파일로 이동되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처리된다.

참가기관은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래의 경우 보통지급지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새로 입력된 보통지급지시는 결제전용예금계좌에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단독으로 처리되지 않고 양자간 또는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으로 결제된다.

한편 시스템 마감시간대에는 결제유동성 절약보다 신속한 결제가 중요하므로 17시 이후

에는 신속지급지시 입력만 허용되며, 대기파일에 남아있는 보통지급지시도 17시 05분에 신속지급지시로 일괄 전환된다.

4.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 적용

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결제유동성 절약을 위해 적용하는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의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양자간 동시처리는 입력기관(A기관)이 신규 보통지급지시를 입력할 때마다 수행되는데 상대기관(B기관)의 대기 지급지시(신속 및 보통) 파일을 검색하고 해당 입력기관(A기관)의 지급지시를 추출하여 동시에 처리를 시도한다. 양자간 동시처리는 원칙적으로 신속, 보통지급지시 순으로 처리하며 신속지급지시는 선입선출법(FIFO), 보통지급지시는 우회선입선출법(By-pass FIFO)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동시처리 결과 유동성이 유입되는 기관은 보통지급지시를 신속지급지시보다 먼저 처리할 수 있고 신속지급지시에 대해서도 우회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양자간 동시처리로 유동성이 유출되는 기관의 예금잔액 부족 또는 순지급한도⁸²⁾ 초과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신규 입력된 보통지급지시는 결제되지 않으며 대기파일로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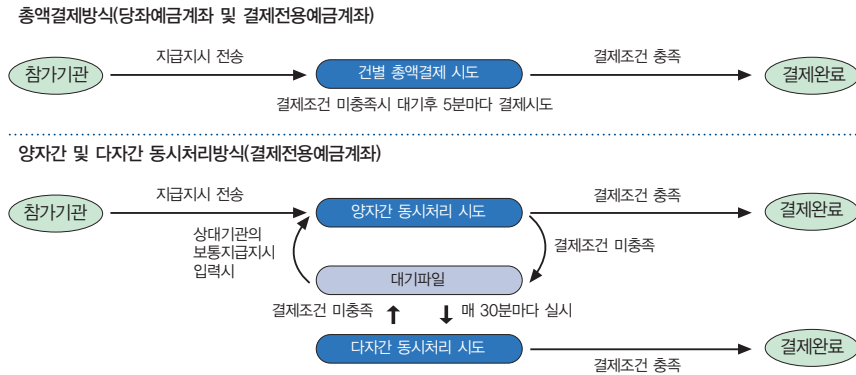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자간 동시처리는 기본적으로 30분 간격⁸³⁾으로 수행되는데 모든 참가기관의 대기된 지급지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한 기관별 예상 유출입액을 계산한 후 기관별 예금잔액과 순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지급지시 모두를 동시에 결제한다. 다자간 동시처리시에도 신속지급지시의 보통지급지시에 대한 결제우선 원칙이 유지되며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력시간순으로 결제한다. 예를 들어 다자간 동시처리시 특정기관의 예금잔액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 지급지시부터 순차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한편 혼합형결제시스템의 대상업무중 증권대금동시결제는 양자간이나 다자간 동시처리가 적용되지 않고 신속지급지시 및 총액결제방식으로만 처리한다.

82)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일중 순자금유출액의 상한을 의미한다.

83) 현재 한은금융망에서는 09:30~16:30 사이에는 30분마다, 이후에는 16:50분 및 17:20분에 다자간 동시처리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림 9-3〉 한은금융망 결제방식별 흐름도



5. 대기제도

대기지급지시는 총액결제시스템과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한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지급지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지시의 실행을 유보하였다가 5분 간격으로 대기파일에 대한 이체처리를 시도하여 우회선입선출에 따라 대기중인 지급지시를 처리한다.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의 대기지급지시의 처리는 보다 복잡한데 지급지시 유형별로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고 참가기관이 결제상황에 따라 대기순서 조정, 대기된 지급지시의 유형 변경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먼저 대기순서와 관련하여 지급지시가 결제전용예금 잔액 부족 등으로 결제되지 못하고 대기파일로 이동하는 경우 보통지급지시가 신속지급지시보다 조기에 입력되었다 하더라도 신속지급지시보다 후순위에 대기된다. 동일 유형의 지급지시인 경우에는 입력시간 순서대로 대기파일에 위치하게 된다. 대기된 지급지시의 처리에 있어 신속지급지시는 상대기관이 신규 보통지급지시를 입력할 때마다 양자간 동시처리를 통해 결제되거나 일정 시간(30분)마다 다자간 동시처리를 통해 결제될 수 있다. 또한 결제전용예금 잔액 증가, 1순위 대기순서 조정, 대기 지급지시 유형변경(보통→신속)과 같은 상황변동이 있을 때마다 대기된 신속지급지시에 대하여 선입선출방식을 적용하여 총액결제를 시도하게 된다. 대기상태에 있는 보통지급지시는 양자간이나 다자간 동시처리를 통해서만 결제될 수 있다. 보통지급지시가 신속지급지시와 함께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속지급지시보다 후순위로 해소되나 양자간 동시처리 결과 유동성이 유입되는 상

황에서는 신속지급지시보다 먼저 대기해소가 가능하다.

혼합형결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대기된 지급지시를 관리함에 있어 결제완급 조절, 결제유동성 절약 등을 위하여 대기된 보통지급지시를 신속지급지시로 변경하거나 대기된 신속지급지시를 보통지급지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대기중인 신속 및 보통지급지시의 대기순서를 해당 지급지시 유형 내에서 결제중요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6. 순지급한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자신의 보통지급지시 처리에 따른 결제전용예금의 일중 순지급 유출액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순지급한도라고 한다. 참가기관이 신규 입력한 보통지급지시에 대하여 양자간동시처리 수행시 결제전용예금 잔액이 충분하더라도 일중 순지급규모가 사전에 설정된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면 결제되지 않고 대기파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대기파일에 대기되어 있는 지급지시를 대상으로 다자간 동시처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일중 순지급규모가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면 결제되지 않는다. 순지급한도를 초과하는 보통지급지시는 결제되지 않으므로 참가기관은 결제유동성이 일정규모 이상 유출될 염려 없이 지급지시를 조기에 입력할 수 있다. 순지급한도는 특정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양자간 순지급한도와 전체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총순지급한도 두 종류가 있다. 양자간 순지급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보통지급지시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특정 개별 참가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순지급액을 의미하며, 총순지급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보통지급지시로 혼합형결제시스템을 통해 여타 모든 참가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순지급액을 말한다.

7. 지정시점처리제도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일중에 신청하는 거액의 자금이체는 접수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금융결제원이 다자간 차액결제금액을 산출하여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차액결제업무와 상환기일이 명시된 콜자금의 상환, 금융기관이 수납한 국고자금 회수 등은 지정된 특정시점에 처리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참가기관이 서로 연결되는 대량의 거래를 특정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결제

업무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은금융망의 업무별 지정처리시점은 <표 9-4>와 같다.

지정시점처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처리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표 9-5>와 같이 결제순위를 미리 정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시간대별 자금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액결제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액결제용 예약자금이체를 차액결제와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실시간총액결제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표 9-4> 한은금융망의 지정처리시점

구 분		처리시점	처리계좌
차액결제	① 어음교환시스템(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교환 포함)	11 : 00	당좌예금 계좌
	② 지로시스템		
	③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④ 타행환공동망		
	⑤ 직불카드공동망		
	⑥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⑦ 지방은행공동망		
	⑧ 전자화폐(K-CASH)공동망		
	⑨ 기업·개인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⑩ 전자금융공동망		
	⑪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⑫ 국가간ATM망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14 : 00	
콜자금 상환	오전 반일물	14 : 05	결제전용 예금계좌
	오후 반일물	16 : 05	
	1일물 이상	11 : 05	
차액결제용 예약자금이체 거래 실행		11 : 00	당좌예금 계좌
외화자금 예치		16 : 00 ¹⁾	

주 : 1) 일본엔화에 대한 자금예치는 익일 09:30분

<표 9-5> 지정처리시점에서의 결제순서

처리순위	처 리 대 상 거 래
1순위	참가기관간 차액결제, 차액결제참가기관간 및 차액결제참가기관 본지점간 예약자금이체
2순위	1순위의 예약자금이체를 제외한 다른 예약자금이체
3순위	국고금 수납자금 회수

제3절 한은금융망 취급 업무

한은금융망 취급 업무는 자금결제업무(한은금융망을 통한 업무)와 기타업무(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금결제업무로는 참가기관간 또는 같은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원화 및 외화 자금의 실시간 총액결제, 참가기관간 원화 및 외화자금의 지정시점 차액결제, 한국은행과 참가기관간 원화 및 외화 자금의 결제가 있다. 기타업무로는 국공채 발행 및 상환, 한국은행 대출 등이 있다.

1. 원화자금이체

원화자금이체는 참가기관간 또는 같은 참가기관의 예금계좌간 통상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일반자금이체, 직접 또는 중개에 의한 콜거래 정보를 근거로 콜자금의 공급 및 상환결제를 처리하는 콜자금 결제, 개인 및 기업이 참가기관을 경유하여 거액의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장내외 채권거래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 축소를 위해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증권대금동시결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자금이체)

일반자금이체는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및 각 지역본부에 개설되어 있는 결제계좌(당좌예금계좌,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 또는 이들 본·지점간에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참가기관은 콜자금, 채권매매자금, 외환매매자금 등 자금의 성격에 구분없이 일반자금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콜자금 결제)

콜자금 결제는 콜거래 중개회사와 한은금융망을 연계하여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콜거래 공급 및 상환자금을 결제하는 업무이다.

2010년 2월 콜결제 일관처리방식의 도입으로 콜거래 중개기관의 콜체결 정보가 한은금

용망을 통해 집중되고 참가기관 앞으로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에 따라 콜거래 공급자금 및 상환자금 결제가 금융기관의 결제정보 재입력과정 없이 처리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결제되는 콜거래 정보도 파악할 수 있어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단기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콜거래 공급자금이 일관처리방식으로 결제되는 경우 만기일 11:05분에 참가기관의 별도 지급지시 없이 자동적으로 상환결제가 처리되기 시작한다. 동 시점에 참가기관의 결제전용 예금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자금이체와 마찬가지로 대기파일에 수록된다.

현재 대부분의 콜거래가 일관처리방식을 통해 결제되고 있으나 증권사 등이 콜머니기관 인 경우에는 콜자금 공급은 일반자금이체를 통해, 콜자금 상환은 콜어음 등을 통해 결제되는 경우도 있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일반 개인이나 기업 등이 참가기관을 통하여 거액자금을 간접적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참가기관이 고객의 자금이체신청을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로 처리할 경우 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과는 달리 금융기관간 결제를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다. 수취인지정 자금이체는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해 처리된다.

(증권대금동시결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여 먼저 결제를 이행한 거래기관이 결제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 1999년 11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우선 장외 채권거래 및 장외 환매조건부채권거래를 대상으로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이후 대상거래를 확대하여 2014년 9월말 현재 금융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간의 주식거래,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 콜거래, 어음매매거래,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거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 은행채·CD 발행거래, 장내주식 매매거래, 전자단기사채 발행·매매·상환거래 등이 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증권대금동시결제는 증권매매거래가 체결되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채권매

도자의 예탁자계좌에서 매수자의 예탁자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동시에 대금은 한국은행의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매수자→한국예탁결제원→매도자로 이체된다.

〈표 9-6〉 한은금융망의 증권대금동시결제 대상 확대

	DvP 대상
1999.11월	장외 채권 및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2001.10월	기관투자자간 주식 매매거래
2003.10월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담보콜거래
2004. 4월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거래
2011. 4월	은행채 · CD 발행거래
2011.11월	장내주식 매매거래
2012.12월	전자단기사채 발행, 매매 및 상환거래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교환차액이 계산되어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최종결제되는 차액결제대상 소액결제시스템은 12개⁸⁴⁾이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순차액포지션을 산출하여 한국은행으로 전송하고 한은금융망에서는 지정처리시점에 이를 해당기관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입출금 처리한다.

2. 외화자금이체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외국환은행의 외화예수금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간에 미달러화 및 일본엔화 표시의 외화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외화자금이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참가기관간 외화자금이체, 참가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 및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계좌에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업무로 구분된다.

84) 차액결제대상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 B2C 및 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외화자금이체)

참가기관간 외화자금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이체는 이체를 의뢰한 기관의 외화예수금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수취할 기관의 외화예수금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외화예수금계좌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금이체 신청내용을 대기파일에 수록하였다가 10분 간격으로 해당기관의 잔액을 확인하여 일괄 결제하고 있다.

한편 참가기관 본·지점간 외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국제국과 부산본부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수금계좌를 통하여 참가기관 본·지점간에 외화자금을 이체시키는 업무이다.

(외화자금 예치 및 인출)

외화자금 예치는 참가기관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외화예수금계좌에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업무이다. 미달러화의 예를 들면, 신청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외화자금 예치를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마감시간(15시 55분)까지 모아서 지정처리시점(16시)에 일괄 처리한다. 이는 미달러화자금 예치가 한국은행의 환거래은행인 도이치뱅크스트루스트은행 뉴욕(DBTC, NY)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뉴욕간의 시차로 인하여 실제 달러화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의 장부상 당일 예치된 자금이 당일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외화자금 인출은 금융기관이 외화예수금계좌에서 외화자금을 출금하는 업무로서 미달러화의 예를 들면, 신청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외화자금 인출을 신청하면 마감시간(15시 55분) 이내에서 신청 즉시 처리된다.

엔화자금의 예치 또는 인출은 전일 13시 30분까지 신청을 받아 당일 09시 30분에 결제처리하며, 실제 엔화자금의 입·출금은 한국은행의 환거래은행인 도쿄미쓰비시은행 동경(BOTM, TK)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미달러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의 매입활성화를 통한 국내 수출업체의 상품대금회수 안정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외화차액결제업무를 한은금융망 취급업무에 추가하고 외화예수금계좌를 통해 오전 11시 동 업무에 따른 차액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3. 국공채 발행 및 상환

한은금융망 국공채 발행 및 상환 업무는 국공채 발행, 질권등록, 등록명의 변경(양수도), 환매 및 만기상환, 그리고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로 구성된다.

한은금융망을 통한 국공채의 발행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각종 국공채를 매입하는 기관이 그 대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 국공채를 인수하는 업무이다. 국공채 경쟁입찰결과 국공채를 낙찰받은 금융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국공채 매출 발행을 신청하게 되면 국공채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금결제와 동시에 해당 국공채를 한국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게 된다. 한편 국공채는 입찰신청, 낙찰자 결정 등 국공채의 발행에 따른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입찰방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국공채의 질권등록은 등록 국공채 보유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질권, 전질 또는 기타 담보에 관한 상황을 등록하는 업무이다. 등록 국공채 보유기관이 등록된 국공채를 담보로 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질권 등록을 청구한다. 질권이 설정된 국공채는 질권이 해지될 때까지는 이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이 국공채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한국은행 대출금의 상환 등 질권 등록 말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질권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국공채 등록명의 변경은 등록 발행된 국공채가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등록 명의를 변경하는 업무이다. 국공채를 등록한 기관이 등록된 국공채를 양도할 경우 양수도를 청구하게 되며 이때 국공채 양수도 자금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기관과 양수기관이 모두 한은금융망을 통해 대금결제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입력시켜야 한다.

한편 양수기관의 당좌예금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양수도가 실행되지 않고 일단 대기파일에 수록되며, 마감시간까지 잔액부족이 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도 청구가 취소된다. 자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국공채만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수기관의 승인 절차 없이 양도기관 단말기의 입력만으로 양수도를 실행할 수 있다.

국공채 환매는 등록된 국공채를 만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업무로서 환매대상기관은 전용 단말기에 환매신청내용을 입력하여 환매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기관의 환매청구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채권원리금이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환매대상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다. 또한 기한이 만료된 등록 국공채의 상환시에도 상환당일 등록국공채 보유

기관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국공채의 상환을 신청하면 원천징수 후의 원리금이 해당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다.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는 단기 유동성 조절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또는 정부보증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각 또는 매입하는 업무이며 매매방법으로는 경쟁입찰방식과 상대매매방식이 있다.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의 업무처리절차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입찰신청, 매매계약체결, 채권의 양수도 및 대금결제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2006년 4월부터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으로 결제처리하고 있다.

4. 한국은행 대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참가기관들로부터 대출신청서와 담보증권 제공신청서를 온라인방식으로 전송받아 심사하고 대출 실행 및 만기 회수 등의 자금결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참가기관이 지방중소기업지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대출한도 배정기준이 되는 여신취급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업무는 온라인방식 또는 일정기간동안 취합된 대량의 자료를 파일단위로 송수신하는 파일전송(file transfer) 방식에 의해 처리한다.

제4절 일중 일시결제부족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부족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중당좌대출 및 일중RP 제도를 통하여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와 이를 매개로 하는 기업간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 금융기관의 당좌예금 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당좌예금 평잔의 1배(2001년 7월부터는 2배)를 대출한도로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6년 9월부터는 동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9-7>과 같다.

〈표 9-7〉 일중당좌대출제도의 주요 내용

근거규정	「한국은행법」 제64조 ¹⁾ , 제81조의 2 ²⁾
지원대상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고 한은금융망에 가입한 금융기관
지원방식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 실행되고 당일 중 회수
지원한도	담보인정가액 ³⁾ 범위내, 일중당좌대출의 과도한 의존으로 결제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
적격담보	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 및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함)
대출금리	0%, 다만 자유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차감한 이자를 징수
상환조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17:50)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의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

주 : 1)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2) 「한국은행법」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①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중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시장가격의 94~98%
 ②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중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액면가액(할인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의 80%
 ③ 어음 등 신용증권은 대출원금의 70%

2. 일중RP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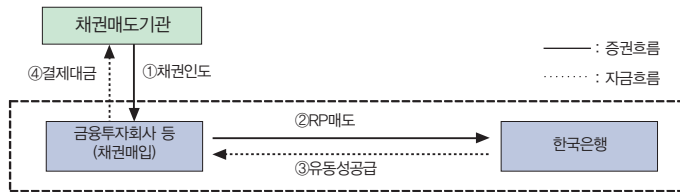
일중RP제도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되는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조기화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 증권매매(RP)방식을 이용하여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일중RP제도는 금융투자회사 등이 매입계약을 체결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RP방식으로 직접 매입하여 일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 중 동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일중당좌대출이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결제자금의 종류 구분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일중RP제도는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에 대해서만 국채, 통화안정증권 등 특정 채권의 매수거래에 한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해당 영업일 중에 일중RP 지원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기관은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의 일중RP제도의 주요 내용은 〈표 9-8〉과 같다.

〈표 9-8〉 일중RP제도의 주요 내용

근거규정	「한국은행법」 제81조의2
지원대상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 중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¹⁾
지원방식	RP매입을 통한 자금지원 및 당일 중 환매거래를 통한 회수(일중RP방식)
지원한도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한국거래소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정하지 않음 ²⁾
대상증권	당일 결제대상인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국채, 정부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 중 한국은행이 해당 영업일에 전영업일의 시장매매가격, 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 등에 관한 정보를 한은금융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권
상환조건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기관은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

주 : 1) 연 1회 선정하여 1년간(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연도 7월까지) 적용한다.
 2) 국채전문유동시장장내국채시장)의 중앙거래당사자(CCP) 역할을 하는 한국거래소는 증권결제 원활화를 위해 모든 적격채권 매수거래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림 9-4〉 RP방식에 의한 일중유동성 공급 구조¹⁾



주 : 1) 채권인도로부터 RP 및 최종 결제자금 지급(①~④)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동시에 실행

제5절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관리

1. 참가기관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재무건전성 기준, 한은금융망 예상 이용건수, 자금이체업무 담당 전문인력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표 9-9〉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구 분	가 입 기 준
당좌예금거래약정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
재무건전성 기준	가입신청일 직전 회계연도말의 재무건전성이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예상 이용건수	가입 이후 1년간 월평균 50건 이상
전문인력수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¹⁾ 사용자 2명, 단말기 ²⁾ 사용자 2명 등 총 4명 이상 이어야 하며 동일인 겸무 금지
기타	탈퇴후 3년 이내 재가입 불허

주 : 1)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중 권한이 부여된 자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생시키는 기기
2)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에 등록된 참가기관의 PC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가동 초기의 115개 기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158개 기관에 달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그 수가 감소하여 2014년 9월말 현재 133개 기관(은행 56개<국내은행 18개, 외은지점 38개>, 비은행 77개<금융투자회사 51개, 보험회사 11개, 종금사 1개, 기타 14개>)으로 줄어들었다.

2. 운영시간

자금이체신청 전문의 입력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나 한국은행 지역본부 관할 내 참가기관 결제모점의 자금이체를 위한 전문 입력 종료시각은 17시까지이다. 또한 일증당좌대출 상환자금을 입금하기 위한 자금이체신청 전문은 17시 50분, 자금조정예금 입출금은 18시까지이다. 다만 동절기(10월 마지막 일요일부터 다음해 3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중 CLS은행이 이체의뢰기관 또는 수취기관이 되는 자금이체신청의 입력종

료시각과 동 자금이체와 관련된 일중당좌대출의 상환종료시각은 18시 30분이며 CLS결제와 관련된 자금조정예금 입출금은 18시 40분까지이다. 일중RP 방식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신청 및 상환은 각각 16시 및 17시 15분까지이며, 전자단기사채 상환 신청과 국채발행대금 입금 전문 입력 종료시각은 각각 14시 20분과 15시 50분이다.

〈표 9-10〉 한은금융망 운영시간¹⁾ 변경

시 기	변경내용
1994.12.15	09:30~16:30
1999. 1.15	마감시각 30분 연장(09:30~16:30 → 09:30~17:00)
2008.11. 3	마감시간 30분 연장(09:30~17:00 → 09:30~17:30)
2009. 4. 1	개시시각 30분 조기화(09:30~17:30 → 09:00~17:30)

주 : 1) 자금이체 입력시간 기준

한편, 한은금융망의 장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가기관의 전산장애 및 시중자금 경색 등으로 대규모 또는 다수의 자금결제가 지연되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금이체신청 전문 입력시간을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이용수수료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는 월간 정액수수료(10만원)에 건당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 건당수수료는 ① 16시 이전 ② 16시 후~17시 30분 이전 ③ 17시 30분 후 3단계로 구분하여 16시 이전에 결제 완료되는 자금이체거래에 대해 가장 낮은 이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6절 거액결제리스크의 관리

중앙은행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할 때에도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법률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시스템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 결제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금융위기 등에 따른 충격을 잘 흡수하고 특정 거래 또는 특정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지급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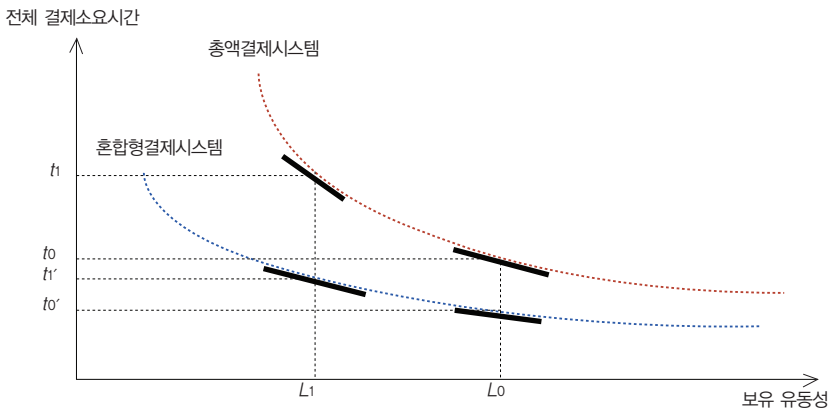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근간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여 결제와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왔다. 또한 법규 미비 등으로 결제완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이나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률리스크에 대비해 왔다. 특히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이 발효되어 한은금융망이 파산절차상의 예외대상으로 인정됨으로써 한은금융망의 결제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2009년 4월부터 새로운 한은금융망을 가동하면서 결제리스크를 더욱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은금융망에 도입된 혼합형결제방식의 경우 실시간총액결제방식과 같이 신용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제유동성 절감기능을 통해 유동성리스크와 시스템적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9-5>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결제시스템 내의 보유유동성 수준과 결제시간과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유동성 수준이 동일하다면(예: L_1) 보다 적은 유동성으로 많은 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혼합형결제시스템의 전체 결제소요시간⁸⁵⁾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보다 짧다($t'_1 < t_1$)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동성 수준이 낮아질수록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여 결제시스템의 전체 결제소요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보다 이러한 결제소요시간 증가정도가 작다. 왜냐하면 혼합형결제시스템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보다 부족한 상황에서 동시처리(상계결제)를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스템내 유동성 감소시($L_0 \rightarrow L_1$)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보다 신속하게($t'_1 - t'_0 < t_1 - t_0$)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혼합형결제시스템

85) 개념적으로 일중 시스템에서 결제해야 할 자금이체 거래가 모두 처리완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지표화 한 것으로 금액가중 평균결제완료시간을 들 수 있다.

의 유동성리스크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보다 낮고,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적리스크의 발생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혼합형결제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유동성 수축기에 보다 적은 유동성만으로 결제가 가능하여 결제지연이나 결제 교착에 따른 금융시장내 불안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참가기관의 입장에서 결제자금 소요액 감소로 반일물품 이나 일중당좌대출 등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조달비용도 줄어들어 자금운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하겠다.

〈그림 9-5〉 결제시스템의 보유 유동성수준과 결제소요시간과의 관계



혼합형결제시스템 가동이후 한은금융망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입된 서버간 직접접속방식 및 콜결제 일관처리의 경우 참가기관들이 대량의 자금이체 거래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누락이나 오류입력 등의 운영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이밖에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운영과 관련한 업무지속계획(BCP)을 수립하고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지급결제관련 규정 개정시 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한은금융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체 평가하는 등 결제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고 9-2〉

한은금융망의 업무지속계획

1. 업무지속계획의 체계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한은금융망 비상계획」이라는 명칭으로 1999년 최초로 수립되었으며 2005년에 한은금융망 업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위험예방 및 사후대응에 중점을 둔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은 기본계획, 팀별 업무지속계획, 참가기관용 업무지속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정책, 전략 등 기본사항, 비상상황별 대응·복구계획, 모의훈련 및 유지·보수계획, 비상연락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업무지속계획은 수작업지침, 비상연락망, 대체수행자 명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기관용 업무지속계획에는 참가기관 입장에서의 비상상황별 행동지침, 모의훈련 계획 및 비상연락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지속계획의 영역 및 비상상황)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영역은 인지된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예방 영역과 물적, 인적 재해 단계별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대응·복구계획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한은금융망 업무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현행 위험예방대책을 평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비상상황은 2005년에 물적재해(기술적 장애, 인위적·자연적 재해)에 의한 비상상황을 종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을 계기로 물적재해에 의한 비상상황과는 별도로 인적재해(질병재해)에 의한 비상상황을 구분하였다.

비상상황의 구분

[물적재해]

구분	내용
상황Ⅰ	참가기관 단말기, 주전산기 또는 통신회선에 장애 발생
상황Ⅱ	한은금융망 중계기기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 발생
상황Ⅲ	한국은행 주전산기 관련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장애 발생
상황Ⅳ	한국은행 주전산센터의 한은금융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
상황Ⅴ	한국은행 주전산센터 및 전산백업센터의 한은금융망 관련 전산기기 등에 전면 장애 또는 재해가 장기간 지속
상황Ⅵ	한국은행 본부에 재해 발생
상황Ⅶ	한국은행 본부와 제1대체근무장소에 재해가 동시에 발생

[인적재해]

구 분	내 용
상황A	결제업무담당 직원중 소수(20% 미만)가 전염병 등에 감염
상황B	결제업무담당 직원중 일부(20~50% 미만)가 전염병 등에 감염
상황C	결제업무담당 직원중 상당수(50% 이상)가 전염병 등에 감염
상황D	결제업무담당 직원중 일부가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해당 사무실내의 모든 직원이 격리
상황E	결제업무담당 직원중 일부가 전염병 등에 감염된 데다 해당 사무실도 감염지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통제

(긴급운영체제 및 운영전략)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요 의사결정 및 비상대응·업무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실무위원회 등의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① 복구조직의 구성 및 복구인력의 백업(인력), ② 비상시 대연론 대응 및 대내외 의사소통(의사소통), ③ 대체근무장소내 전화 및 네트워크 통신 회선 설치(통신), ④ 주요문서 및 기록의 유지 관리(문서/자료), ⑤ 대체근무장소, 업무공간과 복구자원 확보(시설/자원) 등 5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장애 및 재해 발생시 참가기관 행동지침, 업무전환 결정사항 통보 등의 긴급연락을 위하여 참가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지급결제업무 관련 30개 단위업무 중 복구목표시간내 복구되어야 할 8개 업무를 지정하고 단위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팀 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다. <상황Ⅵ>과 <상황Ⅶ>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으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업무재개에 필요한 업무 설비가 구비된 대체근무장소도 운영 중에 있다.

(모의훈련)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취약점 파악 및 지급결제업무담당 직원들의 비상대응능력 제고 등을 위하여 여러 유형의 모의훈련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 세미나」에서는 업무지속계획,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식 모의훈련」에서는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회의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종합모의훈련」에서는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업무지속계획에 따른 상황별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종합모의훈련은 비상상황별로 훈련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하는데 물적재해 <상황Ⅰ>의 경우 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단말접속전환훈련을, <상황Ⅲ>, <상황Ⅳ>의 경우 전산지원부서 주관하에 비상대응·복구훈련을 실시한다. <상황Ⅱ>의 경우에는 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전산인력대행훈련 및 전산지원부서 주관하에 비상대응·복구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상황Ⅴ>의 경우 한은금융망 운영부

서 주관하에 수작업 훈련을, <상황Ⅵ>, <상황Ⅶ>의 경우 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대체근무지로 이동하여 업무복구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인적재해 <상황C>, <상황D>, <상황E>의 경우에는 한은금융망 운영부서 주관하에 대체근무직원의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 BCP 연계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동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수가 증가하면서 주요 참가자로 거래가 집중되고 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성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비상상황이 여타 연계된 시스템으로 전이되면서 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증대되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테러, 고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의 비상상황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급결제 관련 비상상황 발생시 중요지급결제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간 BCP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동일한 비상상황에 대하여 연계되어 있는 운영기관의 BCP에 대응방안이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거나, 한 기관의 BCP에만 대응방안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 실제 위기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 운영기관의 BCP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합동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고 9-3〉

국고전산망

(국고전산망의 가동)

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납부하는 국세 등의 국고금을 수납하여 정부예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정부가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정부예금에서 출금하여 채권자(국민)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종래 2002년까지 국고금 수납업무는 한국은행, 금융기관(국고대리점), 정부가 각각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¹⁾하였으며, 국고금 지급의 경우 정부가 채권자 등에게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국고수표를 교부하여 지급을 하면 채권자 등은 교부받은 국고수표를 지급점에 제시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금융IT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라 국고업무의 취급에 있어서도 IT기술을 접목하여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국고금 수급시스템의 개발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전산망 구축에 착수하여 2003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2004년 4월에는 모든 국고업무가 국고전산망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고전산망의 가동으로 국민들은 대정부 납품대금, 공사대금 및 관세환급금 등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관서는 국고수표, 월계대사표 등의 수령을 위한 국고대리점 방문이 불필요해지고 국고수표 발행·관리에 따른 불편 및 리스크가 없어지는 등 업무개선 효과를 얻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 발행·회수, 관세·석유수입부과금환급 및 과오납반환 등의 업무가 폐지되고 금융기관의 국고금 지급업무 취급 국고대리점이 전면 폐지되어 관련 인건비 및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등 국고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국고전산망의 특징 및 업무내용)

우리나라는 국고금 수급시 월계대사라는 특수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월계대사는 정부관서의 월별 수입, 지출내역과 한국은행의 수입, 지출내역을 상호 대조 확인함으로써 정부의 경리결과와 한국은행의 출납내역간 상호 대사로 하여 국가 회계경리제도의 엄정을 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고전산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고금 수납업무와 국고금 지급업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국고금 회계처리, 월계대사 및 동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도 모두 국고전산망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실시간 송수신 업무, 파일 송수신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로납부, 월계대사, 자금계획 배정 등의 업무는 실

주 : 1) 국고금을 수납한 국고대리점은 그 수납내역을 각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취합하여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으로 전송하였다. 한국은행은 자체 수납한 국고금 수납내역에 국고대리점 수납내역을 추가한 국고금 영수내역을 매일 출력하여 정부관서로 송부(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일부부처는 별도의 보고서 송수신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송)하였다.

시간 송수신 업무이며, 세입금 영수내역, 국세환급금 지급, 국고예금 취급실적, 대차대조표 등 대정부 보고서 등의 업무는 파일 송수신 업무이다.

국고전산망 처리업무 현황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실시간 송수신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출금, 관세환급금,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과오납 반환 등
	한국은행 계좌입금	
	지로납부	
	월계대사	수입금, 지출금
	자금계획 배정	
	수입금 정정	
	지출(반납금) 정정	
	국고계정 상호간 대체	계정·계좌 잔액 조회
파일 송수신	세입금 영수내역, 국세환급	정정보 포함
	국고예금 취급실적	
	국고예금 계좌 신설·폐지 내역	
	대차대조표 등 대정부보고서	
	국고대리점 신설·폐지 현황	
	수입징수관·지출관 계좌 신설·폐지 현황	
	국고금 결제내역	수납분, 정정분
	부가국세 및 국세수납정리계정 이체내역	
	국세 오납정정	

(국고전산망의 운영)

국고전산망 참가기관은 국고업무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한국은행과 국고전산망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관으로 2014년 9월 현재 22개 금융기관과 우체국, 금융결제원, 기획재정부 등 25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실시간 송수신 업무의 처리시간은 한국은행의 영업일 09시부터 16시

까지이며 정부의 요청, 전산망 장애 발생 등의 경우에는 이용시간이 일부 연장된다. 파일 송수신 업무는 금융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시간을 정하고 있는데 실시간 송수신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가급적 실시간 운영시간을 피하여 취급하고 있으나 국세환급금 지급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시간 운영시간 중에 처리하고 있다.

제10장 소액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179
제2절 어음교환시스템	182
제3절 지로시스템	189
제4절 금융공동망	197
제5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217
제6절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220
제7절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226

제1절 개요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에는 다수의 은행이 관련되어 은행간 자금결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갑이 A은행을 통해 B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는 을에게 송금을 하였다면, B은행은 을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지급한 자금을 A은행에 청구하게 된다. 이때 은행간 자금결제는 소액의 대량지급을 대상으로 하게되므로 일정기간(통상 영업일)동안 은행간 거래에 따른 대차(貸借)금액을 모두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이 주로 이용된다.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으로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은행간 결제시스템이 없다. 은행계 카드는 카드회사가 매일의 은행간 결제차액을 계산하면 각 은행이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전문회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제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어음교환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차액결제가 이루어진 후 수취인에 대한 지급이 허용되므로 은행간 신용공여(overnight credit)가 발생하지 않으나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 ATM공동망 등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은행간 차액은 다음 영업일에 결제되므로 은행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이들 시스템은 모두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이므로 참가은행이 차액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그 영향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시스템적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9월 한국은행은 참가기관 순채무한도의 설정, 사전담보 납입, 담보로 충당되지 않는 손실에 대한 공동분담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0-1〉

주요 소액결제시스템

구 분	결 제 대 상	도입연도	결 제 방 식
어음교환시스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1910	장표방식
지로시스템	대량 자금이체	1977	장표 및 전자 방식
CD공동망	예금인출,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1988	전자방식
타행환공공동망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를 통한 송금	1989	전자방식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 사용대금 이체	1996	전자방식
CMS공동망	대량 자금이체	1996	전자방식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한 송금	1997	전자방식
전자화폐공동망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송금	2001	전자방식
국가간ATM공동망	현지통화 인출	2010	전자방식
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지급결제	2002	전자방식
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 소액 전자상거래 사용대금 이체	2000	전자방식

〈참고 10-1〉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미국)

ACH(Automated Clearing House)는 연금지급 및 공공요금 납부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대량거래 관련정보를 일괄처리방식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미국의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이다. ACH를 통해서 입금이체, 출금이체, 기업간 결제 관련 은행간 자금이체업무가 처리되고 있으며, 지역 별 ACH 운영주체는 12개 지역 연준(FedACH)과 Clearing House의 EPN(Electronic Payments Network)이다. 한편, 미 연준은 수표 등 장표거래를 처리하는 수표청산시스템(Cheque Clearing Systems)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대표적 소액결제시스템은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이다. BACS는 급여, 연금 등의 정기적인 경비와 기업거래대금 등 비정기적인 비용 등을 처리하는 입금이체 그리고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대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출금이체 등을 수행한다. 이밖에 인터넷뱅킹 및 폰

뱅킹 등을 통한 개인간 건별 즉시이체, 예약이체 등을 당일에 처리되는 FPS(Faster Payments Service) 시스템이 있다. BACS와 FPS는 각각 BACS Payment Schemes Ltd., FPS Ltd.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VocaLinks Ltd.에 아웃소싱되어 운영되고 있다.

(EU)

유로 지역에서는 유로화로 결제되는 소액 입금이체 및 출금이체를 처리하기 위해 STEP1이 2000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STEP1은 거액결제시스템인 EURO1과 동일한 플랫폼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도 EBA(Euro Banking Association) Clearing으로 동일하다. 한편 cross-border 입금이체를 처리하는 PE-ACH(Pan European Automated Clearing House)로서 STEP2가 200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STEP2는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프로젝트¹⁾에 따라 도입된 입금이체와 출금이체도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모든 장표기반 지급수단과 전자기반 지급수단을 처리하는 CORE(COMPensation REtail)가 운영되고 있다. CORE가 처리하는 장표기반 지급수단은 수표와 환어음이며, 처리정보는 실물교환 없이 전자적 정보교환을 통해 처리된다. 전자기반 지급수단은 입금이체, 출금이체, 카드결제 및 ATM을 통해 처리되는 출금거래 등을 포함한다. CORE는 5개 주요 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TET(Systèmes Technologiques d' Echange et de Traitemen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독일)

독일연방은행은 1970년대 초부터 소액결제시스템인 RPS(Retail Paymen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RPS는 비용효율적인 소액결제시스템으로서 간금을 요하지 않는 지급지시를 결제한다. RPS는 입금이체, 출금이체 및 수표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총액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신용리스크가 없으며 현재 약 220개 이상의 은행과 독일연방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여타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Zengin)은 금융기관의 고객간 자금이체, 급여 등의 대량지급 등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전은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1억엔 이상의 거액자금은 연계된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직접 처리된다. 전은시스템은 동경은행협회의 내국환운영기구가 1973년부터 운영하였으나 2010년 10월부터는 전은시스템 운영을 전담하는 회사로 새로이 설립된 Zengin-Net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 : 1) 유로 지역내 공동의 소액 지급수단, 표준 및 청산결제인프라 도입을 위해 소액결제관련 처리절차 및 제도의 표준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이다.

제2절 어음교환시스템

어음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수표 및 제 증서 포함)중 타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과 타 은행이 수납한 어음중 자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어음교환소라 한다. 어음교환제도는 어음·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부담 및 비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어음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어음교환소(현 서울어음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1910년 12월), 부산(1911년 4월), 대구(1921년 7월), 광주(1943년 5월), 대전(1944년 5월) 등 경제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지역이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개의 어음교환소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교환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어음교환소의 설치는 「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환에 회부할 수 있는 어음의 대상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의해 어음·수표 및 제 증서⁸⁶⁾로 정해져 있다.

어음교환금액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 다른 지급수단의 이용 증가로 200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12년도 이후에는 기존의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도입, 증권사 콜차입 규제에 따른 콜어음 발행 감소 등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13년중 어음교환금액은 일평균 97만건, 15조원을 기록하였다.

86) 환대금 청구서, 지방자치단체 공금수납금 영수증, 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수원·한국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발행 영수증, 감정수료영수증, 은행신용카드 차액결제대금영수증, 국민연금징수금영수증, 유가증권원리금영수증, 골자금결제통지서, 현송금영수증, 증권투자신탁업무관련 영수증, 사고환대금영수증, 부도어음대금영수증, 오류어음대금영수증, 기타 당사은행이 사전 합의한 정보교환 가능증서가 이에 해당한다.

〈표 10-2〉

어음교환시스템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	자기앞수표	2,512	2,025	1,653	1,217	953
	정액권	2,437	1,955	1,580	1,159	899
	(10만원권)	2,146	1,711	1,360	987	749
	비정액권	75	70	73	58	53
	약속어음 등	25	20	19	18	15
	기타	16	7	5	5	5
합 계		2,554	2,052	1,678	1,239	972
금	자기앞수표	3,242	3,088	3,061	2,364	2,020
	정액권	500	411	353	268	223
	(10만원권)	215	171	136	99	75
	비정액권	2,742	2,677	2,707	2,096	1,796
	약속어음 등	11,058	15,748	14,539	11,782	10,437
	기타	7,043	4,105	3,533	3,046	2,508
합 계		21,343	22,940	21,132	17,192	14,965

1. 참가기관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일반참가은행, 특별참가은행 및 대리교환참가은행으로 구분된다.

일반참가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 은행인데 이들 은행은 금융결제원 가입과 동시에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금융결제원의 사원 및 준사원 자격을 상실한 때 탈퇴하게 된다. 특별참가은행은 일반참가은행 이외의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위원회 심의와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우체국의 경우에도 특별참가은행으로 지정되어 어음교환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 참가은행 이외의 은행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은행과 동일시되는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반참가은행에 대리교환을 위탁함으로써 어음교환에 간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교환참가은행이라 한다. 2014년 9월 말 현재 어음교환시스템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 한국은행과 우정사업본

부(우체국), HSBC은행 국내지점, 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정책금융공사 등 27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고 10-2〉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

금융기관 수납장표의 전자정보교환제도(truncation)란 공과금 납부용지, 지로용지, 어음, 수표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하는 각종 장표를 표준화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장표 실물의 이동 없이 전산망을 통한 정보(전산데이터)의 이동만으로 교환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장표의 실물 이동 및 수작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 분실, 도난 등 사고 발생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게 되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는 2000년 5월 자기앞수표를 시작으로 대상 장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0년중 어음 및 기타 수표의 교환이 정보화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은 어음, 수표 및 장표지로의 교환업무를 모두 전자정보교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납장표 전자정보교환제도

단계	부 문	대 상 장 표	추진(시행)시기
1 단계	어음·수표	자기앞수표	2000.5월 서울, 2002.9월 전국
	지로장표	전화, 의료보험, 국민연금 OCR장표	2000.7월
		전기 OCR장표	2000.11월
		금융결제원 일반OCR장표	2004.12월
2 단계	어음·수표	어음, 기타 수표(당좌, 가계)	2009.4/4분기 서울 및 서울상호 교환지역, 2010.4/4분기 전국
	지로장표	국세, 지방세	각 소관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화사업 추진
		금융결제원 기타장표	2004.12월

2.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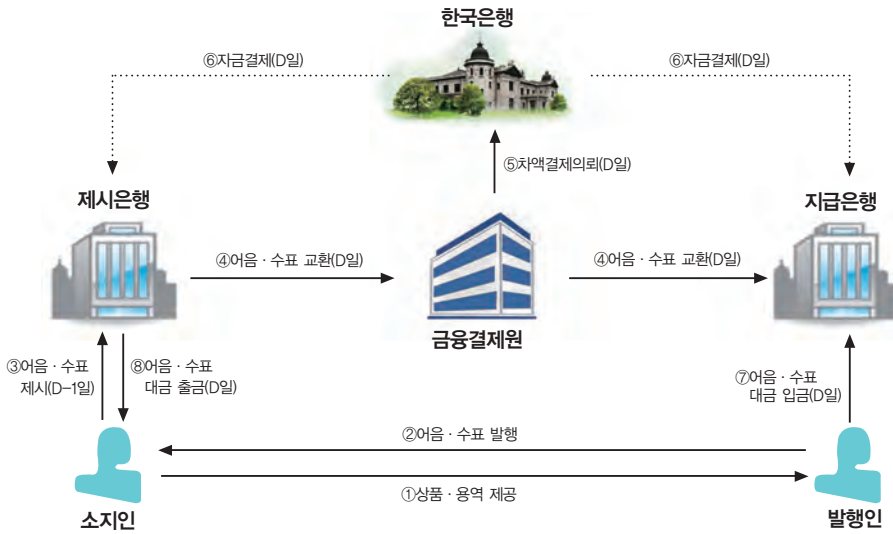
과거 어음교환은 각 참가은행의 어음교환원이 어음교환소에 모여 타 은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해당 지급은행 어음교환원에게 건네주고 자행이 지급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받은 후 이에 따른 교환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 전자정보교환제도가 모든 어음·수표 및 제 증서에 대하여 시행됨에 따라 현재 어음교환은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관련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

전자정보교환제도 하에서 어음·수표는 지급은행에서 전자정보 조회만으로 지급처리되므로, 기본적으로 전자정보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지급은행이, 전자정보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수납은행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지니게 된다. 어음실물은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에 의거 수납은행에서 원본 또는 전자정보로 5년간 보관하되 전자정보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규약에 의거 원본은 최소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음·수표를 수납한 은행(제시은행)은 각 수납점에서 자동인식기 등의 전산기기를 이용하여 수납내역을 전산데이터로 전환한 후 장표실물은 자체 보관하고 전환된 전산데이터만을 전산망을 통하여 본점의 주컴퓨터로 전송한다. 본점에서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근거로 어음·수표의 제시정보를 교환소인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각 은행의 제시정보를 지급은행별로 분류하여 각 은행별 지급정보를 작성한 후 결제일에 지급은행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제시정보와 지급정보를 종합하여 차액결제 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지급은행에 어음·수표 발행대금이 입금될 경우 자기앞수표는 12시 20분부터, 기타 어음·수표 등은 14시 20분부터 소지인의 출금이 허용된다.

〈그림 10-1〉

어음교환 업무처리절차



3. 관련 제도

(미결제어음의 통보 제도)

미결제어음이란 부도가 확정된 어음이 아니라 발행인의 지급자금 부족 등으로 결제일의 미결제통보시각(자기앞수표 12시, 기타 어음·수표 14시)까지 어음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한 어음을 말한다. 미결제어음 통보를 하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결제될 어음을 제시한 고객의 자금인출 시각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즉 제시은행은 동 시각까지 미결제 통보를 받지 않은 어음에 대해서는 20분 후부터 소지인의 출금을 허용한다. 동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결제일의 영업시간내에 어음대금을 인출하는 것이 곤란하였지만, 제도실시 이후에는 결제일 영업시간내에 인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어음의 부도 및 제재)

일반적으로 지급제시된 어음의 대금을 일정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부도라 한다. 다만 부도어음 발행자에 대한 제재상의 형평을 기하고 체계적인 부도관리 및 참가은행

의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구제시어음에 대해서도 교환제시어음과 동일하게 부도 및 제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어음·수표는 발행인과 은행 사이의 당좌예금약관을 통한 지급위탁계약에 의하여 발행인의 어음·수표 발행과 지급은행의 어음·수표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급은행은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수표의 지급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발행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어음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 때 지급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하고 있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는 부도사유를 11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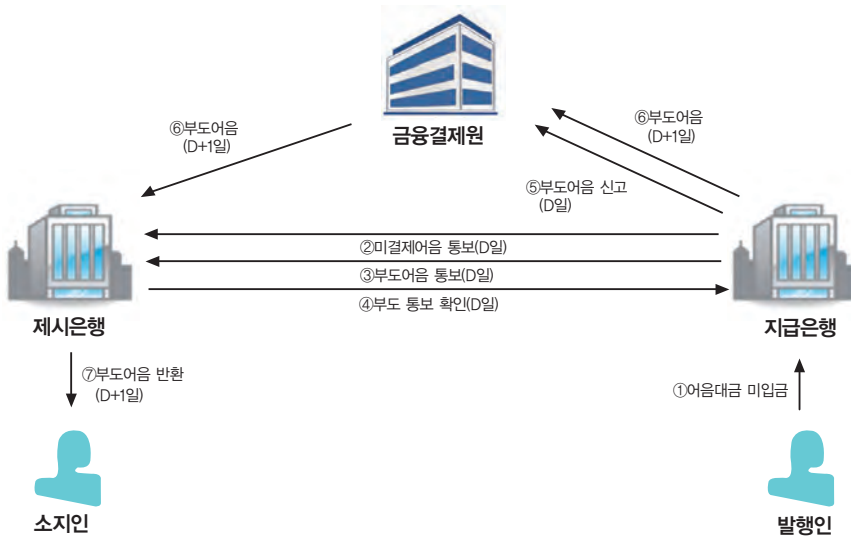
〈참고 10-3〉

어음의 부도사유

-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 무거래
- 형식불비
(법정요건 누락, 인감불선명, 정정인누락 또는 상이, 지시금지위배, 횡선조건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불비, 인수표시없음, 약정용지상위)
- 안내서 미착
- 사고신고서 접수(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
- 위조, 변조
- 제시기간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간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 제외)
- 인감·서명 상이(서명 상이는 가계수표의 경우 제외)
- 지급지 상위
-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

한편 교환제시된 어음의 지급은행은 부도어음 내역을 영업종료시각까지 제시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부도어음에 부도표시를 하여 소지인에게 반환한다. 부도통보한 지급은행은 부도어음대금영수증 제시정보를 일반어음의 제시정보에 포함하여 교환 익영업일 제시은행으로부터 부도어음대금을 회수한다.

〈그림 10-2〉 부도어음 업무처리절차



한편 금융결제원은 발행인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어음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결제하지 못한 경우 모든 참가은행에 대하여 그 발행인과 일정기간(2년)동안 당좌예금거래를 금지시키는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고 있다.

〈참고 10-4〉

거래정지처분 사유

-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부도어음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결제계좌 없는 어음의 발행
- 사고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명령을 받았으나 사고신고담보금 또는 지급정지가처분담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부도어음 대금을 입금하는 사례 등이 1년간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위·변조신고예수금 면제관련 증빙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년간 2회 이상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제3절 지로시스템

우리나라 지로제도의 효시는 1910년 도입된 우편대체계좌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 지로시스템은 1977년 2월 서울지역 전기요금 수납업무의 지로화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전기요금 수납 외에 제한적인 급여이체와 정부공사대금 등 국고 세출금의 채권자계좌이체를 취급해 오다 1981년 대상거래를 크게 확대하여 보험료, 상품판매대금, 각종 사용료, 학자금, 통합공과금 등의 대량수납업무를 대상업무에 편입하였다. 또한 급여, 연금, 배당금 등의 대량지급업무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보험료 등에 대한 자동이체업무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지로시스템의 골격이 형성되었다. 2000년 3월부터는 실물 지로장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지로서비스를 금융결제원 및 개별은행이 제공하고 있다.

지로 대상업무 및 실시지역의 지속적 확대로 지로이용실적도 급속히 증가하여 2013년중 이용 건수 및 금액이 일평균 558만건, 9,630억원에 이르고 이용기관수는 2014년 9월 말 현재 23,000여개에 달하였다.

〈표 10-3〉

지로시스템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4,223	4,610	4,836	5,467	5,584
장표지로	1,281	1,209	1,190	1,237	1,156
자동이체	2,567	2,914	3,173	3,753	3,922
대량지급	254	345	312	306	307
납부자자동이체	121	142	161	179	199
금액	620	691	787	915	963
장표지로	258	270	314	376	381
자동이체	220	249	286	343	368
대량지급	111	136	144	146	159
납부자자동이체	31	36	42	50	56

1. 참가기관

우리나라에서는 지로업무가 취급되기 시작한 1977년 2월부터 기존의 금융기관 전자계산소가 동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1977년 6월 은행지로관리소로 개칭되어 업무를 계속하다가 1986년 6월 이후에는 전국어음교환관리소와 통합되어 설립된 금융결제원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결제원은 전국의 금융기관 각 점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송부한 장표, 또는 지로 이용기관이 제출한 입·출금명세 등을 집중 처리하여 해당은행에 입·출금지시를 하는 한편 지로거래에 따라 발생한 금융기관간 차액대금의 결제를 한국은행에 의뢰하는 등 자료의 분류처리 및 자금결제 지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사원은행 및 준사원은행은 지로업무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원은행 또는 준사원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은 금융결제원 지로위원회의 심의와 사원총회의 승인으로 지로업무에 특별참가할 수 있다. 2014년 9월말 현재 어음교환시스템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뱅크오브아메리카 국내지점, BNP파리바은행 국내지점, 한국은행,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수협 회원조합,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금융투자회사 21개 등 48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기관은 고객에게 직접 지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 영업점 창구에서 지로이체의뢰서의 접수, 금융결제원과 지로거래자료의 접수 및 발송, 거래당사자 예금계좌에의 입·출금 처리 등 제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2. 업무의 유형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다.

(장표지로)

장표지로는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지로장표에 납부내용을 표시하여 납부대상 고객에게 송부하고, 고객이 금융기관(창구 및 전자수납매체⁸⁷⁾)에서 납부하면 각 금융기관의 수납금을 합산하여 수납명세와 함께 해당 이용기관의 계좌에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현재 장표지로를 이용한 대량수납거래는 전기·전화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보험료, 도시가스요금, 학자금, 상품판매대금, 회비, 사용료, 부금, 신문구독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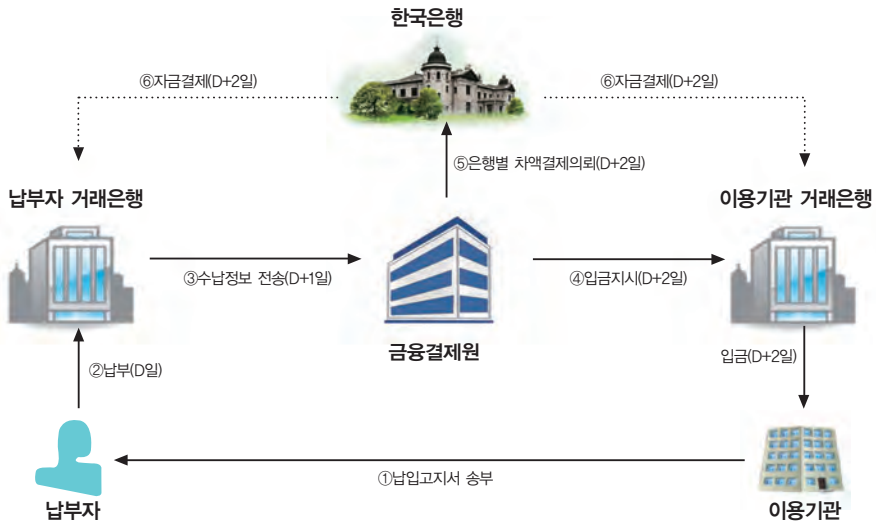
지로장표는 장표지로 이용기관이 발행하는 표준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장표, 일반OCR장표, 정액OCR장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장표 및 전자납부전용장표로 구분된다. 이용기관이 발행하는 장표는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장표 구비요건에 따라 인쇄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채널로 고지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장표지로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부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지로장표를 현금, 수표와 함께 금융기관 영업점의 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 수납한다. 납부자 거래은행은 수납정보를 작성하여 수납일 다음 영업일에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한편 이용기관의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장표지로 수납금 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수납금을 지로 이용약관에서 정한 입금일에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결제원은 납부자 거래은행이 작성한 수납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기일 기준으로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87) 전자수납매체에는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CD/ATM,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서이트(www.giro.kr)가 있다.

〈그림 10-3〉

장표지로 업무처리절차



(자동이체)

자동이체(direct debit)는 정기적으로 각종 대금을 수납하는 이용기관과 납부자 및 금융기관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납부자의 개별적인 이체의뢰 없이도 이용기관의 청구내역에 따라 일정금액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예금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업무이다. 자동이체의 대상업무는 현재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상품 판매대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장표지로의 수납대상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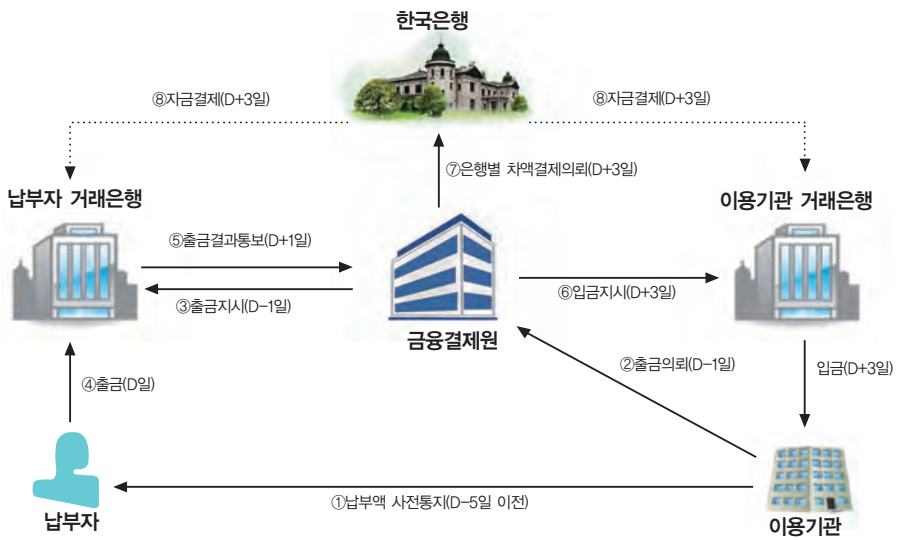
자동이체 이용기관은 지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영업점을 수납창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청구내역에 대한 결제여부를 통보받으므로 미납자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고 납부자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한 이체대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어 대량수납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납부자도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납부기일 자동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동이체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기관은 거래은행을 경유하거나 직접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용기관은 출금 청구내역을 해당월의 출금일 5일전까지 납부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출금 청구명세를 출금일 전 영업일까지 금융결제원에 제출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자동이체 출금청구자료를 확인하

고 납부자 거래은행별로 작성한 자동이체 출금지시명세를 출금일 전 영업일에 해당 은행에 전송한다. 납부자의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출금지시명세에 따라 영업마감시각을 기준으로 출금지시잔액을 출금하고 동 출금결과명세를 다음 영업일에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한편 이용기관의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전송한 지로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수납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결제원은 납부자의 거래은행이 전송한 출금결과명세를 종합하여 결제자료를 작성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그림 10-4〉

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납부자자동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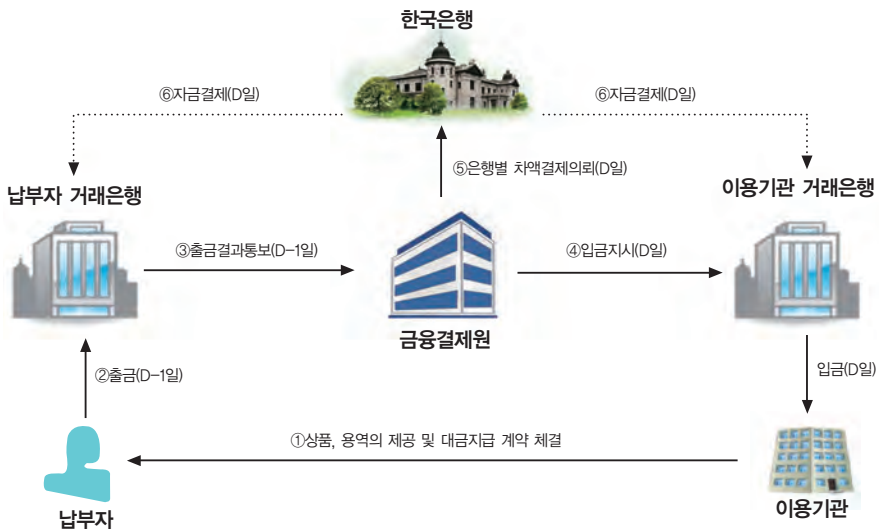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고객이 거래은행(급여이체계좌 보유은행 등)이 아닌 타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타 은행으로 자동으로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금이자, 주택자금대출금 또는 상호부금 급부금 등의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납부자자동이체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납부자는 거래은행에 이체금액, 이체일자, 수취은행, 입·출금계좌번호 등을 지정하여 납부자자동이체를 신청한다. 납부자의 거래은

행은 고객의 신청내용에 따라 고객계좌에서 출금하고 출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송받은 출금내역을 수취은행별로 분류하여 입금지명세서를 작성하여 동 내역을 수취인의 거래은행에 전송한다.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납부자자동이체 입금명세에 따라 이체자금을 이체일에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그림 10-5〉

납부자자동이체 업무처리절차



(대량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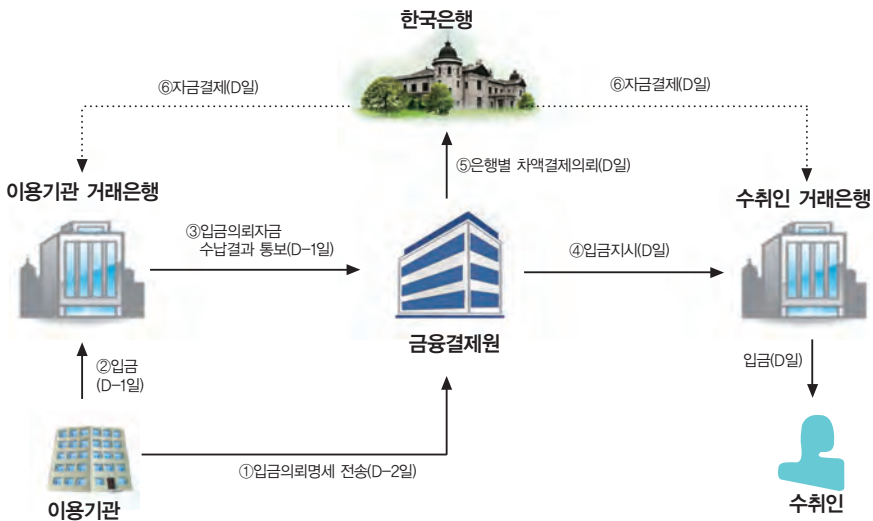
대량지급(direct credit)은 급여, 연금, 배당금 등과 같이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대량지급거래를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 이용기관의 예금계좌에서 다수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이다.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전국 모든 은행의 수취인 예금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대량지급의 업무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기관은 이체의뢰서와 입금의뢰명세를 이체지정일 2영업일 전까지 금융결제원에 제출하고 이체일 전영업일 영업마감시각까지 이체대금을 거래은행에 입금한다. 이용기관의 거래은행은 이체일 전영업일에 대량지급자금을 이용기관의 지로거래계좌에서 수납하며 그 결과를 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용

기관 거래은행이 전송한 대량지급자금 수납결과에 따라 수취은행별로 작성한 대량지급자금 입금지시명세서와 수납 및 지급집계명세를 이체일 전영업일 19시까지 수취은행에 전송한다. 수취인의 거래은행은 결제원이 전송한 입금지시명세에 따라 이체일 09시부터 출금이 가능하도록 수취인 계좌에 입금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차액결제자료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한다.

〈그림 10-6〉

대량지급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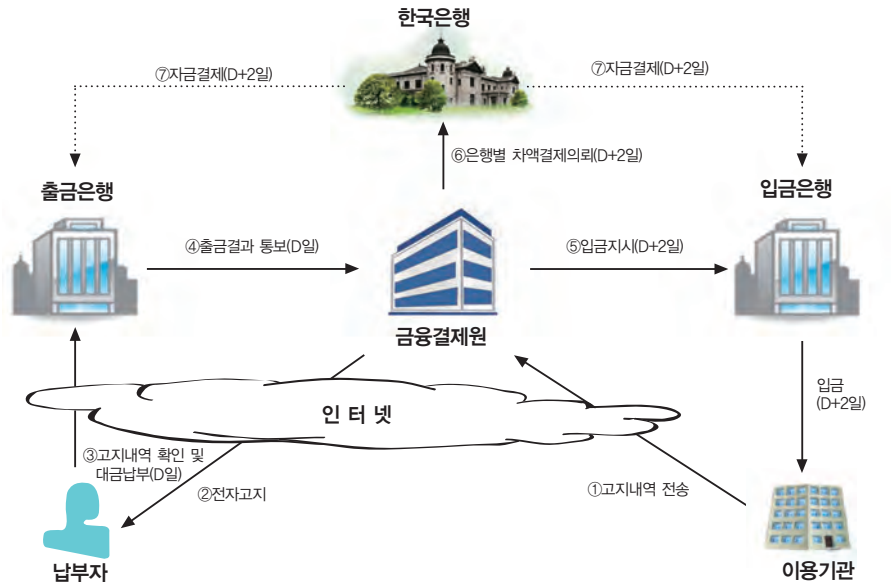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업무는 고객이 국세, 지방세, 공과금과 일반 지로요금을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www.giro.kr)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서비스로 2000년 3월부터 동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전자수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30분부터 22시까지이다.

인터넷지로를 이용할 경우 납부자는 은행창구를 이용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대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이용기관은 종이 고지서의 발행 및 발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수납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은 인터넷납부에 따른 창구수납업무 및 처리비용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10-7>

인터넷지로 업무처리절차



제4절 금융공동망

1.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특정 금융기관 고객이 타 금융기관의 CD 또는 ATM을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8년 7월 가동되었다.

CD공동망의 가동으로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이용고객은 현금카드만으로 모든 참가기관의 CD/ATM을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인출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무인점포영업이 조기에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CD공동망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중앙회, 수협 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HSBC은행 국내지점, 금융투자회사 15개 등 40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CD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는 현금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조회, 지로대금 납부, 현금입금 등이며 이용대상 예금으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현금인출업무는 고객이 타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여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금서비스업무는 고객이 CD/ATM을 통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좌이체는 이용고객이 CD/ATM을 이용하여 거래 금융기관의 본인계좌로부터 타 금융기관의 본인 또는 타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금인출한도는 1회 100만원, 1일 600만원 이내에서 예금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정하여 운영한다. 현금서비스한도는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한도는 1회 600만원 이내, 1일 3,000만원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현재 고객들이 CD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지로납부는 00시30분부터 22시까지)이며,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로 정하고 있다. 고객의 CD공동망 이용수수료도 참가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 업무처리절차

CD공동망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고객이 CD/ATM의 화면지시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거래내역이 금융결제원 처리센터를 경유하여 계좌 개설은행으로 전송된다. 개설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수신한 취급은행(CD/ATM설치은행) 지급요청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취급은행에 지급승낙 메시지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취급은행이 CD/ATM을 통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한편 현금카드를 직불형 지급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현금IC카드의 경우에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따른 업무처리를 CD공동망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현금IC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현금IC카드로 결제하면 현금IC카드 VAN사는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객의 계좌 개설은행으로 전송한다. 거래가 승인되면 개설은행은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며, 익일 가맹점 거래은행이 대금을 가맹점의 계좌에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⁸⁸⁾

CD공동망업무 취급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의 각 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된다. 한편 CD공동망 거래에 따른 취급은행과 계좌 개설은행간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하여 CD공동망 거래차액에 대해 콜금리에 의한 이자지급방식의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88) 다음카카오와 제휴하여 은행 공중의 모바일지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뱅크월렛카카오는 CD/ATM을 통한 현금인출이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불형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처리도 CD공동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0-8〉 CD공동망의 현금인출 업무처리절차



CD공동망 이용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168만건, 8,286억원에 이르렀으며, 거래유형별로는 현금인출과 계좌이체 건수가 각각 44.2%, 55.8%를 차지하였다.

〈표 10-4〉 CD공동망 이용규모¹⁾(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1,298	1,366	1,432	1,575	1,682
현금인출 ²⁾	658	672	669	714	744
계좌이체	636	686	755	852	929
기 타 ³⁾	4.3	7.9	8.4	8.3	8.5
금액	654	692	741	786	829
현금인출 ²⁾	132	142	147	155	163
계좌이체	521	549	595	630	665
기 타 ³⁾	0.0	0.1	0.1	0.1	0.1

주 : 1) 점포의 CD공동망 이용금액 미포함

2) 예금인출 및 현금서비스 인출

3) CD/ATM기를 이용한 전자화폐(K-CASH) 충전

한편 CD공동망 가동 이후 CD/ATM 설치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말 현재 12만 4천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기기종류별로는 CD가 3만 9천여대, ATM이 8만 5천여대에 달하고 있다.

〈표 10-5〉

CD/ATM 설치현황(연말 기준)

(천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94	98	102	110	119	123	124
	C D	46	46	46	48	48	42	39
	ATM	47	52	55	62	71	81	85

다. 점포외 CD공동망

199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점포외 CD공동망은 한국전자금융이 지하철역구내 등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한 CD/ATM을 통해 참가은행이 고객에게 연중무휴로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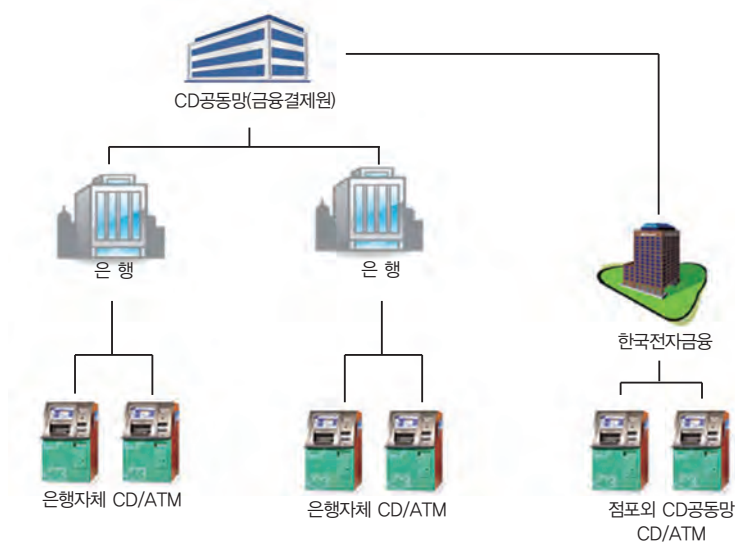
현재 점포외 CD공동망을 이용한 현금인출한도는 1회 70만원이며 1일 인출가능 횟수는 각 참가은행이 CD공동망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 이용대상 예금은 CD공동망 이용대상 예금과 동일하며 CD/ATM의 설치 및 운영은 한국전자금융이 담당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을 통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업무의 전문교환방식은 CD공동망과 동일하다. 한편 점포외 CD/ATM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자금융이 매일 CD/ATM을 통하여 인출·지급된 은행별 예금액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금액 명세를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송부하면, 금융결제원은 이를 한국전자금융 거래은행의 교환순취자금으로 간주하여 CD공동망의 은행간 자금결제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다. 한국전자금융은 1개월마다 각 은행에 대해 수수료 청구명세를 작성·송부함으로써 각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점포외 CD공동망의 구성은 네트워크의 신규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가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이미 구축·운영중인 CD공동망에서 이용되고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업무처리절차를 수용하면서 한국전자금융을 금융결제원에 접속시킨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10-9〉

점포의 CD네트워크 구성도



점포의 CD/ATM은 주요 지하철역 및 백화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2013년말 현재 전국에 6,70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포의 CD공동망 이용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7만 8천건, 96억원 수준이다.

〈표 10-6〉

점포의 CD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90	95	88	83	78
금액	10.7	11.6	11.0	10.2	9.6

2. 타행환공동망

타행환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1989년 12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당일중 자금이체를 통한 지급결제업무의 신속화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국내은행과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농협중앙회, 수협 회원조합, 새마

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외국은행 국내 지점, 금융투자회사 등 52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타행환공동망을 통하여 취급 가능한 업무로는 송금, 자기앞수표 조회, 수취조회 등이 있으며, 이용대상 예금은 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신탁, 적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송금은 고객의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송금대금을 공동망을 통해 수취인 예금계좌에 즉시 입금해주는 서비스이다.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송금이 가능하며 현재 1회 송금한도는 5억원이다.

자기앞수표 조회는 고객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조회를 의뢰받은 은행이 타행환공동망을 이용하여 동 수표의 발행은행 앞으로 수표 발행내역과 사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이다. 수취조회는 고객의 송금의뢰를 받은 은행이 타행환입금의뢰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취인명,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가능여부를 사전에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고객에 대한 타행환 업무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며, 금융기관의 내부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타행환공동망은 07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산장애 등으로 타행환공동망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금융결제원은 1시간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으로 타행환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한국은행이 운영시간 연장을 금융결제원에 권고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은 3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나.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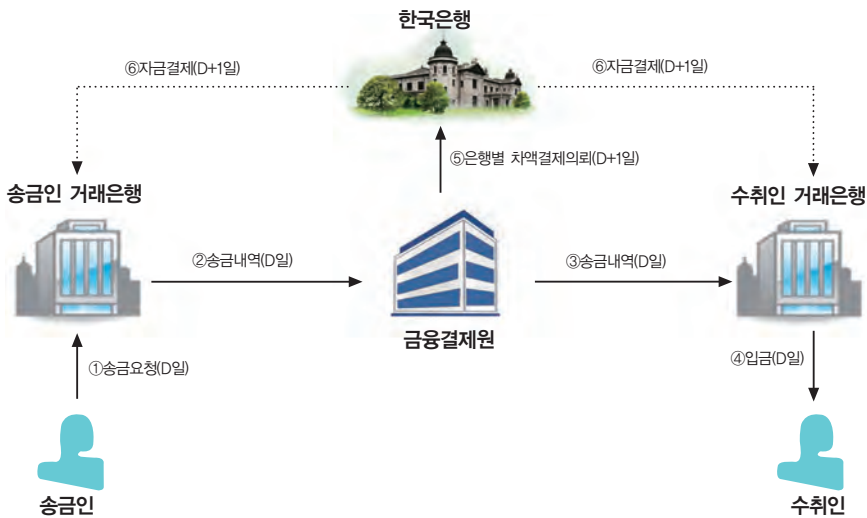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송금은행에 서면으로 송금지시를 하면 송금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은 동 전문내용에 따라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타행환 송금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되며,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 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다. 한편 타행환 송금거래에 따른 지급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자간 차액결제시 결제차액에 대하여 자금이득을 얻은 은행이 콜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림 10-10〉

타행환공동망 업무처리절차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38만건, 3조 7,454억원으로 송금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용수수료가 낮고 이용시간 및 장소에 제약이 없는 인터넷뱅킹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행환공동망을 통한 송금거래를 대체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표 10-7〉

타행환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487	429	416	393	378
금액	3,165	3,232	3,480	3,581	3,745

3. 전자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은 ARS공동망을 확대 개편하여 2001년 4월부터 가동된 시스템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중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전자금융공동망의 대상 업무는 유·무선전화, PC 등의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크게 대고객업무와 중계업무로 구분된다. 대고객업무는 예금잔액 및 신용카드 관련 각종 정보 조회업무, 수표의 사고유무 조회 및 환율조회 등이다. 중계업무에는 타행이체, 타행이체 거래확인 조회 및 자기앞수표 조회 업무 등이 있다.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는 예금계좌에는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투자자예탁금 등이 있다. 은행의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공동운영시간대인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 시간대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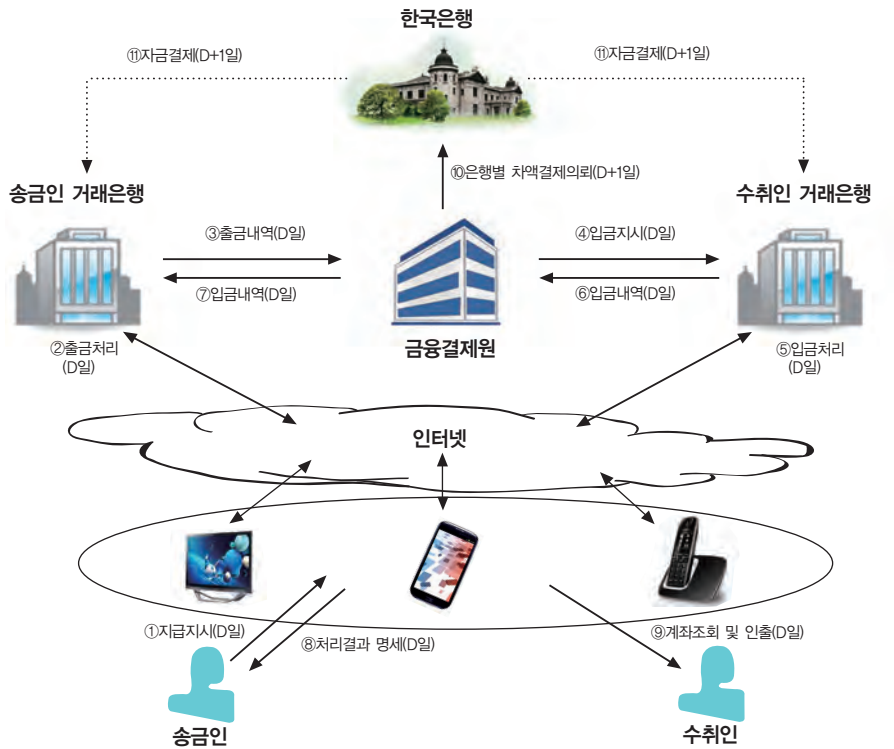
참가기관의 이체한도는 건당 10억원으로 CD공동망(6백만원) 및 타행환공동망(5억원) 이체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나. 업무처리절차

고객이 유·무선전화, PC 등을 통해 전자금융공동망 중계시스템에 접속한 후 계좌, 수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조회 또는 계좌이체를 요청하면 금융결제원은 동 조회 또는 계좌이체 요청을 계좌개설 은행에 송신하고 결과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통지한다. 계좌이체에 따른 참가은행 상호간의 자금결제는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전자금융공동망 거래차액에 대해서도 지급은행의 자금부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콜금리에 의한 이자지급방식의 정산이 실시되고 있다.

〈그림 10-11〉

전자금융공동망 업무처리절차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는 인터넷뱅킹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자유로운 이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타행환과 CD/ATM 이용고객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중 일평균 697만건, 34조원에 이르렀다.

〈표 10-8〉

전자금융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4,248	4,855	5,504	6,147	6,973
인터넷뱅킹	1,838	2,245	2,651	3,048	3,463
텔레뱅킹	847	868	884	850	793
편뱅킹	1,297	1,414	1,610	1,867	2,226
모바일뱅킹	100	120	105	111	177
기타	166	208	253	271	315
금액	22,707	26,169	30,523	32,403	34,365
인터넷뱅킹	12,004	13,915	16,080	16,865	17,393
텔레뱅킹	1,014	1,044	1,072	982	898
편뱅킹	8,553	9,514	11,143	12,135	13,469
모바일뱅킹	95	114	105	100	139
기타	1,040	1,582	2,123	2,321	2,466

4. 기타 금융공동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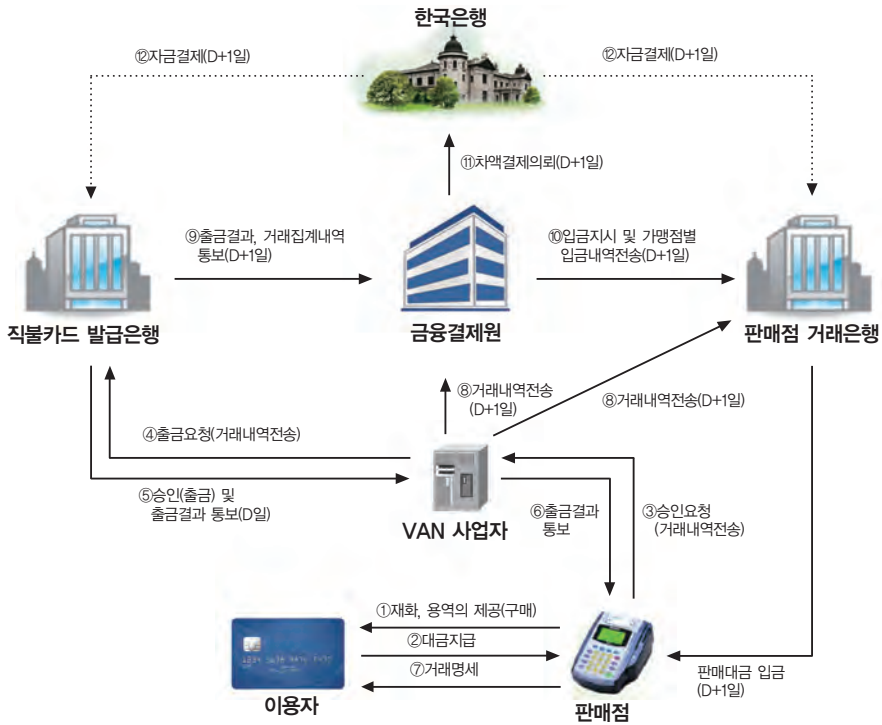
가.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은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동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를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카드소지자 계좌에서 인출되어 다음 영업일 판매자 계좌로 입금되는 결제시스템으로 1996년 2월 가동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및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과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코벤, KSNET 등 6개 VAN사업자가 참가하고 있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즉시 고객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 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0-12〉

직불카드공동망 업무처리절차



직불카드공동망 이용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1,100건, 4,350만원에 그치는 등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직불형카드인 체크카드에 비해 가맹점수가 적고 이용시간이 08시부터 23시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거래가 불편한 데 주로 기인한 것이다.

〈표 10-9〉

직불카드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백만원, 천개)

		2009	2010	2011	2012	2013
이용규모	건수	2.8	2.6	2.2	1.6	1.1
	금액	122.8	107.8	92.3	62.7	43.5
가맹점수		251	249	248	247	211

나.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공동망은 대량의 출금 및 입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1996년 8월부터 가동되었다. 2014년 9월 말 현재 CMS공동망에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4개, 금융투자회사 25개 등 54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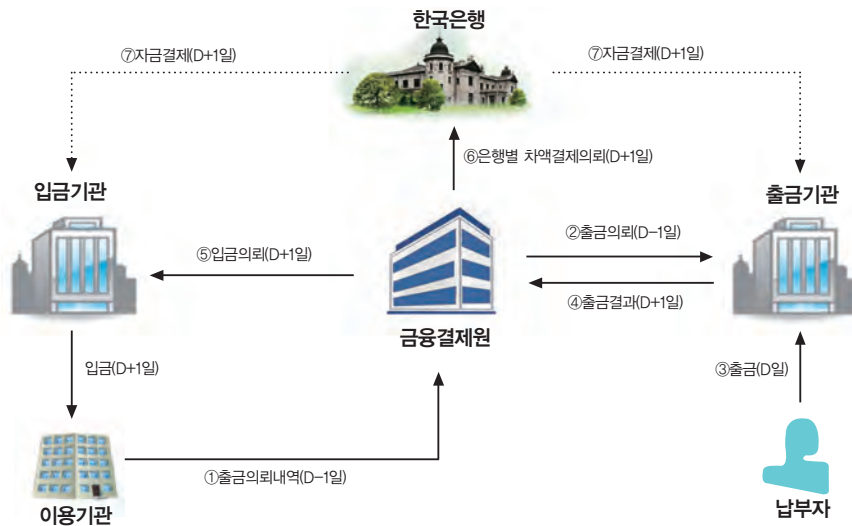
출금이체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수업료,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 또는 투자자 예탁금이 있는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이체와 유사하다. 입금이체는 각종 상품 구입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 은행 또는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진 다수의 수취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 대량 지급과 비슷하다.

(업무처리절차)

출금이체의 경우 이용기관이 납부자에 대한 출금의뢰내역을 수납 전영업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은 출금의뢰내역을 참가기관별로 분류하여 출금기관(납부자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출금기관은 납부자의 계좌에서 해당자금을 인출하고 출금결과내역을 금융결제원에 통보한다. 금융결제원이 출금결과내역을 근거로 입금지시전문을 작성하여 수납 다음 영업일 입금기관(이용기관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하면 입금기관은 출금금액에서 고객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이용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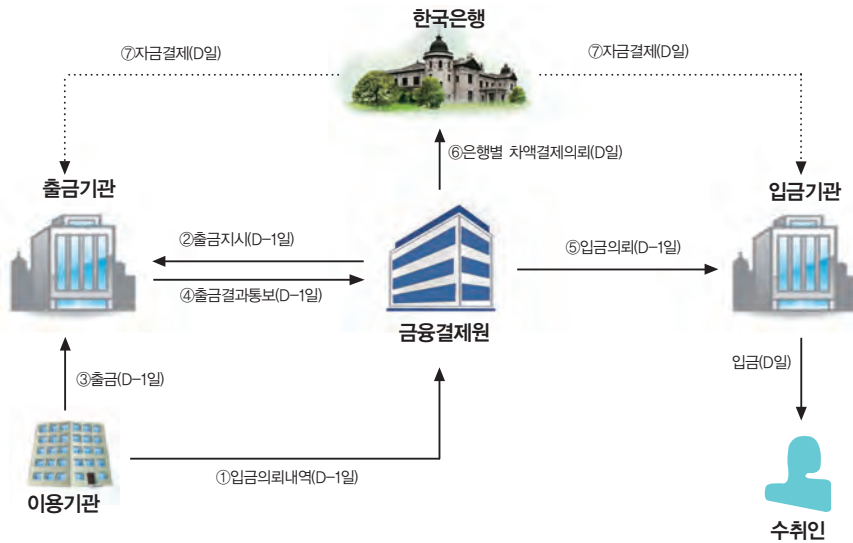
〈그림 10-13〉

CMS출금이체 업무처리절차



입금이체의 경우에는 이용기관이 입금의뢰내역을 이체 전영업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고객수수료를 포함한 지급총액을 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결제원은 출금지시전문을 작성하여 출금기관(이용기관 계좌 보유 참가기관)으로 전송한다. 출금기관은 고객수수료와 출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용기관의 계좌에서 출금하고 출금통보전문을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금융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입금의뢰내역을 입금기관(수취인 계좌 보유 참가기관) 별로 분류하여 입금이체 전영업일 입금기관으로 전송한다. 입금기관은 입금의뢰내역에 따라 수취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입금결과내역을 작성하여 금융결제원에 송부한다.

〈그림 10-14〉 CMS입금이체 업무처리절차



은행간 자금결제일은 출금이체의 경우 출금이체일의 다음 영업일이며 입금이체는 입금이체일 당일이다. 자금결제절차는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금융결제원이 참가기관별 차액결제금액 및 결제지시서를 작성하여 참가기관 및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참가기관간 차액결제금액을 11시에 해당 참가기관의 당좌예금계좌에서 결제하고 이를 해당 참가기관에 통보한다.

2013년중 CMS공동망 이용실적은 일평균 296만건, 3,778억원이며, 이중 출금이체가 전체 이용건수의 99.3%, 금액의 95.3%를 각각 차지하였다.

〈표 10-10〉 CMS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2,968	2,967	3,095	3,043	2,962
입금이체	267	246	273	158	20
출금이체	2,701	2,721	2,821	2,885	2,942
금액	402	428	468	437	378
입금이체	86	89	109	72	18
출금이체	3,16	340	359	365	360

〈참고 10-5〉

CMS 부당출금 시도 사고이후 개선조치 내용

2014년 1월 사기 업체가 CMS 이용기관으로 등록된 후 불법적으로 확보한 계좌정보를 통해 출금이체를 시도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부당 출금시도 이후 금융결제원은 동 사기 업체의 CMS 이용을 즉각 중단하고 금융기관에 고객 자금 출금취소를 요청하여 실제 사기 업체로 자금이 이체되지는 않았다.

동 부당출금 시도 사고 이후 금융결제원은 CMS 이용기관 승인시 실제 사업수행여부에 대한 심사 및 현장방문 실시 등 승인기준을 강화하였다. 고객정보를 금융기관에 등록하는 단계에서는 등록 및 출금이체 동의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고객 앞으로 통지하도록 하였고,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는 단계에서는 신규 신청기관에 한해 이용기관으로의 이체일을 출금 익일에서 출금 후 3일로 연장하고 출금 직전에는 출금이체 예정사실을 SMS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다.

다.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은 지방은행의 공동상품인뱅크라인(Bankline)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망으로서 1997년 6월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지방은행들도 전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의 입·출금 및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지방은행공동망에는 6개 지방은행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결제서비스 내용)

지방은행공동망의 업무는 입금업무와 출금업무로 구분된다. 입금업무는 타행환공동망과 유사하게 다른 지방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업무이며, 출금업무는 CD공동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지방은행의 통장을 소지한 고객에게 출금 처리하는 업무이다.

지방은행공동망의 가동시간은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한 09시부터 16시까지이다. 그러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방은행공동망 운영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이를 1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업무처리절차)

고객은 bancr인 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지방은행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다. bancr인 상품의 기본계좌로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등의 결제성예금 계좌가 있으며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상호부금 등 기한부예금 계좌와의 연결처리도 가능하다.

고객이 현금이나 예금을 기초로 서면 또는 대고객 전산망을 통해 의뢰은행에 입금지시를 하면, 의뢰은행은 동 지시내역을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며 금융결제원은 이를 즉시 수취인 거래은행 앞으로 재전송한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동 전문을 수신한 수취인 거래은행은 전문에 따라 수취인 예금계좌에 송금액을 즉시 입금처리하며, 수취인은 동 송금대금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지방은행공동망의 운영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송금거래 다음 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각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서 차액결제되며,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 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공동망을 통한 입·출금업무에 따른 의뢰은행과 지급은행간 자금수급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은행간 결제차액에 대하여 이자지급방식으로 자금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중 지방은행공동망 이용규모는 일평균 3백건, 44억원으로 매년 이용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창구거래를 통해 지방은행공동망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을 통한 거래로 대체한 데 주로 기인한다.

〈표 10-11〉

지방은행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0.5	0.5	0.4	0.3	0.3
금액	4.5	4.1	4.2	4.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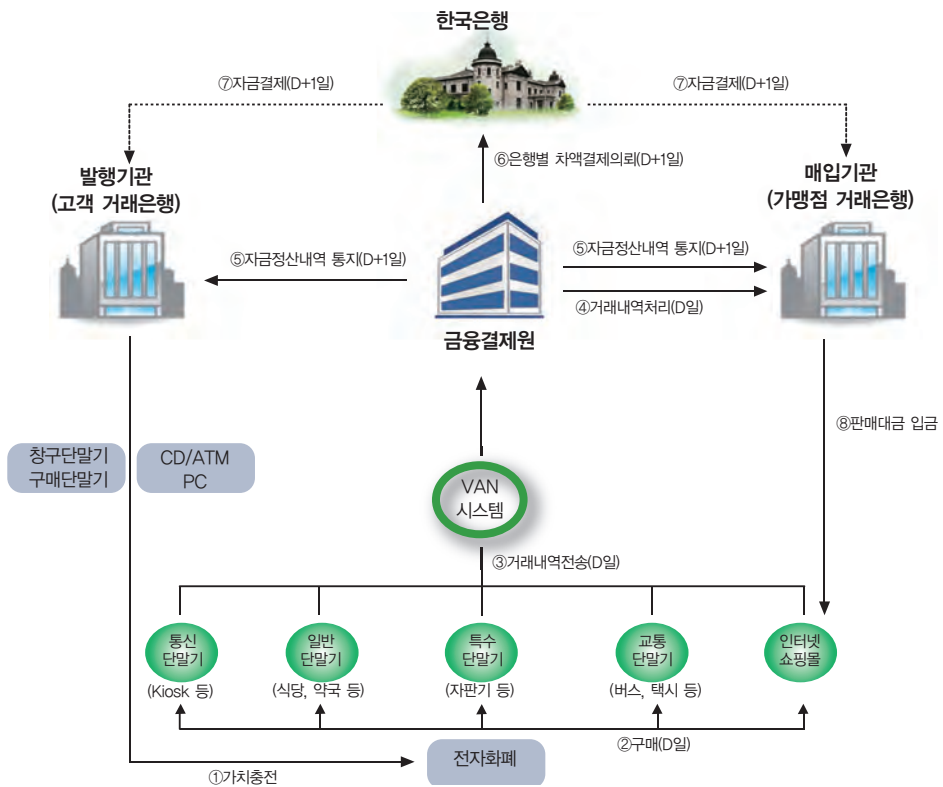
라. 전자화폐(K-CASH)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전자화폐(K-CASH) 이용시 발생한 금융기관간 정산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0년 7월 가동되었다. K-CASH 이용자가 본인의 예금을 기반으로 전자화폐에 가치를 저장하면, 발행은행은 고객의 예금계

좌에서 전자화폐 구매금액을 인출하여 선불계정에 예치한다. 구매거래가 발생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결제 및 정산내역을 전송받으면, 결제할 금액을 선불계정에서 인출하여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통해 매입은행에 지불한다. 한편 2013년 3월 국내은행들과 금융결제원이 공동개발한 모바일지갑 서비스인 ‘뱅크월렛(BankWallet)’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인뱅크머니(BankMoney)도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여 개인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화폐의 결제과정에는 발행은행, 매입은행, VAN사업자 및 전자화폐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간 거래차액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완결된다.

〈그림 10-15〉 전자화폐공동망 업무처리절차



발행은행은 전자화폐 소지자의 주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전자화폐 거래에 대한 정당성 확인 및 지급보증의 책임을 진다. 매입은행은 단말기 운영자의 주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며 단말기 운영자는 전자화폐의 가치를 대가로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단말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VAN사업자는 단말기 운영자의 구매단말기에서 발생한 구매거래내역을 수집하여 금융결제원의 전자화폐공동망센터로 전송하는

업체이다. 금융결제원 전자화폐공동망센터는 VAN사업자로부터 전송된 구매거래내역을 검증한 후 은행별로 분류하여 해당 발행은행 및 매입은행으로 전송하고 한국은행에 은행간 차액결제를 의뢰하며 시스템 전반의 보안책임을 진다.

2013년중 K-CASH 이용건수는 일평균 9,800건, 이용금액은 2,460만원으로 대중교통 분야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카드 겸용 신용카드가 수요를 대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전자화폐공동망을 이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인뱅크머니(BankMoney)는 2014년 11월 모바일 SNS업체인 다음카카오와 제휴하여 개인간 송금서비스(뱅크월렛카카오)를 제공하는 등 수요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0-12〉 전자화폐(K-CASH)공동망 이용규모(일평균) (천건,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10.2	14.5	13.3	12.6	9.8
금액	17.7	36.0	34.9	31.3	24.6

마. 국가간ATM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은 해외의 ATM에서 기존 국제카드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현지통화를 인출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로서 2010년 10월 가동되었다. 동 서비스의 가동으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을 현지화폐로 인출하고 반대로 해외 비거주자도 국내에서 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국가는 미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이다.

(결제서비스 내용)

국가간ATM공동망의 업무는 국외 CD/ATM에서 국내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잔액조회업무, 국내 CD/ATM에서 국외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잔액조회업무로 구분된다. 국외에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이다. 비거주자의 국내 현금인출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총 4개 국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씨티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간ATM공동망의 가동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 05분~23시 55분이며, 인출한도는 CD공동망과 같이 1회 인출한도 100만원, 1일 인출한도 60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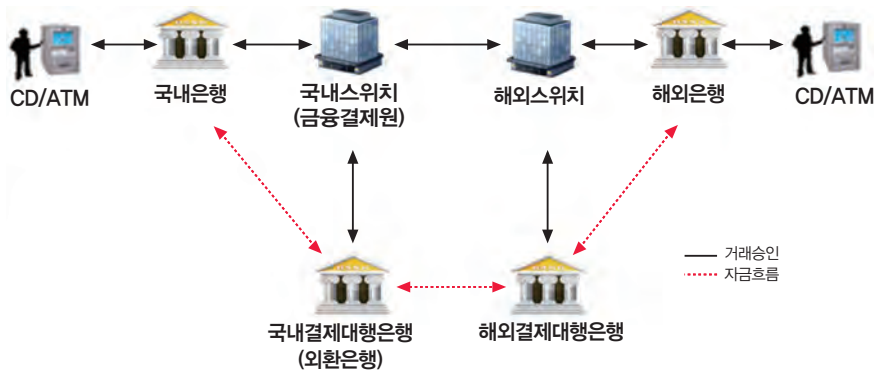
(업무처리절차)

국외 CD/ATM에서 국내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간 ATM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참가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이용가능한 ATM은 미국의 NYCE, 말레이시아의 MEPS, 필리핀의 Megalink, 베트남의 Banknetvn, 태국의 ITMX와 연계된 ATM이다. 이용절차는 고객이 해외에서 CD/ATM의 화면지시에 따라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이에 따른 거래전문은 취급은행(CD/ATM설치은행), 해외 연계 스위치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국내 계좌 개설은행에 송신된다. 국내 계좌 개설은행은 지급요청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한 후 지급승낙 메시지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통보하고 이에 따라 취급은행이 CD/ATM을 통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완료된다.

결제업무의 처리는 국내 결제대행은행과 국외 결제대행은행과의 결제(대행은행간 결제), 국내 참가은행과 국내 결제대행은행과의 차액결제(참가기관간 차액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내 결제대행은행인 외환은행은 거래 익영업일에 미달러화를 이용하여 국외 결제대행은행과의 대행은행간 결제를 처리한다. 국내 참가은행과 국내 결제대행은행간 자금결제는 거래 익영업일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원화로 차액결제된다. 동 차액결제에 필요한 자료는 금융결제원이 일괄 작성하여 한국은행과 각 참가은행 앞으로 온라인으로 전송하고 있다.

〈그림 10-16〉

국가간 ATM 거래처리 구조



한편 2013년중 국가간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규모는 연간 2만 3천여건, 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표 10-13〉

국가간 ATM 현금인출 규모(연간)

(건, 백만원)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295	113	592	244	3,727	1,970
베트남	48	3	324	33	4,377	444
태국	5	0	373	104	10,449	3,824
필리핀	10	0	167	36	1,941	386
말레이시아	8	1	146	55	2,749	849
총계	366	118	1,602	471	23,243	7,474

제5절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1. 결제서비스 내용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의 결제처리를 위하여 구축된 지급결제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시불 및 할부거래 등 신용구매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revolving) 등 대출서비스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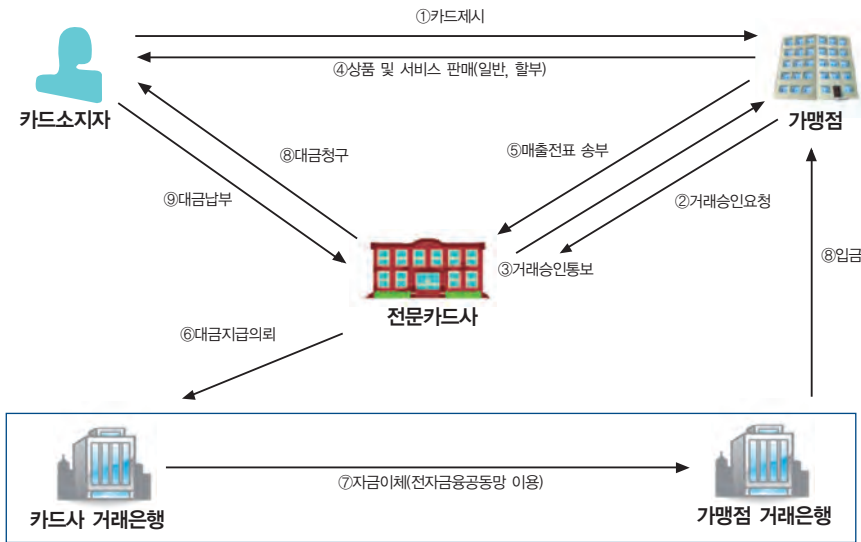
2. 업무처리절차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업무처리절차는 카드발행기관의 성격에 따라 전문카드사 결제방식과 BC카드 결제방식으로 구분된다.

(전문카드사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해당 카드사로 전송되고 카드사는 승인여부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매입요청을 하게 되면 카드사는 매출전표를 매입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VAN사는 카드사를 대신하여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 관리하고 전표 매입 등을 대행하는데 VAN사는 이를 대가로 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카드사가 거래은행에 지급의뢰를 하면, 거래은행은 카드사의 계좌에서 가맹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준다. 카드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대금을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결제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그림 10-17〉 전문카드사 신용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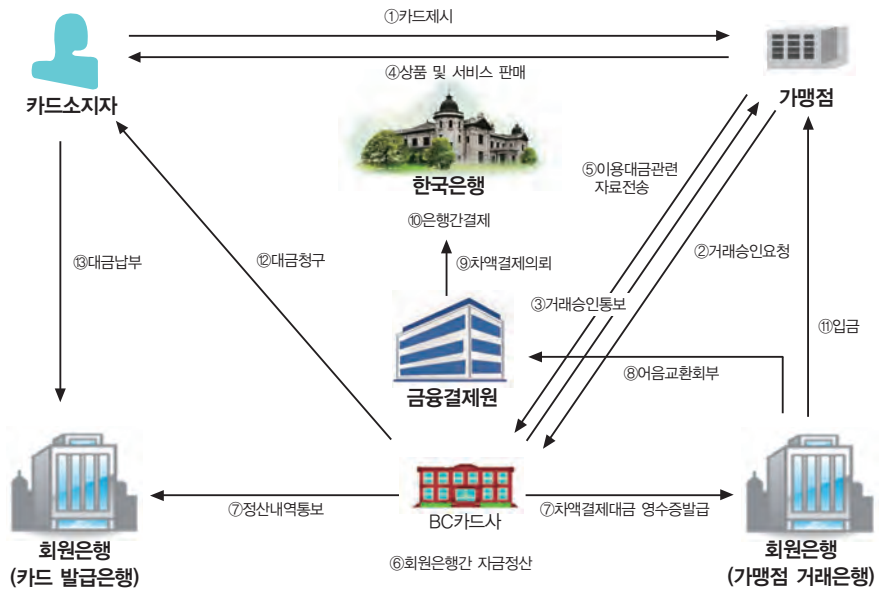


(BC카드)

신용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BC카드사를 거쳐 카드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카드발급은행은 거래승인여부를 가맹점에 전송한다. 이후 가맹점은 거래은행에 매출전표를 제시하고 거래은행이 매출전표를 BC카드사에 송부하면 BC카드사는 회원은행간 거래내역을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정산한 후 받을 금액이 있는 회원은행에 차액결제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거래은행은 어음교환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가맹점에 지급한다. 이후 BC카드사는 고객별로 정해진 대금 결제일에 맞추어 대금을 청구하고 고객이 이를 결제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그림 10-18〉

BC카드의 상품구매서비스 업무처리절차



제6절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1.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 지급결제시스템(이하 B2B 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이하 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2014년 9월말 현재 산업, 기업, 국민, 외환, 농협, 우리, SC, 신한, 하나,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등 15개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2B 결제시스템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지만 일부 업무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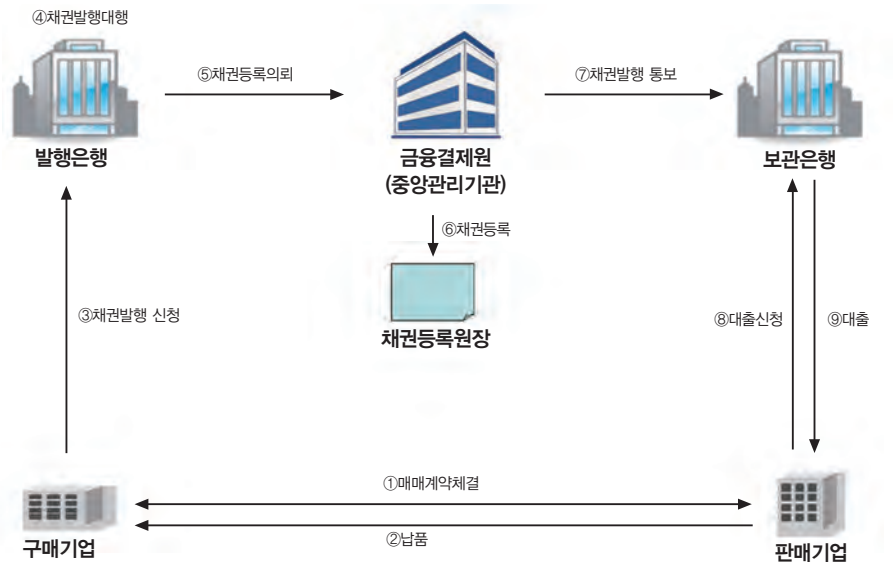
나. 업무처리절차

기업간 상거래를 전자채권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전자채권 발행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채권 발행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전자채권의 보관 등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채권 발행은행은 구매기업에 대한 전자채권 발행한도 등 약정내용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은 구매기업은 거래은행 앞으로 전자채권의 발행을 신청하고, 거래은행은 이를 확인한 후 동 채권을 발행하여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을 요청한다. 금융결제원은 기업별 약정내용(사업자번호, 채권발행한도 등)과 함께 발행은행이 전송한 건별 채권발행내역을 전자채권원장에 집중 등록하는 한편 이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인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한편 판매기업은 채권 만기일 이전에 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전자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는 구매기업이 전자채권 발행시 담보대출을 위한 양도를 사전 승낙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은 발행일로부터 만기 2영업일전까지 가능하고 전자채권금액 한도내에서 부분대출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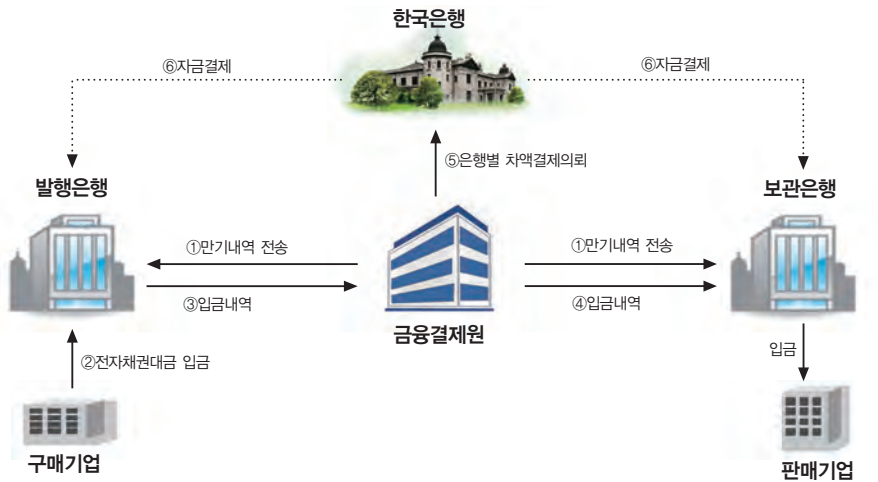
〈그림 10-19〉 전자외상매출채권 발행절차



전자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금융결제원은 만기전자채권내역을 발행 및 보관은행 앞으로 각각 통보한다. 구매기업이 만기일 영업시각까지 발행은행에 전자채권대금을 입금하면, 금융결제원은 발행은행이 전송한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하고 이를 보관은행에 통보한다. 보관은행은 전자채권대금 입금내역을 기반으로 판매기업의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이에 따른 은행간 자금결제는 결제일 11시에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은행간 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0-20〉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절차



2.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B2C 결제시스템은 B2B 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 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 PG의 경우 연계된 금융기관에 따라 일부 사용시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PG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전자상거래업체 등 가맹점이 PG 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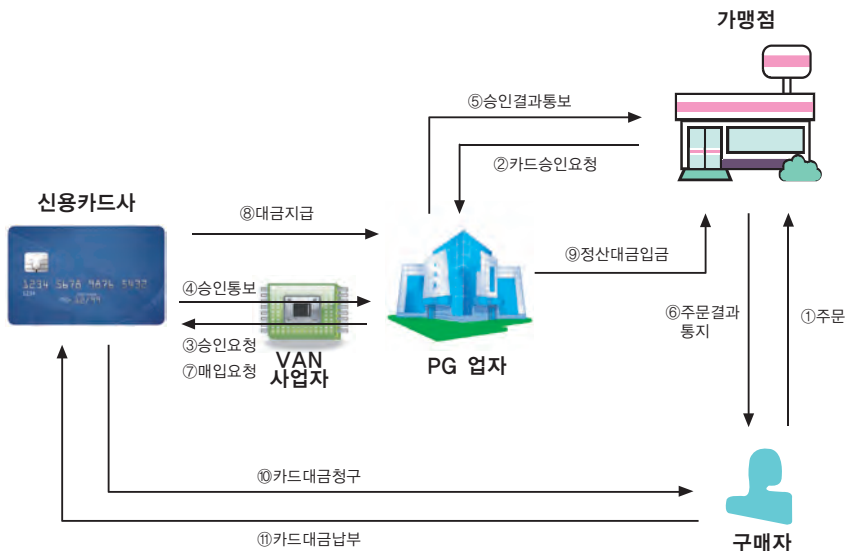
나. 업무처리절차

(신용카드 PG)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PG를 통해 지급결제절차가 수행된다. 신용카드 PG업자는 해당 쇼핑몰과 VAN사업자 사이에서 거래 및 승인 정보를 중계하고 정산을 대행하며 이후의 절차는 오프라인에서의 VAN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 지급결제절차와 동일하다. 통상 구매자가 상품을 구입한 시점부터 가맹점에 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대략 3~10일 정도 소요된다.

〈그림 10-21〉

신용카드 PG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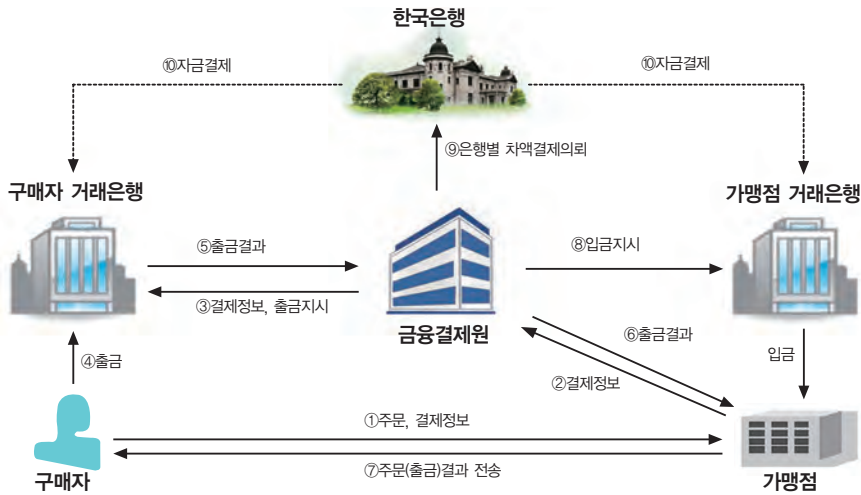


(계좌이체 PG)

금융기관과 직접 연계하여 계좌이체 PG서비스를 수행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등 3개사이며 그 외의 PG업자들은 동 3개 업체와 연계하여 계좌이체 PG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금

액 산정⁸⁹⁾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LG유플러스 등은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및 각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계좌를 통해 정산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10-22〉 계좌이체 PG(금융결제원)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통신과금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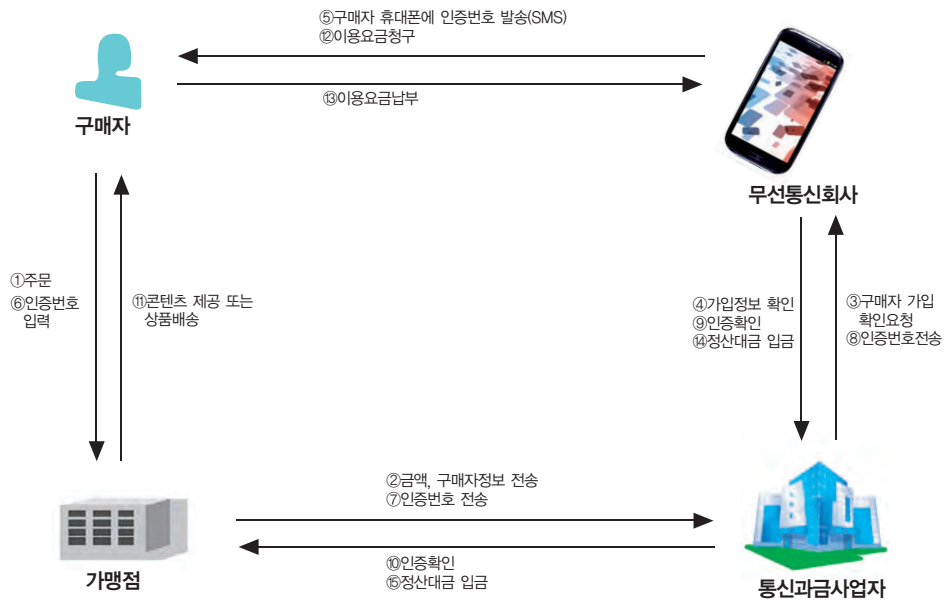
2008년 3월 이전까지 유·무선전화결제 PG로 불리던 통신과금서비스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 대금을 유·무선 전화료 또는 초고속인터넷 사용료 등에 합산하여 결제하고, 통신과금사업자는 통신회사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서비스이다.

통신과금서비스는 무선전화결제방식, 사용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결제절차를 수행하는 ARS결제방식, 콜센터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결제하는 폰빌(phone bill)결제방식, 초고속인터넷 사용료에 상품대금을 결제하는 초고속인터넷 결제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89)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 PG 이용에 따른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거래 익영업일에 차액결제 방식으로 최종 결제된다. 금융결제원은 동 계좌이체 PG 결제시스템을 전자상거래공동망 또는 PG공동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림 10-23〉

통신과금서비스(무선전화결제) 이용시 업무처리절차



제7절 차액결제리스크의 관리

1. 차액결제와 리스크관리기법

차액결제는 일정기간중 일어난 참가기관간 자금이체에 따른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액결제는 두 참가기관간 거래를 차액결제하는 양자간 차액결제(bilateral net settlement)와 다수 참가기관간 거래를 차액결제하는 다자간 차액결제(multilateral net settlement)로 나뉜다.

차액결제는 참가기관간 자금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차액결제방식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고객에게 자금을 먼저 지급한 금융기관은 자금지급시점부터 차액결제 종료시점까지 상대방 금융기관에게 일중 신용 또는 1일물 신용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에 노출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해 차액결제시점에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제를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방 금융기관에게 유동성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⁹⁰⁾ 양자간 차액결제의 경우 차액결제 상대방이 한 개 기관이므로 리스크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나 다자간 차액결제의 경우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가 참가기관간에 상쇄되어 보다 고도의 리스크 관리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간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은 총액결제방식과는 달리 신용리스크는 물론 시스템적리스크를 유발함으로써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이 여러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90) 차액결제에 있어 실제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재교환(unwinding)이다. 이는 결제불이행 참가기관을 차액결제에서 제외하고 남은 참가기관의 차액결제 포지션을 재계산하는 방법으로 한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유동성 압력과 잠재적인 손실을 결제불이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여타 금융기관에게 재분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제불이행 금융기관으로부터 순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예상하지 못한 결제불이행으로 자금사정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교환은 모든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초래하는 시스템적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 11월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위원회는 차액결제시스템에 적용할 최소한의 기준(Lamfalussy 기준⁹¹⁾)을 마련하였는데, 동 기준의 핵심적인 내용은 최대 결제채무자의 결제불이행시에도 결제를 적시에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제불이행 사태가 일단 발생하면 신용공여한도 또는 손실공동분담 등을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결제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가 2001년 1월 발표한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의 <원칙4>에서는 결제시차에 따른 리스크 감축을 위해 결제시스템은 결제일의 영업시간 중에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영업종료 시까지는 결제를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원칙5>는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최대 결제채무자의 결제불이행 상황에서도 당일의 차액결제를 적시에 완료하는 것을 최소한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최대 결제채무자 2개 기관이 동시에 결제불이행 상태에 처하더라도 당일의 차액결제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모범관행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가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공동으로 2012년 4월에 제정·공표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결제이행을 보장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은 담보 등을 활용하여 모든 현재 및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⁹²⁾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결제이행을 보장하지 않는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상위 2개 채무기관 및 그 관계회사의 현재 및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무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위 1개 채무기관 및 그 관계회사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하는 수준의 유동자산을 보유하여야 하며, 결제불이행 발생 시 재교환(unwinding) 절차는 차액결제 이행 참가기관의 유동성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주요국의 차액결제시스템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보면 금융기관간 미결제잔액을 줄임으로써 신용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신용한도 설정, 결제시차 축소 등이 있으며, 결제이행 확보를 통해 시스템적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으로는 사전담보

91) 1990년 11월 BIS가 발표한 「G10국 중앙은행의 은행간 차액결제제도 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bank Netting Schemes of the Central Banks of the Group of Ten countries; 동 보고서 발표당시 차액결제제도 위원회의 위원장인 M. A. Lamfalussy의 이름을 따서 Lamfalussy 보고서라고도 한다)에서는 차액결제시스템에 관한 6개 항목의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6개 항목은 ①차액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②차액결제 참가기관의 금융리스크에 대한 이해, ③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④최대 순결제채무 보유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시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의 결제 완결성, ⑤공정하고 공개된 시스템 참가기준, ⑥시스템의 기술적 운영 신뢰성이다.

92) 자세한 내용은 각주 5에 기술되어 있다.

제, 손실공동분담제 등이 있다. 이외에 최종 결제전 자금인출 불허, 차액결제 참가자격 제한, 중앙은행의 일중 유동성 공급,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등도 차액결제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

〈참고 10-6〉

주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수단

(신용한도 설정)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참가기관간 차액결제 이전에 이루어지는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 채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신용한도의 설정은 참가기관의 자본금, 차입능력, 거래실적 등을 기초로 참가기관의 일중 순채무한도(또는 순이체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만 자금이체지시를 허용함으로써 미결제채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한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리스크는 동 신용한도 범위내로 축소된다.

신용한도는 개별 참가기관이 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총액의 상한을 정하는 다자간 순채무한도(multilateral net debit caps) 설정방식과 개별 참가기관이 다른 참가기관들 각각에 대해 순신용공여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상대순신용한도(bilateral net credit limits) 설정방식이 있다. 다자간 순채무한도 설정은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시 시스템 전체가 직면하게 되는 손실을 미리 정한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상대순신용한도 설정은 한 기관의 결제불이행시 신용공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상한을 정하는 의미가 있다.

(사전담보 제공)

신용한도 설정만으로는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전담보 제공(collateral requirements)은 지급결제시스템의 각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에 직면하는 경우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중요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손실공동분담)

손실공동분담(loss-sharing)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손실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부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2. 현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은 다수 금융기관간의 복잡한 대차관계를 상제한 금융기관별 순차액포지션을 지정시점에 한은금융망(BOK-Wire+)을 통해 최종 결제하고 있어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시스템적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규모의 증가 등으로 시스템내 결제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차액결제가 적시에 종료되어 소액결제시스템 및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에 시스템적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1997년 9월 순채무한도의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부,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동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액결제 대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 순채무한도 설정

전자금융공동망 등 일부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 이전에 고객계좌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지므로 참가기관간에 신용리스크를 내포하는 미결제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차액결제거래로 인한 결제불이행 사태의 발생 가능성 및 그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각 참가기관이 해당거래로 인한 미결제순채무액⁹³⁾의 상한 즉 순채무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미결제순채무액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순채무한도의 적용을 받는 차액결제시스템은 한은금융망을 통하여 차액결제되고 있는 거래중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고 차액결제보다 고객앞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써 미결제순채무가 발생하는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국가간ATM망과 어음교환시스템, CD공동망, B2C 전자상거래 중 차액결제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이다. 차액결제 대상거래로서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로시스템, 직불카드공동망 등은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채무한도는 각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자신의 과거 최대 순채무액, 향후 대고객 거래규모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순채무한도를 설정한 이후에는 각 참가기관은 금융공동망을 통하여 한도 소진상황을 수시로 조회함으로써 일중 미결제순채무액을 자기 책임하에 관리하게 된다. 일중 미결제순채무액이 자신의 순채무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순채무한도 적용 대상거래의 지급지시를 다른 참가기관에게 송신할 수 없게 된다. 순채무한도 초과로 고객의 자금이체요청이 취소될 경우 고객의 불편은 물론 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은 한도초과가 빈번히 발생하는 참가기관에 대하여는 순채무한도를 증액토록 지도하고 있다.

〈표 10-14〉

순채무한도 설정규모¹⁾

(조원)

2007	2010	2009	2010	2011	2012	2013
18.6	21.3	26.5	33.3	37.2	40.2	40.1

주 : 1) 연말기준

93) 미결제순채무액은 한 참가기관이 영업시간중 다른 참가기관들에게 송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채무)에서 다른 참가기관들로부터 수신한 지급지시 누계액(채권)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결제이행용 담보증권납입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들로 하여금 적격 증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일부 은행의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하면 해당은행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여 결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⁹⁴⁾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대출정책 및 유동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담보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순채무한도액, 다른 차액결제시스템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중의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을 각각 담보산정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각 참가은행의 결제불이행 금액이 순채무한도 이내이며, 여타 차액결제시스템의 경우 개별은행이 야기하는 차액결제리스크는 해당 결제시스템에서의 교환순지급금액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참가은행의 담보증권 납입비율은 순채무한도가 적용되는 차액결제 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순채무한도의 30%, 순채무한도 대상외거래에 대해서는 직전 반기중 교환순지급이 발생한 영업일의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로 설정되어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담보증권 납입비율을 은행별로 상하 각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0-15〉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용 담보증권 납입비율

	1997.9	2001.8	2002.8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거래	10%	20%	30%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외거래	30%	30%	30%

한편 한국은행은 은행이 납입한 담보의 현재가치를 시가 기준으로 매일 평가하고 잔존만기별로 다른 담보인정비율(94%~98%)을 적용하고 있다. 만일 담보인정금액⁹⁵⁾이 필요 담보증권금액에 부족할 경우 추가로 담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담보가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94) 현재 한국은행에 사전담보 납입 의무가 있는 참가기관은 차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은행이며, 금융투자회사 등은 차액결제대행은행에 사전담보를 납입하고 있다.

95) 담보인정금액은 담보증권의 시장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액면금액의 80%를 적용한다.

차액결제시점에 특정 은행의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은행으로부터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결제부족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의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제정을 계기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 비율을 현행 30%에서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차액결제시스템의 신용리스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표 10-16〉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용 담보증권 납입규모¹⁾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필요담보증권규모	8.4	10.5	13.8	14.7	14.3
담보증권 납입규모 ²⁾	8.9	11.3	14.5	15.9	15.1

주 : 1) 연말 기준
2) 담보인정금액 기준

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차액결제시점에 특정은행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한국은행이 해당은행의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결제부족자금 보전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자금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동분담함으로써 차액결제를 종결하게 된다. 결제부족자금의 참가은행별 분담금은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증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결제불이행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의 실행여부는 결제불이행 은행의 담보규모 및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공동분담이 결정되면 한국은행은 은행별 공동분담금과 결제시점을 결정하여 참가은행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게 된다. 다만 차액결제거래중 어음교환시스템을 통한 거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는 제외)는 재교환함에 따라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별 공동분담금 내역과 결제시점을 통보받은 금융결제원은 은행별 공동분담금을 포함하는 차액결제청구서를 재작성하여 결제시점 전까지 한국은행에 송부하며 각 공동분담 은행은 결제시점까지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한다. 한국은

행은 금융결제원이 재작성하여 송부한 차액결제청구서를 근거로 지정된 결제시점에 차액 결제를 실시하는데 만일 공동분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담보증권 처분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동 부족분을 다른 은행들이 재분담하도록 한다.

한편 여타 은행들의 공동분담으로 차액결제가 종료된 경우 결제불이행 은행은 한국은행 최고여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원리금을 공동분담은행들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라. 차액결제대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증권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고 있으나 차액결제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기관중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없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충분한 결제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⁹⁶⁾은 차액결제시점에 유동성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다른 참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차액결제 및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차액결제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차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의 예치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BIS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이 감독기관이 정한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는 은행으로 한정된다.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차액결제를 위탁한 기관의 차액결제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따라 자신의 순차액포지션뿐만 아니라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차액포지션을 합산한 교환차액을 결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차액결제대행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의무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이 설정한 순채무한도와 순채무한도 대상외거래에 대한 일평균 교환순지급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보증권을 위탁기관을 대신하여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하며,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고유분담분에 더해 위탁기관의 분담분을 합산한 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은행의 차액결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에 상응하여 위탁기관과 대행은행이 협의하여 차액결

96) 2014년 9월말 현재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중앙회 및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는 25개의 금융투자회사가 있다.

제대행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위탁기관이 차액결제대행한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를 대행은행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탁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위탁기관도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여 직접 자금이체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순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차액결제 참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대행은행이 한은금융망 이용의 제한, 중지 또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재해, 영업중단 등으로 인해 차액결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위탁기관이 자신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차액결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하나의 대행은행이 여러 위탁기관의 차액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차액결제 및 리스크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대행은행의 차액결제대행한도 합계가 대행은행의 BIS 자기자본의 1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위탁기관과 대행은행간 차액결제대행계약에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으로부터 일중에 자금을 대출받아 차액결제대금을 납입한 후 그날 중 해당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결제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한국은행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표 10-17〉 차액결제대행제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차 액 결 제 대 행	주업무	대행은행의 위탁기관 차액결제채무 이행	위탁기관을 대신해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채무를 이행
	결제리스크 관리업무	순채무한도 설정 및 관리	은행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의 순채무한도를 설정하고 관리
		사전 담보 납입	대행은행은 위탁기관의 차액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에 추가 담보납입 책임 부담 위탁기관은 차액결제 대행한도의 100% 해당금액 이상을 대행은행에 담보로 제공
		대행은행의 유동성 공급	위탁기관의 결제자금 부족시 대행은행이 결제유동성을 공급
직접 결제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차액결제 참가	대행은행에 전산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 참가를 허용	

제11장 외환결제시스템

제1절 개요	237
제2절 외환결제의 유형	239
제3절 CLS시스템	243
제4절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	250

제1절 개요

외환결제란 거래당사자들이 매입·매도 통화를 서로 수취·지급하여 외환매매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외환매매거래 등에 따른 외화자금의 이체는 각 지역에 소재한 주요 은행간 환거래네트워크(correspondent banking network)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환거래네트워크는 외국환은행들이 세계 주요국의 은행들과 환거래계약에 따라 당좌예치금계좌(nostro account)를 개설하고 상호간 지급지시 등에 관한 전문 교환을 위해 국제통신기관인 SWIFT 등에 가입함으로써 형성된다.

금융기관간 외환거래에 있어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외환결제방식은 이러한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으로 개별 외환거래를 각 통화국 내에 소재한 환거래은행을 통해 건별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환결제방식 이용시 발생하는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환동시결제방식도 도입되었다. 대표적인 외환동시결제방식으로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들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 RTGS시스템과 외국 통화 RTGS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외환동시결제를 구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월 원화가 CLS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어 원화와 미달러화 등 17개 통화의 외환거래에 대해 외환동시결제가 가능해졌다.

〈참고 11-1〉

SWIFT

SWIFT는 1973년 은행간 국제금융거래 관련 전문 송·수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유럽지역 은행들이 벨기에에 공동으로 설립한 금융통신망협회(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로 통신 플랫폼(SWIFTNet)과 정형화된 전문 양식(FIN)을 제공하고 있다.

SWIFT 전문(FIN message)의 경우 금융기관간 거래정보 확인, 지급지시, 이체확인 등 각 메시지 종류(Message Type)에 따라 거래유형, 결제일, 계좌정보 등의 각기 다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SWIFT FIN 메시지 종류

구 분	메시지 분류 ¹⁾	내 용
이체지시	Category 1	고객자금이체
	Category 2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Category 8	여행자수표 관련 추심업무 등
	Category 9	결제현황 등의 조회 및 통보
재무업무	Category 3	외환, 단기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Category 6	귀금속, 신디케이션 관련
증권거래	Category 5	증권매매
교 역	Category 4	수금 및 예금증 송부 등
	Category 7	신용장 관련
기 타	Category 0	시스템 메시지(SWIFT 이용 청구서 발송 등)

주 : 1) SWIFT는 전문 양식마다 "MT+세 자리 숫자" 형태의 명칭을 부여하며 첫 번째 숫자로 거래 종류를 구분 (예 MT103은 고객자금 이체, MT202는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MT910은 입금완료통지에 이용되는 전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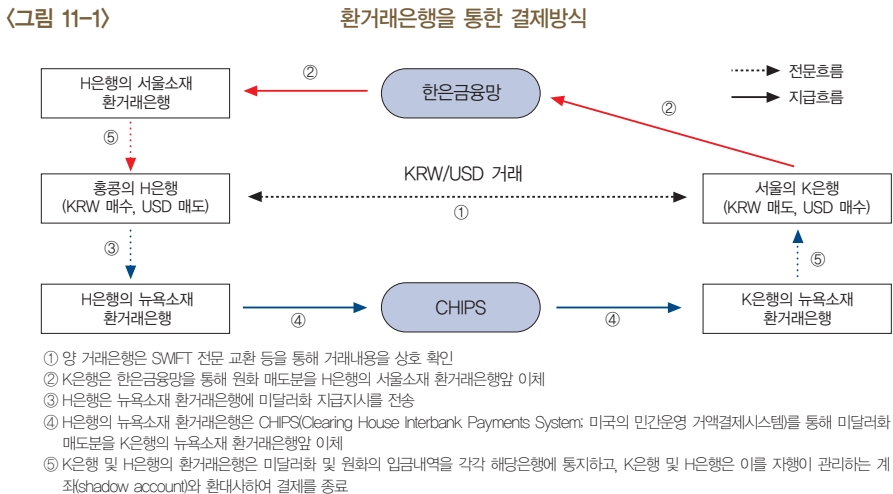
외화를 수반한 결제업무에서 전세계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SWIFT의 통신망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국,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RTGS시스템의 통신망으로 SWIFT를 채택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현재 215개 국가 10,500여개 금융기관이 SWIFT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FIN 메시지 송수신 건수는 2013년중 일평균 2천만건에 달한다.

제2절 외환결제의 유형

1.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통한 결제는 통화별로 지정된 환거래은행에 거래건별로 매도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해당 환거래은행은 해당 통화의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환거래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서 CLS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에 전세계 은행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외환결제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K은행(미달러화 매입, 원화 매도)과 홍콩의 H은행(미달러화 매도, 원화 매입)의 거래를 가정한 결제과정은 <그림 1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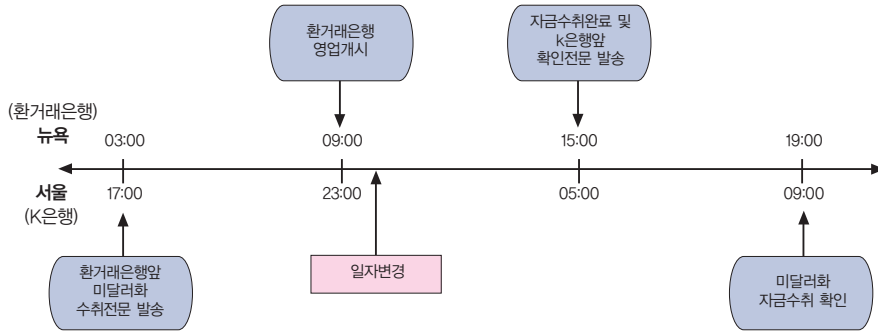


2. 외환동시결제

외환매매시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매도통화의 지급과 매수통화의 수취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매도통화를 지급하였으나 매수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된다. 특히 거래대상 통화 발행국간 시차가 큰 경우 금융기관이 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도 확대된다. 서울소재 K은행이 홍콩소재 H은행과 원화 매도 및 미달러화 매입 거래를 한 경우 원화를 지급하는 시간과 미국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미달러화를 수취하는 시간 간에는 최소한 14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K은행은 동 시간동안 H은행이 파산할 경우 거래원금을 모두 잃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

〈그림 11-2〉 미달러화 수취업무 처리절차 및 시간(예시)



특히 Herstatt은행의 외환결제실패⁹⁷⁾ 등을 계기로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중앙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을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민간부문의 대응방안중 하나로 복수통화 결제서비스(multi-currency services)를 제공하는 결제기구를 설립하여 외환동시결제(PvP) 방식을 구현할 것을 권고하였다. 외환동시결제방식은 매수통화의 수취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파산 등의 이유로 매도통화를 지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입통화의 결제도 일어나지 않아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은 외환동시결제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CLS은행을 설립하여 원화, 미달러화 등 17개 통화에 대한 외환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홍콩금융관리국(HKMA)도 미달러화·유로화·위안화 RTGS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존 홍콩달러화 RTGS시스템과 연계하여 총 6개 통화조합(currency pair)에 대한 외환동시결제를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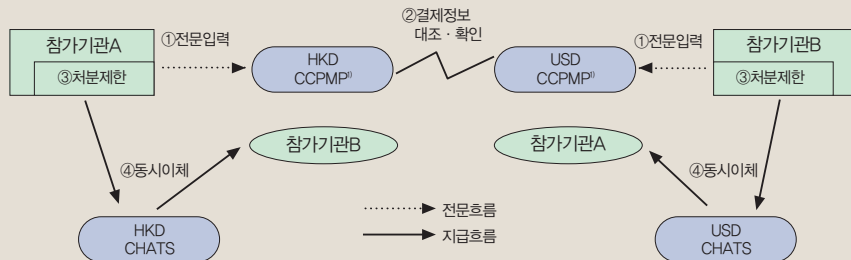
97) 자세한 내용은 〈참고 1-3〉 「주요 결제리스크 발생 사례」에 기술되어 있다.

〈참고 11-2〉

홍콩금융관리국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

홍콩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금융시장인프라를 개발해왔다.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홍콩달러화 RTGS 시스템인 HKD CHATS(Clearing House Automated Transfer System)에 더해 미달러화 RTGS시스템인 USD CHATS(2000년), 유로화 RTGS시스템인 EUR CHATS(2003년), 위안화 RTGS시스템인 RMB CHATS(2007년)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복수통화 RTGS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홍콩 달러화-미달러화, 위안화-유로화 등 6개 통화 조합 외환거래에 대한 동시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달러화-미달러화 거래에 대한 외환동시결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홍콩금융관리국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주 : 1) Cross-Currency Payment Matching Processor: PvP구현을 위해 각 매매통화의 지급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양방향으로 확인하는 인터페이스

자료 :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ystems in the CPMI countries

한편 자국 통화가 CLS 결제통화로 지정되지 않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는 자국 통화 RTGS 시스템과 홍콩금융관리국의 USD CHATS를 연계하여 외환동시결제를 구현하고 있다.

3.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국내기관간 외환거래 및 경상거래 등에 따른 외국통화의 이체에는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 외에도 국내 은행이 운영하는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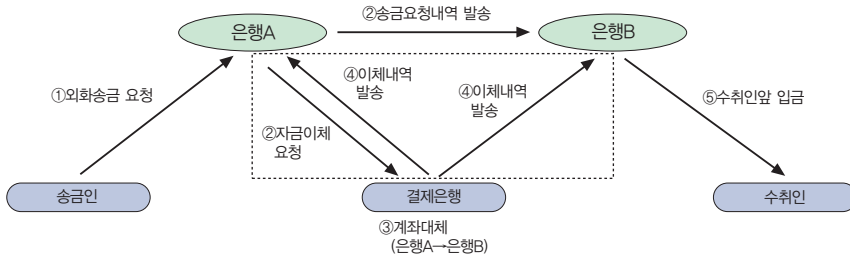
다수의 은행이 외화예치금계좌를 개설해 놓은 국내 결제은행의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이용하면 외화자금이체를 동일시간대에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거래를 결제한 후 부족한 자금만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결제은행에 입금할 수 있어 결제유동성 및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한 이체시 소요되는 수수료 부담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A 은행이 국내 B은행으로 미달러화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미국내 환거래은행을 이용하는 대신 두 은행의 외화예치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국내결제은행의 외화자금이체시스템에 이체를 의뢰하면 자금결제가 외화예치금 계좌간 대차를 통해 종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등이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국내 외화자금이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외환은행 시스템의 경우 2014년 9월말 현재 66개 국내 외국환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125개 역외은행을 대상으로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27개 통화에 대해 실시간 외화자금 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되어 2014년 10월부터 위안화이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각 외화자금이체시스템에서 기관간 지급지시는 SWIFT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2010년 외화자금이체시스템 참가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외화자금이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참가기관은 외화자금이체 중계시스템을 통해 입금 요청, 입금결과보고, 결제처리결과 송신 등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의 외화자금이체 중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SWIFT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체 요청과 입금결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SWIFT 이용 수수료와 업무처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11-3〉 국내 결제은행을 통한 외화자금이체 흐름(예시)



주 : 내는 SWIFT 통신망 뿐만아니라 금융결제원의 외화자금이체 중계시스템을 통해서도 처리가능

제3절 CLS시스템

1. 개요

CLS시스템⁹⁸⁾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에 관한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의 구현을 목적으로 미국 뉴욕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은행인 CLS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이다.

CLS시스템은 CLS그룹지주회사 산하의 CLS은행 및 CLS서비스(CLS Services Ltd.) 등 운영기관과 결제회원(settlement member) 및 제3자고객(third-party) 등 참가기관, 그리고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CLS그룹지주회사는 CLS그룹 전반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최상위 지배기관으로 산하에 CLS은행 및 CLS서비스 등을 두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19개국 73개 주요 민간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LS은행은 특수목적은행으로 CLS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 및 리스크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감독당국에 대한 협조, 참가기관과의 협력업무 등을 담당한다. 한편 1997년 영국 런던에 설립된 CLS서비스는 CLS시스템의 초기개발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CLS시스템의 전산설비 운영과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CLS은행은 2002년 9월 미 달러화 등 7개 통화를 대상으로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14년 9월 현재 총 17개 통화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당시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 가능한 금융거래의 범위는 전통적 외환거래(현물환, 선물환, 스왑 등)에 국한되었으나 2006년 CLS은행이 미국 증권거래 청산·결제기구인 DTCC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시스템 결제서비스 제공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7년 11월부터 신용파생상품(CDS) 거래에 대한 결제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7년 12월에는 역외선물환(NDF) 거래 결제서비스도 개시하였다.

98)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란 동 시간대중 CLS은행내 결제회원은행 계좌간 가상결제와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Continuous)으로 연계(Linked)되어 일어남을 의미한다.

〈표 11-1〉

CLS시스템 결제가능 통화

지정시기	결제통화
2002년	미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2003년	싱가포르 달러, 덴마크 크로네,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2004년	한국 원, 홍콩 달러, 뉴질랜드 달러, 남아공화국 랜드
2008년	이스라엘 셰켈, 멕시코 페소

2014년 9월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외환거래의 일평균 규모는 건수 기준으로 99만 건, 금액으로는 5조 7천억달러에 달하나 실제 납입(Pay-in) 규모는 0.72%에 불과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유동성 절감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 참가기관의 일평균 CLS시스템 이용규모는 2013년중 약 574억 달러에 달한다.

〈표 11-2〉

CLS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¹⁾(일평균)

(십억달러)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금 액	국내은행	22.2	24.4	29.4	31.8	29.3
	외은지점	7.5	21.0	28.8	30.1	28.1
	합 계	29.7	45.4	58.2	61.9	57.4

주 : 1) 다자간 차감전 총액기준

2. CLS시스템의 외환동시결제 구조

가. 참가기관

CLS은행의 참가기관은 2014년 9월말 현재 62개 결제회원과 약 11,550개의 제3자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회원은은행⁹⁹⁾은 CLS그룹지주회사의 주주로서 CLS은행에 결제계좌를 보유하고 자기거래를 직접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고객의 거래도 수탁·결제한다. 제3자고객은 CLS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못하고 결제회원은은행을 통하여 외환결제를 위탁하여 처리한다.

99) 결제회원은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CLS그룹지주회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야 하고 CLS은행이 정하는 자기자본 및 장·단기 신용등급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말 현재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3개의 은행이 CLS 시스템에 결제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 은행을 제외한 15개 모든 국내은행 및 19개 외은지점은 국내의 결제회원을 통한 CLS시스템의 제3자고객으로 외환거래를 결제하고 있다. 3개의 결제은행을 포함한 16개의 국내은행과 1개의 외은지점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CLS공동망¹⁰⁰⁾을 통하여 CLS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을 포함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도 CLS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CLS은행이 각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에 CLS은행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와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회원은행들과 자금을 주고받음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결제회원이 외환거래 통화의 소재국 중앙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결제대행기관(Nostro agent)을 통해 결제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은금융망에 접속할 수 없는 국외 결제회원을 위하여 일부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이 결제대행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CLS은행은 결제회원이 자금납입에 실패할 경우 유동성 부족 통화를 조달할 유동성공급기관(Liquidity Provider)을 사전에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제회원인 국민, 외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유동성 공급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00) CLS결제 관련 정보를 CLS은행에 송수신하기 위해 CLS은행과 국내 결제회원 및 여태 국내은행을 연계한 전산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표 11-3〉 우리나라의 CLS시스템 참가현황

국내은행 ¹⁾	참가시기	CLS 공동망 ²⁾	외은지점	참가시기	CLS 공동망 ²⁾
국민은행	2004.12	이용	HSBC	2004.12	-
(농협은행)	2005. 2	이용	BOA	2004.12	-
(광주은행)	2005. 2	이용	BNP파리바	2005. 6	-
(대구은행)	2005. 3	이용	미쓰이스미토모	2006. 3	-
외환은행	2004.12	이용	UBS	2007.10	-
(하나은행)	2005. 1	이용	ING	2008. 7	-
(수협중앙회)	2005. 2	이용	(모간스탠리) ³⁾	2009. 3	이용
(수출입은행)	2005. 2	이용	골드만삭스	2009. 7	-
(부산은행)	2005. 3	이용	크레디아그리콜	2009. 8	-
(전북은행)	2005. 4	이용	JP모간체이스	2009. 8	-
(경남은행)	2005. 5	이용	미쓰비시도쿄UFJ	2009.11	-
(산업은행)	2005. 6	이용	크레디트스위스	2010. 3	-
(기업은행)	2005. 9	이용	도이치	2010. 4	-
(우리은행)	2005. 9	이용	DBS	2010. 6	-
신한은행	2005. 1	이용	뉴욕멜론	2010.12	-
(제주은행)	2007. 3	이용	스테이트스트리트	2011. 1	-
SC은행	2006. 1	-	맥쿼리	2011. 3	-
한국씨티은행	2010.11	-	소시에테제네랄 바클레이즈	2011. 8 2013.11	- -

주 : 1)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은 결제은행으로 CLS시스템에 참가하고 있으며 괄호는 국내 결제은행을 통해 제3자고객으로 참가하는 기관을 의미

2) 해외 본사 등 국외 결제회원을 이용하는 경우 CLS공동망을 이용하지 않음

3) 외환은행을 결제은행으로하여 CLS시스템에 참가

나. 결제 절차

CLS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시부터 12시까지¹⁰¹⁾)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101)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화에 대해서는 해당 RTGS시스템의 운영마감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통결제시간대를 중부유럽시간(CET; Central European Time)기준 07시부터 10시(국내시간 기준 15시부터 18시)로 단축·운영하고 있다.

〈표 11-4〉 CLS시스템 동시결제시간대

지역	동시결제시간대 ¹⁾			
서울				
유럽지역				
북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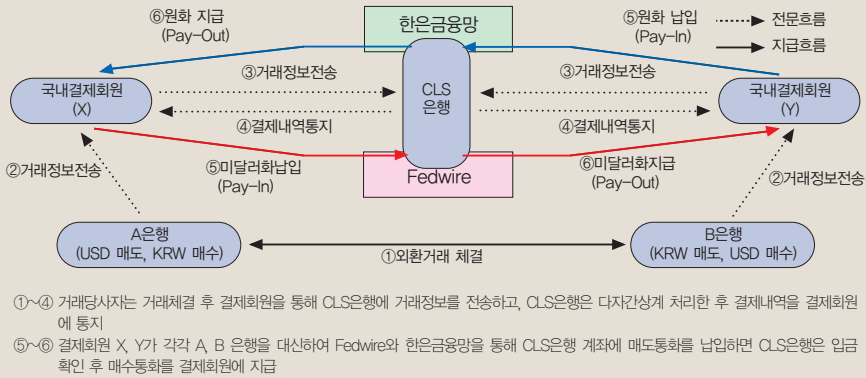
지역	중부유럽시간	해당지역시간	한국시간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홍콩, 싱가포르)	07:00~12:00	14:00~17:00	15:00~18:00
(한국, 일본)		15:00~18:00	
(호주, 뉴질랜드)		16:00~19:00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07:00~12:00	01:00~06:00	15:00~20:00
유럽지역(유로, 스위스)	07:00~12:00	07:00~12:00	

주 : 1) 동절기(10월 마지막주 일요일~익년 3월 마지막주 토요일) 기준

CLS시스템의 결제는 CLS은행과 결제회원은행간에 복수통화(매수통화 및 매도통화) 자금을 각 결제통화국 RTGS시스템을 통하여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결제일에 CLS은행이 결제회원별, 통화별로 납입금액과 수취금액을 산정하여 각 결제회원은행에 결제자금납입을 지시하면 각 결제회원은행이 동 금액을 각 통화국 중앙은행에 개설된 CLS은행계좌로 납입하는 일련의 과정을 Pay-In이라 한다. Pay-In 이후 CLS은행이 Pay-In 결과를 바탕으로 각 통화국 중앙은행에 수취통화의 지급을 지시하고 각 통화국 중앙은행이 해당 결제회원은행 CLS계좌에 지급처리하는 과정을 Pay-Out이라고 한다. 원-달러거래의 결제를 가정하면 그 과정은 〈참고 11-3〉와 같다.

〈참고 11-3〉

CLS시스템의 원/달러거래 결제과정



한편 CLS 결제금액은 다자간 차감방식으로 산출됨에 따라 실제로 결제에 필요한 유동성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3. CLS공동망

국내 결제회원과 국내 결제회원을 이용하는 제3자고객들은 자체적으로 CLS통신망을 구축하는 대신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CLS공동망을 이용하여 CLS 결제관련 정보를 CLS은행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CLS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CLS공동망은 CLS은행과 국내 결제회원 및 여타 국내은행(제3자고객)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으로서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결제원의 기존 금융공동망 전산자원을 활용하여 구축되었다.

가. 결제서비스 내용

CLS공동망은 참가기관들에게 CLS시스템 이용을 위한 메시지 생성 및 송·수신 중계, 참가기관들의 자금납입과 자금수취 일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들의 외환거래내용을 기초로 CLS 결제서비스를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여 CLS은행과의 메시지 송·수신을 증계하며, CLS은행 자금납입시점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결제회원과 제3자고객의 자금납입 및 자금수취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4년 9월말 현재 국내 결제회원인 외환, 국민, 신한은행을 포함하여 16개 국내 은행과 1개 외은지점이 CLS공동망을 통해 CLS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CLS공동망은 동절기는 07시 45분부터 22시 30분까지, 하절기의 경우 중부유럽 일광절약시간제(summer time)를 고려하여 06시 45분부터 22시 30분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가능 통화는 17개 CLS 결제통화중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가 미미한 남아공 랜드, 이스라엘 셰켈 및 멕시코 페소를 제외한 14개 통화이다.

나. 업무처리절차

CLS공동망의 업무처리절차는 크게 거래정보 처리, 결제정보 처리, 자금결제 모니터링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정보 처리단계는 참가기관이 매매체결일에 외환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하는 과정으로 시작된다.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전문을 검증하여 이를 CLS은행에 전송한다. 다만, 제3자고객으로부터 전송된 거래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결제회원의 거래 유효성 및 신용한도 검증을 거쳐 CLS은행에 전송한다.

결제정보 처리단계에서 금융결제원은 결제일에 CLS은행으로부터 결제계획서(Pay-In Schedule)¹⁰²⁾를 전송받아, 이를 근거로 참가기관별 당일 지급 및 수취 내역을 정리한 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결제회원과 제3자고객에 통보한다. 금융결제원은 참가기관이 자금결제내역을 미리 대사할 수 있도록 결제내역서 송부시 사전 대사 자료를 함께 송부한다.

자금결제 모니터링 단계에서 금융결제원은 결제회원의 CLS은행앞 결제자금 납입·수취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CLS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납입요청, 납입 지연, 수취자금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을 결제회원에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22시에 참가기관별 거래자료 제출내역과 대사 자료를 송부하여 CLS공동망 업무를 종료한다.

102) 금융결제원은 CLS은행으로부터 결제일 08시(한국 시간)에 최초 결제계획서(Initial Pay-In Schedule)를 전송받고, 14시 30분에는 당일물거래(same-day trade)나 취소·정정거래 내역을 반영한 수정 결제계획서(Revised Pay-In Schedule)를 전송받는다.

제4절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

외환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국가간 또는 복수통화간에 이루어지는 외환결제의 특성상 환율, 시차, 국가간 상이한 지급결제시스템 및 법률체계 등으로 인해 리스크의 발생 과정 및 형태가 매우 복잡하다. 과거 금융당국 및 거래당사자들은 주로 원금리스크만을 외환거래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외환거래과정에서는 결제시점과 결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한 은행의 결제불이행이 여타 은행으로 파급되는 시스템적리스크의 발생가능성 때문이며,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하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시스템적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환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1. 외환결제리스크의 종류

국제결제은행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감독지침」에서 외환결제와 관련한 리스크를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 및 법률리스크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하였거나 매도통화의 지급을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전액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원금리스크라고 한다. 특히 환거래은행 방식에서는 외환거래가 양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주로 국경을 넘어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금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매도통화의 지급이 일어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경우 동 은행이 다른 거래상대방과 함께 덜 유리한 조건(환율 등)으로 새로운 거래를 체결하여야 할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이를 대체비용리스크라 한다. 또한 원금리스크와는 달리 거래상대방이 지급불능이 아닌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양 통화에 대한 유동성 부족을 유동성리스크라고 한다. 대체비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는 금액면에서 원금리스크보다 작을 수 있으나 원금리스크와는 달리 매도통화를 지급하기 전인 거래체결 시점부터 발생가능한 리스크라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1-5〉 외환결제 관련 관리대상 리스크

원금리스크	전통적인 외환결제방식을 이용할 경우 매도한 통화는 지급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매수한 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최종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 일방이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다른 거래상대방은 해당 거래를 통해 조달하고자 했던 통화를 다른 거래를 통해 조달해야 하므로 동 과정에서 환율변동, 불리한 계약조건 등의 비용을 부담할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매도 통화를 지급한 은행이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한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insolvency)이 아니라 해당 통화 유동성의 일시적인 부족에 기인한 경우 유동성리스크로 정의
운영리스크	결제관련 IT시스템의 처리용량 부족 또는 장애, 운영인력의 미숙이나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결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법률리스크	외환거래에 관한 계약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거래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위의 세가지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외환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라면 운영리스크와 법률리스크는 여타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운영리스크란 외부사건이나 부적절한 내부 프로세스, 인력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결제관련 IT시스템 장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 등을 의미한다. 법률리스크란 예상치 않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외환거래에 관한 계약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거래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은행에 내재된 운영리스크와 법률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결제실패 등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방안

외환거래는 여러 국가의 법률과 금융시장인프라, 여러 금융기관간의 프로세스를 수반하므로 은행이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행적 차원에서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은행은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정책과 절차,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 한도 등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환거래의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적합한 결제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CLS시스템, 각국의 거액결제시스템 등의 금융시장인프라부터 환거래은행에 이르기까지 결제과정에 관여하는 여타 기관의 규정과 절차, 리스크요인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외환거래의 결제방식 중 외환결제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결제방식은 외환동시결제이다. 외환동시결제는 거래 양방이 정확한 금액을 납입하였을 경우에만 결제가 일어나므로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게 된다. 그러나 외환동시결제를 이용한다고 해서 외환결제와 관련한 모든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납입에 실패하였을 경우엔 매도 통화를 돌려받음으로써 원금을 보장받지만 매수하고자 했던 통화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및 대체비용리스크 등에 직면하므로 외환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거래상대방이 CLS참가기관이 아니거나 거래 통화가 CLS 또는 RTGS연계 등에 의해 동시결제되는 대상이 아닐 경우의 외환거래 등은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거래은행은 환거래은행과의 약정 체결시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매수통화의 수취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하여 외환결제관련 리스크의 노출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를 건별로 각각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 대신에 외환거래가 많은 은행과 통화별로 결제일이 동일한 외환거래에 대하여 지급·수취액을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원금리스크 노출규모를 줄이고 필요 유동성을 절감할 수 있다. 담보제도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담보로 동 외환거래에 대한 미래시장 가격 변화를 커버하는 것이 가능해져 대체비용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잔존하는 외환결제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환결제리스크 측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간대별 또는 일별 외환결제리스크 노출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필요자본을 분석할 때 앞서 언급한 외환결제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동 외환결제리스크가 전형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고 11-4〉

BCBS의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감독지침

BCBS는 2013년 2월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관리의 모범관행인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감독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2000년 9월 발표한 기존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통하여 일부 외환결제리스크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많은 외환거래가 동시결제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대체비용리스크나 유동성리스크와 같은 잠재적인 잔여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 감독지침은 외환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결제가 완료(매수 및 매도 자금의 교환)되기 전까지 은행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의미하는 외환결제 관련 관리대상 리스크로 종전의 원금리스크 외에 대체비용, 유동성, 운영 및 법률리스크 4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가이드라인에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통제체계(Governance) 및 적정자본 유지(Capital for FX transaction) 관련 지침을 추가한 7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감독지침」 가이드라인

1. 리스크 통제체계 (Governance)	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절차와 이사회 의 적극적인 관여를 포함하는 강력한 리스크 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함
2. 원금리스크 (Principal risk)	은행은 외환거래의 결제시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외환동시 결제를 제공하는 FMI를 이용하여야 하며, 외환동시결제의 이용이 불 가능한 경우 잔여 원금리스크의 규모와 노출기간을 적절히 인식, 측 정, 통제 및 감축해야 함
3. 대체비용리스크 (Replacement cost risk)	은행은 외환거래의 결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외환거래에 따 른 대체비용리스크를 적절히 인식, 측정, 모니터 및 통제하기 위한 건전한 리스크 감축 체계를 갖추어야 함
4. 유동성리스크 (Liquidity risk)	은행은 외환거래의 결제시 각 통화별 필요 유동성과 리스크를 적절 하게 인식, 측정, 모니터 및 통제하여야 함
5.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은행은 운영리스크를 적절히 인식, 평가, 모니터 및 통제하여야 함. 은행은 자신의 시스템이 리스크 관리 통제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고, 평시 및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충 분한 처리용량, 확장성 및 회복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함
6. 법률리스크 (Legal risk)	은행은 관련된 모든 사법권역에서 업무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약정 과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함
7. 적정자본 유지 (Capital for FX transaction)	은행은 필요 자본규모를 측정할 때 원금리스크와 대체비용리스크를 비롯한 외환결제와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은행은 이러 한 잠재적인 익스포저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본을 보유해야 함

아울러 BCBS와 CPMI는 외환결제에서 원금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외환동시결제방식 이용을 장려하였으며, 동 지침에 대한 각국 감독당국과 은행들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감독지침 발표 이후인 2013년 6월, 금융감독원은 동 감독지침을 반영한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을 제정(2013년 10월 시행)하였다. 모범기준은 국내은행에 대하여 외환결제관련 리스크의 인식·모니터링 등을 위한 내부관리체제 구축, 외환동시결제시스템 이용 장려, 리스크의 통제 및 관리 수단 강구, 기타 유동성·운영·법률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시 외환결제관련 리스크 포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제12장 증권청산결제시스템

제1절 개 요	257
제2절 중앙거래당사자	260
제3절 중앙예탁기관	267
제4절 증권결제시스템	272

제1절 개요

증권의 청산결제란 장내 또는 장외거래를 통해 매매가 체결된 이후 증권을 인도(delivery)하고 대금을 지급(payment)함으로써 거래쌍방이 채권과 채무를 이행하여 거래를 완결시키는 것으로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청산(clearing)과 결제(settlement)로 구분할 수 있다. 청산이란 매매확인 후 차감을 거쳐 결제자료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하여 확정된 결제자료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권과 대금을 교환하여 매매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이다.

〈그림 12-1〉

증권의 청산, 결제 흐름도



증권거래는 표준화된 거래규칙이 정해진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은 유가증권시장(주식, 국채, 일반채권 등), 코스닥시장(주식), 코넥스시장(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장외시장에서는 주로 주식, 채권, CD, CP, RP, 전자단기사채, 파생상품 등이 거래된다.

〈표 12-1〉

우리나라의 장내 및 장외시장 거래 대상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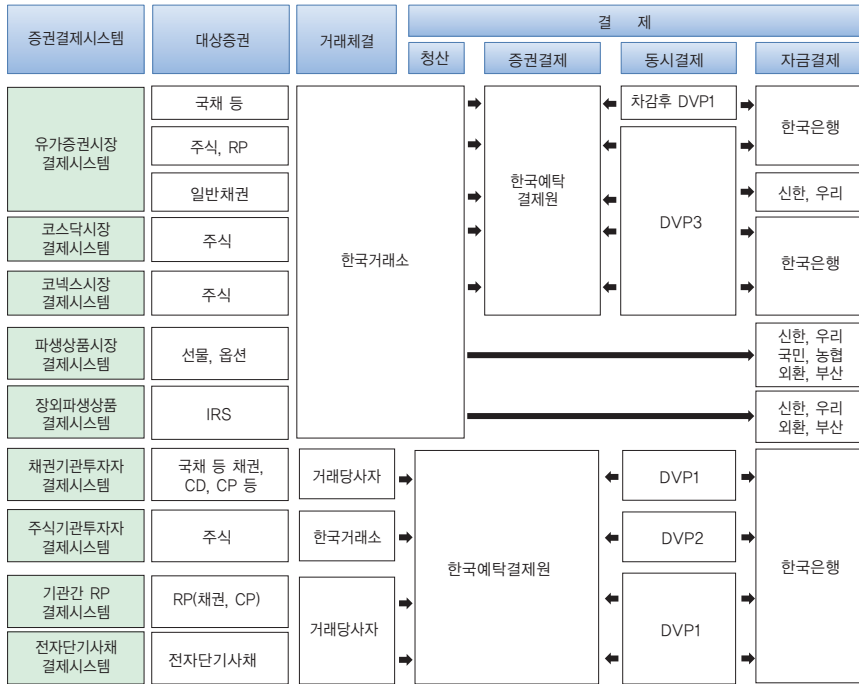
구 분		대상증권	
장내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주식, 국채, 일반채권, RP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주식
	파생상품시장	선물, 옵션	
장외시장		주식, 채권, CD, CP, RP, 전자단기사채, 이자율스왑(IRS) 등 장외파생상품	

우리나라의 증권청산결제시스템은 청산기관, 중앙예탁기관 및 결제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장내·외에서 증권의 청산 및 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산기관(clearing house)은 매매확인과 거래당사자간 증권과 대금에 대한 채권과 채무의 내용을 산정하는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장외거래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기관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청산기관은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청산기관을 중앙거래당사자(CCP)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외거래의 경우 주식기관투자자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원화 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예탁기관(CSD)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집중예탁받아 증권의 양도나 질권설정 등의 권리이전을 실물증권의 인도가 아닌 예탁자계좌부상의 기재(계좌대체, book-entry)에 의해 처리하는 기관이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예탁기관은 증권결제기관으로서 증권결제시스템(S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장내시장과 장외 증권거래에서 중앙예탁기관으로서 증권결제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결제은행은 증권거래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중앙은행 또는 상업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장내시장(주식, 국채 및 RP 등) 및 장외 증권거래(주식, 채권 및 RP 등)의 대금결제는 한은금융망을 이용하고 있지만 장내 일반채권결제와 장내·외 파생상품의 대금결제는 상업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고 있다.

〈그림 12-2〉 우리나라의 증권청산결제시스템 개요



제2절 중앙거래당사자

1. 중앙거래당사자의 개념

청산과정의 첫 단계는 체결된 거래의 대상증권, 교환금액, 결제일 등 매매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매매확인인 거래상대방 상호간에 직접 이루어지거나 거래소 등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거래가 확인된 다음에는 거래당사자간 결제를 위해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할 차액을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거래당사자(CCP)는 거래당사자간에 개입하여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앙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다자간 차감(multilateral netting)을 통해 결제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기관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 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¹⁰³⁾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장외파생상품거래(원화 이자율스왑거래)와 주식기관투자자거래(상장주식의 위탁매매거래)에 대해 각각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2-2〉 우리나라의 CCP

구 분			CCP
장내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		
장외	장외파생상품거래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		한국거래소
	주식기관투자자거래		한국예탁결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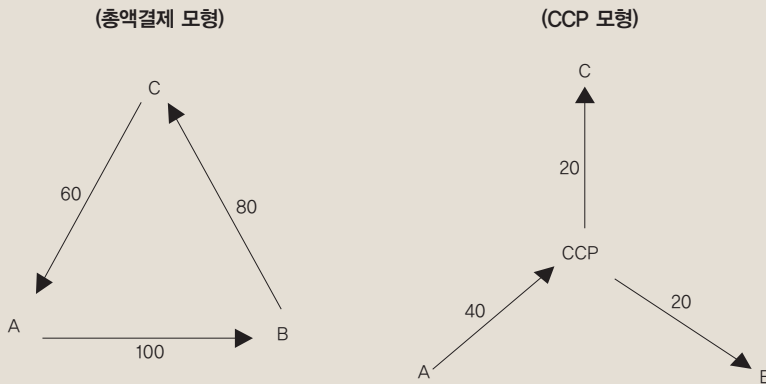
103) 장외거래중 「자본시장법」상 청산대상거래로는 파생상품 거래, 환매조건부매매, 증권의 대차거래, 채무증권의 거래 및 상장증권(채무증권 제외)의 위탁매매거래가 있다.

〈참고 12-1〉

CCP를 통한 결제유동성 절감

CCP가 거래당사자간 개입하여 다자간 차감을 하게 되면 결제규모가 축소되면서 거래상대방 리스크도 축소된다. 아래 그림에서 양자간 차감을 하는 경우 결제회원 A의 다른 상대방에 대한 결제규모는 100이고, 거래상대방 리스크 규모는 60인데 CCP를 통한 다자간 차감 이후 A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결제규모 40만 남는다. B의 경우 다자간 차감이후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 규모는 CCP에 대한 수령포지션 20만 남는다.

CCP를 통한 결제유동성 절감



2.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CCP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체결된 거래에 대해 매매확인 후 채무인수의 과정을 거쳐 중앙거래당사자로서 결제이행책임을 진다. 먼저 거래소는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의 내역을 확인하여 청산대상을 확정한다.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매매의 정정에 따라 변경된 매매거래의 내역을 확인한다. 이후 거래소는 확인한 거래에 대하여 채무인수의 과정을 거쳐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를 인수하고 결제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 인수한 채무는 다자간 차감을 통해 그 결제규모가 축소된다. 차감은 결제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앙거래당사자의 결제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회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므로 채

무 이행을 위한 자체 이행재원과 함께 회원으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회원은 장내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회원보증금 및 거래증거금을 예치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거래소는 결제이행재원으로 자체 적립한 결제적립금 4,00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각 2,000억원, 회원보증금으로 회원당 1백만원, 거래증거금으로 파생상품시장에서 8조 1,80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래소는 회원의 채무불이행시 신속하게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시중은행 및 증권금융과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3개 상업은행과 1조 5,000억원, 한국증권금융과 1조원 규모의 신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보유 유가증권을 담보로 필요시 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과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표 12-3〉 거래소의 결제이행재원 현황

구 분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결제적립금	4,000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2,000억원	2,000억원
회원보증금	회원당 1백만원	회원당 1백만원
거래증거금	-	8조 1,800억원

주 : 2013년말 기준
자료 : 한국거래소

3. 장외거래 CCP

장외거래에서 중앙거래당사자는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채무인수, 경계,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채무부담업무, 다수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차감업무, 결제목적물 및 결제금액의 확정 및 결제기관에 대한 결제지시업무,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당사자인 청산대상업자는 중앙거래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거래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거래를 청산의무거래로 정하고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7월에는 원화 이자율스왑거래가 청산의무거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최초로 명시되었다.

가.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 CCP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는 원화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거래에 대해 2014년 3월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4년 6월 30일부터는 의무청산에 들어갔다. 장외파생상품 CCP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한 투자매매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를 참가 대상으로 하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전증거금 납부, 엄격한 회원 기준 등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청산증거금의 경우 사전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5일간의 가격변동분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원 재무요건과 관련하여 은행의 경우 BIS 비율 8% 이상,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NCR 비율 2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4년 9월 현재 원화 이자율스왑거래 청산회원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53개사가 참가하고 있다. 청산회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결제이행재원으로 거래소는 결제적립금 500억원과 매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결정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합쳐 최대 결제규모 2개사 결제불이행을 커버하는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표 12-4〉 장외파생상품 청산 관련 주요 결제안전성 강화장치

	장내파생상품시장	장외파생상품시장
회원재무요건	(금융투자회사) NCR ¹⁾ ≥ 180%	(은행) BIS비율 ≥ 8% (금융투자회사) NCR ≥ 250%
증거금요건	사후징수, 2일간 위험커버	사전징수, 5일간 위험커버
공동기금규모	최대 결제규모 1개사 결제불이행 커버 수준	최대 결제규모 2개사 결제불이행 커버 수준

주 : 1)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나. 주식기관투자자 거래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CCP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1월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의 결제방식이 증권이 우선 인도되고 대금은 영업시간 종료시점에 차감결제되는 방식(DvP2)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증권 인도와 대금 결제사이의 시차 발생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통한 결제이행 보증서비스¹⁰⁴⁾를 제공하였다. 2013년 7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¹⁰⁵⁾으로 상장증권의 위탁매매거래(주식기관투자자거래)에 대해 CCP로서 인가를 받게 되었다.

예탁결제원은 회원에 대해 순채무한도를 설정하여 차감지급액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회원의 차감지급액은 회원의 지급 예정금액에서 수령 예정금액과 결제축진대금¹⁰⁶⁾ 잔액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한편 예탁결제원의 결제유동재원은 청산적립금 및 결제기금으로 구성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업의 청산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2,000억원의 청산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회원에 대해 500억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탁결제원은 주거래은행에 2,000억원의 신용한도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기관결제의 순채무한도가 1,000억원 이내이므로 최대 지급채무를 가진 2개의 회원이 결제대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기관결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12-2〉

주요국의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이행 현황

(미국)

미국에서는 2010년 7월에 제정된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Act¹⁰⁷⁾)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의무청산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의무청산 대상상품은 이자율스왑거래(IRS)와 신용파생거래(CDS)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 CCP인 CME(Chicago Merchandise Exchange) Clearing은 2009년 CDS를 시작으로 IRS는 2010년, NDF는 2012년부터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일본은 2010년 5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IRS와 CDS를 대상으로 의무청산을 실시하였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 및 채무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JSCC(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는 2011년 7월부터 CDS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04)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을 인수한 결제회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증권을 인도한 결제회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105)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2013.7.5) 제3조(예탁결제원의 위탁매매거래 청산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명시되어있다.

106) 증권을 인수한 회원이 예탁결제원 계좌로 대체되어 있는 증권을 자신의 예탁계좌로 조기에 수령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2012년 10월부터는 IRS에 대해서도 청산서비스를 개시하였다.

(EU)

유럽 증권감독당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은 2012년 7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의무청산, 거래정보의 보고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 European Market Infrastructure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의무청산은 스왑거래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LCH와 Eurex Clearing에서 CDS, NDF, IRS 등에 대한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 1)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4. CCP의 결제리스크 관리

중앙거래당사자가 관리해야 할 핵심 결제리스크는 신용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이다. 중앙거래당사자는 참가회원의 파산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 즉, 신용리스크를 부담하는데, 신용리스크는 일반적으로 대체비용리스크와 원금리스크를 포함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중앙거래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참가회원에 대한 미청산 계약을 일괄청산(close-out) 할 때 원래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매도하거나 높게 매수할 때 발생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을 매도한 중앙거래당사자가 증권은 인도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증권을 매수한 중앙거래당사자가 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증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유동성리스크는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중앙거래당사자가 다른 채무이행 참가자에 대한 지급채무(payment obligations)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중앙거래당사자는 통상 지급채무 이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비현금 자산을 필요한 시간내에 현금화하기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참고 12-3〉

CCP의 신용리스크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CCP가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의 범위로 현재 익스포저(current exposure)와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potential future exposure)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익스포저는 CCP의 참가회원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CCP가 즉시 직면할 수 있는 손실규모를 의미하는데, 특정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 시점에서의 미청산 계약의 가치와 변동증거금 부과를 위해 최종적으로 실시한 시가평가금액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는 채무불이행 참가회원의 미청산 계약을 다른 참가자에게 매각하거나, 일괄청산(close-out)할 때까지 동 계약의 시장가치가 변동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말한다. 잠재적 미래 익스포저는 주어진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산술적인 시가평가를 통해 계산하는 현재 익스포저와 달리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시장가치 변동을 감안한 후 최대 예상 손실규모를 추정해야 하므로 수리통계학적 모델을 통해 산출하게 된다.

중앙거래당사자는 회원의 채무불이행시 직면하게 될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참가요건 설정과 함께 충분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명확한 대응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중앙거래당사자는 일정 기준이상의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을 회원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회원들로부터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증거금을 부과하거나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앙거래당사자는 원활한 결제이행을 위해 자체 보유자산중 일부를 결제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편 중앙거래당사자의 결제이행재원¹⁰⁷⁾은 채무불이행 회원이 납부한 증거금이나 공동기금 기여분이 먼저 사용된 다음 중앙거래당사자가 자체 확보한 결제적립금¹⁰⁸⁾이나 다른 채무이행 회원의 공동기금 기여분이 사용된다. 아울러 중앙거래당사자는 사전에 확보한 결제이행재원 규모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회원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국내 중앙거래당사자도 결제이행재원의 사용순서 및 극단적인 손해 발생시의 처리절차를 국제기준¹⁰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107) 참가회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관리하기 위해 CCP가 사전적으로 조달한 재무자원 및 그 사용순서를 통상 워터폴(waterfall)이라 한다.

108) 주요국 감시·감독당국은 CCP가 자체 확보한 결제적립금의 일부를 결제를 이행한 다른 회원들의 공동기금 기여분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9) CPMI-IOSCO는 2014년 10월 「금융시장인프라의 손실복구에 관한 보고서(Recovery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를 발표하고, CCP를 비롯한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유지를 위한 손실복구 계획의 수립 및 손실공동분담, 유동성확보, 추가 재무자원 확충 등 구체적인 손실복구 수단을 소개하고 있다.

제3절 중앙예탁기관

1. 중앙예탁기관의 개념

가. 중앙예탁기관의 의의

증권의 예탁이란 증권 소유자가 그 증권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기 위해 해당 증권을 다른 기관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CSD)은 이러한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여러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예탁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부상 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계좌대체 방식은 증권의 원활한 유통 및 증권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증권결제제도에서 중앙예탁기관은 결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 증권결제시스템과 대금결제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각종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예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장내시장의 직접참가자간 결제, 장내시장의 직접참가자와 기관투자자인 간접투자자 간의 결제, 장외시장 결제, 국제증권거래의 결제 등이 있다.

한편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을 보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실물증권으로 발행된 증권을 부동화(immobilization)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물리적인 실물증권이 아닌 전자적인 기록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권화(dematerialization)라고 한다.

나. 중앙예탁기관의 발전

증권예탁결제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발달 및 증권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증권의 발행 및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증권의 결제를 위한 제반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물 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증권의 투자 및 운용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량의 실물증권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한편 신속·정확하게 인도하기 위한 비용이 증대되었다. 또한 실물증권의 대량 이동은 도난·분실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을 높였으며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증대로 인해 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중앙예탁기관은 이처럼 실물 증권의 직접 인도 방식으로는 금융시장 발달에 따른 대량의 증권결제를 처리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편 중앙예탁기관에는 각국의 중앙예탁기관(NCSD; 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이외에 유로채 등 다중통화에 걸친 증권의 결제를 하는 국제 중앙예탁기관(ICSD;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도 있다. 이러한 ICSD로는 Euroclear와 Clearstream이 대표적이다.

2. 우리나라의 중앙예탁기관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단일의 중앙예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결제제도는 1974년 12월 6일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¹¹⁰⁾되었다. 이후 1994년 4월 1일부터 동 기관의 법인격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명칭을 증권예탁원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 27일 증권예탁결제원으로, 2009년 2월 4일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110) 제5차 개정 구(舊) 「증권거래법」은 부칙에서 대체결제업무를 허가받은 자가 있을 때까지 증권거래소가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에 따라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증권거래소가 대체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한국예탁결제원 취급업무

(증권의 예탁)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외국예탁결제기관 및 외국법인 등이다.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예탁자는 자기분 또는 고객분의 증권을 예탁할 수 있다. 고객분의 증권을 예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은 혼합보관되어 고객은 단독소유권이 아닌 공유지분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¹¹¹⁾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의 권리관계 명확화를 위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75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로 하여금 고객 소유의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재산상태와 관계없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증권의 분실·도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계좌부를 작성·비치함으로써 고객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309조에서는 예탁자계좌부를 자기소유분과 고객 예탁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예탁자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제로 예탁자계좌부를 자기분계좌, 고객분계좌 외에 신탁분계좌 등 총 3가지로 구분하여 개설하고 있다.

(예탁증권의 계좌대체)

주식, 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증권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계좌간 대체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법적·제도적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갖추어진다. 우선 「상법」 제336조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

111)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4항에서는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탁자 또는 고객은 혼합보관된 예탁증권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의 수치인으로서 임지물인 예탁증권에 대하여 보관의무를 지게 된다.

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물증권의 인도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에 따른 결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311조에서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탁증권의 질권과 신탁)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의 소유권 이전 외에도 각종 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예탁증권에 대한 질권설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예탁자계좌부상에 질물(質物)이라는 의사와 질권자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좌간 대체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311조에서 동 사항을 기재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에 근거한다.

한편 신탁은 위탁자가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를 자기분과 고객분 외에 신탁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예탁증권의 반환)

「자본시장법」 제312조에서는 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질권설정된 증권의 경우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질권설정된 증권이 반환되면 질권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한편 예탁자 파산 등의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식병합·분할·교체 또는 채권원리금 지급 등 권리확정 등의 사유로도 반환 및 계좌대체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예탁 및 결제 등 제반 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참고 12-4>**중앙은행의 증권보관업무 (Custody)**

증권의 보관기관(custodian)은 고객을 대신하여 증권의 소유기록을 유지하고, 배당금 수령, 원리금 지급,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증권은 통상 중앙예탁기관에서 보관하지만 증권의 실질소유자가 예탁기관의 직접참가자가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고객들은 증권을 보관해주고 증권의 소유 및 이전과 관련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기관의 참가자와 보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국제간 투자활동이 증가하면서 많은 고객들은 국제보관기관으로 증권의 보관을 집중시켜 왔다. 국제보관기관은 일반적으로 전세계 다수의 예탁기관에 참가하고 있으며 국제보관기관이 그 지역 예탁기관의 직접참가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 예탁기관의 직접참가자를 부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제보관기관은 전형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은행업무와 현금관리서비스를 포함한 회계 및 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부 국제보관기관은 외국통화의 수령 및 지급액을 고객의 자국 통화로 환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급결제인프라 등을 갖춘 대형 상업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증권 보관기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중앙은행 등의 경우 보관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증권의 보관기관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과실, 사기, 부실한 관리, 부적절한 기장 등을 할 경우 동 기관에 보관된 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보관기관이 고객자산을 자기자산과 구분(segregation)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보호 정도가 높은 편이나 외국중앙은행 등은 여전히 상업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외국 중앙은행 등은 투자자산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 채권 투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그러한 우려는 커지게 되었다.

한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외국 중앙은행에 대해 증권 결제 또는 보관기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왔으며 한국은행도 2014년부터 외국중앙은행,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4절 증권결제시스템

1. 증권결제시스템의 개념

증권결제시스템(SSS)이란 장부상의 계좌대체(book-entry) 방식으로 증권이 이전을 통해 증권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결제시스템¹¹²⁾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 및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증권결제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증권결제 방법은 차감여부, 차감방식, 결제집중 여부 및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총량 또는 차감 결제, 상대 또는 다자간 차감결제, 특정일 또는 연속 차감결제, 집중 또는 개별결제, 동시 또는 분리 결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2-5〉 증권결제 방법의 분류

분류기준		결제방법	내 용
차감여부		총량결제	매매건별로 결제
		차감결제	매도·매입 차감에 의한 순포지션을 결제
차감 방식	결제상대 지정유무	상대차감결제	거래상대방별로 상호 차감한 순포지션을 결제
		다자간차감결제	거래상대방과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 대한 매도·매입의 순포지션을 결제
	차감연속 여부	특정일차감결제	해당 일자별로 차감 결제하고 미결제분은 결제불이행 처리
		연속차감결제	일자별로 차감하고 미결제분은 익일로 이연하여 재차감 결제
결제집중 여부		집중결제	청산기관 또는 중앙예탁기관에서 집중결제
		개별결제	매매 당사자간 직접결제
대금지급 조건		동시결제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
		분리결제	증권과 대금을 분리하여 결제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이 상호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결제보다 복잡하다. 증권결제와 자금결제의 구체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12) 기존의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기준인 RSSS는 증권결제시스템을 증권거래의 매매확인, 청산, 결제 및 증권 보관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 새로운 국제기준인 PFMS에서는 증권결제시스템을 RSSS에서 사용하는 정의보다 좁게 정의하고 있다. (PFMS 1.12)

첫째, 자금결제는 단순히 자금이 결제되는 단순형 결제인 반면 증권결제는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가치교환형 결제¹¹³⁾라고 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점과 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간에 시차가 있으면 증권을 인도했지만 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하는 원금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증권과 자금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증권대금동시결제¹¹⁴⁾(DvP)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둘째, 자금결제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통화인 반면 증권결제의 대상은 국공채, 회사채, 주식,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다양하며 증권은 종목에 따라 권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주식이나 국채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다르면 별개로 취급된다. 증권은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발행되고 있으며 그 거래도 거래소, 장외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등 상이한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증권에 따라 거래단위, 시장참가자, 시장관행 등이 상이하므로 증권의 상품별로도 결제제도가 상이할 수 있다.

셋째, 증권결제는 개인 고객, 기관투자자, 증권회사 및 보관기관 등 자금결제보다 다수의 당사자가 개입한다.

넷째,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거래 내용과 당사자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결제까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2. 장내증권결제시스템

가. 유가증권시장결제

유가증권시장결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거래소의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상장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되며, 채권시장은 회사채, 소액국공채, 주식관련사채 등이 거래되는 일반채권시장과 국고채, 통안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이 거래되는 국채전문유통시장으로 나뉜다.

113) 2개 통화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외환결제도 가치교환형 결제의 한 형태이다.

114) 자세한 내용은 <참고2-2>에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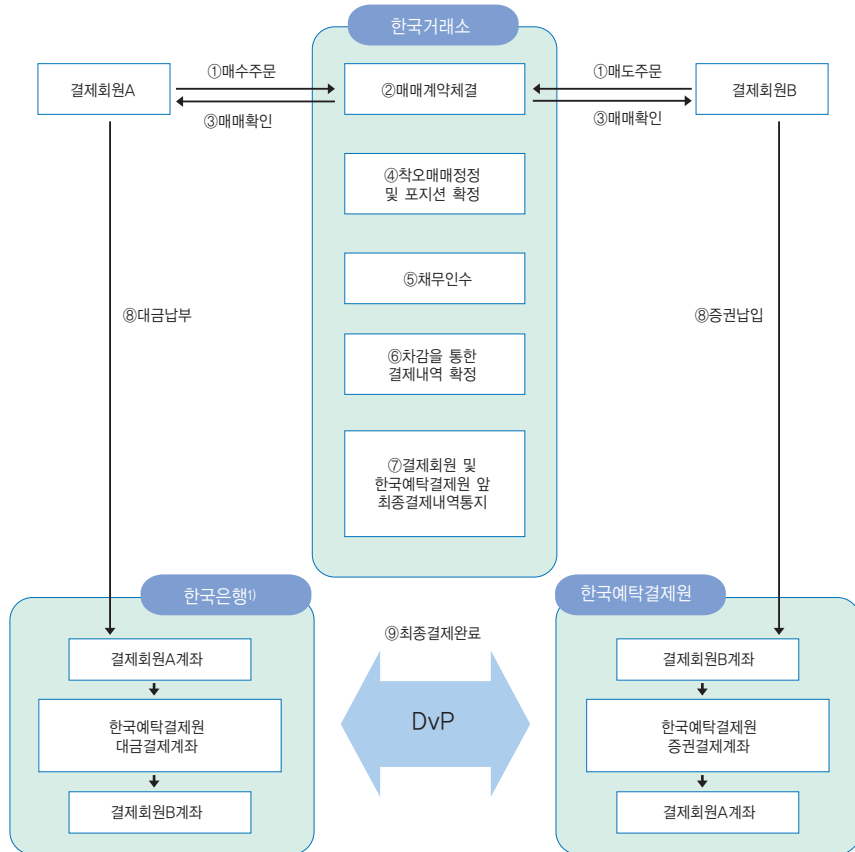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대해 중앙거래당사자로서 매매확인, 채무인수, 청산, 결제이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중앙예탁기관으로서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를 맡고 있다. 시장별 결제방식은 유사하나 일반채권시장은 상업은행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주식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및 RP시장의 결제대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된다는 점이 상이하다.

〈표 12-6〉 유가증권시장결제 개요

구 분	주식시장	채권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	RP시장	일반채권시장
대상증권	상장주식	국채 등	국채전문유통시장 거래채권 및 일부 회사채	주식관련사채 일반채권 등
청산기관	한국거래소			
결제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결제방식	DvP 3	차감후 DvP 1	DvP 3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된 예탁계좌부상 계좌대체 (매도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매수기관)			
대금결제	한국은행 (매수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매도기관)			상업은행 (좌통)
결제일	T+2일	T+1일	T일	T일

〈그림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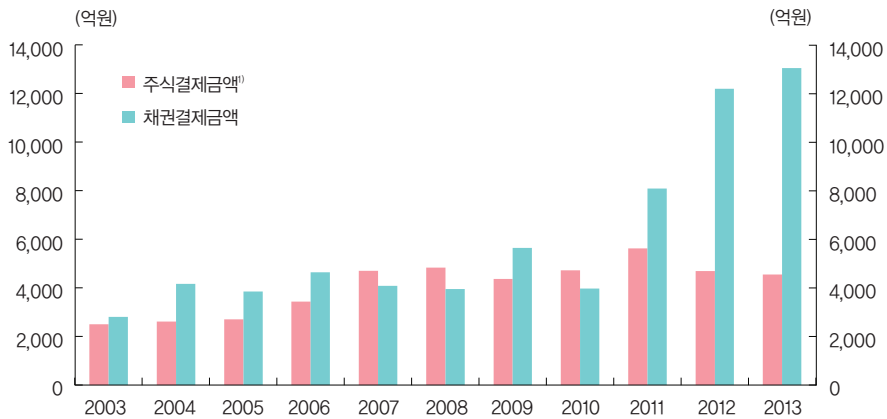
유가증권시장 결제 흐름도



주 : 1) 일반채권시장의 경우 한국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

2013년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 917 종목, 채권 11,255 종목(국채 등 5,020 종목, 회사채 6,235 종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2013년중 일평균 결제규모는 주식이 4,570억원, 채권이 1조 3,150억원 수준이다.

〈그림 12-4〉 유가증권시장 결제규모(일평균)



주: 1) 2009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하여 회원·증권별로 차감 결제함에 따라 코스닥시장 주식결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를 결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호가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매매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한국거래소는 계약내용을 매매당사자에게 확인하고 착오매매를 정정한 후 각 결제회원의 포지션을 확정한다. 한국거래소는 확정된 포지션에 따라 중앙거래당사자로서 매매당사자의 채무를 인수¹¹⁵⁾한 후 한국거래소와 결제회원이 동일한 결제일에 동일한 종목 또는 대금에 대한 채무를 상호 부담하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각 결제회원별로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한다. 확정된 최종결제내역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각 결제회원에게 통지된다.

통지 내역에 따라 결제일(T+2일)에 증권을 납입해야 할 결제회원은 대상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 증권결제계좌에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계좌로 대체한다.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회원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로 대금을 납부한다. 증권과 대금이 납부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과 대금을 수령해야 할 결제회원의 계좌로 동시에 대체(이체)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 짓는다.

115) 결제회원들이 상호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한국거래소에서 인수하는 한편 결제회원들은 거래소에서 인수한 것과 동일한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것으로 회원간의 모든 매매계약을 거래소와 결제회원간의 매매계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일반채권시장)

일반채권시장에서 이루어진 채권거래의 결제과정도 최종적인 결제가 거래당일(T일)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금결제은행이 상업은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주식시장의 결제과정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는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한국거래소는 매매확인 및 착오매매정정 후 매도자·매수자의 포지션을 확정한다. 포지션이 확정되면 한국거래소는 매매당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상호 차감하여 각 결제회원이 수수해야 할 증권의 수량과 대금을 확정된 후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내역을 결제회원에게 통지하면 결제회원은 납입해야 할 증권 및 대금을 각각 한국예탁결제원과 상업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납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금의 납부가 완료되면 이를 수령해야 할 결제회원의 계좌로 대체(이체)하여 결제과정을 종결한다.

(국채전문유통시장)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과정은 일반채권시장과 유사하지만 동시결제 방식이 차감후 DvP 1 방식으로 증권과 대금을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한 후 차감된 건별로 결제한다. 이는 건별결제를 통해 결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장외 국채거래 결제(DvP 1)와 연계된 결제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종적인 결제가 거래일의 다음 영업일(T+1일)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금의 결제가 상업은행이 아닌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간의 이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RP시장)

유가증권시장에서의 RP거래¹¹⁶⁾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되는 거래의 특성상 개시시점과 환매시점에 각각 결제¹¹⁷⁾가 이루어진다. 결제방식은 증권의 경우 회원

116) 금융기관간 RP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RP거래와 당사기간 합의에 의해 매매되는 장외 기관투자자간 RP거래로 구분된다.

117) RP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증권을 인도받고 매도자에게 대금을 이체하는 것을 개시결제, 환매당일 매수자가 증권을 반환하고 매도자가 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환매결제라 한다.

별·종목별로 차감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되는 DVP 3 방식으로 처리되며, 대금의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간 이체로 이루어진다.

나. 코스닥시장결제

코스닥시장(KOSDAQ ;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결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서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코스닥시장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2013년말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1,014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며, 2013년중 일평균 거래규모는 1조 8천억원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의 결제과정 역시 유가증권시장 주식결제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매매시스템을 통해 매매체결 및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청산과정부터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넥스시장의 주식과 통합하여 처리된다. 결제대금 역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에서의 당해 결제회원의 총매수대금과 총매도대금을 통합한 후 차감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와 청산기관, 증권 및 대금 결제기관, 결제방법, 결제일 등이 모두 동일하다.

다. 코넥스시장결제

코넥스시장(KONEX; Korea New Exchange)결제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넥스시장에서 회원간에 이루어지는 코넥스시장 상장 유가증권의 거래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코넥스시장은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기존의 주식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에는 규모 등이 작은 창업 초반기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하였다. 2014년 6월말 현재 코넥스시장에서는 55종목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중 일평균 거래규모는 2조 6천억원 수준이다.

코넥스시장에서의 결제과정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통한 주식결제 과정과 대부분 동일하다.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매매시스템을 통해 매매체결 및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청산 및 결제과정부터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주식과 통합하여 처리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와 청산기관, 증권 및 대금 결제기관, 결제방법, 결제일 등이 모두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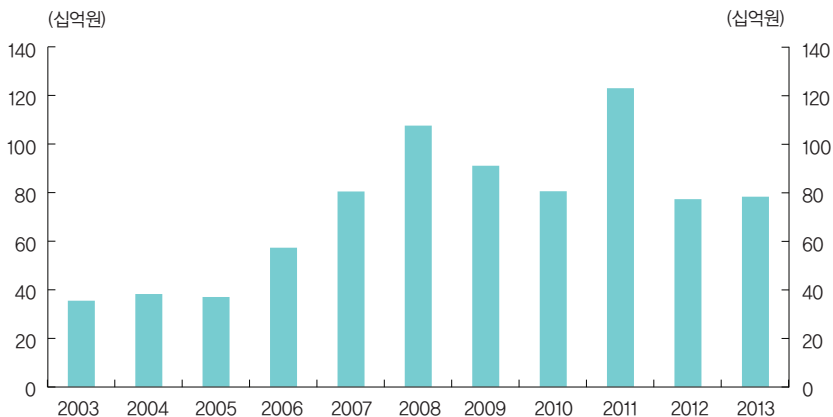
라. 파생상품시장결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주식, 주가지수, 금리, 통화 및 기타 일반상품(돈육, 금 등)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이 거래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결제는 이들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및 기초자산의 수수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는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시간적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채권 거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결제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매 영업일마다 일일정산을 통해 정산차금을 수수하고 있으며, 최종결제시에는 실물의 교환 없이 기초자산의 최종 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환함으로써 결제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또한 최종결제일 이전 시점에 보유한 포지션의 반대매매를 통해 결제를 종결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최종결제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최종결제금액을 상업은행을 통해 지급 또는 수취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다만 통화선물 및 금선물의 경우는 해당 통화를 상업은행을 통해 상호 교환하거나 금 실물을 인수도함으로써 최종결제가 완료된다.

앞서 언급된 여타 증권결제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시장결제도 한국거래소가 계약당사자인 회원간의 거래를 인수하여 각각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맡고 거래의 이행을 책임진다. 한국거래소는 결제회원과 한국거래소가 상호 수수해야 할 정산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대금 등 현금과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최종 결제내역을 산출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2013년중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결제규모는 780억원 수준이다.

〈그림 12-5〉 파생상품시장 결제규모(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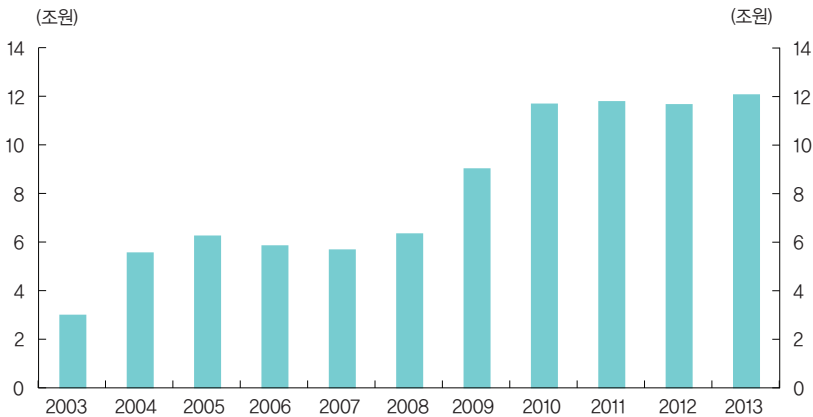
3. 장외증권결제시스템

가. 채권기관투자자결제

채권기관투자자결제란 장외시장에서 기관투자자간에 이루어진 채권, CD, CP 등의 거래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시스템과 한국은행의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기관투자자 결제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12조원 수준으로 장내시장을 통한 결제규모(1조 3천억원)를 크게 상회하여 우리나라 채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6〉 채권기관투자자 결제규모(일평균)



장외시장에서 체결된 채권거래는 거래일 다음날(단, CD, CP 등 단기금융상품은 거래 당일) 영업시간 중에 거래 건별로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된다. 이 때 증권의 소유권 이전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대체를 통해 대금지급은 한은금융망의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매도기관과 매수기관이 거래에 합의하면 동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양자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매수기관 각각의 결제내역을 확정하여 통지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일 영업시간 중에 예탁잔량 충족여부 등 매도기관의 결제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결제내역을 한국은행에 통지한다. 매수기관은 해당 내역을 조회한 후 대금지체를 신청하며, 이에 따라 한은금융망을 통해 매수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매도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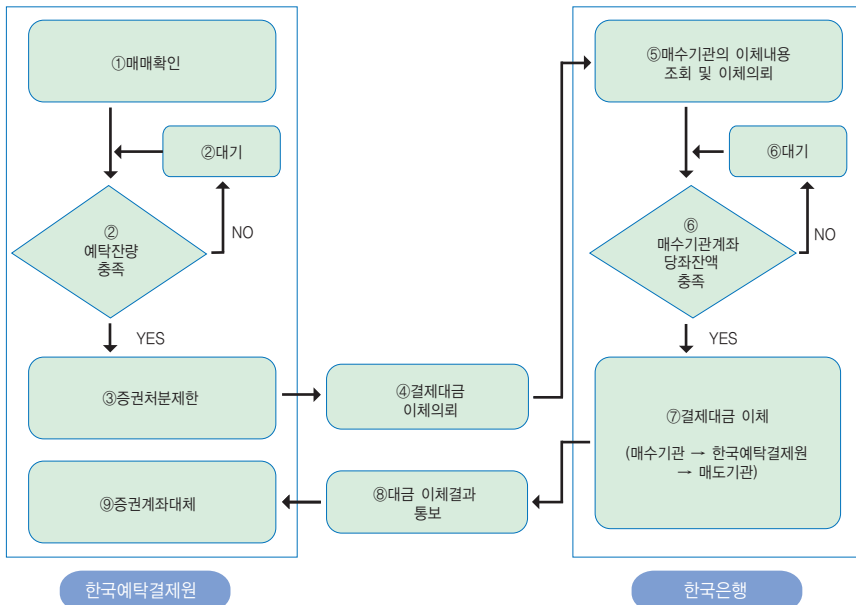
의 순으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대금결제가 완료되면 한국은행은 그 결과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증권을 매도기관의 회원증권결제계좌에서 매수기관의 계좌로 대체함으로써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완료한다.

〈표 12-7〉 채권기관투자자결제 개요

대상 채권	채권, CD, CP 등	
청산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결제기관	대금결제계좌	한국은행
	증권결제계좌	한국예탁결제원
DvP방식	DvP 1(건별총액결제)	
결제일	T+1일 ¹⁾	

주 : 1) CD, CP 등 단기금융상품은 거래 당일(T일)

〈그림 12-7〉 채권기관투자자결제 흐름도



주 : 1) 매수기관 계좌에 결제대금이 충전하면 ⑦~⑨의 과정이 동시(DvP)처리
2) ③ 증권처분제한은 동시결제 이행의 보장을 위해 채권의 매도자가 매도채권을 다시 처리하지 못하도록 예탁계좌부상 처분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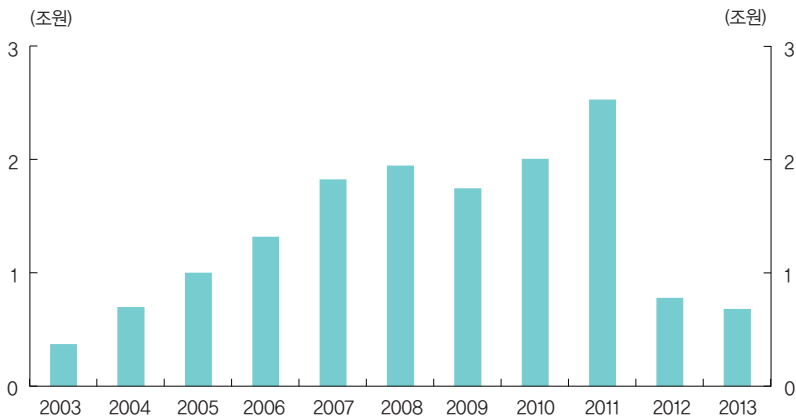
나.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주식기관투자자결제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의 상장주식 위탁매매에 수반되는 기관투자자와 한국거래소의 회원인 금융투자회사 간의 결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회원과 고객과의 결제는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관투자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거액의 자금이동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간 대체가 수반됨에 따라 일반적인 결제와는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주식기관투자자 결제규모는 2013년중 일평균 6,890억원 수준으로 2011년 2조 5천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결제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2012년부터 동시결제 방식을 기존의 양자간 차감에서 다자간 차감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12-8〉 주식기관투자자 결제규모(일평균)



주식기관투자자결제는 장내주식시장결제와 비교하여 청산기관, 대금 및 주식의 차감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에는 매매확인, 차감 등의 청산절차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한다.

〈표 12-8〉 주식기관투자자결제와 장내주식시장결제간 비교

	주식기관투자자결제	장내주식시장결제
청산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동시결제 방식	DvP 2	DvP 3
대금결제	한국은행	한국은행
증권결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일	T+2일	T+2일

주식기관투자자결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제과정을 거친다. 기관투자자의 위탁 거래가 한국거래소를 통해 체결되면 금융투자회사는 매매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동 내역을 해당 기관투자자에게 확인한 후 상호간의 증권 및 대금 결제내역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양 거래당사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통보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대상 증권은 결제 건별로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계좌대체를 실행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여 16:50까지 한국은행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대금결제계좌에 납부한다. 대금의 납부가 완료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를 수령해야 할 결제회원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하여 결제과정을 종결한다.

주식기관투자자결제는 장내주식시장결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기관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결제를 통해 장내시장의 회원인 금융투자회사에게 매도할 증권 또는 매입할 증권의 대금을 납부하며, 해당 금융투자회사는 인수한 증권 또는 대금을 장내시장결제를 위해 납부한 후 매입 증권 및 매도 증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주식기관투자자결제와 장내시장결제중 어느 한 쪽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 전반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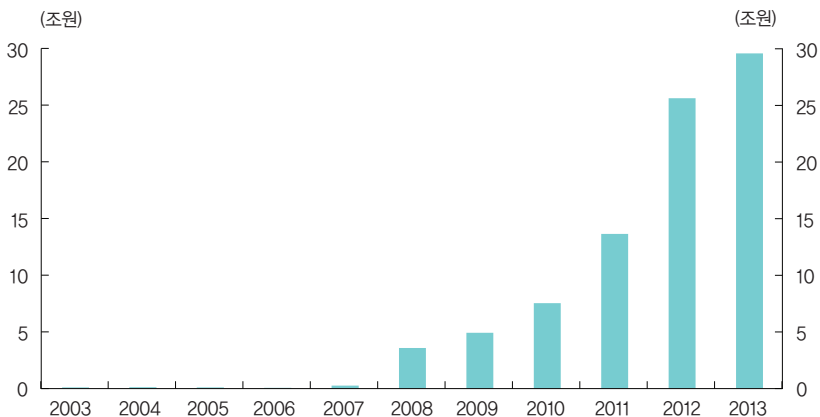
장외시장에서 체결된 기관간 RP거래의 개시 및 환매 결제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채권기관투자자 결제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기관간 RP거래는 거래당일(T일)¹¹⁸⁾에 결제가 완료되고, 계약기간중 거래

118) 환매거래의 경우 예정된 환매일 또는 거래당사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당일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대상 유가증권의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 일일정산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채권기관투자자결제와 차이가 있다.

기관간 RP 일평균 결제규모는 2007년까지 3천억원 미만이었으나 2008년부터 결제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29조 5천억원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단기자금 조달 및 운용을 콜시장에서 RP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RP거래 이용을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금융기관의 단기자금 조달이 무담보 콜거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2010년 7월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관간 RP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금융투자회사 콜차입 규모의 단계적 축소 방안 등을 시행하면서 기관간RP결제는 2011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림 12-9〉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결제규모(일평균)



라. 장외파생상품결제

한국거래소는 2013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 CCP 인가를 취득하고 2014년 3월 자율청산서비스를 거쳐 2014년 6월 30일 적격 원화IRS 거래의 CCP 의무청산을 시행하였다. 청산서비스 개시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4개 상업은행¹¹⁹⁾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하여 원화IRS 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수수하고 청산증거금,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 등

119) 4개 상업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부산은행이다.

결제이행재원을 예치하고 있다. 의무청산 시행이후 2014년 9월말까지 총 53개 기관(금융투자회사 24개, 은행 29개)이 참여하여 3,800건, 113조 8천억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하였다.

마. 전자단기사채결제

기업어음(CP)은 1972년 도입 이후 기업의 대표적인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해 왔으나 실물발행에 따른 위·변조 및 분실 위험, 「어음법」 적용에 따른 분할양도 불가¹²⁰⁾, 정보공시 미흡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5일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었다. 전자단기사채는 전자적 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실물 발행 및 보관에 따른 사무부담 및 비용이 감소하고 위·변조 및 분실 위험도 제거되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이 단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모든 발행기록이 집중되고 발행종목, 금액, 조건 등이 공개됨으로써 정보의 활용도가 제고되었으며 액면분할 매매가 가능하여 유통시장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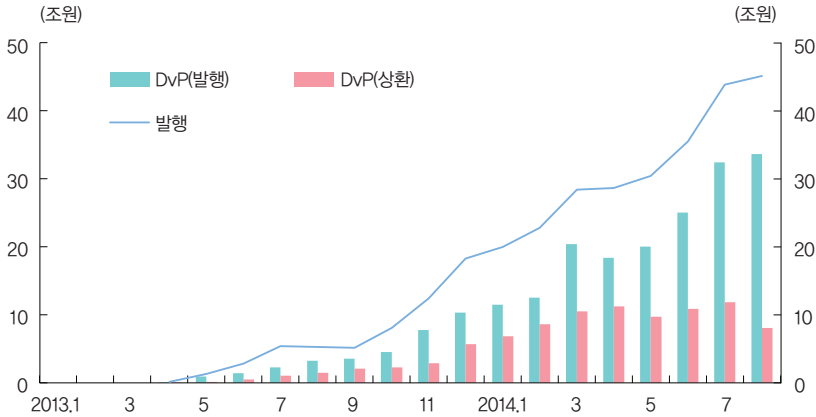
CP, 전자단기사채 및 사채의 비교

	CP	전자단기사채	사채
기 능	단기자금조달	단기자금조달	장기자본조달
발 행	실물발행	전자발행	실물 및 전자발행
매 매	계좌대체	계좌대체	계좌대체
분할매매	불가능	가능	가능
상 환	어음교환	한국예탁결제원	대부분 어음교환
발행한도	제한없음	1억원 이상	제한없음
만 기	제한없음	1년 이내	제한없음
근거법	자본시장법, 어음법	전자단기사채법, 상법	상법

120) 기업어음은 「어음법」상 약속어음의 일종으로서 액면분할 매매가 불가능하다.

전자단기사채는 제도시행 초기 발행여건 미비, 시장 미조성 등으로 발행이 저조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조치¹²¹⁾, 기업어음에 대한 규제 강화¹²²⁾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콜시장 참가 제한조치에 따른 대체수요로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4년 8월중 발행금액은 45조원에 이르고 있다.

〈그림 12-10〉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한은금융망 DvP 결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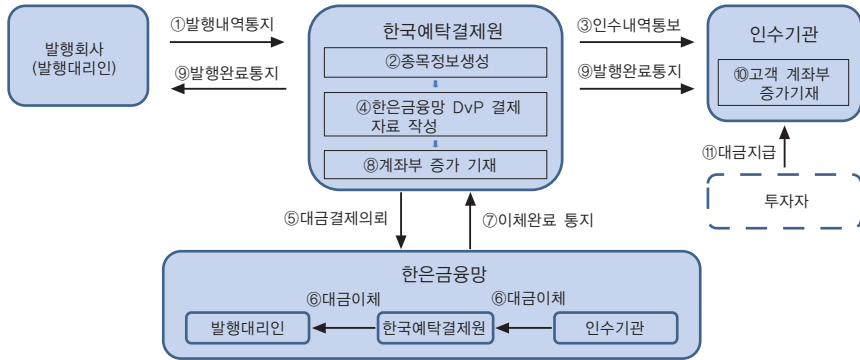
전자단기사채의 결제는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채권기관투자자결제의 단기금융상품 결제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매매뿐만 아니라 발행과 이자 및 세금정산 등을 포함한 상환거래도 증권대금동시결제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1) 단기물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13.2.15일), 단기물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및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의 MMF 편입을 위한 MMF 투자제한 완화(「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013.4.5일) 등이 있다.

122) 2013년 5월 6일부터 기업어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이 종전 "50인 이상 투자사"에서 "① 50매 이상 발행, ② 만기 1년 이상, ③ 특정금전신탁으로의 편입중 1가지 조건만이라도 충족시"로 강화되었다.

〈그림 12-11〉

전자단기사채 결제 흐름도(발행의 경우)



〈참고 12-5〉

주요국의 증권결제시스템

(미국)

미국에서는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자회사인 NSCC(National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와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가 매매확인, 채무인수, 청산 및 결제이행보증 등의 증권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NSCC는 주식, 회사채, 지방채, 뮤추얼펀드, 연금증서 등을 취급하며, FICC는 미국채, 정부보증채 및 MBS에 대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증권에의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는 주식과 회사채에 대해서는 DTCC가 국채 및 MBS 등에 대해서는 미 연준이 수행하고 있다.

(영국)

영국의 증권거래는 대부분 LSE(London Stock Exchange)에서 이루어진다. 장내에서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LCH.Clearnet Ltd¹⁾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결제는 Euroclear UK & Ireland(EUI)에 의해 소유·운영되는 CREST 시스템을 통해 종결된다. 장외 거래의 경우 청산 및 결제 업무가 모두 EUI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프랑스의 장내 증권거래는 Euronext Paris(파리증권거래소) 및 국채 거래를 위해 설립된 MTS France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청산 업무는 LCH.Clearnet SA가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

우 Chi-X, BATS 등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를 통해 이루어지며, Euroclear France²⁾가 매매 확인 등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증권의 예탁 및 최종 결제도 장내의 모든 증권거래에 대해 Euroclear France가 CSD로서 업무를 처리한다. 2007년 11월부터는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3국의 CSD를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 ESES³⁾에 의해 증권결제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독일)

독일의 청산기관은 유럽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Eurex exchange의 자회사인 Eurex Clearing AG이며, Eurex Clearing AG는 Eurex를 통한 파생상품 거래, Eurex Bond를 통한 국채 거래 및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 등과 관련된 청산 및 채무인수 업무를 수행한다. Clearstream Banking Frankfurt는 독일의 단일 중앙예탁기구로서 증권의 예탁, 최종결제 업무 및 장외시장에 대한 청산업무를 맡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 거래된 증권의 청산 및 결제기관은 대상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JSCC(Japan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가 동경, 오사카 등 주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거래 및 동경증권거래소의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 및 채무인수 업무를 담당한다. JASDEC(Japan Securities Depository Center)은 일본의 중앙예탁기관으로 국채를 제외한 증권의 예탁, 대체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장외 주식기관결제에 대한 청산업무⁴⁾도 수행한다. 국채의 청산업무는 JGBCC(Japan Government Bond Clearing Corporation)가 맡고 있으며 일본은행이 국채의 보관 및 대체 업무를 수행한다.

주: 1) 2004년 각각 영국과 프랑스의 청산업무를 담당하던 LCH(London Clearing House)와 Clearnet SA가 LCH, Clearnet Group으로 합병되었으며, 그 자회사로 LCH, Clearnet Ltd(영국) 및 LCH, Clearnet SA(프랑스)를 보유
2) Euroclear France는 Euroclear SA/NV의 자회사로 Euroclear SA/NV는 EUI, Euroclear Belguim, LCH, Clearnet Group 등 각국의 CSD 및 Euroclear Bank를 자회사로 보유
3) Euroclear Settlement of Euronext-zone Securities의 약자.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의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합한 증권결제시스템이며, 2007년 11월부터 기존의 Euroclear France는 ESES에 의해 통합 운영
4) 일본 법률에 따라 JASDEC의 업무가 증권의 보관 및 대체로 한정됨에 따라 자회사인 JDCC를 설립하여 동 업무를 수행

4. 증권결제리스크의 관리

가. 증권결제리스크의 유형 및 관리방안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제는 자금결제와는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보다 커질 수 있으며 리스크의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의 시차를 줄이는 것이 증권결제리스크를 축소하는 관건이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리결제(free of payment) 방식은 매매당사자 일방에게 원금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증권결제리스크는 증권 또는 대금 거래의 차액만을 교환하는지 아니면 전체금액을 교환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차액결제방식은 결제 건수 및 금액을 축소시켜 결제참가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거래당사자와 결제당사자가 다르고 결제불이행시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스템적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총액결제방식은 매매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결제규모의 증가로 효율성은 다소 낮고 유동성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당사자와 결제당사자가 동일하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해 시스템의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증권매매에 따른 대금 지급수단도 증권결제리스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이나 중앙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대금결제는 증권인도와 동시에 종료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이나 상업은행 계좌간 대금결제는 증권인도시점에 대금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매도자는 원금리스크에 노출된다. 따라서 증권결제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대체는 민간 결제기구가 담당하더라도 대금결제는 즉시 결제종료성을 보장하는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증권결제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크기의 측정, 배분, 모니터링 장치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증권결제시스템의 각 참가자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결제기금의 적립과 같은 사후적인 장치보다 예방적 차원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증권결제리스크에 관한 국제기준

1987년 뉴욕 증시폭락사태(Black Monday)를 계기로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가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89년 국제 경제 및 통화 자문그룹인 G30¹²³⁾은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증권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한 증권대금동시결제제도의 도입이었다. 1995년에는 국제증권업협회¹²⁴⁾(ISSA)가 G30안에 대한 수정권고를 발표하였는데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실시간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되 차액결제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Lamfalussy 기준¹²⁵⁾을 충족시키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9년 G30의 권고가 국제적 모범관행 역할을 해 오던 가운데 동시결제 외에도 증권결제의 법적 기초, 투명성, 참가기준, 지배구조와 규제 및 감시 등을 포함한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2001년 11월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RSSS; Recommendations for Securities Settlement Systems)를 발표하였다. 동 기준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 회사채, 국채 및 단기금융시장상품 등 모든 증권을 결제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중앙은행간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각국 증권규제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공적 기관이 정한 국제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중앙거래당사자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거래당사자에 의한 위험관리 실패는 증권시장, 증권결제시스템 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국제표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2004년 11월에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RCCP; Recommendations for Central Counterparties)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 정비 필요성 등이 이슈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123) G30은 1978년에 설립된 민간 비영리 국제기구로서 회원은 30인의 민간금융계와 중앙은행 및 학계의 고위층 대표로 구성된다. 국제경제 및 금융문제 현안과제를 연구하고 시장참가자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124) ISSA(International Securities Services Association)는 세계 각국의 증권결제, 보관 등 증권후선업무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1979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이다.

125) 자세한 내용은 각주 91에 기술되어 있다.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상기 증권 관련 2개 권고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원칙을 통합·발전시킨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2012년 4월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이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내용은 본 책자 제2장 제2절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아래 <표 12-10>은 증권결제에 관한 기존 기준(RSSS 및 RCCP)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과 어떻게 관련 되는지를 보여준다.

<표 12-10> 종전의 국제기준과 「PFMIs」의 비교

종전의 국제 기준		PFMIs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RSSS)		
권고1	법적 체계	원칙 1
권고2	거래 확인	부록 C
권고3	결제 주기	부록 C
권고4	중앙거래당사자(CCP)	부록 C
권고5	증권 대차	부록 C
권고6	중앙예탁기관(CSD)	원칙 11
권고7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원칙 12
권고8	결제완결 시점	원칙 8
권고9	결제불이행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예탁기관의 리스크 통제수단	원칙 4, 5, 7
권고10	현금 결제자산	원칙 9
권고11	운영상의 신뢰성	원칙 17
권고12	고객 증권 보호	원칙 11,14,16,부록C
권고13	지배구조	원칙 2
권고14	접근	원칙 18
권고15	효율성	원칙 21
권고16	커뮤니케이션 절차 및 표준	원칙 22
권고17	투명성	원칙 23
권고18	규제와 감시책임	책무 A-E
권고19	국가간 연계 리스크	원칙 20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RCCP)		
권고1	법적 리스크	원칙 1
권고2	참가 요건	원칙 18
권고3	신용 익스포저의 측정 및 관리	원칙 4
권고4	증거금 요구	원칙 5, 6
권고5	재무자원	원칙 4, 5, 6, 7
권고6	채무불이행 처리절차	원칙 13
권고7	보관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원칙 16
권고8	운영리스크	원칙 17
권고9	자금 결제	원칙 9
권고10	실물 인도	원칙 10, 12
권고11	CCP간 연계 리스크	원칙 20
권고12	효율성	원칙 21
권고13	지배구조	원칙 2
권고14	투명성	원칙 23
권고15	규제 및 감시	책무 A-E

한편 기존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중 아래의 권고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보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권고 2 거래당사자는 매매확인을 거래당일(T)중 완료해야 하며 기관투자자 등 간접참가자도 최소한 다음 영업일(T+1)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권고 3 결제주기(settlement cycles)는 연속결제(rolling settlement)방식으로 T+3일 이내에 결제를 종료하여야 한다.

권고 4 중앙거래당사자의 도입여부는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중앙거래당사자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권고 5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위해 증권대차제도(또는 RP 등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거래)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권고 6 증권은 최대한 부동화(不動化) 또는 무권화(無券化)하여 중앙예약기구의 계좌대체(book-entry)방식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권고 12 증권보관기관(custodian)은 고객증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회계처리방식과 보관절차를 채택하여야 하며, 특히 고객증권은 증권보관기관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다. 우리나라의 증권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우리나라의 주요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도입하여 증권결제리스크중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고 있으며 「통합도산법」 및 「자본시장법」에 의거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요 증권거래의 결제처리가 국제기준(T+3일 이내) 이내로 완료(주식 : T+2일, 채권 : T+0~1일)되고 있어 대체비용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장내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거래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중앙거래당사자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해야 하므로 일정 기준¹²⁶⁾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을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회원의 매매거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

126) 재무요건(결제회원: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80% 이상 및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매매전문회원: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이상)을 충족할 것,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임의탈퇴한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것 등 이다.

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결제이행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산중 일부를 결제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매매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증거금을 징구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주식기관투자자결제에 대해서 중앙거래당사자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만을 회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적립하고 결제이행재원의 확보를 위해 자산중 일부를 결제적립금으로 확보하고 있다.

〈표 12-11〉 우리나라 주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구 분	장내시장		장외시장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결제	파생상품시장 결제	파생상품결제	주식기관결제	채권기관결제 등
결제이행 보증책임	한국거래소			한국 예탁결제원	
결제회원 제도 ¹⁾	증권회원 87개	파생상품회원 59개	청산회원 53개	청산회원 90개	해당사항 없음
손해배상 공동기금	2,000억원	2,000억원	최대 위험보유 2개 회원의 결제불이행 규모 ²⁾ - 결제적립금	500억원	
결제적립금	4,000억원		500억원	2,000억원	
증거금	위탁증거금 ³⁾	위탁증거금 ³⁾ 거래증거금 ⁴⁾	청산증거금 ⁵⁾	-	-
DvP 유형	DvP 3	-	-	DvP 2	DvP 1
결제완결성	결제완결성 보장				

주 : 1) 20149월말 현재 2)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산정 3) 투자자가 금융투자회사에 납부
4)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 5) 청산회원이 한국거래소에 납부

한편 한국은행은 증권결제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결제지연 및 결제교착과 이로 인한 한은 금융망 마감시간대 결제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한국은행은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지연 현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1월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부문의 결제방식 개선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채권부문의 결제방식 개선과 금융투자회사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일중유동성 지원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하였다.

〈참고 12-6〉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장내주식 결제방식 변경)

증권은 회원별·종목별로 차감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DvP3)을 유지하되, 결제회원의 증권 및 대금 결제요건을 완화하여 결제개시시점을 조기화(16:00→09:00)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내주식시장 대금결제은행을 기존의 일반은행에서 한국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납부시한내 결제증권 부족시 결제불이행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일일차감결제(DNS)에서 결제납부시 한까지 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권미납부(Fail)로 간주하고 익일로 이월하여 결제하는 연속차감결제(CNS)로 전환하였다.

(주식 기관투자자결제방식 변경)

장내시장 결제에 필요한 증권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참가기관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대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주식 기관투자자결제를 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다자간 차감하는 방식(DvP2)으로 변경하였다.

(장내국채 결제방식 변경)

증권은 종목별로, 대금은 모든 종목의 대금 간에 차감하여 결제하는 방식에서 증권/대금 모두 종목별로 차감하여 건별 결제하는 방식(차감후 DvP1)으로 변경하고 결제개시시점을 조기화(16:00 → 09:00)하였다.

(국채 등 채권결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일중유동성 지원)

금융투자회사 및 거래소를 대상으로 장내국채 등 채권결제에 필요한 일중유동성을 RP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12-7〉

거래정보저장소

G20 피츠버그 회의(2009.9월)에서 각국 정상들은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고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관련 정보를 보관·관리 및 집계·분석하는 거래정보저장소(TR)의 구축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거래정보저장소에 관한 합의는 파생상품의 상당부분이 투명성이 결여된 장외에서 거래됨에 따라 시스템적리스크를 감시·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TR에 수집된 정보는 거래기관의 과도한 신용 익스포저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적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감시·감독하는데 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시장참가자의 시세조정 등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거나 거래상대방 파산시 채무 확인 등 회사 정리(resolution) 절차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이용될 수 있다. 또한 TR은 보고된 자료를 이용해 거래규모 및 금리 등을 집계하고 그 정보를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시장의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2014년 9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에서 25개의 TR이 운영되고 있다.

TR 보고 항목(예시)

보고 항목	내 용
운영데이터	거래번호, 계좌번호, 거래확인 및 중앙청산 여부 등
상품정보	상품분류 및 식별에 필요한 정보
거래경제정보	거래유효일, 종료일, 명목금액, 쿠폰금액 및 지급일정 등
평가데이터	거래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
거래상대방 정보	거래상대방을 식별하는데 필요한 정보(예: 사무실 주소, 거래상대방 유형, 모회사 및 그 소재국가 등)
기초자산 정보	기초자산의 유형 및 발행국가 등 기초자산의 다양한 속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
이벤트 데이터	특정 이벤트 발생내용 및 발생시점을 표시하는 정보 등

전세계 TR은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및 EU의 다국적형 TR과 단일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홍콩 등의 지역형 TR로 구분할 수 있다.

다국적형 TR의 경우는 미국 DTCC 등과 같은 민간기관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TR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이용기관에 대해 참가비 및 보고 건별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참가자간 다수의 거래를 단일 건으로 축약(trade compression)하는 서비스 등 거래 후(post-trade)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형 TR을 채택한 국가는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공공기관이 신규로 TR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TR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미국, EU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국내거래 뿐만 아니라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는 자국 법인이 해외 소재 TR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해외 소재 TR과 자국 TR간의 규제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TR에 대해 자국 TR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²⁾하고 있다. 또한 홍콩, 호주 등은 거래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해당 비거주자가 자국의 TR에 거래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각국의 TR 구축·운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TR 보고 자료의 작성기준, 저장형식이 다르고 정책당국의 접근방식도 상이하여 각국 정책당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동일한 거래식별자 등 보고관련 표준체계³⁾를 마련하고, 각국의 TR에 보관된 정보를 통합 집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거래정보저장소 현황

유형	국가	TR 명칭	운영주체
다국적형 TR	미국	DDR, CME, Bloomberg, ICE Trade Vault, INFX SDR	민간기관
	EU ¹⁾	DDRL, KDPW, REGIS-TR, UnaVista, CME ETR, ICE Trade Vault Europe	
	일본	DDRJ	
	호주	DDRS	
	싱가포르	DDRS	
지역형 TR	홍콩	HKTR	중앙은행
	사우디	SAMA TR	중앙은행
	브라질	BM&F Bovespa, CETIP	민간기관 (거래소 및 예탁원)
	인도	CCIL	민간기관

주 : 1) 2014년말 현재 기준
 자료 :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 - 8th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FSB, 2014.11)」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외환정보시스템과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업무보고시스템이 TR과 유사한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유사 TR시스템을 거래정보저장소로 이용하는 방안과 TR을 신규로 구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만일 국내 TR 운영주체가 민간회사가 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성이 확보될 정도로 시장규모가 충분한 지 여부, 둘째는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 후(post trade) 서비스⁴⁾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시·

감독당국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관련 규제체계 마련시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TRI용 대체보고(alternative reporting) 허용 여부, 국내 중개기관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체보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해외 TR과의 연계에 대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료전송 형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이 한국은행, 정부 및 공공기관인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 TR 당국과 협의하여 상호 보고의무 면제⁹⁾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 주: 1) TR은 보고된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한 통계자료 등을 미국은 15분~48시간 이내에 유럽은 1주일 이내에 일반인에 공개해야 한다.
- 2) 유럽증권당국(ESMA)은 EMIR(유럽시장인프라규제)에 근거하여 TR을 평가하고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거주자간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당국과 MoU를 체결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 3) TR 자료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거래기관, 상품 등에 관한 공통된 식별자(LEI, UPI 및 UTI)를 사용해야 하는데 국제사회는 거래기관·상품·거래별 식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 식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당사자 및 장외파생상품 발행자에게 부여되는 코드, UPI(Unique Product Identifier, 상품 식별자)는 개별 장외파생상품에 부여되는 코드, UTI(Unique Transaction Identifier, 거래 식별자)는 개별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부여되는 코드로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계약종류 시점 및 옵션행사 조건 등 거래 세부내역을 코드화하여 거래이력관리 및 중복보고의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
- 4) TR은 거래대조·확인을 거친 정확한 거래정보(golden copy)에 기초하여 가치평가(valuation, FX), 신용사건 등 거래이력(life-cycle events)관리 및 거래축약(trade compression)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5) 국내 EU계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정부 등 공공기관과의 거래의 경우 EU 증권당국의 승인 하에 거래상대방 인식 정보를 제외하고 있다.



제3부

지금결제 환경변화와 과제

제13장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향후 과제

제1절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303

제2절 향후 정책과제 316

제1절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 형성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글로벌 규제의 고도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안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재인식되면서 글로벌 금융질서의 주요한 규제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종래 청산결제업무를 수행하는 하부구조로서 인식되어왔던 금융시장인프라가 금융위기시 원활하게 작동하여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¹²⁷⁾함에 따라 금융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 분야로 주목을 받게 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국제적 규제도 한 단계 더 높아져 새로운 시각에서 정비되고 있다. 종래 금융규제는 금융업의 영역별로 개별 금융기관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래 이후의 청산·결제업무가 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주도하에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선 G20 정상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결제인프라 정비를 위한 핵심 과제들이 금융안정위원회의 주도¹²⁸⁾하에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와 각 국 관계당국의 노력으로 관련 정책 도입,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꾸준히 이행되면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규제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¹²⁹⁾ 금융시장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공동으로 단일의 종합 규제체계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을 제정하여 리스크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금융거래의 청산의무화에 따라 리스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 등 금융

127) 예컨대, 리먼 브러더스 파산시 동 사의 부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S 거래에 대해 거래정보저장소인 TIW(Trade Information Warehouse)가 거래 청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CDS거래에 따른 결제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혼란이 수습되는데 기여하였다.

128) G20 정상회의가 개혁조치의 구체적인 추진을 FSB에 요청함에 따라 FSB는 국제기준 제·개정 및 제도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FSB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규제당국의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추진시 고려사항, 주요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감독기관협의체의 역할과 추진일정 등에 관한 21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29) FSB,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s, 8th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2014.11월

시장인프라의 위험관리를 위해 손실복구(recovery) 및 정리(resolution)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였다. 아울러 포괄적 상위 기준으로 제정된 금융시장인프라의 실제 적용을 위해 각 원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을 담은 부수적인 국제기준도 현재 논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의무화가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청산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¹³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은 글로벌 차원의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을 위해 마련된 새로운 국제질서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IMF와 World Bank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들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일련의 점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제정 주체인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회원국 중앙은행 및 규제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이행점검을 위한 상설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각 회원국 간 동 원칙의 이행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동 점검활동은 원칙별 평가의 측면보다는 공정경쟁 여건 조성(level playing field across jurisdictions)을 위한 각국 간 이행상황 비교 및 상호검토의 성격을 띠고 있다. IMF와 World Bank도 종전부터 실시해오던 회원국에 대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점검활동은 각국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규제체계의 일관성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EU, 미국 등 주요국의 증권규제당국도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규제차익 제거를 위해 제3국 CCP에 대한 인증(Recognition)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규제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논의)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역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130)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는 ①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 규제에 CCP 포함 여부와 ② 은행의 CCP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부과 문제 등이 있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Banks' large exposure limits) 제도는 은행 대출이 특정 차주에 편중되는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BCBS가 도입(2019년 1월 시행)한 것으로, 비적격 CCP에 대해서는 익스포저 한도(적격자본의 25%)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정된 적격(qualified) CCP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따른 리스크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2016년말에 최종 확정 예정).

또한, BCBS는 적격 CCP와의 거래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적격 CCP와 거래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2%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되, 비적격 CCP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라 20%~150%의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2017년 1월 시행).

하나로서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의 설립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역내 저축의 역내 투자를 통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채권시장 육성방안(ABMI; Asian Bond Markets Initiative)의 세부과제¹³¹⁾ 중 국제증권결제 인프라 개선 과제로서 RSI 설립이 논의되어 왔다. 당초 1997년 홍콩이 아시아 RSI 설립을 최초로 제기하였으나 역내 채권시장 미숙 등으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다가 2003년 8월 제6차 ASEAN+3 재무장관회의(필리핀 마닐라)에서 ABMI를 금융협력 의제로 선정하였고 우리 정부 주도로 동 ABMI에 역내 증권결제인프라 개선 과제로서 RSI 설립이 포함되었다.

〈참고 13-1〉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설립 필요성

- 증권과 대금의 동일시간대 결제로 외환결제리스크 감소 및 동시결제시스템 구현에 기여
- 국제보관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증권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내증권결제기구와 개별 CSD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보관기관에 one-stop 서비스 제공 가능
- 역내 담보거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역내 Repo 및 파생상품거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 종통화 결제시스템을 수용
- 역내 개발도상국가의 국제시장 진출 경로로 활용 가능하며 아시아채권시장 발전 초기에 이들 국가에게 역내 증권결제기구의 지분소유 기회를 제공
- 역내 채권시장의 개방을 촉진하며 규제 완화에 기여

자료 : 한국채권연구원, "2010년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관련 지원연구"(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60면.

RSI 설립은 역내 단일 국제중앙예탁기관(Asian ICSD)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Asian ICSD의 설립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 차이, 일부 국가들의 무관심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채택된 ABMI New Roadmap+ 추진 과제에 RSI 설립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New Roadmap+에 따라 RSI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ABMI의 Task Force 4 산하에 CSI(Cross-border Settlement Infrastructure) 포럼을 구성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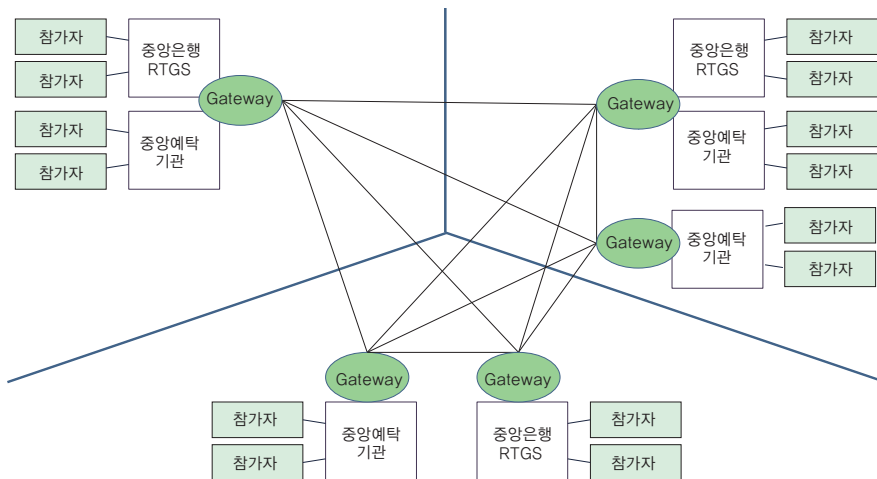
131) 역내통화 채권 발행 촉진(TF 1), 수요진작(TF 2), 관련 규제 개선(TF 3), 시장인프라 개선(TF 4)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CSI 포럼에서는 기존의 RSI 모델들과 일본이 제안한 중앙예탁 기관-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연계(CSD-RTGS Linkage)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상당수 회원국들은 CSD-RTGS 연계 모델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른 비용 절감, 중앙은행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결제안전성 확보 등을 이유로 선호한 반면, Asian ICSD 모델은 구축 및 운영 비용 과다, 상업은행 결제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결제 안전성 문제 등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2014년 5월 개최된 제17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CSI 포럼의 논의결과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CSD-RTGS 연계 모델에 대한 도입방안을 논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집중화된(integrated) 통합모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CSD-RTGS 연계 모델은 양국 간의 시스템 연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도입될 경우 연계 당사국 간에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결하여 이중통화간 증권·대금동시결제(Cross-Currency DvP)와 외환동시결제(PvP) 등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역내에서 국가간 증권결제인프라 연계가 가장 활발한 홍콩은 자국의 지급결제인프라(RTGS, CSD)와 말레이시아 등 역내 일부 국가의 CSD를 Euroclear를 통해 연계하여 증권대금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3-1〉 CSD-RTGS 연계 모델



(국내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및 청산결제인프라 도입)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위안화 국제화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세계적으로 위안화 금융거래 및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위안화 외환거래량은 2010년 4월 일평균 343억 달러에서 2013년 4월 1,196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전 세계 통화 중 8위를 기록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자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요국에 위안화 청산은행(clearing bank)을 지정하고 이들 청산은행이 위안화 지급·청산·결제와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위안화 금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행 홍콩법인이 2003년 12월 최초로 홍콩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이래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영국, 독일 등에서 현지 진출한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7월 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¹³²⁾가 합의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교통은행 서울지점을 한국 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였다.

〈표 13-1〉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현황

	지정 시기	청산은행
홍콩	2003.12	중국은행 홍콩법인
마카오	2004. 9	중국은행 마카오지점
대만	2012.12	중국은행 타이페이 지점
싱가포르	2013. 4	중국공상은행 싱가포르지점
영국	2014. 6	중국건설은행 영국법인
독일	2014. 6	중국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한국	2014. 7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프랑스	2014. 9	중국은행 파리지점
룩셈부르크	2014. 9	중국공상은행 룩셈부르크지점
카타르	2014.11	중국공상은행 도하지점
캐나다	2014.11	중국공상은행 캐나다법인
호주	2014.11	중국은행 호주법인

132)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지(RQFI) 쿼터 획득, 적격해외기관투자지(QFII) 쿼터 증액, 국내 위안화표시 채권발행 활성화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청산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은행들이 개설한 위안화 예금계좌를 기반으로 중국 본토 및 외국 소재 은행앞 위안화자금 송금, 국내 은행간 위안화자금 이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청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 한국은행은 향후 위안화 거래 추이 등 금융시장 상황에 맞추어 국내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개선

최근 주요국들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용자요구를 충족하는 가운데 최신 기술의 채택, 운영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거액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EU, 스웨덴 등은 전산환경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한 사용자 의견 등을 반영하는 시스템 개편 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해온 반면, 일본, 스위스 등은 시스템 노후와 복잡화 등을 이유로 시스템의 전면 재구축을 추진 중이다. 한편, 홍콩은 외국 거액결제·증권결제시스템과의 지속적인 연계 확대를 통한 금융허브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 개선은 업무 효율성 및 시스템 유연성 제고 등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환경 변화에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재구축시 ISO 20022¹³³⁾ 전문 채택 등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 현대화)

미 연준은 사용자 수요 충족 및 시스템의 유연성 제고를 목표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거액결제시스템 현대화 사업(Fedwire Modernization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Fedwire의 기술적 기반을 개편하는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Fedwire 전산시스템 개선은 시스템의 복원성 및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UNIX Server 도입, 시스템 프로토콜의 TCP/IP 방식으로의 전환, 프로그램 언어 Java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33) 금융부문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금융시장 참가자간 메시지 교환 형식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규칙을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또한 데이터 표시 방식의 표준화 등을 통해 조회서비스(계좌잔액, 일중 및 마감대사전송 등) 및 실시간 리포트 개선을 위한 회계시스템(Integrated Accounting System) 개편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거액결제시스템 재구축)

일본은행은 1988년 구축된 거액결제시스템(BOJ-NET)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가·수정으로 시스템이 복잡화되어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현행 시스템 운영 기술로는 최근의 발전된 기술을 원활하게 도입하는 것이 곤란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008년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스템(New BOJ-NET)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행은 BOJ-NET 전면 재구축을 통해 최신 IT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수용성이 높은 시스템 기반으로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글로벌화와 국가간 금융시장인프라의 네트워크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외 시스템 및 금융기관과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BOJ-NET 전면 재구축 사업은 결제기능 개선과 새로운 시스템 기반 도입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결제기능 개선은 참가기관의 자금운용 및 담보이용의 효율성 제고, 국채결제 원활화 및 국채 담보이용 효율성 제고, 기능 통합을 통한 참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시스템 기반 도입은 ISO 20022 전문 표준 및 SWIFT의 BIC(Bank Identifier Code) 채택, 해외에서의 일본 국채 활용 원활화를 위한 BOJ-Net¹³⁴⁾ 가동시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U의 거액결제시스템 개편)

EU의 Eurosystem은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인 TARGET¹³⁵⁾에서 단일 플랫폼(SSP; Single Shared Platform)을 제공하는 TARGET2로 개편하고 2008년 5월에 ECB와 20개국 중앙은행이 TARGET2로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134) BOJ-Net의 가동시간은 현재 09시~19시인데, 2016년 2월부터 마감시간을 2시간 연장하여 21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135)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

그 이후에도 Eurosystem은 참가국 중앙은행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과 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TARGET2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최근 개선된 내용으로는 업무지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SWIFTNet 장애 발생시 중요 자금이체에 대해 중앙은행의 대체 통신망을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2011년)하였으며 유로 지역내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T2S; TARGET2-Securities)과의 인터페이스 제공 및 T2S와 단일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체제(SSP Release 7.0)를 개편하였다.

이외에도 TARGET2의 장기적인 발전토대 구축과 T2S와의 연계를 위해 ISO 20022 전문 표준의 단계적 채택 및 야간결제시간대 자금이체 기능 개선을 위한 운영체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3. 주요국의 소액결제시스템 개편

최근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의 일부 회원국에서는 소액결제의 신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보다 신속한 자금이체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한 데다 비은행기관과의 경쟁 심화 및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전통적인 소액지급서비스기관인 은행들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동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혁신계획(Strategic Review of Innovation in the Payment System)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Direct Entry¹³⁶⁾의 당일 결제를 2013년 말부터 실시한 데 이어 실시간 소액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New Payments Platform(NPP)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2011년 소액결제시스템의 생산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실시간 전자자금이체시스템(FAST; Fast And Secure Transfer)을 구축·가동하였다. 또한 실시간 대량지급서비스는 2015년말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70년대부터 실시간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동 서비스는 주중의 금융기관 영업시간 중에만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서비스를 연중 24시간 가능하도록 Zengin 시스템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 중이다.¹³⁷⁾

136) 대량출금이체(Direct Debit)와 대량입금이체(Direct Credit)의 통칭이다.

137) 일본 전국은행연합회는 영업시간 이후 및 주말의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 지난 2004년 소액결제 개선을 위한 Payment Systems Task Force 를 구성하고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한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소액결제시스템인 Faster Payment Services(FPS)의 도입을 추진하여 2008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4. IT기업의 소액지급서비스 시장 진입

최근 국내외 소액지급서비스 시장은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기존 은행 중심의 지급서비스시장에 글로벌 IT기업, 인터넷 검색포털, 모바일기기 제조업체 등 비금융기업들이 자체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액지급산업의 생태계에 구조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지급결제 채널을 종래 대면 창구와 PC에서 모바일로 확대시키면서 편리하고 혁신적인 소액지급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초기단계이나 현재 글로벌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는 시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지급결제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비금융 글로벌 IT기업들의 지급서비스가 시장에서 신속하게 확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글로벌 IT기업은 대규모 회원과 자체 플랫폼을 보유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IT기업은 고유사업인 검색,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정보 및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 시장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스마트폰 등 새로운 지급채널이 등장하였으며, IT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비금융기업이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저전력 블루투스(BLE; Bluetooth Low Energy)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지급서비스에 보다 신속하게 활용하고 있다. 셋째,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소액결제 방식보다 더욱 간단하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지급수단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글로벌 IT기업들은 기존의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활용하되 이를 일부 변경·개선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결제편의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성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업은 주요 사업기반인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O2O(Online to Offline)¹³⁸⁾ 통합 지급서비스를

138) 은행 계좌정보, 신용카드, 포인트, 쿠폰 등을 스마트폰 앱에 탑재하고 NFC,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결제가능한 전자지급서비스 등이 있다.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과 유럽 등의 경우 글로벌 IT기업들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지급서비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은행기업의 전자화폐 발행, 자금 이체 업무 등에 있어 은행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에 따라 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과 전자화폐 발행기관은 은행에 비해 완화된 자본금 및 영업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금융기업의 자금이체, 송금, 지급결제중개업무 등은 개별 주의 감독당국 인가사항으로 따라 연방 당국의 인가 서비스에 비해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비금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지급결제대행, 선불계정을 이용한 대금지급·개인간 이체 및 금융기관 연계 금융서비스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지급결제대행은 아마존, 구글,페이팔, 알리페이 등의 업체가 전자상거래시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둘째, 선불계정을 이용한 대금 지급 및 개인간 이체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의 업체가 자체 선불계정에 예치한 고객 자금을 활용하여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개인간 자금이체를 실행하는 형태이다. 셋째, 금융기관과 제휴한 금융서비스는 알리페이의 위어바오 등과 같이 은행 또는 자산운용사와 연계하여 대출을 중개하거나 펀드를 판매하는 등 금융서비스를 제고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시장 진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지급수단 및 지급결제시스템 측면에서는 지급서비스의 혁신 및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비금융기업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급수단에 대한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지급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또한 비금융기업의 선불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통한 자금이체 및 대금지급 등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록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의 결제성 예금이 감소하고 은행계좌 이용도가 낮아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순이자수익 및 수수료수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지급결제가 은행고객과 총체적인 금융거래 관계를 맺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금융기업이 지급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고객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의 업무를 비금융기업에 제휴 또는 외주의 형태로 수행하도록 할 경우 법률 적용이 명확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비금융기업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 네트워크 또는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법률을 적용

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IT기업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비금융기업의 금융업 인가 및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어 규제공백 또는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비금융기관의 지급수단 발행 또는 지급서비스 제공은 개인간 소액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시장내 거래 또는 금융기관간 청산결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킹, 사기, 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간 책임 소재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5. 금융보안 위협 증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고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금융서비스를 위한 고객 정보가 전자화되고 이를 활용하는 IT 기기들이 24시간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부작용으로 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사고(전산장애,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와 같이 인적·절차적 관리 부실 등이 전자금융서비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지급결제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악성코드 등을 통한 이용자 정보 유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새로운 지급수단인 모바일카드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보안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⁹⁾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에도 일부 금융기관에서 해킹에 의한 전산장애, 공인인증서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우려도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 3월에는 고도의 해킹기술을 동반한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뱅킹 등 지급서비스가 중단¹⁴⁰⁾ 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킹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전산장애로 인해 소액결제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¹⁴¹⁾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또한 2012년 이후 인터넷뱅

139) 실제 한국은행이 2013년 중 실시한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 상품 구매시 인터넷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보안상의 취약성이 지적되었으며, PC사용자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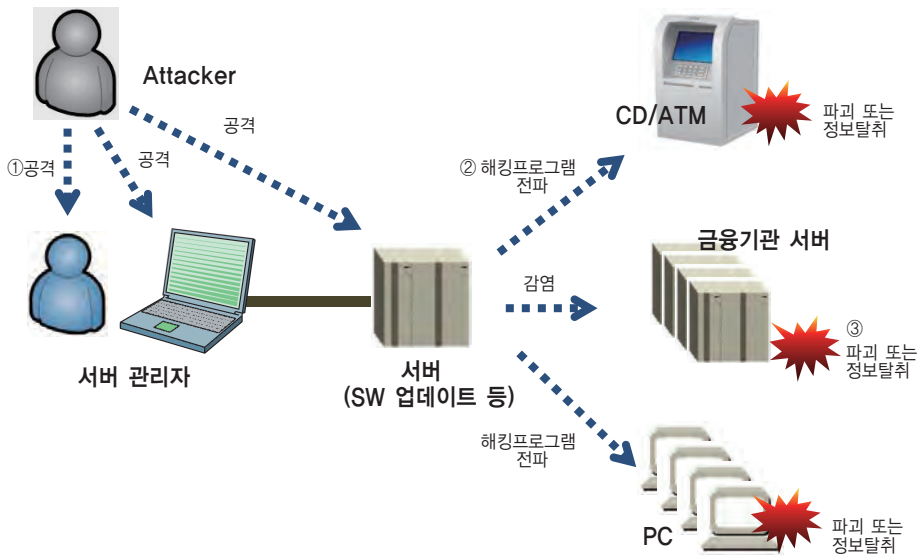
140) 공격자는 직원PC, CD/ATM, 서버 등이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1차적으로 업데이트서버를 해킹하고 이를 통해 무작위로 연결 시스템을 감염시킨 후, 지정된 시간에 모든 시스템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날 공격으로 3개 방송사 및 3개 은행의 웹서버와 직원 PC 등 총 3만 2,000여대의 컴퓨터가 정지되었으며 해당은행의 CD/ATM, 인터넷뱅킹 등이 약 2시간가량 중단되었다.

141) 2011년중 발생한 금융기관의 전산장애의 경우 3영업일에 걸쳐 해당 기관의 인터넷뱅킹, CD/ATM 등을 통한 고객의 자금이체, 인출 등이 지연처리 또는 중단되었다.

킹, 전자상거래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도 다수 유출되었는데, 이는 해커의 공인인증서 탈취기법이 파밍¹⁴²⁾, 스미싱¹⁴³⁾ 등으로 진화된데 기인하다.

이러한 사이버 보안의 심각성에 대해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는 금융시장인프라의 사이버 복원(cyber resilience) 관련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증가하는 해킹, 디도스 등 금융권의 보안 위협들을 효율적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3-2〉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개념도



6. 전자금융 표준화 수요 증가

전자금융이 보편화되고 신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빠르게 출현하는 등 금융부문의 IT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142) 파밍(Pharming)은 기존 금융기관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이 접속하도록 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143)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 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공격자가 해킹프로그램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고객이 문자메시지 내에 포함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고객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유출은 대부분 스미싱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능 모바일기기 보급 확대와 전국적인 초고속 무선통신망이 구축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지갑, 새로운 소액지급서비스 등 모바일금융서비스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신규 기술에 대한 수용이 빠른 20, 30대를 중심으로 이용되던 전자금융서비스가 모든 연령대로 확산되면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없는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금융서비스간 상호호환성을 확보하고 고객들이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를 동일한 환경에서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하여 금융기관, IT업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전산업무를 위한 통신 전문, 금융IC카드 등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IT기술에 대한 표준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안전성 제고와 차별없는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하였다. 먼저 모바일뱅킹, 모바일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모바일기기 일반메모리에 저장되어 악성코드 감염, 분실 등으로 유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전용보안매체인 금융microSD의 기술적 규격을 표준화하였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CD/ATM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인터페이스 및 거래절차 등을 통일하고, 휠체어 사용자들의 ATM기기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격도 표준화하였다. 2013년에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인 등이 금융거래카드(신용카드, 현금카드 등)를 전자상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카드 정보 점자표기 규격을 마련하였다.

제2절 향후 정책과제

1. 금융시장인프라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

현재 국제금융기구들은 새로운 국제기준의 글로벌 이행을 통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층 강화된 글로벌 금융규제 체제하에서 국내 금융시장인프라가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행상황 모니터링에 적극 대응하여 3단계(Level 1~Level3)에 걸친 점검과정에서 최고등급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법규 정비 및 인프라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제기준의 핵심 적용대상인 중앙거래당사자(CCP)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외에 주요국이 개별적으로 제3국에 대해 규제동등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ESMA)는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제3국의 중앙거래당사자가 EU 지역 내 소재 금융기관 및 그 해외 지점에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2년 EU가 제정한 「유럽시장인프라규정(EMIR)」에 따라 별도로 인증(Recognition)¹⁴⁴⁾을 받도록 하고 있다.¹⁴⁵⁾

한편, 미국에서도 자국이 제정한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규제체계의 역외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제정된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Act)」에 따라 스왑거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파생상품청산기구(DCO; 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를 통해 청산되어야 한다. 다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중앙거래당사자 소재 국가와 미국의 규제체계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144) EMIR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3국 CCP 인증 요건은 ①CCP 규제·감독체계에 대한 해당국과 EU간 동등성 평가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 ②제3국 CCP가 소재국내에서 효과적인 감독과 건전성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③ESMA와 해당국 CCP 감독기관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 ④제3국 CCP 소재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 등 네 가지이다.

145) 최근 EU Commission에서는 PFMI 제정 이후 최초의 규제동등성 평가 결과를 공표하였다.(European Commission, "First 'equivalence' decisions for central counterparty regulatory regimes adopted today," Press Release, 2014.10.30) 평가 결과 호주, 홍콩, 일본 및 싱가포르 등 4개국이 최초로 규제동등성 인증을 획득하였다.

해외 중앙거래당사자를 이용한 청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향후 국내 중앙거래당사자가 국제기구의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이행 평가 및 미국·EU 증권당국의 규제동등성 인증을 받지 못해 이들 국가들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내 중앙거래당사자 이용이 곤란할 경우 금융시장에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 청산결제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거래정보저장소(TR)의 도입 등 인프라 정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2. 역내 금융시장인프라 연계논의 대응

현재 ASEAN+3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논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내 증권결제의 원활화를 위한 CSD-RTGS 연계 모델이 우선 추진되고 있으므로 동 연계 모델에 대한 국제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내 도입여부를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내 시장참가자의 수요(business feasibility), 정책적 고려사항(policy implication) 및 시스템 연계상의 기술적 고려(technical feasibility)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CSD-RTGS 연계 모델은 속성상 회원국의 기존 금융시장인프라를 바탕으로 양국간 연계(bilateral linkage) 모델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연계 모델을 통한 세부 연계유형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이중통화간 증권대금동시결제(cross-currency DvP)는 국내 금융기관(주로 외은지점 등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외소재 증권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Repo거래나 단순매매를 통해 원화유동성을 공급받게 되는 채널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인프라 연계 차원을 넘어 연계 대상국가간 증권시장 발달 정도, 금융시장, 통화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울러 동 논의는 우리나라, 일본, 홍콩 등 주도국 간의 역내 금융질서 구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역내에서 증권시장이 발달하고 신용도가 높은 적격증권(국채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특정국가의 금융기관이 자국 보유 증권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적극적인 거래를 수행할 경우 역내에서 해당 특정국가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에 여타 국가들의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높아지는 등 역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역내 저축의 역내 투자라는

역내증권결제기구(RSI) 설립 논의의 당초 취지를 고려한 역내 금융협력 기초 하에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3.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고도화 추진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국내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를 시장상황에 맞추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단계로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자체 청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국내 원-위안화 외환거래 및 위안화표시 채권거래 활성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위안 외환동시결제시스템 및 위안화표시 증권에 대한 증권대금동시결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 구축시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정성과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추진 중인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CIPS;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구축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⁶⁾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역외 기관에 대한 위안화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과 별도로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2016년 완료 예정). 동 시스템은 자국내 소재 금융기관에만 참가를 허용하는 기존 거액결제시스템과 달리 해외에 소재한 청산은행 등의 직접참가를 허용하고 전문 등에 사용하는 언어도 중국어와 영어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¹⁴⁷⁾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금융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되어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지급결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지면 해외의 위안화 청산·결제인프라의 필요성이 미 달라화 등 여타 주요 통화처럼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위안화 청산결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⁴⁸⁾

146) 가장 대표적인 역외 위안화 실시간 거액결제시스템(RTGS)을 운영 중인 홍콩금융관리국(HKMA)도 동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홍콩 내 시스템의 위상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47) 동 시스템은 시차가 큰 다른 지역 참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도 일중 17~18시간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148) 현재 전세계 17개 통화에 대해 PVP서비스를 제공중인 CLS은행은 홍콩내 역외 위안화를 결제통화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2004년 원화가 CLS 결제통화로 지정된 이후 모든 국내은행과 다수의 외은지점들이 CLS시스템에 참가하여 외환동시결제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한은금융망 업무환경 개선 추진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BOK-Wire+)은 1994년 구축 이후 금융시장 거래 및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여 결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지속적으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¹⁴⁹⁾해오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및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업무 및 기능 확대 등으로 인해 한은금융망 업무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한 데다 외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우선 수차례에 걸쳐 한은금융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대되었고 그 결과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한은금융망과 외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인프라와의 연계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최근 ASEAN+3 역내 국가간 증권결제기구 논의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SD-RTGS 연계 모델이 채택되면서 역내 국가간 시스템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IT 측면에서도 전산메시지 포맷의 국제표준(ISO 20022) 채택 등을 통해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한은금융망의 경우 참가기관 및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과의 전산시스템 연계 확대로 동 기관들의 한은금융망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안정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만약 한은금융망의 결제처리 지연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의 콜, 증권, 외환 관련 자금결제 업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도 각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해 보다 강화된 운영리스크 관리체계¹⁵⁰⁾를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업무수행환경을 정비할 필요성도 크다.

149)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9년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도입, 2004년 12월 CLS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외환 동시결제(PvP) 도입, 2009년 참가기관 서버와의 직접 연결을 통한 일관처리(STP) 체제 구축 및 혼합형결제방식 도입, 2010년 콜거래 중개회사 서버 연계를 통한 콜결제 일관처리(STP) 도입, 2012년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Repo 방식의 일중유동성공급 도입 등이 있다.

150) 복구목표시간(2시간)의 전체 FMI로의 확대, FMI간 운영리스크 피급 등의 관리강화 등이 있다.

5.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는 일상적인 거래에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 유지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신뢰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 등의 규제·감시·감독활동이 시장발전에 맞추어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은행의 경우 비금융기업이 다양한 지급수단 개발을 통해 소액결제의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촉진자(facilitator)로서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와 관련한 운영리스크나 청산·결제리스크 등에 대한 감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경우에는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및 글로벌 비금융기업의 국내 진입에 대응하여 기존 규제체계의 개선,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진출이 예상되는 글로벌 비금융기업은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규제체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은행, 외국의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당국 등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금융정보의 보안성 강화 및 전자금융 표준화 확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산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위협요소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전산시스템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알려진 취약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유사시 금융권의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에서 신규 IT기술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보안성 등 기술적 검증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해 IT기술에 내재된 결함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혹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위협에 대응하여 IT기술에 내재된 취약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금융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기준 제정시 이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한은금융망 등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보안대책기준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자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 표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모바일금융서비스 표준 제정 등 각종 표준화사업에 더하여 앞으로는 생체인증, 빅데이터 등 금융서비스에 도입 가능한 IT기술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금융권 공동 추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선제적인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예방 및 조기 탐지를 위하여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국제표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표준의 수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정보망 및 전자금융서비스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국가간 연계 확대에 대비한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7. 국내외 협력 및 조사연구 활동 강화

최근 역내 증권결제기구 설립 논의 등 국내 지급결제시스템과 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가 더욱 확대되고 이에 따라 상호의존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및 국가간 규제차익 제거를 위한 노력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관계당국은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 등 지급결제 국제기준 제정기구들과의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국제기구들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의 글로벌 이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행 점검활동에도 관계당국은 적극 협력함으로써 G20 회원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 협의체(EMEAP),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등 역내 금융기구 및 회원국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해 글로벌 지급결제 여건변화 및 역내 지급결제인프라 연계논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CLS 감시위원회와 SWIFT 감시 포럼 회원으로서 CLS은행 및 SWIF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감시활동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지급결제 현안 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응,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포함한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등을 위해 관계당국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지속·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국내 관계당국은 지급결제 유관기관, 전문가그룹 등과도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국내 지급결제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급변하는 대내외 지급결제여건의 변화 추이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노력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금융과 IT의 융합 등 전자금융 환경변화, 비금융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제공 확대 및 이에 따른 지급결제산업의 구조변화 등에 대한 영향 분석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지급결제제도 연대표 325
2. 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353
3. 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356

부록1. 지급결제제도 연대표

일 자	주 요 내 용
1910. 7. 1	사설 경성수형(手形)교환소 개설
1928. 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발족(경성수형교환소 운영)
1932. 1. 1	조선거래소 설립
1943. 7. 1	조선증권거래소 개설(1946년 1월 폐쇄)
1944. 9. 1	내국환집중교환제도 실시
1948. 3.	자기앞수표제도 도입
9. 1	경성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집회소로 개칭(경성수형교환소 → 서울수형교환소)
1950. 6. 12	한국은행 설립
1956. 2. 10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3. 3	증권거래소, 서울증권시장 개장
1959. 4. 1	거래정치처분제도 실시
1961. 7. 3	「부정수표단속법」 제정
1962. 1. 15	「증권거래법」 및 「이자제한법」 제정 및 공포
1963. 5. 3	증권거래소, 한국증권거래소로 개칭
1963. 12. 31	「어음법」 및 「수표법」 제정
12. 31	서울수형교환소를 서울어음교환소로 개칭
1969. 1. 4	사고신고예탁금제도 실시
7. 1	신세계백화점, 신용카드 발급개시
1970. 7.	정액자기앞수표 발행(1, 3, 5, 10만원권의 4종)
1972. 2. 14	한국증권거래소, 보통거래 결제일 단축 (5일 → 3일)
1973. 7. 3	한국증권거래소, 주식매매결제일을 3일로 단일화
1974. 5. 10	한국증권거래소, 총량결제에서 차감결제로 전환
12. 16	한국증권대체결제 설립
1975. 1. 4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 보호예수업무 개시
4. 1	사단법인 서울은행집회소를 서울은행협회로 개칭
7. 1	금융기관 콜거래실 설치
7. 18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 매매결제업무 개시
10. 1	사단법인 금융기관전자계산소 설립
11. 1	서울은행협회를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1977. 2. 1	서울지역 전기요금수납 이체업무의 지로제 실시
3. 2	상호어음교환제도 실시
6. 22	금융기관 전자계산소를 사단법인 지로관리소로 개편

일 자	주 요 내 용
7. 1	내국신용장 어음교환실 설치
1978. 4. 10	외환은행,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VISA카드 발급 개시
1979. 4. 1	서울지역 채권자계좌 이체업무의 지로제 실시
1980. 1. 4	한국증권대체결제, 유가증권집중예탁제도 도입
1. 11	서울어음교환소 기계처리(R/S) 실시
9. 25	국민은행, 국민카드 발급
1981. 3. 1	서울지역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
7. 1	서울지역 지로 대량지급업무 실시
7. 1	가계수표제도 도입
7. 1	30만원권 및 5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8. 1	서울지역 지로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
8. 7	가계수표제도 변경 - 정액식 가계수표 폐지, 기입식(발행한도 10만원 이하)으로 통일
1982. 1. 1	가계수표 이용자격 대폭 확대 - 1개월 이상의 가계수표 협력상점 (대월한도: 50만원)
2. 1	서울지역 전기요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3. 2	한국증권거래소, 채권 당일결제거래 실시
5. 19	은행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로제 실시
6. 7	5개 시중은행, 은행신용카드협회 설립 및 BC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업무 개시
7. 1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에 수도권 10개 도시 추가
7. 1	서울지역 전화요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1983. 1. 21	자기앞수표 발행·수납은행간 자금조정제도 도입(3.8 시행)
4. 1	거래정지처분기간 연장(만 1년 → 만 2년)
4. 7	보험료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9. 5	5개 시중은행 공동출자로 BC카드사 설립 - 종전의 은행신용카드협회를 법인(주식회사)으로 전환
10. 1	통합공과금 수납대행에 관한 지로제 실시 - 실시지역 : 서울(용산, 동작구), 대전, 경주시
10. 21	지로장표의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처리 실시
1984. 1. 4	부도발생익일 입금시 거래정지처분유예기준 완화(연 1회 → 연 2회)
1. 16	미결제어음통보제도 실시
5. 9	전국은행협회를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5. 9	“내국신용장어음교환규약” 제정
5. 10	사단법인 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발족
6. 1	신용카드 취급기관 확대(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추가)

일 자	주 요 내 용
7. 23	“금융전산망 추진기본방향” 수립
9. 14	“금융전산위원회” 발족 - 의장 : 한국은행 총재, 위원 : 은행감독원장 및 전국 규모 은행장급
10. 19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 제정
1985. 3. 25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은행과 직접 거래시 10만원 → 30만원)
6. 1	신용카드 취급기관 확대(대구, 부산, 경기, 경남, 충청은행)
8. 1	지로 자동계좌이체 및 대량지급업무 실시지역 확대 - 일반계좌이체업무 실시 전지역
8. 3	서울어음교환소 야간교환 및 혼입어음교환 실시
8. 3	어음교환 분산처리제도 도입(8개 시중은행 자체 기계처리)
10. 5	외국은행 국내지점, 어음교환 직접 참가
1986. 3. 25	원화여행자수표 발행
3. 25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은행과 직접거래시 한도 폐지)
5. 1	지방세(재산세) 수납업무의 지로제 실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경기도내 12개시
5. 12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1987.1.1 시행)
6. 2	금융결제관리원 발족(지로관리소와 전국어음교환관리소 통합)
7. 16	금융전산망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CD공동이용시스템 개발 위탁
9. 24	현금카드 규격표준화(JISII → ISO 규격) 및 ISO 카드용 CD기 표준화
12. 3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1987. 1. 5	미결제어음통보제도 확대 실시(토요일 포함)
1. 5	사고신고예탁금제도 개선 - 명칭 변경(사고신고예탁금 → 사고신고담보금) - 환급청구권 및 환급사유 구분·명시
3. 6	“CD공동이용시스템 실시계획” 확정
5. 27	“전산망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5. 30	「신용카드업법」 제정
6. 3	어음교환제도 개선(7. 1 시행) - 격지의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의 결제소요시간 단축(종전 4~7일→1일) 및 정액자 기앞수표(10만원, 30만원, 50만원권)의 대지급제도 도입
6. 16	금융전산위원회를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편 - 은행이외에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참가 확대
6. 30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CD공동이용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9. 8	「신용카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9. 22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ARS시스템 개발 위탁

일 자	주 요 내 용
12. 30	국민은행, 펌뱅크자금이체 실시
1988. 2. 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ARS시스템 공동운용 시행계획” 확정
2. 5	금융결제관리원 총회, CD공동이용업무 경비분담기준확정
2. 19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결제관리원에 타행환시스템 개발 위탁
2. 26	금융결제관리원 이사회, “CD공동이용업무규약” 제정
3. 3	한국증권거래소, 매매체결전산화시스템 가동
3. 16	서울지역 자동차세의 지로수납 실시
4. 6	“금융전산망 기본계획” 확정
4. 20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CD공동이용업무 세부처리지침” 제정
7. 1	CD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현금인출, 잔액조회 - 실시은행: 8개 시중은행, 4개 특수은행 등 12개은행
7. 14	금융결제관리원 이사회, “타행환시스템 추진계획” 확정
8. 1	전기 및 전화요금의 지로 자동계좌 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 - 전기요금: 경기도 전역 - 전화요금: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1989. 1. 4부터 제주도 포함)
8. 31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제도 도입
10. 20	CD공동망 실시은행 확대(10개 지방은행 참가)
10. 25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ARS시스템 기본설계서” 확정
11. 1	전기요금 지로 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지역 확대(일반계좌이체업무 전지역 실시)
1989. 4. 19	ARS공동망 가동(서울 지역) - 대상업무: 조회, 안내, 신용카드업무 - 실시은행: 8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등 13개 은행
6. 1	축협중앙회, CD공동망 참가
7. 8	신한은행, 야간교환 참가
7. 20	서울지역 통합공과금의 지로 자동계좌이체 실시
8. 31	동화은행, 금융결제관리원 준사원 가입
10. 16	금융결제관리원, 자금증개실 설치
10. 24	금융결제관리원 전산위원회, “타행환공동망 세부처리지침” 제정 및 타행환공동망 업무수수료 확정
10. 27	대동은행·동남은행, 금융결제관리원 준사원 가입
11. 1	금융결제관리원을 금융결제원으로 개칭
11. 30	은행신용카드업무의 지로제 적용 폐지
11. 30	금융결제원 이사회,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제정
12. 5	금융결제원, 외화콜거래증개업무 개시

일 자	주 요 내 용
12. 16	타행환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현금송금, 추심대전송금, 자기앞수표조회 - 실시은행: 4개 시중은행, 4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등 13개 은행
1990. 2. 17	한국외환은행, 야간교환 참가
3. 2	대동은행, CD공동망 참가
3. 8	동남은행, CD공동망 참가
4. 4	타행환공동망 실시은행 확대(조흥은행 등 11개 은행 참가)
7. 17	한국장기신용은행 · 서울신탁은행 · 한국외환은행, 타행환공동망 참가
7. 20	조흥은행, 자행CD기 휴일가동 개시
11. 1	서울지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지로수납 실시(1991.4.1 해지)
12. 1	한국증권대체결제, 기관결제업무 개시
12. 3	CD공동망 참가은행에 대한 일괄전송시스템 가동(조흥은행 등 11개 은행)
12. 10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추진 기본계획” 수립
12. 16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구축 추진기구 설치
12. 22	ARS공동망업무 실시지역 확대 - 실시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춘천, 청주, 마산, 제주, 전주 - 실시은행: 수협, 지방은행 등 14개 은행 추가
12. 31	「신용카드업법」 개정
1991. 1. 4	서울시 지방세(자동차세 · 종합토지세 · 재산세) 지료이용 해지
1. 23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기관 대고객전산망 도입방안” 확정
1. 25	불법주차 과태료의 지로수납 전국확대 실시
2. 1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및 할부금융기간 단축 - 현금서비스 50만원 → 30만원, 할부구매 200만원 → 150만원 할부금융기간 36개월 → 24개월
2. 28	수협중앙회, CD공동망 참가
3. 13	한국은행, 24개 국내은행 및 24개 외은지점의 SWIFT 가입
3. 30	수협중앙회, 타행환공동망 참가
4. 1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체신청업무 개시(11개 BC카드 회원은행)
5. 11	농협중앙회, 야간교환 참가
5. 27	외환은행, 24시간 현금인출서비스 실시
6. 1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 및 할부금융기간 단축 - 일반구매 300만원 → 200만원, 할부구매 150만원 → 100만원, 할부금융기간 24개월 → 12개월
6. 7	한국장기신용은행, CD공동망 참가
6. 24	금융결제원 총회, “금융결제원가입에 관한 지침” 제정

일 자	주 요 내 용
	- “금융결제원 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1992.6.27)
7. 11	하나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8. 26	보람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9. 11	광주은행, EFT/POS 자금이체 실시
10. 21	금융결제원, 지로 OCR장표 보관제도 실시
11. 6	동화은행, CD공동망 참가
11. 30	하나은행, 타행환·CD공동망 참가
11. 30	국민은행, 홈뱅킹 실시
11. 30	ARS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업무 지방확대 실시(지방 10개 도시)
11. 30	ARS FAX 통지업무 실시
	- 실시지역 및 은행 : 서울지역, 12개 은행(지방은행 제외)
11. 30	하나은행, ARS공동망 참가
12. 13	보람은행, 타행환·CD·ARS공동망 참가
12. 23	“한국은행금융결제망 구축종합계획” 확정
12. 28	금융기관 자체CD기에 의한 비은행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업무 대행(LG, 위너스카드)
12. 30	ARS FAX통지업무 지방 확대 실시(9개 지방은행(충북은행 제외) 추가)
12. 30	서울지역 ARS PC통지업무 실시
1992. 1. 20	자기앞수표 사고조치 및 사고신고접수업무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 서울 : 평일 및 토요일 09:30~24:00
	- 지방 : 평일 09:30~18:00(토요일 17:00)
1. 20	동행 동일인 및 타인명의 계좌이체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2. 17	충북은행, ARS공동망 참가
2. 21	한국컴퓨터(주), CD기를 통한 24시간 현금서비스 실시
2. 25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금융전산망 2단계 기본계획(1992~96)” 확정
2. 26	한국장기신용은행, ARS공동망 참가
2. 27	한국산업은행, 타행환공동망 참가
3. 2	신한은행, CD기를 이용한 자기앞수표(10만원권)인출 실시
3. 5	하나은행·보람은행의 신용카드업무 경영 내인가
3. 27	한국증권대체결제, 장외등록주식의 매매결제업무 개시
5. 23	동화은행, 야간교환 참가
5. 26	재무부, 한국컴퓨터의 24시간 현금서비스관련 온라인체제 구축 및 현금서비스수수료의 기간별 차등화실시 결정
6. 1	부산시 지방세(재산세)의 지로이용 해지
6. 13	한미은행, 야간교환 참가
6. 27	외국은행의 금융결제원사업 참여허용을 위한 절차 마련

일 자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정관”, “금융결제원사원·준사원 가입 및 특별참가에 관한 지침”,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금융결제원 사업 참여 배제조항 삭제 - 금융결제원 사업에 개별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별 특별참가제도 신설
7. 1	상호어음교환제도 개선, 정액자기앞수표의 당지교환 회부
10. 17	금융결제원 이사회,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금 산출기준” 제정
10. 28	평화은행, 금융결제원 준사원 가입
10. 31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 “대고객전산망 추진계획”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고객전산망내에서 홈뱅킹시스템과 펌뱅킹시스템의 구분 폐지 - 대고객전산망내에서 판매대금자동결제시스템을 별도의 망으로 분리
11. 8	서울지역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업무
12. 30	재무부, 제휴카드 발행허용
1993. 1. 15	씨티은행, 지로사업 특별참가(4. 12 지로업무 실시)
2. 1	평화은행, 타행환·CD·ARS공동망 참가
2. 11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구축
2. 24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
4. 1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자영업자 100만원 → 200만원, 기타 30만원 → 50만원
4. 24	지방 10개 도시, PC서비스 및 자기앞수표 사고조회·사고신고 접수업무 공휴일 서비스 실시(평일, 토요일, 공휴일 : 09:30~24:00)
4. 26	국세 자동이체의 지로제 시범 실시(서울시 중부·반포세무서 관할지역)
5. 1	재무부, 신용카드 금액 및 기간한도 자율화
5. 10	자기앞수표 사고조회 및 사고신고접수 24시간 실시(서울 및 지방 10개 도시)
6. 3	행정쇄신위원회, “우체국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연결 이용방안” 확정
7. 1	CD기 현금인출한도 상향조정(30만원 → 70만원)
7. 1	부도발생익일 입금시 거래정지처분 유예기준 완화(연 2회 → 연 3회)
7. 16	타행환 송금한도 인상(1,000만원 → 3,000만원)
7. 26	보람은행, 은행보증가계수표 발행
8. 12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8. 20	당좌거래정지처분 해제의 활성화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제요건 명확화, 해제심의 신속화(월 1회 → 주 1회), 해제제도 악용 방지장치 마련
9. 1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자영업자 200만원 → 500만원, 기타 50만원 → 100만원
9. 1	타행CD기를 이용한 은행계 신용카드(BC카드) 현금서비스업무 실시

일 자	주 요 내 용
	(11. 29 외환비자카드 추가)
10. 2	한국은행 본·지점·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방법 개선 - 현금결제→결제모점의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대차결제
10. 8	점포외 CD공동망 가동 - 대상업무 :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 실시은행 : 10개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3개 지방은행
11. 27	5개 시중은행, 은행공동보증 가계수표제도 도입(10, 50, 100, 200만원권의 4종)
11. 30	「부정수표단속법」 개정 - 선의의 부정수표 발행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제 적용 - 금융기관직원의 고발의무시한 연장(선의의 부정수표에 한하여 48시간 → 30일)
1994. 1. 3	어음교환에 회부된 회사채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상 제외
1. 17	씨티은행, 직불카드 발행
1. 25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KTNet) 가동 - 무역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의 상호연결로 수출입업무 관련 EDI서비스 제공
2. 5	CD기를 이용한 은행간 계좌이체업무 실시 - 실시은행 : 13개 시중은행, 5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2. 19	재무부, 선불카드 시행방안 확정
2. 22	씨티은행, 어음교환사업 특별참가: 국내 11개 전지점(종전에는 서울지점만 참가)
4. 1	부산권역 지로 분산처리 실시
4. 6	상품권 발매 개시(금액권<1, 3, 5, 10만원권> 및 용역권)
4. 25	국세 자동이체의 서울지역 확대 실시
4. 25	증권예탁원 개원
4. 27	대구시·인천시 지방세(재산세)의 지로 이용 해지
4. 27	씨티은행, 타행환공동망 특별참가
4. 27	금융결제원 이사회, 은행공동망 서비스이용 수수료 자율화 결정(5.2 실시)
4. 30	납부자자동계좌이체 실시 - 대상업무 : 대출원리금, 적금불입금, 신탁적립금, 각종회비 등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은행불입금 - 실시은행 : 14개 시중은행, 7개 특수은행, 5개 지방은행 등 26개 은행
5. 12	재무부, 신용카드업계의 선불카드 발행 인가(5천, 1, 2, 3만원권의 4종)
5. 31	재무부, 은행의 선불카드 발행 허용
6. 11	타행환 송금한도 인상(3,000만원 → 5,000만원)
7. 1	납부자자동계좌이체업무 실시은행 확대 - 충청, 경남, 광주, 제주은행 및 씨티은행
7. 1	증권예탁원, 외화증권 예탁·결제업무 개시

일 자	주 요 내 용
7. 15	신세계백화점, 선불카드 발행 개시(5, 10만원권 2종)
7. 2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한국은행금융결제망 운영규정” 제정(8. 1 시행)
9. 1	<p>금융결제원 이사회, 부도어음 반환방식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 지급은행이 부도어음 실물을 교환당일중 제시은행 점포 앞 직접반환 - 변경후 : 부도어음 실물을 부도발생 익영업일 해당은행간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반환(역교환 방식)
10. 4	우체국, 자기앞수표자금조정 참가
10. 10	<p>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한 가계수표 사고신고 및 조회제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무 : 가계수표 분실·도난·피사취 등의 신고 및 조회 - 참가은행 : ARS시스템 참가 31개 은행중 실시준비가 완료된 30개 은행 - 이용방법 : 전화, PC를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10. 14	<p>한국은행, 우체국 어음교환차액의 결제방법 일부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점(사무소 포함)의 경우에도 본점과 같이 지정처리시점에서 우체국의 교환 승·부금액을 자동적으로 국고부 앞으로 전금 또는 역이체하여 결제토록 함
12. 1	지로 자동납부신청서 접수기관 확대(은행점포—은행점포 및 각종 대금수납기관)
12. 5	타지 비정액자기앞수표의 당지 교환결제 실시
12. 5	<p>금융결제원 이사회, 어음부도 처리방법 개선 및 제재 강화</p> <p>〈어음부도 처리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거래정지처분 취소대상에 전자결제시스템 장애 포함 - 거래정지처분효력 일시 정지제도 도입을 통한 당좌 거래 정지처분 취소의 신속화 - 지급자금이 일부 부족한 경우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과 합의하여 지급 <p>〈어음부도 제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수표 장당 최고발행한도 초과사유로 부도 발생시 당좌거래 정지처분 유예회 수 축소(연 2회 → 연 1회) - 가계수표 사고신고담보금 상향 조정(장당 최고발행한도 내에서 발행금액 전액으로) - 사고신고서가 접수되었더라도 부도발생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사고신고담보금 미입금 및 예금잔액 부족시 부도사유를 ‘사고신고서접수’가 아닌 ‘예금부족’으로 처리하여 형사고발대상에 포함
12. 12	“지로업무 이용안내”의 ARS서비스 실시
12. 15	<p>한국은행,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관 : 한국은행 당좌예금 거래기관중 138개 기관(은행 85, 비은행금융기관 53) - 취급업무 :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 국공채거래, 한국은행대출, 국고, 통화금융정보 수집업무 - 가동시간 : 자금이체 및 국공채 거래는 09:30~16:30, 한국은행대출, 국고업무

일 자	주 요 내 용
	관련 파일전송은 18:30~익일 09:00
12. 26	통합공과금제도 폐지
	- 지로 일반계좌이체에서 일반계좌이체 또는 자동계좌이체로 분산처리
1995. 1. 9	한국은행·전국은행연합회, 위·변조 수표(어음) 식별장치 개선
	- 은화(무궁화 무늬)의 선명도 제고
	- 수표(어음) 이면의 위·변조 수표(어음) 식별요령을 인쇄
	- 잠상무늬의 변경 및 크기 확대
1. 21	서울중앙우체국, 야간교환 참가
3. 2	국고금 채권자계좌이체제도 폐지
	- 지로일반계좌이체 방식에서 타행환 등으로 분산처리
4. 26	한국산업은행, CD공동망 참가
	- 취급업무 : 현금지급, 잔액조회 및 계좌이체
6. 1	지로 실시지역의 전국 확대
	- 전국 73개시 98개군중 웅진군, 울릉군 등 5개 원격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실시
6. 7	금융기관과 판매대금자동결제망(EFT/POS) 사업자간의 전산망 접속 승인
	- 금융결제원과 5개 판매대금자동결제망 사업자간의 접속 승인
	- BC·국민카드 연합 VAN, 한국부가통신,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정보통신
6. 24	우체국과 농·수·축협 회원조합의 금융전산망 서비스 실시
	- 우체국 : 타행환·ARS공동망
	- 농·수·회원조합 : 타행환·CD·ARS공동망
6. 24	무역자동화망 접속 운영시간 연장
	- 09:30~16:30(토요일 13:00까지) → 09:30~19:30(토요일 16:30까지)
6. 25	점포외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08:00~21:00 → 08:00~22:00)
6. 28	금융전산망추진위, 금융기관 IC카드 제1단계 표준 제정
	- IC카드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
9. 4	증권예탁원, SWIFT를 통한 국제예탁결제통신망 구축
9. 14	금융전산망추진위, 금융기관 IC카드 제2단계 표준 제정
9. 27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 : 09:30~16:30 → 08:00~22:00
12. 7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금융결제망 가입
12. 23	타행환 송금대상 확대(타행 발행 정액자기앞수표 추가)
1996. 1. 17	씨티은행, CD공동망 특별참가
2. 1	직불카드(EFT/POS)공동망 가동

일 자	주 요 내 용
5. 3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장
5. 23	타행환공동망 이용시간 연장(09:30~17:00 → 09:00~17:20)
5. 28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가동
6. 22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를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개편 -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정보화추진기구가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된데에 따른 조치
7. 1	코스닥증권시장 개장
7. 12	우체국, 무역자동화망 접속 특별참가
9. 23	무역자동화망 접속업무추가 : 수출입관련 대금결제업무
10. 4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 자동화코너, CD 통한 현금인출 및 잔액조회서비스 공휴일 확대 - 계좌이체서비스 : 09:30~17:00 → 08:00~22:00
10. 31	씨티은행, 무역자동화망 접속 특별참가
11. 23	타행환 수취계좌 확대(보통예금 → 적금 및 신탁계정 추가)
12. 16	타행환 송금한도 확대(5천만원 → 1억원)
12. 18	ARS공동망 대상지역 확대 : 여수 및 강릉 추가
1997. 1. 27	한은금융망 제도 개선 - 어음교환 차액결제시각 변경 : 15:00 → 14:30 - 대기거래제도 변경 : 선입선출방식(FIFO) → 우회선입선출방식(by-pass FIFO)
2. 1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금융정보망 안전대책강화방안” 제정
4. 1	증권예탁원, CD예탁업무 개시
5. 26	홍콩상하이은행(CD·타행환공동망) 및 시티은행(CMS공동망) 특별참가
6. 17	지방은행공동망(BANKLINE) 가동
7. 7	한국증권거래소,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
7. 23	국공채 매매 및 통안증권, 국채발행 경쟁입찰 시스템 구축
9. 1	한국은행,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 순채무한도 설정, 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납입,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9. 1	“은행경영상 긴급상황 발생시 어음교환에 관한 긴급 조치규약” 제정
9. 1	증권예탁원, CD 예탁업무 개시
10. 6	타행 발행 일반자기앞수표의 타행환 송금업무 실시
10. 20	CD공동망 이용시간 연장 - 현금서비스 : 09:30~17:00(토요일 13:30) → 08:00~22:00(연중무휴)
10. 3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2000년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지침 제정
11. 25	증권예탁원, 코스닥시장의 결제이행 및 보증기구로 지정
1998. 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신용카드업법」 폐지)

일 자	주 요 내 용
1. 13	선물거래법 제정
2. 2	ARS공동망 서비스 실시지역 확대 : 충주, 군산, 구미, 목포
2. 21	ARS공동망(PC)을 통한 지로대금 납부서비스 실시
2. 23	증권투자신탁업무 관련영수증 자기앞수표 자금조정대상 추가
3. 30	증권예탁원, 어음예탁 개시
10. 20	CD공동망 계좌이체 이용시간 연장 -09:30~22:00(평일, 토요일) → 08:00~22:00(연중무휴)
10. 21	홍콩상하이은행, 어음교환 특별참가
12. 5	한국증권거래소, 토요일 주식시장 휴장
1999. 1. 1	금융결제원, 외환중개업무의 수익사업 전환
1. 4	지로 일반계좌이체업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대 실시
1. 1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공동사업 추진계획" 확정
1. 15	한은금융망 제도 개선 - 자금이체업무 입력종료시각 연장 : 16:30 → 17:00 - 오전 반일물 콜자금 상환시점 조정 : 13:00(토요일 13:30) → 14:30(토요일 13:00) - 외화자금예치 지정처리시점 조정 : 16:00 → 16:30
4. 20	증권예탁원, 금보관·결제업무 개시
4. 22	도이치은행, 타행환공동망 특별참가
4. 23	한국선물거래소 개장
6. 26	CD공동망의 제3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서비스 실시
9. 3	인터넷뱅킹시스템 서비스 개시(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한국통신 공동개발)
9. 6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 시행
9. 30	금융결제원, ARS공동망 특수번호(1369) 서비스 실시
10. 8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 명칭(K-CASH) 확정
11. 1	한은금융망을 통한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제도 시행 - 대상유가증권 : 국채, 공채, 회사채, 특수채, 금융채 등 채권 - 대상거래 : 장외시장의 일반채권매매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11. 1	증권예탁원, 채권장외결제제도 도입 및 제3자간 RP업무 개시
12. 3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전자화폐 시범사업 실시 결정 및 금융기관 수납장표 정보화사업 추진일정 조정
12. 11	Y2K문제 발생 대비 범금융부문 최종테스트 완료
2000. 3. 27	주택청약 계좌관리업무 실시
3. 29	증권예탁원, 제3시장 결제업무 개시
3. 31	인터넷 지로업무 실시

일 자	주 요 내 용
4. 12	금융결제원을 전자거래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
5. 20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 실시(대상지역: 서울)
5. 27	축협중앙회, 야간어음교환 참가
7. 24	타행환업무 개시시각 변경(09:00 → 08:00)
7. 26	전자화폐 시범사업 실시(7.26~12.31)
8. 16	전국어음교환소 규약 및 시행세칙 통합 제정
8. 31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환어음정보교환 결제시스템 구축
9. 30	한은금융망 일중당좌대출시스템 구축 및 일중당좌대출제도 시행
11. 13	ABN암로은행, 타행환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1. 18	평화은행, 지방은행공동망업무 참가
11. 30	상와은행, 타행환공동망업무 및 CMS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2. 22	농협·수협, CMS공동망업무 특별참가
12. 26	금융결제원, 전자상거래 지급결제(PG)업무 실시
12. 27	금융감독위원회,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원화자금중개업무 승인
2001. 3. 12	전자방식 차액결제시스템의 은행간 자금조정방식 개선
4. 16	전자금융공동망업무 가동
6. 1	한은금융망 원화자금이체시스템 자금코드 변경
6. 15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실시
7. 1	한은금융망 대기제도 및 일중당좌대출제도 변경
8. 1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 담보증권 제공비용 조정: 순채무한도의 10% → 20%
9. 20	서민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 승인
10. 4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거래대상 확대 - 대상거래 : 주식기관투자자결제
10. 15	전자금융공동망 자금이체한도 확대(건당 5억원→10억원)
10. 15	한은금융망 반일물결거래시스템 변경
10. 29	국민연금보험료 전자고지 및 납부(EBPP) 실시
11. 1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변경
11. 9	CD공동망 365일 자동화코너 운영시간 확대(08:00~22:00 → 08:00~23:30)
11. 27	한은금융망 재해복구시설(백업센터) 가동
12. 27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정 - 규정 제정목적 변경 : 한은금융망의 운영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일반적 규정 - BIS의 핵심원칙 이행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을 명시

일 자	주 요 내 용
12. 29	- 감시수단 확보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 및 내용을 확대 증권예탁원, 전자장외시장(ECN시장) 결제업무 개시
2002. 2. 4	상호신용금고연합회, CD/ATM, 타행환, CMS공동망 참가
2. 18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연합회, CD/ATM, 타행환, CMS, 전자금융공동망 및 지로 참가
2. 2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의 시간대별 차등폭 확대 - 이용수수료를 16:00기준으로 차별화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이용수수료 인하
3. 4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지로 참가
3. 4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시범가동
3. 18	증권예탁원, 개별주식옵션 결제업무 개시
6. 4	「증권예탁결제정보 공유시스템」 가동
7. 22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 담보증권 제공비율 조정 : 순채무한도 설정 대상거래 : 20% → 30% -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 평균상환금액의 75%
8. 1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일 한은금융망 운영 중지
8. 1	한은금융망 최적화 대기관리방식 도입
8. 13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ASP서비스인 「TrusBill」 실시
9. 6	자기앞수표 정보교환제도 전국 확대 실시
9. 25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가동
12. 24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자동수납시스템 시범 가동
2003. 1. 2	국고자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전면 실시
1. 2	재정자금 전자수납 및 전자이체서비스 실시
1. 24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간 상호연동 실시
3. 14	K-CASH 기반 서귀포시 교통시스템 개통
4. 21	CD/ATM을 이용한 지로대금 및 공과금 자동수납시스템 가동
6. 1	한국증권거래소, 국채전문유통시장 국고채 결제일 변경(당일 → 익일)
6. 5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 CLS 공동망 구축 추진 결의
6. 25	인터넷지로를 통한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실시
7. 14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방식 개선 - 한은금융망 콜거래 이용대상을 전 참가기관으로 확대 - 회수보장장치 강화 - 콜만기연장제도(roll over) 도입
7. 24	CLS은행 이사회, 원화를 CLS은행의 결제통화로 지정 승인
8. 11	소액 국고자금 지급방식을 금융기관별 일괄처리방식으로 변경

일 자	주 요 내 용
9. 3	「한국은행법」 개정(2004.1.1시행)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리 및 감시역할 명시
9. 5	원화표시내국신용장어음 정보교환 실시
9. 24	인터넷 GiroMail 서비스 실시
9. 30	국민은행·한국외환은행, CLS그룹지주회사에 출자 및 주주자격 취득
10. 14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대상거래 확대 - 대상거래: 담보콜거래
10. 27	금강산 관광시설내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12. 1	관세환급금의 실시간 전자이체 지급제도 도입 - 관세환급금을 1일 2회에서 실시간 전자이체방식으로 전환
12. 2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전면 개정 -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마련 -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강화
2004. 3. 2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05.1.1시행) 제정
3. 31	한은금융망, CLS연계시스템 구축 완료
4. 6	한은금융망,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대상거래 확대 - 어음 매매거래(CP),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간접투자증권 판매·환매 거래
4. 6	간접투자재산예탁결제시스템 개통
6. 24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세칙」 개정 - 자기앞수표 현금지급서비스의 결제리스크 관리대상 추가 - 한은금융망 장애발생시 금통위 보고조항 신설
6. 25	지로 입금내역 인터넷 조회·통지 서비스 실시
7. 1	자기앞수표 자금조정제도 변경(자금적수보전방식 → 이자조정방식)
7. 1	유류구매전용카드제 실시
7. 1	은행 자기띠(M/S)현금카드의 금융IC카드 전환 시범사업 실시
8. 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채권 통합차감결제 시행
8. 5	은행공동의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Ubi) 시범 실시
8. 6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 실시
9. 9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 CLS시스템을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핵심지급결제시스템으로 규정
9. 24	CLS은행과의 당좌예금거래약정 및 한은금융망 가입약정 체결
9. 30	금융결제원, CLS공동망시스템 구축 완료
10. 18	전자문서교환방식 내국 신용장 결제업무 실시
11. 23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 개정
12. 3	원화의 CLS은행 결제통화 지정

일 자	주 요 내 용
12. 6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가동
12. 6	한은금융망 시스템 재구축 완료 -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 설치 - 통신망 재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
2005. 1. 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 - 전자적 방식에 의한 약속어음의 발행·유통 등을 규정
1. 17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 세부 운영방안 마련 - 2004.12월 수립한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 담당자 운영지침」 제정
1. 2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식 출범
3. 7	적수보전에 의한 은행간 자금조정방식 완전 폐지 - 2001.3월 CD 공동망 등 전자방식 실시간 소액결제시스템, 2004.7월 자기앞수표의 교환결제에 이어, 2005.3.7일 자기앞 영수증에 대한 은행간 자금조정을 적수보전방식에서 이자정산방식으로 변경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제정 -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한은총재가 지정하는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지시나 그와 관련된 결제는 유효하도록 보장하는 특칙을 포함하여 결제완결성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조정 - 이용수수료를 시간대별 및 거래종류별로 차등화
4. 11	한은금융망 재구축추진반 설치 - 유동성 절약형 거액결제시스템의 도입 업무를 전담
9. 22	은행공동 e-L/C관리시스템 구축 - 수출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등록,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9. 27	전자정보교환 방식 어음·수표의 차액결제시점 조기화 - 대상: 전자정보의 교환에 의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자기앞수표, 기업구매자금어음 및 내국신용장어음 - 결제시점: 오후시점(14:30) → 오전시점(11:30)으로 변경
9. 27	전자어음관리시스템 구축 - 어음 관련 업무가 전자적으로 수행
2006. 1.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
2. 13	증권예탁결제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STP체계 구축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명 통합도산법) 시행
4.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 -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과

일 자	주 요 내 용
	의 공동검사 요구권 부여
6. 20	외화표시채권 동시결제업무 개시
8. 10	한국은행,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 한은금융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 등 5개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8. 24	한국은행, 지급결제시스템 평가체계 개편 -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분류체계: 3단계 → 2단계 - 평가주기: 매년 → 격년
9. 1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제도 개선 - 일중당좌대출 이용한도 폐지 -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자 부과
12. 8	금융결제원, CD공동망 운영시간 확대 - 변경전: 07:00~23:30 → 변경후: 00:30~23:30
12. 15	금융결제원, 타행 CD/ATM을 통한 현금입금서비스 실시
2007. 1. 25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규정」 및 「동세칙」 제정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부여받은 자료제출 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에 대한 세부규정 및 세칙 마련
3. 9	오전차액결제시점에서의 예약자금이체 허용(2007.4.2 시행) - 정보교환 자기앞수표의 차액결제시점 조기화로 오전차액결제 규모 대폭 확대에 따라 동 시점에서의 예약자금이체를 허용
3. 16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 업무의 처리결과 통보시각 단축 - 변경전: 익일 10:00 → 변경후: 익일 03:00
5. 17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2007.11.18 시행) - 어음정보 및 수표정보의 전자적 송·수신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정보교환을 통해 어음·수표 교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7. 27	「새마을금고법」 개정(2007.8.27 시행)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 마련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2009.2.4 시행) -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수행 근거 마련 - 한국은행은 자금이체업무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가능
8. 22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2007.8.27 시행) -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수표발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수표

일 자	주 요 내 용
	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9. 4	금융결제원,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 실시
9. 20	금융결제원, CD 공동업무 계좌이체 한도 축소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2007.9.13)에 따라 CD/ATM을 통한 계좌이체 한도 축소 - 변경전: 1천만원 → 변경후: 6백만원
9. 2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결제수단에 신용카드를 추가
10. 16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마감시각 연장절차 및 이용수수료 체계 개편 - 마감시각 연장사유 구체화 - 종료시각 후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 수작업이체 수수료 일원화(건당 4,000원, 단 CLS거래 제외)
10. 19	금융결제원, CD/ATM기 및 인터넷뱅킹 등 운영시간 연장 - 23시간(00:30~23:30) → 23시간 50분(00:05~23:55)
11. 30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보안토큰 규격」 제정 - 전자금융거래시 고객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정보 유출 방지
11. 30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금융공동망표준」 개정 - RF방식의 CD/ATM 거래 등을 표준대상에 추가
12. 14	한국은행, 어음교환 차액결제 및 콜자금 상환시점 조기화(2008.1.11 시행) - 대상: 서울지역 어음교환 차액결제, 1일물 이상 콜자금 상환 - 변경전: 오후차액결제시점(14:30) → 변경후: 오전차액결제시점(11:30)
12. 14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자금이체 대기시간 제한 폐지(2008.1.11 시행) - 콜자금 상환만 현행 1시간 대기시간 제한을 유지, 나머지 거래에 대한 대기시간 제한은 폐지
12. 18	타행 CD/ATM기의 현금인출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
12. 20	공과금 무인수납기 공동이용 실시
12. 21	「예금자보호법」 개정(2007.12.21 시행) -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예금자보호기금 부보대상기관으로 추가 - 자기앞수표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보대상에 포함
2008. 1. 8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근거 마련(2008.1.8 시행)
1. 17	「신용협동조합법」 개정(2008.1.17 시행) -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보호되는 사항에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포함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지급을 보장
1. 24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 도입(2008.3.7 시행) - 유동성조절대출 및 일시부족자금대출 제도는 폐지

일 자	주 요 내 용
1. 24	한국은행, CLS은행의 결제서비스 제공대상 거래 확대 허용(2008.3.7 시행) - CLS은행이 외환동시결제 외에 NDF 및 신용파생상품 등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결제서비스를 제공
1. 25	한국은행, 일중당좌대출 상환 마감시각 조기화(2008.3.7 시행) - 자금조정예금·대출의 신청마감시각이 일중당좌대출의 상환 마감시각후 10분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일중당좌대출 상환의 종료시각 조정(17:30 → 17:20)
2. 5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 근거 마련(2008.2.5 시행)
2. 25	증권예탁결제원, 통합 SAFE 시스템 오픈
2. 29	새마을금고,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3. 20	금융결제원, CD공동망 1회 현금인출 한도 변경(70만원 → 100만원)
3. 24	상호저축은행,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4. 7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금융IC카드 보안토큰 규정」개정 - 인터넷뱅킹에만 이용되던 금융IC카드 보안토큰을 공인인증서비스가 적용된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
5. 22	한국은행, 차액결제 미결제순채무액 계산방식 변경(2008.7.30 시행) - 차액결제 미결제순채무액 계산기준 변경 - 거래일 00:00~24:00 → 거래일 00:00~결제일 11:30 중
5. 30	한국은행,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대한 규정」 개정 (2008.6.1 시행) -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변경(재경부장관→금융위원회위원장) - 자문위원 소속기관 범위 확대(금융유관기관 포함)
7. 1	ING은행, CLS시스템 참가
7. 9	한국은행, 순채무한도 설정대상 변경(2008.8.1 시행) - B2C 전자상거래중 차액결제 참가기관간 지급지시가 실시간 송수신되는 거래를 포함
8. 1	신용협동조합, 자기앞수표 발행업무 시작
9. 1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USIM 등 모바일칩 기반의 RF방식 CD/ATM 이용 표준」 제정 - 다수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USIM칩에 주입하여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제정
10. 1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업무 실시 - 납부자가 세무관서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10. 9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2008.11.3 시행) - 09:30~17:00(7시간 30분간) → 09:30~17:30(8시간)

일 자	주 요 내 용
12. 19	금융결제원, 휴대전화를 이용한 CD/ATM 서비스 실시
	-3세대 휴대전화에 계좌정보를 탑재하여 CD/ATM 이용
2009. 1. 22	한국은행, 차액결제대행 관련 리스크 관리제도를 체계화(2009.2.4 시행)
2. 4	자본시장법에 따른 상호 변경
	-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한국거래소
2. 25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
	- 전화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포함
3. 23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청산결제제도 개선
	- 증권결제계좌를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로 단일화 및 종목별 결제방식 도입
	- 결제이행보증금제도 신설(2009.5.4 시행)
	- 결제지연 손해금 도입(2009.7.6 시행)
4. 27	한국은행, 한은금융망의 혼합형결제방식 도입
	-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기능이 추가된 혼합형결제시스템 도입으로 금융기관
	일중유동성 조달부담 경감
5. 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1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서버간직접접속시스템 가동
	- 참가기관이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자금이체지시를 서버간직접접속을 통해 일관처
	리하게 됨으로써 업무부담이 경감
7. 3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이체서비스 제공 시작
	- 2009.7.3일부터 25개 금융투자회사가 순차적으로 제공(7월중 1개, 8월중 13개,
	9~12월중 2개, 10월중 1개, 2010.2월중 8개)
7. 24	한국은행,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가입
	- CPSS는 BIS의 3대 위원회 중 하나로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감시 관련 국제기
	준 및 원칙 제정, 주요국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
8. 3	금융감독원, CD/ATM기 이체한도 축소
	- 최소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 이체한도*를 70만원으
	로 축소
	* 1회 6백만원, 1일 3천만원
9. 11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시간 확대
	- 금융기관 영업일 09:00~22:00에서 연중무휴 07:00~22:00로 확대
9. 15	한국예탁결제원, 국제통합계좌업무 개시
	- 외국인 개별 투자등록 및 증권투자전용계좌의 개설 없이 Euroclear 명의의 통
	합계좌를 통해 자유로이 국제 및 통안채 거래 가능

일 자	주 요 내 용
10. 23	<p>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참가은행, 서울지역 어음 및 가계·당좌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및 수표의 실물 이동 없이 이미지 등 전자정보의 송·수신만으로 교환을 하는 2단계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실시
11. 16	<p>한국은행,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p>
11. 17	<p>한국예탁결제원, 국고채 원리금지급방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채원리금 만기상환시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회사 등 해당기관에 오전 10시 30분에 조기 입금(종전에는 거액의 만기 상환자금이 신한은행 펌핑을 통하여 오후 4시경 해당기관 앞으로 이체)
11. 30	<p>한국은행·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추진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의 조기결제유도를 위한 장내·외 증권결제방식 변경, 장내주식의 이연차액결제제도 도입, 국채 등 채권매매의 결제시 한국은행의 일중유동성 제공 등
12. 22	<p>금융결제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 등록·조회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서비스 실시로 자행과 타행 거래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결제여부가 확인 가능하며, 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채권의 추가 발행 제한, 신용등급 재산정 등의 제재 가능
12. 24	<p>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개정판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도입(2004), 한은금융망 혼합형결제방식 도입(2009), 금융투자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2009),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시행 등 지급결제환경 변화내용을 반영
2010. 1. 1	<p>한국은행,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수수료 체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건수 기준 강화 : 월평균 최소 이용건수 20건 → 50건 - 전담인력 기준 신설 : 전담인력 6명 이상 - 월정액수수료 도입 및 건당 이용수수료 인하 - 간접참가방식 도입 : 가입기준 강화에 따라 직접참가가 어려운 소규모 참가기관의 거액자금이체 수단 제공
2. 1	<p>한국은행, 콜결제 일관처리(STP) 시스템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콜거래 중개회사 서버와 한은금융망 서버를 직접접속하여 콜거래에 따른 자금급·상환업무를 일관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가동
2. 1	<p>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결제지연손해금 제도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시한(16시)까지 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을 투입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를 종결 - 결제시한까지 결제대금 미납부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 부과
4. 26	<p>금융위원회, 재래시장·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p>

일 자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재래시장 가맹점 : 2.0~2.2% → 1.6~1.8% - 연 매출 9,600만원 미만 기타 가맹점 : 3.3~3.6% → 2.0~2.15%
4. 29	<p>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은행권 공동 스마트폰 모바일뱅킹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을 통하여 예금조회·이체, 신용카드 업무, 지로납부 등 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6. 29	<p>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ATM 설치 기준, 금융거래 지원 범위, 화면 및 안내음성, 고객식별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표준화
10. 22	<p>금융결제원,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증계시스템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간 외화송금시 수취인 계좌 사전확인 및 송금처리 여부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 - 대상통화 :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참가은행별로 상이
10. 29	<p>금융결제원, 어음정보 일괄조회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음 등의 발행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모든 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정보*를 일괄조회 가능 *발행, 결제, 만기 및 부도 정보
11. 19	<p>한국은행·금융결제원, 어음·수표의 전자정보교환 전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이 동일한 결제권역으로 단일화되어 결제권역이 다르거나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지 않는 지역의 추심 소요기간이 5~6일에서 1일로 단축
12. 2	<p>한국거래소, 손해배상공동기금 규모 확대 및 적립수단 다양화(2011년 1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안전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 규모 확대 : 1,000억원 → 2,000억원 - 적립수단 다양화 : 현금 → 현금 및 국고채·통안증권(50% 한도)
12. 14	<p>금융결제원, 스마트폰 계좌이체 PG(payment gateway)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쇼핑몰 등에서 상품·서비스 대금결제를 스마트폰을 통해 고객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서 실시간 출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12. 17	<p>한국은행·금융결제원, 국가간 ATM공동망 연계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이용하여 국외 ATM에서 현지통화 인출 가능 - 말레이시아(2010.12.17), 미국(2011.1.20), 필리핀(2011.1.27), 베트남(2011.8.31), 태국(2011.12.8)에서 서비스를 실시
2011. 1. 31	<p>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사후위탁증거금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적격기관투자자 선정요건 강화 및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2. 7	<p>한국예탁결제원, 차세대시스템 'SAFE+' 오픈</p>
2. 22	<p>한국은행, 한은금융망 DvP 대상거래 확대 및 담보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채·CD 발행 거래를 DvP 대상거래에 포함

일 자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대해 담보인정비율(haircut ratio) 적용
7. 25	<p>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주식시장 결제 조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에서 거래소의 수령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개시시점을 결제일(매매일+2일) 15시에서 9시로 앞당김(2010.7.5 16시에서 15시로 조기화)
10. 4	<p>금융결제원,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어음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서·보증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각각 500원 인하
10. 31	<p>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규격, 장애인의 행동반경을 고려하여 CD/ATM 설치 대수, 부스 이용공간 규모, 고객조작부 높이 등을 표준화
10. 31	<p>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제도 개선 등 업무규정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금 산출시 기초자산 가격변화와 함께 옵션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 파생상품시장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을 추가하여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대응 강화
11. 18	<p>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위규시 제재수단을 신설·강화하고 차액결제대행 한도의 승인기준을 대행은행 BIS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변경</p>
11. 28	<p>금융결제원, 은행권 공동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에 하나 이상의 현금카드(계좌정보 내장)를 탑재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유비터치)' 를 스마트폰으로 확대
2012. 1. 16	<p>한국은행·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주식결제 관련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주식 결제방식 변경 : 결제은행 변경(시중은행→한국은행), 연속차감결제(CNS)제도(결제납부시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증권을 익영업일에 결제) 도입 - 주식기관결제 방식 변경 : 양자간 차감(DvP3)→증권은 건별로, 대금은 다자간 차감(DvP2)
2. 20	<p>한국은행·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채권결제 관련 「증권시장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 금융투자회사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일중RP제도 시행 -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 장내국채 결제방식 변경(DvP3 → 차감후DvP1)
4. 16	<p>CPSS-IOSCO,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최종본 및 2개 부속보고서 잠정안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MIs는 기존의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통합하면서 신용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강화
4. 25	<p>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발간</p>

일 자	주 요 내 용
6.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의 명칭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보고서」에서 「지급결제보고서」로 변경 -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결제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업무 수행상황 등을 보완·개편 <p>한국은행·금융결제원, 타행자기앞수표 자금화시각 조기화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가능 시각을 14시 20분에서 12시 20분으로 조기화
7. 14	<p>「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 (2013.1.15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기자금조달 수단(전자단기사채)을 도입
7. 16	<p>한국예탁결제원, RP거래정보 실시간 공시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P거래 체결내역, 일자별 RP 이율, RP시장규모 및 관련 통계 제공
9. 10	<p>한국은행,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 상환절차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예탁결제원의 원리금 상환청구를 건별로 입력·처리하는 종전의 한은금융망 단말기 접속방식에서 서버 접속에 의한 전문 송수신 방식으로 변경하여 원리금 상환 소요시간을 약 2시간 단축
10. 5	<p>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 microSD 표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수록·관리할 수 있는 microSD 규격을 표준화
11. 14	<p>금융결제원, 은행공동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카드를 마트, 식당 등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12. 14	<p>CPSS-IOSCO, 「FMI 공개체계 및 평가지침(PFMIs; disclosure framework and assessment methodology)」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I 자체평가 공개 및 감시·감독당국의 FMI 평가방법을 제시
12. 27	<p>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 관련 평가 기준을 종전 3대 국제기준에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으로 변경
2013. 1. 15	<p>한국예탁결제원, 전자단기사채인프라 시스템 오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1. 29	<p>금융결제원, payOn(페이온) 서비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불교통카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기존의 MS(마그네틱)카드를 단말기에 읽히는 방식이 아닌 교통카드와 동일한 터치방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 매장을 확대
2. 15	<p>BCBS-CPSS,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개정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외환시장 여건 및 인프라 변화를 감안하여 2000년 9월 제정된 기존 「외환결제리스크관리 감독기준」을 보강
3. 15	<p>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p>

일 자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9개 통화)로만 예약이 가능했던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을 '미국 국채' 까지 확대 허용
3. 15	<p>금융결제원, 스마트폰 지급결제(뱅크월렛) 서비스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에서 발급하는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뱅크머니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
4. 11	<p>BCBS-CPSS, 「Monitoring tools for intraday liquidity management」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의 효과적인 일중유동성리스크 모니터링 수단 등을 제시
4. 25	<p>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SEIBro) 오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증권발행 정보, 거래량, 수익률 정보 등의 증권정보를 통합 제공
6. 18	<p>금융감독원,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2013.10월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BS-CPSS의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감독지침」을 토대로 관리대상 리스크를 원금리스크 뿐만 아니라 대체비용, 유동성, 운영 및 법률 리스크로 세분화
7. 8	<p>한국거래소,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및 파생상품 투자자에 대한 증거금 관리 강화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리즘거래계좌 사전신고 의무화 및 거래소의 주문 일괄취소기능 도입 - 장중 추가증거금 제도, 장중 위험노출액한도 축소 등 실시
7. 11	<p>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전산 보안 협의회」 설치, 금융권 공동 백업전용센터 구축, 금융전산망분리 등 금융보안 대응체계 강화 추진
8. 5	<p>한국은행, 국고금 수납내역의 정부 앞 실시간 제공 시스템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고자금 운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한국은행이 직접 수납한 국고금 내역의 정부 앞 제공 시점을 익일 09:30에서 당일 실시간으로 앞당기는 시스템을 구축
8. 12	<p>CPSS-IOSCO, 「TR Access Report」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거래정보저장소(TR) 정보의 수준, 관계당국의 정보 접근 가이드라인, 중앙은행의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원칙 등을 제시
8. 12	<p>CPSS-IOSCO,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PFMI Level1 Report」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관계당국이 국내 법규 개정 또는 정책 변경 등을 통해 PFMI를 규제체계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 평가 내용 발표
8. 13	<p>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확대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비은행 금융기관의 참여 신청을 승인하여 전체 금융권의 3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 개편
9. 2	<p>BCBS-IOSCO,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의 CCP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CCP 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일 자	주 요 내 용
	증거금 부과에 대한 주요 원칙 제시
9. 1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CCP) 인가
9. 16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규격 표준 제정 - 저시력인,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시 특정 카드를 식별하거나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점자표기 대상, 위치, 인쇄방법 및 점(dot)의 물리적 규격 등을 표준화
10. 1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국내 CCP의 규제체계간 동등성 평가에 관한 기술자문 보고서(Technical Advice) 발표 - 한국은행이 국내 CCP에 대한 감시기관임을 명시하고, 국내 CCP의 규제체계 및 법적 요건 등이 EU 제정 「유럽시장인프라 규정(EMIR)」 기준과 동등한지를 유럽위원회(EC)앞 의견 제시
12. 13	한국거래소,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및 채무인수 중단 - 한맥투자증권의 코스피200 12월물 지수옵션 거액 오류주문 발생(12.12일)에 따른 조치
12. 30	한국은행,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추가지정(2014.1월 시행) - 어음교환, 지로, CMS시스템을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
2014. 1. 15	금융위원회,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함
2. 18	금융결제원, CMS 안전성 강화방안 발표 - CMS 부당인출 시도(1.29일 발생) 관련 안전성 강화방안
3. 10	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 - 신용카드사 정보유출과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및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3. 27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취급업무 추가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변경(2014.4.1 시행) -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전용예금계좌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한국은행의 증권커스터디 업무에 따른 자금이체를 추가 - 금융결제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액결제 참가기관의 순채무한도 당일중 감액 신청을 허용
4. 10	BCBS-CPSS-IOSCO, 「Capital treatment of bank exposures to central counterparties」 발표 -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자본 부과시 은행의 적격 CCP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
4. 15	BCBS,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일 자	주 요 내 용
	<p>exposures」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를 포함한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액 익스포저를 규제하여 은행 포트폴리오상의 편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
5. 20	<p>IMF-WB,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결과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는 FSSA(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및 ROSC (Reports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and Codes) 보고서로 발표되고, 각국에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 적절한 정책대응방안을 권고
5. 20	<p>금융위원회,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소비자의 편의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
6. 30	<p>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회사간 적격 원화이자율스왑(IRS)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7. 3	<p>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한국내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관련 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선정
7. 28	<p>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고,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인증수단을 선택하도록 허용
9. 1	<p>BIS CPSS, CPMI로 명칭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는 위원회 업무의 관할범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로 변경
9. 9	<p>BIS CPMI, 「Non-banks in retail payments」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기관의 소액결제분야 참여 확대에 따른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시사점을 분석
9. 9	<p>BIS CPMI, 「Developments in collateral management services」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담보관리서비스(collateral management services) 산업의 발전과 이로 인한 잠재적 이익 및 리스크에 대해 분석
9. 23	<p>금융위원회,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및 Active-X 해결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결제시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결제' 및 '앱카드' 등을 활성화하고 사전인증에서 사후확인으로 전환하며 PG(Payment Gateway)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
10. 15	<p>BIS CPMI, 「Recovery of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P와 같은 주요 FMI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금융시장 및 참가기관에

일 자	주 요 내 용
10. 31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손실복구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 한국은행·정부,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 7.3일 한·중 정상간 이루어진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확정
11. 11	BIS CPMI, 「cyber resilience i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발표 -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FMI의 복원력(resilience) 및 정책적 이슈를 정리

부록2. 지급결제관련 국내외 기관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국내기관	한국은행	www.bok.or.kr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결제원	www.kftc.or.kr
	한국거래소	www.krx.co.kr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국제기구	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ww.bis.org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ww.imf.org
	세계은행(World Bank)	www.worldbank.org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www.iosco.org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협력체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Pacific Central Banks)	www.emeap.org
	동남아중앙은행기구 (SEACEN; The South East Asian Central Banks)	www.seacen.org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뉴욕 연방준비은행	www.newyorkfed.org	
연준 금융서비스 (Federal Reserve Financial Services)	www.frbfinancialservices.org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	www.chips.org	
NACHA(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	www.nacha.org	
증권예탁기관(DTCC) (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www.dtcc.com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www.boj.or.jp
	일본은행협회	www.zenginkyo.or.jp
	청산기구(JSCC; Japanese Securities Clearing Corporation)	www.jsccl.co.jp
	중앙예탁기관(JASDEC; Japanese Securities Depository Center)	www.jasdec.com
	국채청산소(JGBCC; Japan Government Bond Clearing Corporation)	www.jgbcc.co.jp
	금융청(FSA; Financial Services Agency)	www.fsa.go.jp
유로지역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www.ecb.europa.eu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europa.eu
	EBA Clearing	www.ebaclearing.eu
	중앙예탁기관(Euroclear)	www.euroclear.com
	증권거래소(Euronext)	www.euronext.com
	청산소(LCH, Clearnet group)	www.lchclearnet.com
프랑스	지급결제협의회(EPC; European Payments Council)	www.europeanpaymentscouncil.eu
	프랑스중앙은행(Banque de France)	www.banque-france.fr
	국채거래소(MTS France)	www.mtsfrance.com
독일	은행간청산협회(GSIT; The French Interbank Teleclearing Consortium)	www.gsit.fr
	독일연방은행(Deutsche Bundesbank)	www.bundesbank.de
영국	중앙예탁기관(Clearstream AG Frankfurt)	www.clearstream.com
	영란은행(Bank of England)	www.bankofengland.co.uk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www.fsa.gov.uk
	CHAPS(CHAPS Clearing Company Ltd.)	www.chapsco.co.uk
	지급결제협의회(UK Payments Administration)	www.ukpayments.org.uk
	증권거래소(LSE; London Stock Exchange)	www.londonstockexchange.com

구분	기관명	웹사이트
이탈리아	이탈리아중앙은행(Banca d'Italia)	www.bancaditalia.it
	중앙예탁기관(Monte Titoli)	www.montetitoli.it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ank of Canada)	www.bankofcanada.ca
	지급결제협회 (CPA;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www.cdnpay.ca
	중앙예탁기관 (CDS; Canadian Depository for Securities)	www.cds.ca
호주	호주중앙은행(RBA; Reserve Bank of Australia)	www.rba.gov.au
	금융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www.apra.gov.au
	증권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www.asic.gov.au
	지급결제협회(Australian Payments Clearing Association)	www.apca.com.au

부록3. 지급결제관련 주요 통계

가. 지급수단별 결제규모

(일평균 건수)

(천건)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음·수표	3,668	2,986	2,463	1,850	1,470
교환제시	2,554	2,052	1,678	1,239	972
발행창구제시	1,114	929	780	604	492
전자어음	0.2	4.6	5.5	6.1	5.9
계좌이체	12,664	13,658	14,729	16,026	16,948
입금이체	7,396	8,023	8,734	9,388	10,085
(한은금융망)	11	13	15	13	14
(지로입금이체) ¹⁾	1,656	1,696	1,663	1,722	1,662
(전자금융공동망)	4,248	4,855	5,504	6,147	6,973
(타행환공동망)	487	429	416	393	378
(CD/ATM계좌이체) ²⁾	636	686	755	852	929
(CMS입금이체)	267	246	273	158	20
(지방은행공동망)	0.5	0.5	0.4	0.3	0.3
(전자상거래공동망)	91	97	109	103	107
출금이체	5,268	5,635	5,994	6,638	6,864
(지로자동이체)	2,567	2,914	3,173	3,753	3,922
(CMS출금이체)	2,701	2,721	2,821	2,885	2,942
지급카드	16,329	19,997	23,444	27,513	31,868
신용카드	13,370	15,931	18,064	20,436	22,339
(물품 및 용역구매)	12,971	15,551	17,686	20,077	22,012
(현금서비스)	399	380	378	359	327
체크카드	2,874	3,885	5,230	6,953	9,432
선불카드	82	178	148	122	95
직불카드	2.8	2.6	2.2	1.6	1.1
현금IC카드	-	-	-	0.1	0.7
전자화폐	289	258	162	68	37
합 계	32,950	36,898	40,797	45,457	50,323

주 : 1) 장표지로, 납부자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2) 예금지급 및 현금서비스지급 제외

(일평균 금액)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어음·수표	32,064	34,089	33,195	29,287	25,977
교환제시	21,343	22,940	21,132	17,192	14,965
발행창구제시	10,702	10,899	11,724	11,684	10,615
전자어음	19	250	339	411	397
계좌이체	208,446	231,741	242,683	264,123	272,856
입금이체	207,910	231,151	242,037	263,415	272,128
(한은금융망)	181,008	200,647	206,806	226,133	232,717
(지로입금이체) ¹⁾	400	441	500	572	595
(전자금융공동망)	22,707	26,169	30,523	32,403	34,365
(타행환공동망)	3,165	3,232	3,480	3,581	3,745
(CD/ATM계좌이체) ²⁾	521	549	595	630	665
(CMS입금이체)	86	89	109	72	18
(지방은행공동망)	4.5	4.1	4.2	4.1	4.4
(전자상거래공동망)	18	20	20	20	18
출금이체	536	589	646	708	728
(지로자동이체)	220	249	286	343	368
(CMS출금이체)	316	340	359	365	360
지급카드	1,381	1,501	1,679	1,771	1,830
신용카드	1,278	1,353	1,482	1,535	1,563
(물품 및 용역구매)	1,054	1,129	1,255	1,328	1,373
(현금서비스)	224	224	227	207	191
체크카드	100	142	191	232	263
선불카드	3.5	6.5	5.5	4.3	3.3
직불카드	0.12	0.11	0.09	0.06	0.04
현금IC카드	-	-	-	0.01	0.08
전자화폐	0.2	0.2	0.2	0.1	0.1
합 계	241,891	267,331	277,557	295,181	300,663

주 : 1) 장표지로, 납부자자동이체 및 대량지급

2) 예금지급 및 현금서비스지급 제외

나.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규모

(일평균 건수)

(천건)

	2009	2010	2011	2012	2013
거액결제시스템	10.8	13.1	14.5	13.3	13.8
총액결제	9.5	11.8	13.3	12.0	12.5
차액결제	0.4	0.4	0.2	0.2	0.3
국고금수급	0.9	0.9	0.9	1.0	1.0
한국은행대출	0.02	0.02	0.02	0.02	0.02
국공채거래 ¹⁾	0.03	0.04	0.04	0.04	0.04
소액결제시스템	15,962	16,475	17,159	18,060	18,739
어음교환시스템	2,554	2,052	1,678	1,239	972
지로시스템	4,223	4,610	4,836	5,476	5,584
금융공동망	9,185	9,812	10,646	11,345	12,183
(전자금융공동망)	4,248	4,855	5,504	6,147	6,973
(타행환공동망)	487	429	416	393	378
(CD공동망)	1,388	1,461	1,520	1,658	1,760
(CMS공동망)	2,968	2,967	3,095	3,043	2,962
(지방은행공동망)	0.5	0.5	0.4	0.3	0.3
(전자상거래공동망)	91	97	109	103	107
(직불카드공동망)	2.8	2.6	2.2	1.6	1.1
합 계	15,973	16,488	17,174	18,073	18,752

주 : 1)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

(일평균 금액)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거액결제시스템	181,008	200,647	206,806	226,133	232,717
총액결제	149,221	168,890	174,235	194,704	206,718
차액결제	18,297	19,318	19,651	18,840	13,307
국고금수급	3,560	3,855	4,407	4,281	4,135
한국은행대출	947	892	747	729	743
국공채거래 ¹⁾	8,983	7,692	7,766	7,579	7,813
소액결제시스템	48,924	54,188	57,167	55,347	55,277
어음교환시스템	21,343	22,940	21,132	17,192	14,965
지로시스템	620	691	787	915	963
금융공동망	26,961	30,557	35,248	37,241	39,349
(전자금융공동망)	22,707	26,169	30,523	32,403	34,365
(타행환공동망)	3,165	3,232	3,480	3,581	3,745
(CD공동망)	664	703	753	796	838
(CMS공동망)	402	428	468	437	378
(지방은행공동망)	4.5	4.1	4.2	4.1	4.4
(전자상거래공동망)	18	20	20	20	18
(직불카드공동망)	0.12	0.11	0.09	0.06	0.04
합 계	229,932	254,835	263,973	281,480	287,994

주 : 1)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 국공채 매매거래



색 인

1. 국문색인	363
2. 영문색인	368

1. 국문색인

ㄱ

가계수표	122
가상화폐	137
가치교환형 결제	7, 32
감독	52
감시	46, 51, 63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64, 110
개선권고	73
거래정보저장소(TR)	26, 295
거래정지처분	188
거액결제시스템	23, 41, 45, 145
거액결제리스크	169
결제	7
결제리스크	11, 109
결제기관	10
결제대금예치업	97
결제완결성	112
결제유동성	148, 169
결제은행	245, 258
결제이행보증	24, 260
결제이행용 담보증권납입	231
결제적립금	262, 293
결제전용예금	153
결제회원	89, 243, 293
계좌대체(book-entry)	25, 269
계좌이체 PG	223
교환순지급금액	231
국가간ATM공동망	214
국고전산망	174
국제결제은행(BIS)	27, 81
국제위안화결제시스템(CIPS)	318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7
국제증권업협회(ISSA)	290
국제통화기금(IMF)	36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133
금융결제원	78, 88
금융공동망	197
금융시장인프라	6, 10, 2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27, 291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8, 87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75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220
기타지급결제시스템	63

ㄴ

납부자자동이체	193
내국신용장	120

ㄷ

다자간 동시처리	24, 148
다자간 순채무한도	228
다자간 차감	26, 261
다자간 차감결제	272
다자간 차액결제	24, 226
당좌예금	153
당좌수표	122
대기제도	155
대량지급	194

대리교환	183
대체비용리스크	12, 250
동시처리	24, 148

□

매매전문회원	89
모니터링	51, 66
모바일뱅킹	101, 125
모바일카드	131
무권화(dematerialization)	267
미결제순채무액	230
미결제어음통보	186

ㅂ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50
발선촉진자	47, 75
뱅크월렛카카오	102, 142, 214
뱅크머니	214
법률리스크	13, 251
법화	39, 61, 137
보관리스크	14
보안사고	313
보통지급지시	153
부도어음	186
부동화(immobilization)	267
분리결제	272, 289
비금융기업	140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93
비트코인	139

人

사전담보	228
상대순신용한도	228
상대차감결제	272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	43
생존자 부담(survivors pay)	229
서민금융기관	93
서버간 직접접속	149
선불전자지급수단	128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96
선불형카드	127
선입선출법(FIFO)	154
세계은행(World Bank)	36
소액결제시스템	23, 177
손실공동분담(loss-sharing)	229
손해배상공동기금	262, 293
수납장표	184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159
수표	122
수표법	111
순채무한도	230
스미싱(smishing)	314
시스템적리스크	13
신속지급지시	153
신용공여	179
신용리스크	11, 17, 30, 266
신용카드	126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217
신용카드 뱅(VAN)사업자	100
신용카드회사	94, 126
신용카드 PG	96, 223
신용한도	228
실시간총액결제방식	24, 62, 148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45, 169

○

알리페이	102, 141
약속어음	120
양자간 동시처리	148, 154
양자간 차액결제	24
어음	120
어음교환	182
어음교환시스템	182
어음법	111, 120
업무지속계획	17, 170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305
연속차감결제	272
예약자금이체	157
예약결제정보통신망(SAFE+)	271
예약자계좌부	274
외화자금이체	161
외화자금이체시스템	241
외환결제	90, 239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지침	253
외환결제리스크	250
외환결제시스템	23, 235
외환동시결제	23, 239
우회선입선출법(by-pass FIFO)	154
운영리스크	13, 32, 251
원금리스크	12, 250, 265
원화자금이체	158
위안화 청산은행	307
유가증권시장	273
유가증권시장결제	273
유동성리스크	12, 31, 250, 265
유통어음	120
은행 뱅(VAN)사업자	101
이연차액결제방식	24, 45
인터넷뱅킹	125
인터넷지로	195

일관처리(STP)	149
일반사업리스크	14,32
일반자금이체	158
일중당좌대출제도	164
일중RP제도	165
입금이체	123, 208

ㄷ

자금관리서비스(CMS)	208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208
자기앞수표	122
자동이체	124, 1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5
장외파생상품결제	284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	284
자유한도	164
장표방식 지급수단	9,119
장표지로	191
재교환(unwinding)	226
전자고지결제업	99
전자금융거래법	64, 74, 94, 101
전자금융공동망	204
전자금융보조업자	100
전자금융업자	94
전자단기사채	285
전자방식 지급수단	119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22
전자어음	120
전자어음관리기관	120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122
전자정보교환	184
전자지급결제대행	96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96
전자채권 보관은행	220

전자화폐	212
전자화폐공동망	212
점포외 CD공동망	200
주식기관투자자결제	282
중앙거래당사자(CCP)	24, 260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291
중앙예탁기관(CSD)	89, 267
중요지급결제시스템	63, 65
증권결제	272
증권결제리스크	288
증권결제시스템	272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권고	290
증권계좌대체	25, 280
증권대금동시결제	25
증권보관업무(custody)	271
증권보관기관(custodian)	292
지급	7
지급결제	5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9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8, 85
지급서비스	8, 92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8, 92
지급수단	9, 117
지급준비금	41, 233
지로	123, 189
지로시스템	189
지방은행공동망	211
지정시점결제방식	24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98
직불카드	130, 206
직불카드공동망	206
직불형카드	129
진성어음	120
질권등록	162
질권설정	25, 258
집중예탁	89, 258

ㄷ

차감	17, 24
차감결제	26, 272
차액결제대행	233
차액결제리스크	226
차액결제방식	24, 147, 179
차액결제시스템	179, 227
차액결제위탁기관	110, 233
차액결제 참가기관	109, 230
채권기관투자자결제	280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	229
채무인수	88, 26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5, 111
청산	7, 88, 257
청산기관	10, 88, 258
청산적립금	264
체크카드	9, 130
총액결제방식	24
총액결제시스템	147, 152
최종대부자	8, 39, 62
추심	123, 182
출금이체	123, 208

ㅋ

카카오페이	142
코넥스시장	278
코넥스시장결제	278
코스닥시장	278
코스닥시장결제	278
콜결제 일관처리	149, 158
콜자금 결제	158

E

타행환	201	환거래네트워크	237
타행환공동망	201	환거래은행	237
텔레뱅킹	92, 125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	163
통신과금서비스	224	환어음	120
통합도산법	111, 292	환업무	92
투자리스크	14		
특별참가은행	183		
특정일차감결제	272		

II

파밍(pharming)	314
파생상품시장결제	279
펀뱅킹	206, 328
페이팔	102, 141, 312
평가	46, 51, 70
표준화	75, 184, 314

III

하이브리드카드	69
한국거래소	88, 260
한국예탁결제원	89, 268
한국은행법(한은법)	106
한국전자금융	101, 200
한은금융망	23, 62, 147
현금	119
현금IC카드	130, 198
혼합형결제방식	24, 62, 148
혼합형결제시스템	148

2. 영문색인

A

ACH(Automated Clearing House)	46, 116
Alipay	102, 141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313
ARS공동망	76, 204
ATM(Automated Teller Machine)	124, 197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273, 288

B

B2B 지급결제시스템	122, 220
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222
BACS(Bankers' Automated Clearing Service)	151, 180
Bankline	211
BankMoney	143, 213
BankWallet	143, 213
Barcode	131
BCP(Business Continuity Plan)	17, 171
BCBS	29, 253
bilateral net credit limits	228
bilateral net settlement	24, 226
BIS	9, 69
Bitcoin	139
BLE(Bluetooth Low Energy)	311
BOJ-net	152, 309
BOK-wire+	62
BONY	15
book-entry	25

By-pass FIFO	154
--------------	-----

C

CCP(central counterparty)	24, 260
CD(Cash Dispenser)	124
CD/ATM	101, 124
CD공동망	197
CDS	26, 243
CHAPS	46, 151
CHIPS	151, 239
CIPS	318
clearing bank	307
clearing house	7, 39, 114
Clearstream	268, 288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243
CLS서비스	243
CLS시스템	243
CLS은행	90, 240
CLS Oversight Committe	82
CME	264
CMS(Cash Management Service)	124
CMS공동망	208
CMS 입금이체	209
CMS 출금이체	208
CNS(Continuous Net Settlement)	294
collateral requirements	228
CORE	181
correspondent banking network	237
CPMI	82
CPSS	9

credit risk	11, 30
credit transfer	123
critical service provider	13
CSD(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25, 267
CSD-RTGS 모델	306, 317
CSI	83, 305
current exposure	11, 266
custody	271
custodian	271, 292

D

DCO(Derivatives Clearing House)	316
debit transfer	123
defaulters pay	229
deferred net settlement	45
dematerialization	267
Digital convergence	140
direct debit	192, 310
Dodd-Frank Act	55, 264, 316
DTCC	243, 295
DvP(Delivery versus Payment)	25

E

EBA(Euro Banking Association)	15, 152
ECU(European Currency Unit)	15
embedded 방식	136
EMEAP	82
EMIR	36, 265, 316
EPN(Electronic Payment Network)	180
ESMA	265, 297, 316
EUI	287

EUR CHATS	241
Eurex	265
Euro1	152
Euroclear	268, 287
exchange-of-value	7, 32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41, 116

F

facilitator	45, 320
FedACH	46, 180
Fedwire	151
FICC	287
FIFO	154
Financial Services Act	54, 114
FPS	181, 311
FMI(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6
free of payment	289
FSAP	36
FSB	27
FSOC	55

G

G20	27
G30	290
general business risk	32
Google Wallet	141

H

haircut	31
Herstatt	15, 240
hybrid system	148

I

ICSD	268, 305
immobilization	267
IMSG	35
interconnectedness	43
investment risk	32
IOSCO	28
IRS	263
ISO 20022	308, 319
ISSA	290

J

JASDEC	288
JGBCC	288
JSCC	288

K

K-cash	128
K-cash공동망	212
Key Standards	28

L

Lamfalussy 기준	227, 290
LCH.Clearnet Ltd.	287
LCH.Clearnet SA	287
legal risk	11, 253
LEI(Legal Entity Identifier)	297
liquidity risk	11, 31, 253
loss-sharing	229
LSE(London Stock Exchange)	287
LVPS(Large Value Payment System)	23

M

MICR	191
microSD	136, 315
Monetary Control Act	41, 116
MTS France	287
multilateral net debit caps	228
multilateral net settlement	24, 226
Mybi	128

N

NCSD	268
NFC(Near Field Communication)	133, 142
NCR(Net Capital Ratio)	263
netting	7,17
nostro account	237
NSCC	287

O

O2O(online to offline)	311
OCR	184, 191
operational risk	11, 32, 253
OTA(Over The Air)	132
overnight credit	179
oversight	34, 46, 114

P

paperless	119
pay-in	244, 247
pay-out	247
PayPal	102, 141
PFMIs	28
PG(Payment Gateway)	96
PG서비스	222
PG업자	96
pharming	314
phone bill	224
principal risk	11, 253
POS	142
post-trade	295
potential future exposure	11, 266
PS(Payment System)	23
PS-LI	67
PvP(Payment versus Payment)	23, 240

Q

QR코드	131
------	-----

R

RCCP	290
recognition	304
recovery	304
replacement cost risk	11, 253
resilience	35
resolution	304
responsibilities	29
retail payment system	23
rewind	52
RFID	133
RMB CHATS	241
rolling settlement	292
RP시장 결제	277
RSI(Regional Settlement Intermediary)	305
RSSS	290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45
RTGS-Xg	148
Recovery Time Objective	18

S

SAFE+	271
SD(Secure Domain)	132
SE(Secure Element)	132, 136
SEACEN	82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181
settlement finality	31, 61, 112
SNS	131
SSP(Single Shared Platform)	309
SSS(Securities Settlement System)	25, 272
standing order	193
STP(Straight Through Processing)	149

survivors pay	229
SWIFT	238
SWIFT oversight forum	82
systemic risk	11

T

TARGET	151
TARGET2	152
Target2-Securities(T2S)	310
TIW(Trade Information Warehouse)	26
TR(Trade Repository)	26, 295
trade compression	295
truncation	182

U

UICC	136
unwinding	226
UPI	297
USD CHATS	241
USIM	132
UTI	297

V

VAN(Value Added Network)	100
VisaCash	128

W

waterfall	266
-----------	-----

Y

Yelopay	143
---------	-----

Z

Zengin	152, 181, 310
--------	---------------

부문별 집필자

부 문	집필자
제1부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제1장 지급결제제도의 개요 제2장 금융시장인프라 제3장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제4장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결제정책팀 과장 장경수 결제정책팀 과장 김영석, 과장 장경수, 과장 곽창용 결제안정팀 차장 남택정 전자금융팀 과장 배문선 결제정책팀 과장 김용구 결제안정팀 차장 남택정
제2부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제5장 한국은행의 역할 제6장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제7장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제8장 지급수단 제9장 거액결제시스템 제10장 소액결제시스템 제11장 외환결제시스템 제12장 증권청산결제시스템	결제안정팀 차장 남택정 전자금융팀 과장 배문선 결제정책팀 과장 장경수 결제정책팀 과장 김용구, 조사역 유기한 결제정책팀 차장 이병목 전자금융팀 과장 배문선 결제연구팀 조사역 이동규 결제운영팀 부국장 정영선, 과장 김광룡 국 고 팀 과장 임시영 결제운영팀 과장 이상민 결제정책팀 과장 장경수, 과장 김용구, 조사역 유기한 결제정책팀 과장 곽창용, 조사역 고혜영 결제안정팀 과장 윤태길 결제연구팀 과장 윤성관 결제정책팀 과장 장경수, 과장 김용구
제3부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과제 제13장 최근의 지급결제 환경변화와 향후 과제	결제정책팀 차장 이병목 결제안정팀 과장 윤재호
부록	결제정책팀 조사역 고혜영, 조사역 유기한
보고서 작성 총괄	결제정책팀 과장 장경수, 조사역 유기한

한국의 지급결제제도

발행인 이 주 열
편집인 박 이 락
발행처 한국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www.bok.or.kr
발행일 2014년 12월 26일
제 작 소랑커뮤니케이션

Copyright ©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ISBN 979-11-5538-145-8 93320



ISBN 979-11-5538-145-8 93320

